

研究報告 91-17

慣習法調查研究(I)

— 豫 備 調 查 篇 —

研究責任者	全	在	慶	責任研究員
共同研究者	鄭	肯	植	研究員
	裴	承	希	研究助員

韓國法制研究院

RESEARCH PAPER 91-17

**PRELIMINARY RESEARCH
OF
KOREAN CUSTOMARY LAW
VOLUME 1**

Researcher Chun Jae-kyung
Associate Researcher Chung Geung-sik
Assistant Researcher Bae Seung-hee

199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發 刊 辭

意識과 習慣 속에 底礎되어 있는 慣行 및 慣習法은 종래 法律生活의 重要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만, 西歐法制의 전래 이후 別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社會經濟構造의 多樣化 내지 分權化와 더불어 法律生活의 實態가 크게 변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法律文化變動에 관한 研究가 重要한 意義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慣行 및 慣習法의 現狀과 機能에 관한 調査·研究는 이러한 法律文化의 變動에 관한 研究를 중심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觀點 아래 傳統法文化의 뿌리를 찾고 現行法制의 改善을 위한 立法資料를 탐색하고자 慣習法調査研究事業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調査에 있어서는 加급적 여러 분야의 慣行 및 慣習法을 포섭함으로써 概괄적이나마 慣習法의 全모와 調査가능성을 선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概括的 調査目錄과 資料들은 向後의 深層調査와 理論研究를 통하여 보다 세련되고 심도있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慣習法研究의 畚을 조성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 斯界의 研究와 實務에 一助한다면 더없는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끝으로 이 調査를 위해 協力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提報에 응해 주신 京鄕 各地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1992년 1월

韓 國 法 制 研 究 院

院 長 李 世 薰

調查研究協力明細

1. 研究諮問・討論

金光億 金東鎭 金相容 金亨培 박경하 孫 晟 宋相現 沈羲基 吳峻根
李鍾日 李鍾吉 李俊雨 李哲松 李海濬 李洪煥 張哲秀 鄭浩烈 趙宗植
주강현 주장규 崔鍾庫

2. 現地諮問

濟州道：吳文福 오옥화 韓三寅

慶尙北道

蔚珍郡：이경화 李明光 李守鎭

尙州郡：金基卓 盧天可 朴庸熙 朴贊善 유강하

安東郡：權英俊 문채규 유한상 柳熙杰 李鎭九 임재해 韓陽明

3. 調查協力(村落地域)

濟州道：강영순 康日好 高龍海 김미숙 金宗九 夫昌玉 梁成鎭 허영선

慶尙北道

蔚珍郡：李宗浩 全棟煥 黃慶壽

盈德郡：權琬基 권호달 김홍섭 이문석 이병목 李台熙

尙州郡：金哲熙 金台熙 김현숙 朴炳默 李相紀 李秀夫 이예희 全在彬

安東郡：權五仁 金昌鎬 朴鍾培 李海善

奉化郡：琴錫綠

4-1. 提報者 I (村落地域)

濟州道：강이순 고달진 高萬松 高汝鳳 김경순 김대은 김동규

김순화 김영자 김용진 김용한 金正彩 김축생 박경일 朴南璉

박점례 朴昌憲 朴坪林 양성운 오문태 오태권 이근만 이대영

李東栢 이인경 임순옥 정성두 조창익 玄奉珍 玄鳳現 김병두母親

慶尙北道

蔚珍郡：安炳洛 安盈源 張白龍 鄭相鎬 崔連錫 黃道龍 黃鼎九

盈德郡：權相左 金旭煥 朴寅煥 昔重燦

尙州郡：姜仁秀 朴鎔杓 成白周 成鶴煥 禹五錫 李映河 鄭競在
趙誠穆 趙世熙

安東郡：姜大恪 姜聲八 姜儀銓 權琪燮 權五斌 권학문 權龍燮

김갑동 金斗周 김석교 金世圭 金時雨 金時鐸 김용채

金元在 金宰東 金滢東 金鎬鶴 金興東 宋데레사

安基慶 柳端夏 李龍九 李裕鳳 李弼教 李東恩 李一馥

林致大 張碩基 鄭載守 趙且基

奉化郡：權憲祖

忠清南·北道：金壬得 朴商玩 朴商玩 申榮秀 申鉉豐 張鳳鎭

4-2. 提報者II(都市·市場·團體)

고학근 김신영 김재수 徐鍾南 沈亨求 禹奉燮 윤춘석 李相見 鄭萬碩

鄭明石 趙鉉泰

5. 調查協力·提報(都市·市場·團體)

高海鎭 金 燮 金承鎬 魯宰旭 朴世建 徐相浩 吳世俊 李在善 趙成根

朱榮優 崔赫智

6. 現地調查者

濟州道：高聖恩 金京淑 文炳哲 朴庚淑

慶尙北道

蔚珍郡·盈德郡：安相述

安東郡：권기원 김경동 김장현 남동재 이우석

忠清南·北道：강대식 박상덕 張能遠

7. 文獻·DB

김종훈 申玉珠 吳成根 李善靜 崔志寧 홍기원

目 次

第 1 編 緒 論

第 1 章 調查目的	3
第 2 章 調查範圍	3
第 3 章 調查方法	3
第 4 章 綜合調查研究計劃	
1. 綜合調查 研究의 目的	4
2. 綜合調查 研究 範圍	4
(1) 調查範圍/ 4	(2) 研究範圍/ 5
3. 綜合調查 研究 方法	5
4. 推進指針	5
5. 推進日程	6

第 2 編 基礎調查

第 1 章 事前調查

第 1 節 韓末 및 植民地時代 調查事業

I. 調查事業概觀

1. 統監府 不動產法調查會의 調查事業	9
(1) 韓國不動產에 관한 調查記錄/ 10	
(2)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1綴/ 11	
(3)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2綴/ 12	

(4) 韓國에서의 土地에 관한 權利一斑/ 12	
2. 法典調査局의 調査事業	12
3.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調査事業	12
(1) 調査項目/	(2) 慣習調査報告書/
4.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調査事業	22
5. 中樞院의 調査事業	24
(1) 民事慣習調査/ 24	(2) 商事慣習調査/ 32
(3) 制度調査/ 34	(4) 風俗調査/ 35
(5) 舊慣調査關聯資料編纂/ 37	
II. 評價 및 活用方案	38

第2節 調査對象選定을 위한 基礎資料明細

1. 傳來部落	39
(1) 同族部落의 分布/ 39	(2) 特殊部落의 分布/ 50
2. 傳來團體：契	51
(1) 公共事業分野/ 51	(2) 扶助分野/ 52
(3) 産業分野/ 52	(4) 金融分野/ 52
(5) 娛樂分野/ 52	(6) 기타分野/ 52

第2章 研究諮問

第1節 調査研究의 意義 및 範圍

1. 基礎法學研究의 重要性에 관하여	53
2. 慣習調査研究의 必要性에 관하여	53
3. 調査研究의 範圍에 관하여	54
4. 土着文化의 研究에 관하여	55

第2節 方法論

1. 文獻調査 및 整理에 관하여	56
-------------------------	----

2. 判例의 調査 및 整理에 관하여	56
3. 現地調査에 관하여	57
4. 推進方針에 관하여	58

第3節 分野別 主要調査項目

1. 自治 및 紛爭解決	59
2. 民事	60
3. 商事	61
4. 行政	65
5. 刑事節次	66
6. 古慣習	67

第3編 文獻分析

第1章 分析의 目的·範圍 및 方法	71
--------------------------	----

第2章 地域別 分析

第1節 全南 羅州郡 洞契	71
---------------------	----

1. 調査地域 및 調査時期	71
2. 調査方法	71
3. 調査內容	72
(1) 金安洞 洞契의 組職構造와 運用 /	72
(2) 金安洞의 洞契와 鄉約과의 關係 /	72
(3) 金安洞의 洞契와 村契와의 關係 /	73

第2節 全南 咸平郡 慣行水利權	73
------------------------	----

1. 調査地域 및 日字 /	73	2. 調査方法 /	74
3. 調査內容 /	74		

第3節 濟州道 南濟州郡 入漁慣行 74

- 1. 調查地域 및 時期/ 74
- 2. 調查目的 및 方法/ 75
- 3. 調查內容/ 75

第3章 市場別 分析

第1節 金融市場

- 1. 與信 및 受信 關係 非正常的 慣行 76
- 2. 債權擔保慣行 78

第2節 債券市場：機關別 資產運用慣行

- 1. 證券會社 79
- 2. 投資信託會社 79
- 3. 銀行信託計定 80
- 4. 保險會社 80
- 5. 短資會社 80

第3節 國際去來市場

- 1. 商品市場：輸出代行者의 慣習上 瑕疵擔保責任 81
- 2. 投資市場 81

第4章 團體・機關別 分析

- 第1節 政黨 83
- 第2節 宗 中 84
- 第3節 漁村契 85

第4編 現地調査

第1章 地域別 調査

第1節 村落地域

I. 濟州道

1. 調査計劃 89
2. 調査經過 90
 - (1) 現地諮問/ 90
 - (2) 調査協力/ 92
 - (3) 調査員 教育 및 評價/ 93
3. 調査内容 93
 - (1) 北濟州郡
 - 1) 朝天面 善屹里/ 93
 - 2) 舊左邑 上德泉里/ 95
 - 3) 舊左邑 松堂里/ 96
 - 4) 舊左邑 東·西金寧里/ 97
 - 5) 翰京面 今樂里/ 99
 - 6) 翰京面 高山里/ 101
 - 7) 涯月邑 光令里(光令里郷約)/ 102
 - (2) 南濟州郡
 - 1) 城山邑 三達1里(臥江里)/ 113
 - 2) 南元邑 新禮1里/ 114
 - 3) 大靜邑 新桃2里/ 115
 - 4) 大靜邑 上羣里/ 116
 - 5) 安德面 倉川里/ 119
 - 6) 表善面 城邑里(新城邑郷約)/ 121
 - 7) 表善面 兎山2里/ 127
 - (3) 西歸浦市
西歸浦市 月坪洞/ 129
4. 調査結果分析 131
 - (1) 共同體意識의 澎湃/ 131
 - (2) 西歐式 法律概念의 不要/ 132
 - (3) 傳統의 重視/ 132
 - (4) 特有의 慣習과 法律概念 保全/ 132
 - (5) 規律의 순박성/ 132
 - (6) 村落社會構造의 變貌와 慣習의 逸失/ 132
5. 調査所感 133
6. 蒐集資料目錄 135

7. 關係資料目錄..... 135

II. 慶尙北道

1. 蔚珍郡

- (1) 調查計劃/ 136
- (2) 調查經過/ 137
- (3) 調查內容/ 138
 - 1) 平海邑 巨逸里 2區(老班規約/ 洞自治規約)/ 138
 - 2) 箕城面 尺山里/ 158
 - 3) 平海邑 梧谷里/ 159
 - 4) 平海邑 三達里/ 161
- (4) 調查結果分析/ 161
 - 1) 班村規律微弱/ 161
 - 2) 民村의 自治組織 變貌/ 161
 - 3) 海村의 慣習法/ 161
 - 4) 厚浦港의 漁販場을 중심으로 한 慣行調查 可能性/ 162
- (5) 調查所感/ 162
- (6) 蒐集資料目錄/ 163

2. 盈德郡

- (1) 調查計劃/ 163
- (2) 調查協力/ 163
- (3) 調查內容
 - 1) 寧海面 槐市2洞/ 164
 - 2) 蒼水面 蒼水里/ 165
 - 3) 蒼水面 仁良3里(仁良3區洞案)/ 166
 - 4) 蒼水面 美谷里/ 167
 - 5) 蒼水面 街山1里/ 168
 - 6) 丑山面 陶谷里/ 169
- (4) 調查結果分析/ 170
- (5) 調查所感/ 171
- (6) 蒐集資料目錄/ 171
- (7) 關係資料目錄/ 172

3. 尙州郡

- (1) 調查計劃/ 172
- (2) 調查經過/ 172
 - 1) 調查協力/ 172
 - 2) 現地諮問/ 172
- (3) 調查內容/ 174
 - 1) 豐壤 趙氏 宗宅/ 174
 - 2) 沙伐面 元興1里/ 175
 - 3) 內西面 綾岩里/ 178
 - 4) 洛東面 云坪里 雲谷洞/ 180
 - 5) 牟東面 龍湖里/ 181
 - 6) 牟東面 德谷1里(松梨契契則)/ 182
 - 7) 青里面 佳川1里/ 185
 - 8) 化北面 壯岩1里/ 186
- (4) 調查結果分析/ 188
 - 1) 典型的인 農村地域의 慣習/ 188

2) 共同財産의 法律關係 變遷(總有에서 合有로)/ 189

3) 隣近地域의 影響 및 地域의 分割/ 189

(5) 調査所感/ 190

(6) 蒐集資料目錄/ 190

4. 安東郡

(1) 調査計劃

1) 調査指針/ 191

2) 村落地域 慣習法 全數調査表/ 192

(2) 調査經過/ 198

1) 現地諮問/ 198

3) 調査마을의 選定/ 202

2) 調査協力/ 202

(3) 調査内容

1) 豊川面 道陽洞/ 203

2) 豊川面 河回/ 205

3) 豊川面 佳谷里(가일리)/ 207

4) 豊山邑 五美里/ 211

5) 豊山邑 素山洞/ 214

6) 西後面 苧田洞/ 217

7) 西後面 城谷洞(춘과동)/ 219

8) 臨河面 琴韶洞/ 222

9) 臨河面 新德1洞/ 224

10) 臨河面 川前1里 / 227

11) 吉安面 默溪里/ 229

12) 一直面 造塔洞/ 232

13) 一直面 龜尾洞/ 234

14) 北後面 甕泉洞/ 237

15) 北後面 道村里(도기촌)/ 239

16) 陶山面 분내 (汾川)/ 242

17) 陶山面 溫惠洞/ 244

(4) 調査結果分析

1) 儒教規範과 法規範의 混同/ 246

2) 民村 慣習法の 多様性/ 247

3) 特殊部落들의 遺習 衰殘/ 247

4) 親族相續 慣習의 典型/ 247

(5) 調査所感/ 247

1) 댐 築造와 傳統社會의 再編/ 247

2) 兩班의 風貌/ 248

3) 文化衝擊/ 248

(6) 蒐集資料目錄..... 248

5. 奉化郡 奉化權門

(1) 調查計劃 및 經過	249
(2) 調查內容	249
1) 洞規 또는 門規	249
2) 小作制：半作制	249
3) 家 事	250
(3) 參考事項	250
III. 忠清北道	
1. 槐山郡 延豐面 葛琴里	250
(1) 慣習調查各目	250
(2) 里契座目	251
(3) 調查員 意見	252
(4) 參考資料(洞規節目)	252
2. 陰城郡 甘谷面 梧弓里	256
(1) 慣習調查各目	256
(2) 補完·追加調查事項	258
(3) 參考資料(宗中規約)	258
(4) 調查員 意見	263
IV. 忠清南道	
1. 禮山郡 古德面 上宮里 陽村	263
2. 參考資料(陽村 連班會則)	269

第2節 都市地域

1. 調查計劃	272
2. 調查經過	273
3. 調查內容	273
(1) 프랜차이즈	273
(2) 集合建物の 管理	274
4. 調查結果分析	
(1) 營業環境에 관하여	276
(2) 法律關係에 관하여	276
5. 調查所感	
(1) 營業祕密의 隱蔽	278
(2) 面談機會의 貧困	278

第2章 市場別 調査

第1節 證 券

1. 調查計劃	279
2. 調查經過	279
3. 調查內容	280
(1) 市場與件	280
(2) 慣習調查總目	281
1) 認知度	281
2) 依存度	281
3) 典據 및 解釋	282
4) 提言	282
(3) 慣習調查各目	282
1) 發行市場	282
2) 流通市場	283
4. 調查結果分析	285
(1) 慣行的 存續期間	285
(2) 自治規程과 慣行的 混同	285
(3) 實定法規의 限界	285
(4) 慣行的 育成과 尊重에 관하여	285
5. 調查所感	286
(1) 業務 雰圍氣에 관하여	286
(2) 法的 認識의 未分化에 관하여	286
(3) 反射的 不利益의 憂慮에 관하여	286
6. 蒐集資料目錄	286

第2節 金融

1. 調查計劃	287
2. 調查經過	287
3. 調查內容	288
(1) 受信	288
(2) 與信	288
(3) 어음 및 手票	289
(4) 營業 및 債權管理	289
(5) 信託	290
4. 調查結果分析	290
(1) 새로운 業務開發과 慣行的 形成	290
(2) 靜的인 慣行的 累積	290
(3) 慣行的 變遷過程 瞭然	290
(4) 慣行的 統一性	291
5. 調查所感	291

(1) 金融慣行의 廣範性과 調査方法/	291
(2) 金融關係 判例의 調査研究/	291
6. 蒐集資料目錄	291

第3節 保 險

1. 調査計劃	292
2. 調査分野	292
3. 調査經過	292
4. 調査內容	293
(1) 生命保險/	293
(2) 海上保險/	293
(3) 保證保險/	294
5. 調査結果分析	294
(1) 保險慣行의 形成에 있어서의 保險募集人의 役割/	294
(2) 海上保險의 國際性과 調査方法論/	294
(3) 再保證의 一般化와 問題點/	295
(4) 自動車保險 등에 있어서의 새로운 慣行形成/	295
6. 調査所感	295
7. 蒐集資料目錄	295

第4節 輸出 및 運送

1. 調査計劃	296
2. 調査經過	296
3. 調査內容	297
(1) 商品輸出 및 通關/	297
(2) 海上運送/	297
4. 調査結果	298

第3章 團體·機關別 調査

第1節 企 業

1. 勞動慣行 事例調査	298
(1) 事前調査項目/ 298	(2) 慣習調査總目/ 299
(3) 慣習調査各目/ 299	
2. 漁撈慣行 事例調査	302
(1) 調査經過/ 302	(2) 調査內容/ 303
(3) 參考資料(遠洋巨擘漁撈契約書)/ 304	

第2節 同業組合 事例調査：金泉煉炭合同契

1. 調査經過	308
2. 調査內容	309
(1) 契約 形成斗 獨占的 營業權 保有/ 309	
(2) 營業形態/ 309	(3) 計算方式/ 309
(4) 營業讓渡/ 310	(5) 營業上の 葛藤/ 310
3. 參考資料(金泉合同煉炭車輛親睦會 會則)	310

第5編 結論(中間評價 및 展望)

第1章 慣行 및 慣習法 調査의 意義 및 期待效果

1. 法秩序의 提高：現行法制改善	315
2. 歷史의 脈：過去의 再構成斗 次世代에의 傳授	315
3. 法學研究의 基礎 確立：法律生活實態 把握	316

第2章 現狀斗 特性

1. 調査對象의 廣範性	317
2. 分權化의 影響	317
3. 多樣化	318
4. 短期化	318
5. 轉移性	319
6. 自生力	320
7. 歷史性	320

第3章 假說과 推論

- 1. 慣習法の 退步와 法秩序의 動搖 321
- 2. 土着慣習法：洞法 또는 洞規 322
- 3. 慣行과 慣習法の 境界 模糊 322
- 4. 脫法 내지 不當 慣行의 規範性 323
- 5. 下部構造와의 關係 323

第4章 認識 및 接近方法上的의 諸問題

- 1. 成文法과의 關係 324
- 2. 西歐的 思考틀의 限界 324
- 3. 概念의 動搖 325
- 4. 自治規程과의 關係 325
- 5. 法感情 내지 法意識과의 關係 326
- 6. 法과 宗教의 混同：洞祭 및 習俗規範 326
- 7. 豫備調査의 限界 326

第5章 代案 및 展望

- 1. 長期 調査研究의 推進方向 327
- 2. 慣行 및 慣習法の 恒久性과 獨自性 328
- 3. 自治化 내지 分權化 社會에서의 慣習規範 328

附 錄

- 大單位 有名 同族部落 一覽 333
- 關係文獻目錄 353

第1編 緒論

第1章 調査目的

第2章 調査範囲

第3章 調査方法

第4章 総合調査研究計画

第1編 緒論

第1章 調査目的

이 調査는 韓國의 慣行 및 慣習法 全般에 관한 本調査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體系的 方案을 摸索하고 基礎的인 準備作業을 遂行하며 試驗的인 部分調査를 實施함을 目的으로 한다.

現代 韓國法制的 發展과 關聯하여 慣行 및 慣習法 調査研究 자체의 意義, 目的, 優先順位 및 活用方案 등이 문제되지만 이는 報告書의 記述體系上 豫備調査報告를 終結한 후 結論 및 評價 部分에서 다룬다.

第2章 調査範圍

이 調査는 基礎調査, 文獻調査 및 現地調査로 이루어진다. 具體的인 調査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慣習法 뿐만 아니라 慣行까지도 포함하여 調査한다. 慣行에 있어서는 脫法的인 것 또는 不當한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成文法이 規律하는 범주에 있어서 慣習法の 초기 모습은 기존의 成文法規와 相衝的이거나 排他的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基礎調査는 先行調査 研究 現況의 分析과 關聯情報를 調査하는 事前調査와 이 分野專門家の 諮問을 중심으로 進行하고, 文獻調査에서는 法律學을 중심으로 한 關係文獻目錄을 整理하고 既存의 現地調査文獻에 관한 分析을 행하며, 現地調査는 地域別·市場別 調査와 團體·機關別調査로 나누어 實施한다.

第3章 調査方法

基礎調査에서는 關聯文獻을 分析하고 關係者를 面談하는 方式을 택하

4 第1編 緒論

고, 文獻調查에서는 각종 文獻目錄集을 調査·分類하는 이외에 다른 研究物의 研究成果를 援用하며, 現地調査는 直接調査와 委託調査로 나누어 實施한다.

調査를 遂行함에 있어서는 慣習法과 慣行의 領域을 區別하지 아니한다. 慣行 및 慣習法에 대한 概念定義가 確立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調査過程에서 이 兩者를 區別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第4章 綜合調査研究計劃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豫備調査를 수행하기 위한 準備作業으로서 本院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綜合調査研究計劃 草案을 수립하였다:

1. 綜合調査·研究의 目的

- ① 法の 性格과 概念을 文化의 脈絡에서 把握하고 法的 葛藤을 解決하는 戰略 및 手段을 分析함.
- ② 傳統 慣習法 體系의 復元
- ③ 外來法律制度의 導入이후 形成된 慣行 및 慣習法 把握
- ④ 慣習法의 法源性 分析
- ⑤ 立法 및 法解釋의 基礎資料 提供

2. 綜合調査·研究 範圍

(1) 調査範圍

1) 圈域別 調査

- ① 村落地域·都市地域(全國 都市 내지 洞里)
- ② 市場(鄉村·無形·國際)
- ③ 團體·機關

2) 分野別 調査

- ① 自治·紛爭解決
- ② 民事·商事
- ③ 刑事節次·行政節次
- ④ 社會·經濟·勞動·習俗

(2) 研究範圍

1) 韓國慣習法 一般理論 研究

- ① 概念·要件·存在樣式·適用範圍·改廢
- ② 認知度·依存度·實效性·規範力の源泉
- ③ 變遷 및 再生, 社會經濟的 背景

2) 事例研究

- ① 圈域別 特性
- ② 分野別 構造
- ③ 傳統的 法律行爲 樣式

3. 綜合調查·研究 方法

1) 調查方法

- ① 文獻調查(判例·朝鮮總督府 調查資料 包含)
- ② 現地住民·關係者 面談, 傳聞調查·檢證 實施
- ③ 廣域調查(郡 또는 大市場 單位), 重點調查(洞里·市場·機關·單位)
- ④ 全數調查(大主題 調查), 特定調查(小主題調查) 並行

2) 研究方法

- ① 文獻調查資料와 現地調查資料 綜合
- ② 現狀分析(單一事例 分析 및 多數事例 比較研究)
- ③ 歷史分析(變化의 動因 및 經路 分析)
- ④ 推論 및 統計 分析

4. 推進指針

1) 基礎調查

- ① 文獻 및 判例 調查·蒐集·分類
- ② 現地調查 對象選定 및 主要日程 樹立
- ③ 豫備調查 實施 및 關聯學問分野의 研究結果 分析

2) 基礎資料集 刊行

- ① 文獻目錄·判例抄錄 整理
- ② 朝鮮總督府 慣習調查報告書 등 日帝時代 資料 翻譯

6 第1編 緒論

③ 外國의 調査·研究內容 紹介

3) 研究協力體制 構築

① 慣習情報 提報網 構築

② 共同調査·委託調査 推進

4) 慣行 및 慣習法誌 作成

① 圈域別·分野別

② 低水準의 抽象

③ 年次 繼續

5) 理論書 刊行

① 一般理論 및 事例研究結果 整理

② 國際研究交流를 위한 資料準備

5. 推進日程—年次繼續事業

① 第1段階[1991년] : 調査基盤造成, 豫備調査報告書 刊行

② 第2段階[1992년—1994년] : 本調査 實施, 研究協力體制 稼動, 基礎資料集 刊行, 慣行 및 慣習法誌 年次 刊行

③ 第3段階[1995년 이후] : 本調査 繼續[北韓地域 包含], 慣行 및 慣習法誌 年次 續刊, 韓國慣習法에 관한 理論研究 報告書 刊行.

參 考 文 獻

- | | | |
|--------------------|-----------------|--------------|
| 崔大權 | 法社會學 | 서울대출관부, 1983 |
| 로렌스 M. 프리드만 朴楠珪 譯, | 法과 社會 | 법문사, 1984 |
| 韓相福·李文雄·金光億 | 文化人類學概論 | 서울대출관부, 1985 |
|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 鄉土史研究小便覽 | 동 협의회, 1990 |
| 嶺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 良佐洞研究 | 영남대출관부, 1990 |
| 韓國歷史民俗學會 | 역사민속학(창간호) | 이론과 실천, 1991 |
| 鈴木榮太郎 | 朝鮮農村社會의 研究 | 未來社, 1973 |
| 栗本慎一郎 | 法·社會·習俗-法社會學序說- | 同文館, 1981 |
- Leopold Pospisil, Anthropology of Law : A Comparative Theory,
New York : Harper & Row, 1971

第2編 基礎調査

第1章 事前調査

第2章 研究諮問

第2編 基礎調査

第1章 事前調査

第1節 韓末 및 植民地 時代 調査事業

I. 調査事業概觀¹⁾

韓國의 慣習法에 관한 최초의 대단위 體系的 調査는 韓末 및 植民地期에 日本政府와 日本人 學者들에 의하여 推進되었다. 이들의 調査事業은 순수한 法人類學的 視覺에서라기 보다는 植民事業의 一環으로 행해졌고, 一部の 調査內容이 상당수 歪曲되었으며, 이들의 調査가 本格的인 現地調査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地方行政官廳의 官吏들을 面談하거나 行政機關을 통해 間接的으로 遂行되었을 뿐만 아니라, 個別的인 項目에 따른 調査地域의 表記가 미흡하고, 植民統治 以前の 韓國의 모든 法規範을 慣習法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등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側面도 있으나²⁾, 慣習法 調査에 관한 傳來의 記錄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資料들을 分析하여 向後의 本調査에 活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 統監府 不動產法調査會의 調査事業

1906년 日帝에 의해 韓國에 設置된 統監府는 韓國政府에 不動產法調査

1) 일제시대의 관습조사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로서는,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1938年), 210頁.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일제시대의 조사사업개관은 이 개요서의 서술을 주로 참고 한다.

會를 設置하고 日本民法學者 梅謙次郎 博士를 會長으로 任命하였다. 이 調查會는 약 1년 6개월의 活動期間 동안, “韓國不動產에 관한 調查記錄”을 編纂하였고 이어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1綴”(1907. 3), 同 “제2綴”(1907. 6), “韓國에서의 土地에 관한 權利 一斑”(1907.6), “韓國土地所有權의 沿革을 함”(1907년경) 등을 刊行하였다.

(1) “韓國不動產에 관한 調查記錄”

1) 調查地域

京城, 仁川, 開城, 平壤, 水原, 大邱, 釜山, 馬山 등

2) 調查期間

1906. 7. 29.~1907. 8. 10

3) 調查團

梅謙次郎 博士, 補佐官 中山成太郎(補佐), 補佐官 補川崎萬藏(執筆), 委員 石鎮衡(通譯).

4) 調查方法

調查團이 각 對象 地方에 出張을 가서 日本人 理事官과 韓國人 觀察使, 府尹 및 郡守 등과 對談을 하는 方式을 취하였다. 對談은 梅博士가 作成한 調查項目을 中心으로 進行되었고, 이 記述을 整理하여 報告書를 刊行하였다.

5) 報告書 分量

菊版89頁

6) 調查項目

① 土地에 관한 權利의 種類, 名稱 및 그 內容(세항 10개):

㉞ 人民의 土地所有權을 認定하는지 아니하는지? 만약 認定한다면

2) 日帝時代의 慣習調查事業 및 慣習法 歪曲 등에 관한 解說과 批判에 관한 研究論文 들로서는 다음의 글들을 參照: 朴賢洙, “日帝의 侵略을 위한 社會·文化 調查活動”, 韓國史研究 第30號(1980. 9), 445~461쪽. 鄭鍾休, “韓國에서의 日本民法의 變容”, 全南大學校論文集(法·行政學編) 第30輯 (1985), 75~107쪽. 李相旭, 韓國相續法の 成文化過程 경북대 박사학위논문(1986) 24~83쪽 참조. 鄭鍾休, “韓末의 西歐法 繼受—民法學을 中心으로—”, 全南大學校論文集(法·行政學編) 第32輯(1987), 97~148쪽. 尹大成, “日帝의 韓國慣習調查事業과 民事慣習法”, 昌原大學校論文集 第13卷 第1號(1991. 6), 65~108쪽.

認定時期는 언제부터인가?

- ㉠ 土地所有權의 制限 및 負擔
- ㉡ 國家가 人民의 土地所有權을 徵收할 수 있는가?
- ㉢ 土地의 上下에 所有權이 影響을 미치는지 與否
- ㉣ 土地의 境界에서의 雙方 所有者의 權利의 限界
- ㉤ 共有地의 處分 및 管理에 관한 慣習
- ㉥ 借地權의 種類, 名稱 및 그 內容 특히 建物所有者의 權利
- ㉦ 地役權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種類 및 效力
- ㉧ 入會權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種類 및 效力
- ㉨ 質權·抵當權의 設定條件 및 效力
- ② 官民有區分의 證據
- ③ 國有와 皇室所有와의 區別如何
- ④ 土地臺帳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帳簿에는 어떠한 事項을 記錄하는지?
- ⑤ 土地에 관한 權利의 讓渡는 모두 자유로운지? 또 그 條件 및 節次 如何
- ⑥ 地券 및 家券이 있다는데, 이는 어떠한 土地나 建物에도 달려 있는지?
- ⑦ 土地의 境界는 항상 명확한지? 만약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같은 土地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같은 權利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바 이때에는 어떠한 標準에 의하여 正當한 權利者를 정하는지?
- ⑧ 土地의 種目は 어떻게 나누는지? 日本의 例는 田·畑·宅地·山林·原野 등임.
- ⑨ 土地測量의 方法 如何
- ⑩ 이상의 各項에 있어서 市街地와 기타 地域이 다르다면 그 差異. 기타 地方에 따라 慣習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 區別

(2) “韓國不動産에 관한 慣例 第1綴”

이는 1906년 補佐官 補川崎萬藏이 梅博士의 調査方法과 調査項目에 따라 각 地方의 府尹·郡守·郡主事·面長·書記 등과 對談한 記錄을 編綴한 것이다. 調査地域은 忠淸南道 중 12個郡(稷山, 天安, 溫陽, 新昌, 禮山, 洪州, 大興, 靑陽, 定山, 公州, 魯城, 恩津), 黃海道 중 3個郡(金川,

瑞興, 黃州), 平安南道 중 1府 7郡 중 1坊(三和府柴足坊, 中和, 江東, 成川, 殷山, 慈川, 江西, 龍岡) 등지이다. 報告書 分量 菊版76頁(1907년).

(3)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2綴”

이는 第1綴의 續篇으로서 囑託 平木勘太郎이 黃海道 중 12個郡(安岳, 載寧, 海州, 新川, 文化, 殷栗, 豐川, 松禾, 長淵, 長連, 延安, 白川) 地域에서 郡守·郡主事·稅務主事·은행취채역 등 稅務關係者와 金融關係者를 중심으로 調査·編綴한 것이다. 언어소통상의 불편, 응답요령의 불충분 등으로 調査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음을 附記하고 있다. 報告書 分量 菊版 144頁(1907년).

(4) “韓國에서의 土地에 관한 權利一斑”

이는 補佐官 中山成太郎이 南韓 地方을 出張調査하여 펴낸 것으로서, 韓國人的 權利觀念, 土地觀念, 土地에 관한 權利, 土地所有權의 限界·取得 및 喪失, 地上權, 地役權, 債權的借地權(賭地, 併作), 土地典當(抵當, 不動產質), 權賣, 文記 등에 대하여 記錄하였다. 報告書 分量 菊版83頁(1907년).

2. 法典調査局의 調査事業

1908년 韓國政府에 의하여 設置된 法典調査局(委員長 韓昌洙)은 民事 商事 分野에서 206개의 調査問項으로 구성된 “慣習調査問題”를 作成하여 京城 外 49개 地域에서 全數調査를, 驪州 外 37개 地域에서 特定調査를 遂行하였다. 이 調査는 대체적으로 日本民法 및 商法の 篇別에 따라 項目 分類를 하였으며 不動產法調査會의 慣習調査를 確認·補充한다는 성격을 띠었다. 調査結果는 韓日合邦 後 朝鮮總督府에서 慣習調査報告書(1910年版 408頁, 1912年版 404頁, 1913年版 404頁)로 刊行되었다.

3.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調査事業

(1) 調査項目

19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活動한 取調局은 朝鮮 各地의 慣習을 調査하고 典籍을 섭렵하며 制度와 慣習의 淵源을 究明하기 위하여 다음의 項目을 중심으로 調査를 進行하였다:

① 土地制度

認定時期는 언제부터인가?

- ㉠ 土地所有權의 制限 및 負擔
- ㉡ 國家가 人民의 土地所有權을 徵收할 수 있는가?
- ㉢ 土地의 上下에 所有權이 影響을 미치는지 與否
- ㉣ 土地의 境界에서의 雙方 所有者의 權利의 限界
- ㉤ 共有地의 處分 및 管理에 관한 慣習
- ㉥ 借地權의 種類, 名稱 및 그 內容 특히 建物所有者의 權利
- ㉦ 地役權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種類 및 效力
- ㉧ 入會權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種類 및 效力
- ㉨ 質權·抵當權의 設定條件 및 效力
- ② 官民有區分의 證據
- ③ 國有와 皇室所有와의 區別如何
- ④ 土地臺帳 또는 이와 類似한 것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帳簿에는 어떠한 事項을 記錄하는지?
- ⑤ 土地에 관한 權利의 讓渡는 모두 자유로운지? 또 그 條件 및 節次如何
- ⑥ 地券 및 家券이 있다는데, 이는 어떠한 土地나 建物에도 墜러 있는지?
- ⑦ 土地의 境界는 항상 명확한지? 만약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같은 土地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같은 權利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바 이때에는 어떠한 標準에 의하여 正當한 權利者를 정하는지?
- ⑧ 土地의 種自은 어떻게 나누는지? 日本의 例는 田·畑·宅地·山林·原野 등임.
- ⑨ 土地測量의 方法 如何
- ⑩ 이상의 各項에 있어서 市街地와 기타 地域이 다르다면 그 差異. 기타 地方에 따라 慣習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 區別

(2)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1綴”

이는 1906년 補佐官 補川崎萬藏이 梅博士의 調査方法과 調査項目에 따라 각 地方의 府尹·郡守·郡主事·面長·書記 등과 對談한 記錄을 編綴한 것이다. 調査地域은 忠淸南道 중 12個郡(稷山, 天安, 溫陽, 新昌, 禮山, 洪州, 大興, 靑陽, 定山, 公州, 魯城, 恩津), 黃海道 중 3個郡(金川,

瑞興, 黃州), 平安南道 중 1府 7郡 중 1坊(三和府柴足坊, 中和, 江東, 成川, 殷山, 慈川, 江西, 龍岡) 등지이다. 報告書 分量 菊版76頁(1907년).

(3) “韓國不動產에 관한 慣例 第2綴”

이는 第1綴의 續篇으로서 囑託 平木勘太郎이 黃海道 중 12個郡(安岳, 載寧, 海州, 新川, 文化, 殷栗, 豐川, 松禾, 長淵, 長連, 延安, 白川) 地域에서 郡守·郡主事·稅務主事·은행취체역 등 稅務關係者와 金融關係者를 중심으로 調査·編綴한 것이다. 언어소통상의 불편, 응답요령의 불충분 등으로 調査에 불명확한 점이 있었음을 附記하고 있다. 報告書 分量 菊版 144頁(1907년).

(4) “韓國에서의 土地에 관한 權利一班”

이는 補佐官 中山成太郎이 南韓 地方을 出張調査하여 펴낸 것으로서, 韓國人의 權利觀念, 土地觀念, 土地에 관한 權利, 土地所有權의 限界·取得 및 喪失, 地上權, 地役權, 債權的借地權(賭地, 併作), 土地典當(抵當, 不動產質), 權賣, 文記 등에 대하여 記錄하였다. 報告書 分量 菊版83頁(1907년).

2. 法典調査局의 調査事業

1908년 韓國政府에 의하여 設置된 法典調査局(委員長 韓昌洙)은 民事 商事 分野에서 206개의 調査問項으로 구성된 “慣習調査問題”를 作成하여 京城 外 49개 地域에서 全數調査를, 驪州 外 37개 地域에서 特定調査를 遂行하였다. 이 調査는 대체적으로 日本民法 및 商法の 篇別에 따라 項目 分類를 하였으며 不動產法調査會의 慣習調査를 確認·補充한다는 性격을 띠었다. 調査結果는 韓日合邦 後 朝鮮總督府에서 慣習調査報告書(1910年版 408頁, 1912年版 404頁, 1913年版 404頁)로 刊行되었다.

3.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調査事業

(1) 調査項目

191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活動한 取調局은 朝鮮 各地의 慣習을 調査하고 典籍을 섭렵하며 制度와 慣習의 淵源을 究明하기 위하여 다음의 項目을 중심으로 調査를 進行하였다:

① 土地制度

11. 過失에 관한 정함이 있는가
12. 隔地者間の 意思表示는 어느때부터 그 效力이 생기는가
13. 代理는 어떠한 法律行爲에 대하여 이를 認定하는가
14. 代理人의 行爲는 항상 本人에 대하여 직접 그 效力이 생기는가
15. 代理에는 法定代理·任意代理의 區別이 있는가
16. 代理人의 權限을 明定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 權限의 如何
17. 代理人은 復代理人을 쓸 수 있는가
18. 代理權의 消滅原因 如何
19. 期間의 初日算入 與否
20. 時效를 認定하는지 않는지

第2章 物 權

21. 物權·債權 또는 이에 類似한 權利의 區別이 있는가
22. 土地에 관한 權利의 種類 如何
23. 權利의 設定·移轉에 대하여 특히 一定한 節次를 할 필요가 있는가
24. 소위 即時取得時效 또는 이에 類似한 것이 있는가
25. 土地·建物 등의 所有者는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26. 隣地者間の 權利·義務 如何
27. 無主의 動産은 先占으로 이를 取得할 수 있는가
28. 無主의 動産은 누구의 所有인가
29. 遺失物의 所有者를 알지 못한 때는 그 物件은 누구의 所有인가
30. 埋藏物의 所有者를 알지 못한 때는 그 物件은 누구의 所有인가
31. 共有에 관한 慣習 如何
32. 入會權에 관한 慣習 如何
33. 借地權의 種類 如何
34. 地上權에 관한 慣習 如何
35. 永小作權에 관한 慣習 如何
36. 地役權에 관한 慣習 如何
37. 留置權에 관한 慣習 如何
38. 先取特權에 관한 慣習 如何
39. 質權과 抵當權과의 區別이 있는가
40. 質權 및 抵當權의 目的 如何

16 第2編 基礎調査

41. 質權者는 債權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質物을 占有할 수 있는가
42. 質權者가 辨濟를 받은 때는 質物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만약 質權과 抵當權과의 差異가 있으면 이를 명기할 것
43. 質權의 設定에 관한 慣習 如何
44. 質權者는 轉質을 할 수 있는가
45. 제3자가 債務者를 위하여 質權을 設定할 수 있는가
46. 質權者는 質物의 使用收益을 할 수 있는가
47. 質權에 存續期間이 있는가
48. 土地위에 設定된 質權은 그 위에 있는 建物 및 竹木에 미치지 않는지
49. 同一物에 2개 이상의 質權을 設定할 수 있는가
50. 所有者는 抵當物을 賃貸할 수 있는가

第3章 債權

51. 慣習上 利率이 있는가
52. 重利에 관한 慣習 如何
53. 債務者가 不履行者로 되는 時期 如何
54. 債務者가 任意로 債務를 履行하지 않을 때는 強制로 이를 履行시킬 수 있는가
55. 債務者는 期限의 利益을 喪失하는 것이 있는가
56. 金錢債務不履行의 制裁 如何
57. 債務不履行의 制裁에 관하여 特約을 할 수 있는가
58. 債權者는 債務者의 權利를 代行할 수 있는가
59. 債權者는 債務者의 行爲를 取消할 수 있는가
60. 債權者 또는 債務者가 數人인 있는 경우에는 各自의 權利·義務 如何
61. 不可分債務에 관한 慣習 如何
62. 連帶債務에 관한 慣習 如何
63. 保證人의 責任 如何
64. 保證人이 2人 이상 있는 경우에 各自의 責任 如何
65. 債權者와 主債務者의 行爲는 그 效力을 保證人에게 미치지 않는지
66. 保證人이 辨濟를 한 때에는 主債務者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67. 保證人이 數人인 있는 경우에 그 1人이 全額의 辨濟를 한 때는 다른

- 保證人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68. 債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는가
 69. 제3자를 위한 辨濟는 有效한가
 70. 受取證書의 所持人에게 한 辨濟는 有效한가
 71. 辨濟의 場所에 관한 慣習 如何
 72. 債務者가 辨濟를 한 때는 債權者에 대하여 受取證書를 請求할 權利가 있는가
 73. 債務者가 辨濟를 한 때는 債權證書의 返還을 받을 權利가 있는가
 74. 債權者가 辨濟를 받는 것을 拒絶한 때는 債務者는 어떻게 하는가
 75. 保證人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辨濟를 한 사람은 債權者의 權利를 代行할 수 있는가
 76. 相計에 관한 慣習 如何
 77. 更改에 관한 慣習 如何
 78. 辨濟에 관한 慣習 如何
 79. 契約의 請約은 이를 取消할 수 있는가
 80. 雙務契約 當事者의 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의 移行을 提供할 때까지 自己의 債務移行을 拒絶할 수 있는가
 81. 危險問題에 관한 慣習 如何
 82. 第3者를 위한 契約의 效力認定
 83. 契約當事者의 一方이 그 債務를 履行하지 않는 때는 相對方은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가
 84. 贈與에 관한 慣習 如何
 85. 手附(契約金)에 관한 慣習 如何
 86. 賣買의 費用은 누가 이를 負擔하는가
 87. 他人의 物(件)의 賣買에 관한 慣習 如何
 88. 賣買의 目的物 위에 他人이 權利를 가짐으로써 買受人이 損害를 받는 때는 如何
 89. 賣買의 目的物에 숨은 瑕疵가 있는 때는 어떻게 하는지의 如何
 90. 賣買의 目的物의 果實은 누구의 所得으로 돌아가는가
 91. 買受人은 代價의 利子を 支拂하여야 하는가
 92. 買戻에 관한 慣習 如何

93. 交換에 관한 慣習 如何
94. 消費貸借에 관한 慣習 如何
95. 使用貸借에 관한 慣習 如何
96. 賃貸借에 관한 慣習 如何
97. 雇傭에 관한 慣習 如何
98. 請負에 관한 慣習 如何
99. 委任에 관한 慣習 如何
100. 寄託에 관한 慣習 如何
101. 組合에 관한 慣習 如何
102. 事務管理에 관한 慣習 如何
103. 不當利得에 관한 慣習 如何
104. 不法行爲에 관한 慣習 如何

第4章 親族

105. 親族의 範圍 如何
106. 親等の 計算法 如何
107. 養子 養親 및 기타 血族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親族關係가 생기는가
108. 繼親者와 嫡母庶子の 關係 如何
109. 親族關係 및 前2項의 關係는 어느때에 끝나는가
110. 家族의 範圍 如何
111. 子が 들어갈 家 如何
112. 入夫婚姻을 認定하는가
113. 轉籍을 許容하는가
114. 婚姻 또는 養子緣組로 他家에 들어간 者에게 離婚 또는 離緣이 있는 경우에 實家로의 復籍할 수 있는가
115. 婚姻 또는 養子緣組로 他家에 들어간 者는 다시 婚姻 또는 養子緣組로 他家에 들어갈 수 있는가
116. 他家 相續·分家 및 廢絶家再興에 관한 慣習 如何
117. 法定推定の 家督相續人은 他家에 들어가거나 一家를 創立할 수 있는가
118. 夫가 他家에 들어가거나 一家를 創立한 때는 妻는 이에 따라서 그 家에 들어가는지 않는지

119. 戶主 및 家族은 同一한 氏(姓)를 稱하는가
120. 戶主는 家族을 扶養할 義務가 있는가
121. 家族의 特有財産을 認定하는가
122. 戶主는 家族의 居所를 指定할 수 있는가
123. 家族이 婚姻 또는 養子緣組를 하는데 戶主의 同意를 要하는가
124. 戶主는 家族에 대하여 前2項 이외의 權利를 갖는가
125. 戶主는 家族을 移籍시킬 수 있는가
126. 戶主가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없는 때의 如何
127. 隱居를 認定하는가
128. 廢家를 認定하는가
129. 絶家に 관한 慣習 如何
130. 婚姻의 要件 如何
131. 妻는 婚姻으로 夫의 家에 들어가는가
132. 夫는 妻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133. 夫婦間의 財産關係 如何
134. 離婚에 관한 慣習 如何
135. 妻가 婚姻中에 孕胎한 子는 이를 夫의 子로 推定하는지 않는지
136. 私生子에 관한 慣習 如何
137. 養子緣組의 要件 如何
138. 養子緣組의 效力 如何
139. 養子の 離緣에 관한 慣習 如何
140. 親權을 認定하는가
141. 親權者는 子에 대하여 어떠한 權利를 갖는가
142. 親權者는 子の 財産을 管理하는지 않는지
143. 親權에 따르는 女子에게 夫가 있는 경우에 그 權利와 親權과의 調和 如何
144. 親權者는 子에 같음하여 戶主權 및 親權을 行使할 수 있는가
145. 親權喪失의 原因 如何
146. 後見 또는 이에 類似한 制度를 認定하는가
147. 누가 後見人이 되는가
148. 後見人은 1人에 한하는가

149. 後見人は 그 任務를 辭任할 수 있는가
150. 後見인이 될 수 있는 者は 누구인가
151. 後見監督人 또는 이에 類似한 者를 둘 수 있는가
152. 後見人は 財産目錄을 작성할 義務가 있는가
153. 後見人は 親權者와 동일한 權利를 갖는가
154. 後見人は 報酬를 받을 수 있는가
155. 後見의 計算에 관한 慣習 如何
156. 親族會 또는 이에 類似한 것을 認定하는가
157. 扶養의 義務에 관한 慣習 如何

第5章 相續

158. 家督相續開始의 原因 如何
159. 家督相續인이 될 수 있는 者は 누구인가
160. 法定推定 家督相續人は 누구인가
161. 養子は 相續에 대하여 實子와 동일한 權利를 갖는가
162. 法定推定 家督相續人は 被相續人에 있어서 이를 排除할 수 있는가
163. 被相續人は 家督相續人을 指定할 수 있는가
164. 法定推定 家督相續人 및 指定家督相續人이 없는 때의 如何
165. 直系尊屬은 당연히 家督相續人이 될 수 있는가
166. 家督相續의 效力 如何
167. 遺産相續을 認定하는가
168. 누가 遺産相續人이 될 수 있는가
169. 遺産相續人は 被相續人의 모든 財産上의 權利義務를 承繼하는가
170. 遺産相續人이 2人 이상 있는 때는 相續財産은 그 共有에 속하는가
171. 遺産相續人이 2人 이상 있는 때는 그 各自의 相續分 如何
172. 遺産分割의 方法 如何
173. 相續人は 相續을 받을 義務가 있는가
174. 相續債權者 또는 相續人의 債權者는 相續으로 생긴 損失을 피할 수 있는가
175. 相續人이 不明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176. 遺言으로써는 어떤 것을 정할 수 있는가
177. 遺言에는 일정한 方式이 있는가

- 178. 遺言의 效力 如何
- 179. 遺言은 이를 取消할 수 있는가
- 180. 遺留分을 認定하는가

第2篇 商法

第1章 總則

- 181. 商號에 관한 慣習 如何
- 182. 商業帳簿에 관한 慣習 如何
- 183. 商業使用人에 관한 慣習 如何
- 184. 代理商에 관한 慣習 如何

第2章 會社

- 185. 會社에 관한 慣習 如何

第3章 商行爲

- 186. 商人이 契約의 申請을 받고 바로 諾否의 通知를 발하지 아니한 경우 承諾을 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는가
- 187. 商人이 金錢의 貸借 또는 立替를 한 경우에 있어서 利子를 請求할 權利가 있는가

- 188. 相互計算에 관한 慣習 如何
- 189. 匿名組合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190. 仲立營業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191. 問屋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192. 運送取扱人에 관한 慣習 如何
- 193. 物品運送에 관한 慣習 如何
- 194. 旅客運送에 관한 慣習 如何
- 195. 寄託物에 관한 慣習 如何
- 196. 倉庫營業에 관한 慣習 如何

第4章 어음

- 197. 어음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第5章 海商

- 198. 船舶의 登記 및 國籍證書가 있는가
- 199. 船舶所有者의 責任 如何

- 200. 船舶의 共有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201. 船舶의 賃貸借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202. 船長에 관한 慣習 如何
- 203. 海員에 관한 慣習 如何
- 204. 海運에 관한 慣習 如何
- 205. 海損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 206. 船舶債權者에 관한 慣習이 있는가

4.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調査事業

1912년 4월 종래 取調局의 事務를 移管받은 參事官室은 모든 分野에 걸친 廣域全數調査 대신에 特定事項을 중심으로 한 順次的인 調査方針을 세우고 調査事業을 推進하였다. 事業概要는 다음과 같다

1) 調査準備

參事官室은 法制調査細目 및 慣習調査細目を 作成하여 調査問題綱目(全57項 247問) 및 調査地域(48個所)을 設定하여 調査에 着手하였고 豫定地域을 調査한 후 다른 地域을 調査할 필요가 있을 경우 追加調査를 하도록 計劃하였다.

2) 調査範圍

朝鮮民事令(制令 第7號, 1912年 3月)의 規定에 의하여 慣習의 適用이 認定되는 事項 즉 “能力 및 無能力者의 代理, 親族, 相續(제11조), 不動產에 관한 權利의 種類와 效力 및 그 得喪變更(제12조), 그밖에 公共秩序와 關係 없는 事件(제10조)”에 관한 事項 및 이와 밀접한 關係가 있는 事項³⁾.

3) 調査方法

典籍調査와 實地調査가 並行되었다. 典籍調査에서는 韓國 및 中國의 典籍 중에서 實際의 慣行으로서 法制에 참작할 수 있는 것 또는 法令의 規

3) 日帝下 朝鮮의 法令體制는 朝鮮總督의 命令인 制令으로 日本法令을 依用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民事法分野에서는 朝鮮民事令으로 日本法令(民法, 商法 등 23개 法令)이 朝鮮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위의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朝鮮의 慣習을 法源으로 인정하였다.

定 중 實際의 慣行에 基因하고 있는 것을 拔萃하였으며, 實地調査는 道廳 또는 府·郡廳에 출장가서 調査問題에 대한 慣習에 답할 適當한 자를 選拔하여 慣習과 實例를 採錄하는 方式을 취하였다. 調査書는 部分調査書와 總括調査書로 나누어 編纂하였다. 部分調査書는 法制調査書와 慣習調査書로 구별하고 각 사항에 대하여 法制와 아울러 慣習을 명기하였다. 總括調査書는 部分調査書를 基礎로 記述하였고 대체적으로 日本民法 및 商法の 순서에 따라 編纂하였다.

4) 調査經過

1912년에는 韓國 및 中國의 儀禮와 法制에 관한 典籍을 섭렵·발취하는 事業에 착수하였다. 이는 韓國에서 親族·相續 등에 관한 慣習이 儒家의 禮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많아 이 관계를 규명하지 아니하면 慣習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實地調査에 있어서는 京城 이외에 道廳 所在地 12個所와 기타 地點 12個所에 대하여 能力·親族·相續·遺言에 관한 대략을 調査하였다. 1913년에는 前年度에 마치지 못한 能力·親族·相續·遺言에 관한 事項의 調査를 終了하고, 物權·債權 기타의 事項에 관한 調査에 착수하였다(實地調査 項目: 能力 이외 28 건). 典籍調査事業에 있어서는 韓國, 中國 및 日本의 典籍의 草錄을 作成하고 資料가 준비되는 대로 報告書를 編纂하기 위한 計劃의 樹立에 着手하였다.

1914년에는 未完事項에 대한 補充調査를 進行하고 實地調査의 結果에 典籍 중의 資料를 첨가하여 總括報告書를 編纂하기로 하였다. 또한 民事 이외의 制度와 舊慣을 調査하고 순차적으로 報告書를 作成하여 向後 2년 내지 3년 내에 모두 終了하기로 하였다. 典籍調査는 分財에 관한 事項 외 11項을 對象으로 정하였다.

5) 調査結果

參事官室에서 調査한 調査報告書는 實地調査, 즉 출장조사에 의한 報告書가 123冊이고, 典籍調査에 의하여 발취한 調査資料가 83冊이라고 한다. 특히 朝鮮王朝實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法典, 親族, 相續, 遺言, 戶口, 錢幣, 號牌, 奴婢, 良役, 諸田, 貢賦, 稅制, 冠婚喪祭 등에 관하여 要綱을 발취하고 事項索引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資料들이 거의 파악되지 아니하여 調査內譯을 알 수 없다. 調査가 完了되지 아

니한 채 1915년 中樞院으로 移管되었기 때문에 상기의 숫자만큼 資料가 실제 刊行되었는지, 内部資料로만 整理하여 두었는지 의문이다.

5. 中樞院의 調査事業

中樞院은 첫째 私法에 관한 慣習의 調査를 完結하여 이를 編纂하고, 둘째 전래의 制度를 광범위하게 調査하며, 셋째 行政上 및 一般에 참고하여야 할 風俗慣習을 調査編成할 것 등을 調査方針으로 設定하였다. 이에 따라 1915년에 舊慣調査의 關聯事業으로서 朝鮮半島史의 編纂에 착수하였고, 다음해 그 附帶事業으로서 朝鮮人名彙考의 編纂에 착수하였다. 1918년에는 舊慣審査委員會를 設置하고 다음 해 朝鮮社會事情調査를 개시하였다. 1920년에는 朝鮮地誌의 編纂에 착수하였으며 1921년에는 部落調査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舊慣 및 制度調査委員會가 設置되었다. 初期 中樞院은 參事官室의 調査方針을 答습하였지만, 1921년부터는 調査分野를 民事慣習, 商事慣習, 制度 및 風俗으로 나누어 調査를續行하였다.

(1) 民事慣習調査

1) 前期의 調査活動

① 1915년 實績

㉞ 典籍調査

㉞ 驛屯土 및 各宮庄土에 관한 事項 의 17個項

㉞ 實錄중 法典 의 12個項

㉞ 實地調査

㉞ 特別事項調査：陝川 의 12地方

㉞ 物權·債權 기타 調査：江原道 및 咸鏡北道 관내출장

② 1916년 實績：前年調査 續行

③ 1917년 實績

㉞ 典籍調査：養子·立後에 관한 事項 의 22個項

㉞ 實地調査：豫算減額, 補充調査만 實施

④ 1918년 實績：舊慣審査委員會 設置

⑤ 1919년 實績：典籍調査 179件

⑥ 1920년

計 劃

實 績

各道마다 3~4개의 調査區 設定, 順
次的 實地調査, 從來 調査報告書 整
理, 各 地方慣習의 異同 比較

資料編纂, 補充的 實地調査

[編纂 및 整理 內譯]

調査報告書 編纂 終了部分:

土地所有權의 沿革, 典當權, 小作權, 保證債務, 客主, 能力(法人을 除外
함)

資料整理 終了部分:

地上權, 地役權, 入會權, 留置權, 先取特權, 連帶債務, 債務의 讓渡, 賣買,
家, 親族의 名稱, 親族의 範圍, 親等, 親族關係의 發生 및 消滅, 婚姻(年
齡, 種類, 制限), 親子, 親族會, 扶養義務, 相續, 居間, 委託, 仲介, 手形,
運送, 海商.

2) 後期의 調査活動

중추원은 1923년 종래 參事官室의 調査方針을 變更하여 새로이 民事慣
習調査 項目을 編成하였다. 이는 日本民法을 토대로 韓國에서의 特種事項
을 참작하여 立案한 것이었다. 調査項目의 內역은 다음과 같다.

第1章 私權의 主體

1. 人
2. 人 이외의 權利의 主體

第2章 私權의 客體

3. 物

第3章 私權의 得喪變更

4. 法律行爲
5. 期間
6. 時效

第4章 物權

7. 所有權
8. 地役權
9. 入會權
10. 留置權
11. 先取特權

12. 典當權

13. 永小作 類似의 特種小作

第5章 債 權

14. 總說

15. 債權의 目的

16. 債權의 效力

17. 債權의 保全

18. 多數當事者의 債權 및 債務

19. 債權의 讓渡

20. 債權引受

21. 債權의 消滅

22. 契約

第6章 親 族

23. 親族의 名稱

24. 親族의 種類

25. 親族의 範圍

26. 親族의 親等

27. 親族關係의 發生 및 消滅

28. 家

29. 姓名 및 本貫

30. 約 婚

31. 離 婚

32. 變體婚姻

33. 親 子

34. 後 見

35. 扶養義務

36. 親族會

第7章 相 續

37. 總 說

38. 祭祀相續

39. 財產相續

- 40. 戶主相續
- 41. 相續의 承認 및 拋棄
- 42. 相續財産의 分離
- 43. 相續人의 曠缺
- 44. 遺留分

第8章 遺言

- 45. 總說
- 46. 遺言의 方式
- 47. 遺言의 效力
- 48. 遺言의 執行
- 49. 遺言의 無效 및 取消

[調査經過]

- ① 1923년 實績：資料不足，調査報告書 記述中止，重要記錄資料收集，完備된 것부터 記述：行爲，能力 이외 61件 脫稿.
- ② 1924년 實績：前年繼續
- ③ 1925년 實績：前年繼續
- ④ 1926년 實績：實錄調査拔萃，朝鮮學者 禮法書 分析，親族相續 資料蒐集·整理
- ⑤ 1927년 實績：平安北道 및 慶尙北道 管內 7個郡 出張調査，朝鮮朝 이전 典籍 資料蒐集
- ⑥ 1928년：典籍調査 및 記述
 - ㉗ 京城에 있어서의 外國人 雜居의 沿革
 - ㉘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의 土地所有權에 관한 沿革 및 現行法令과의 連絡
 - ㉙ 廢寺財産의 歸屬
 - ㉚ 婚姻의 要件

⑦ 1930년 計 劃

實 績

民事慣習調査報告書 記述期間設定

朝鮮의 小作慣習 編纂

— 親族：1930.8—1934.7

— 囑託善生永助編纂

— 相續：1934.8—1936.1

— 1929년간：菊版 256頁

— 物權：1936.2—1937.12

— 1930년간：菊版 189頁

28 第2編 基礎調査

— 債權：1938.1—1941.11 小作에 관한 慣習調査書 編

— 總則：1941.12—1942.12

⑧ 1932년 實績：새로운 事務進行計劃 樹立

㉞ 親族에 관한 事項：1934년 4월 記述着手, 1935년 12월 完了, 6월 印刷(1500頁)

㉟ 相續에 관한 事項：1933년 1월 記述着手, 1934년 12월 完了, 1935년 6월 印刷(1000頁)

㊱ 物權에 관한 事項：1936년 7월 記述着手 1937년 6월 完了, 1937년 12월 印刷(500頁)

⑨ 1933년

計 劃

實 績

編纂 및 出版計劃 變更：

民事慣習回答彙集 刊行

— 日本民法이 適用되는 事項에 관하여는 調査中止, 현재 慣習法으로서 適用되는 事項에 대하여서만 調査. 이를 위해 高等法院判事 2名을 委囑

— 1933년 12월 刊行：菊版 700頁

— 親族編：1934년 菊版 700頁
1935년 菊版 800頁

— 相續編：1936년 菊版 600頁

— 物權編：1937년 菊版 500頁

— 債權編：1938년 菊版 600頁

— 相續編：1939년 菊版 300頁

⑩ 1936년 實績：1933년 編纂計劃分 脫稿

㉞ 土地所有權의 沿革 및 現行法令과의 關係

㉟ 契(組合)

㊱ 戶 籍

㊲ 姓名 및 貫鄉

㊳ 婚姻의 要件：朝鮮에 있어서 財産相續에 관한 調査書：李朝의 財産相續法 刊行

㊴ 高等法院 喜頭兵一判事 執筆

㉔ 菊版500頁

3) 民事慣習에 관한 各種調査書

① 小作에 관한 慣習調査書 : 이는 典籍에 次중하여 概括的으로 記述한 民事慣習調査書의 일부이다 : 總督府 參事官室 및 中추원의 職員들이 出張 蒐集한 資料를 토대로 1918년~1919년 舊慣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中추원 囑託 渡邊業志에 의하여 總說, 小作의 沿革과 種類, 普通小作, 特種小作으로 나뉘어 編纂된 것이다(1930년). 이보다 앞서 中추원 囑託 善生永助에 의하여 朝鮮의 小作慣習(1929년)이 編纂되었는 바, 그 目次는 다음과 같다

第1章 總說

1. 耕地面積
2. 農家戶口
3. 農家經濟
4. 小作爭議

第2章 小作의 種類

5. 小作制度의 沿革
6. 普通의 小作方法
7. 特殊한 小作方法

第3章 小作契約

8. 契約의 締結
9. 小作의 期限
10. 小作地에 대한 制限
11. 契約의 解除

第4章 小作料

12. 小作料의 種類
13. 小作料의 納入
14. 小作料
15. 小作地의 負擔

第5章 小作地의 管理

16. 管理人의 種類
17. 管理人의 報酬·權限

18. 舍音의 弊害

結 論

② 民事慣習回答彙集 : 이는 1909년부터 1933년까지 法院 기타의 官廳이 朝鮮總督府 取調局, 參事官室, 中추원 등에 대하여 朝鮮의 慣習에 관하여 조회한 事項(324件)을 高等法院의 野村調太郎·喜頭兵一 判事에게 囑하여 編纂하게한 것이다. 要旨索引體系는 다음과 같다

[民 法]

第1篇 總 則

1. 人 : 能力
2. 法 人
3. 物
4. 法律行爲
5. 時效 : 取得時效

第2篇 物 權

6. 總 則
7. 占有權
8. 所有權 : 所有權의 限界, 所有權의 取得·共有
9. 地上權
10. 永小作權
11. 地役權
12. 質 權
13. 抵當權

第3篇 債 權

14. 債權의 目的
15. 多數當事者의 債權 : 保證債務
16. 債權의 讓渡
17. 契約 : 賣買·消費貸借·賃貸借·委任·組合

第4篇 親 族

18. 總 則
19. 戶主 및 家族 : 戶主 및 家族의 權利義務·戶主權의 喪失
20. 婚姻 : 婚姻의 要件 婚姻의 成立 婚姻의 效力.

21. 離婚：協議上 離婚・裁判上 離婚
22. 親子：嫡出子・庶子 및 私生子
23. 養子：緣組의 要件・緣組의 無效 및 取消・緣組의 效力・離緣
24. 親權：總則 親權의 效力・親權의 喪失
25. 後見：後見의 機關・後見의 事務
26. 親族會
27. 扶養의 義務

第5篇 相續

28. 家督(祭祀)相續：總則・家督(祭祀)相續人・家督(祭祀)相續의 效力
29. 遺產(財産)相續：相續開始・相續人・相續의 效力
30. 相續의 承認 및 拋棄
31. 相續人의 曠缺
32. 遺言

[商法]

第1篇 總則

1. 商業帳簿
2. 商業使用人

第2篇 商行為

3. 相互計算
4. 仲立
5. 問屋

第3篇 어음

第4篇 海商・海損

[雜]

1. 國籍
2. 官公有地
3. 里洞有財産
4. 契
5. 賜牌地
6. 狀・못막이
7. 寺院・僧侶・祠宇

8. 喪 祭
9. 宗中·門中·約所
10. 墳墓·位土
11. 破 產

(2) 商事慣習調查

商事慣習은 종래 民事慣習과 함께 舊慣調查의 명목 아래 포괄적으로 調查되었지만, 1923년부터 이를 바꾸어 民事, 制度, 風俗과 같이 별도의 調查項目을 編成하여 이를 調查하게 되었다. 그러나 民事慣習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아니하였다. 調查項目은 대체적으로 日本商法の 편별을 모방하고 한국특유의 項目은 節 아래 設定하였다.

1) 調查項目

第1章 商業團體

1. 六矣塵
2. 襟負商
3. 各塵都中
4. 市 場

第2章 商 人

5. 商人的 種類
6. 營業所
7. 商業帳簿

第3章 商業使用人

8. 使用人的 種類
9. 使用人的 權利義務

第4章 代理商

第5章 會社(合股)

第6章 商行爲

10. 賣 買
11. 相互計算
12. 同 事
13. 仲立營業
14. 問屋營業

15. 運送營業

16. 倉庫營業

第7章 手形

17. 어음

18. 換簡

第8章 海商

19. 船舶 및 船舶所有者

20. 船員

21. 水上運送

22. 海損

23. 海難救助

2) 調査經過

1923년말 調査項目 내에 商業의 主體 및 補助, 商業帳簿, 각종 商行爲 및 어음에 관한 조사를 終了하였고 1925년말에는 客主 및 旅閣, 居間 및 家儉, 어음 및 換簡, 同事, 商業帳簿, 商業使用人, 相互計算, 倉庫營業 등에 대하여 報告書의 編纂에 착수하였다. 1928년에는 細部事項에 관한 補充調査에 착수하였다. 1931년말에 이르러서는 調査에 完벽을 기하는데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朝鮮民事令(1912년 제정) 施行 후 이 令의 規定에 의해 民法 기타 日本法律의 適用이 점차 확대됨으로⁴⁾ 인하여 商事分野에서의 慣習法의 適用이 거의 희박하게 되어 1932년부터 商事慣習의 調査를 中止하였다. 당시까지의 調査事項은 다음과 같다:

商業使用人·同事·相互計算·객주 및 여각·어음·거간 및 가괘·裸負商·契·旅客運送·會社·船舶·商行爲·商人의 金錢貸借 또는 立替·代理商·관심·倉庫·寄託物 및 令市·流來朝鮮息法·商人種類·典當舖·白木塵 및 布塵·立議諺譯·六矣塵·市幣.

4) 日本法令의 적용이 확대되는 경로는 직접적으로 朝鮮民事令을 改正하거나 간접적으로 朝鮮의 慣習을 부정하는 것이다. 朝鮮民事令 第11條는 1921년, 1922년, 1939년 3차례 改正되었는데 39년의 改正은 同化政策에 입각한 것으로 韓國家族制度의 根底를 파괴하였다. 후자는 실제의 裁判過程에서 慣習을 否認·歪曲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祭祀相續의 法的性格과 特殊小作의 物權性을 부인한 것이다. 앞으로 朝鮮高等法院의 判例의 分析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制度調查

制度調查는 1923년 이전에 있어서는 일정한 系統을 세우지 아니하였고, 舊慣調查의 일환으로서 임시 필요한 사항을 택하여 調查를 하게되었다. 이 調查는 合併前의 舊制度를 규명함을 目的으로 하였다. 그 調查方法은 典籍調查를 주로하였고 實地調查를 補充的으로 하였다. 制度調查와 關聯하여 여러 資料들이 많이 刊行되었는데, 주요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924년 編成項目)

第1篇 國 制

國號·疆域·人民·政治·年號·曆時·璽寶(玉璽)·國旗

第2篇 王 室

王位·代理·王族·冊封·宮闕·宗廟·社稷·園丘·殿·宮·廟·陵·園·墓·內帑

第3篇 區 域

京城·四都·各道·各邑·坊面·洞里

第4篇 官 職

議政府·外官職

第5篇 官 員

官員·任免·科擧·取才·祿科·考課·褒貶·贈職·錄勳·越錄·解由·拘碍·給暇·相避

第6篇 內 務

階級·戶籍·號牌·土地·產業·治水·土木·交通·通信·教化·宗教·寺刹·禮樂·觀象·警察·衛生·貨幣·度量衡·旌表(忠孝節烈)·救恤

第7篇 外 交

朝聘·交聘

第8篇 軍 制

兵備·兵政·馬政

第9篇 裁 判

詞訟·詞訟節次·刑獄·刑獄節次·刑事裁判의 執行·刑律·獄 및 刑具·赦賜死·軍律

第10篇 財 務

經費·輸入·稅率 및 徵收·會計·王室會計

第11篇 地方自治

鄉廳·鄉會·鄉約·里契·社倉·作統·民堡

(4) 風俗調査

1915년 中樞院에 舊慣調査事務가 移管된 때부터 1921년까지 風俗調査는 단순히 民事·商事制度의 參考事項으로서 調査되는데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1921년에 이르러 별도의 새로운 計劃을 樹立하여 舊慣·制度 이외에 風俗調査를 獨立시켰다. 風俗調査는 現在와 過去에 걸쳐 그 沿革變遷을 究明함을 目的으로 하지만 시간관계상 현재의 것을 먼저 調査하고 과거의 것을 뒤에 하기로 하였다. 調査方法은 調査項目의 順序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事項부터 먼저 調査하여 완료된 것들을 部分的으로 編纂, 印刷하기로 하였다. 刊行된 資料로서는 朝鮮의 姓名氏族에 관한 調査研究(1934年刊, 菊版 491頁), 朝鮮風俗資料集說(1937年刊, 菊版 496頁),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1939年刊, 菊版 914頁), 高麗以前的 風俗關係資料撮要(1940年刊, 菊版919頁), 李朝各種文獻 風俗關係資料撮要(1942年刊, 2028頁) 등이 있다. 風俗調査를 위해 1921년 中樞院에서 編成하였던 調査項目은 다음과 같다

1) 風俗調査項目

第1章 服裝

普通人·王家·王族·王室·親王·駙馬·官員·吏役·唱榜·將卒·宮女·下隸·僧尼·舞·襍負商·四禮의 服裝, 笠冠, 靴鞋, 男女의 結髮 및 化粧

第2章 飲食

食物·飲料·器皿

第3章 住居

家屋의 種類·家屋의 制度 및 制限·家屋의 構造 및 名稱·宮殿·公廡·廟詞·寺刹 및 堂宇

第4章 車·輿·船

第5章 出生

妊婦 및 新生兒의 衛生·出産의 準備 및 新生兒의 調護·出生의 儀式 및 命名

第6章 冠婚喪祭

冠禮·笄禮·婚禮·喪禮·墳墓·祭禮

第7章 禮 俗

普通人的 禮式 · 王家的 禮式

第8章 職 業

農業 · 商業 · 工業 · 公務 및 雜業

第9章 學 問

學校 · 科第

第10章 俚 言

第11章 儀 禮

家庭的 儀禮 · 一般의 儀禮

第12章 家庭的 日常

男子의 日常 · 女子의 日常

第13章 宗 教

佛教 · 儒教

第14章 迷 信

第15章 節 行

忠 · 孝 · 烈

第16章 醫 藥

第17章 美 術

第18章 樂 · 歌 · 舞

第19章 娛樂 및 遊戲

第20章 族 譜

第21章 農業 및 漁業

第22章 巫卜 및 術客

第23章 姓 · 名 · 貫

第24章 年中行事 : 1月行事 ~ 12月行事

第25章 雜

厄日 · 傳說 · 童謠 · 各地產物 기타의 野談

2) 風俗調査의 附屬事業

1919년부터 社會學者 村山智順은 囑託事業의 일환으로 朝鮮社會事情研究에 着手하였다. 이와 關聯된 調査事業은 減員으로 인하여 終了되지 못하였지만 基礎調査(土地 · 生物 · 人種 · 外關)와 社會生活(協同生活 · 經濟

生活・思想生活・日常生活・衛生・治罪) 및 社會問題로 나뉘어 部分的으로 實施되었다.

1921년부터는 施政의 參考資料로 使用하기 위하여 早稻田大學 小田內通敏 教授를 主任으로 하여 風俗調査의 附屬事業으로서 部落調査가 實施되었다. 그리하여 各道에 걸쳐 1개씩의 部落을 選定하고 豫備調査가 實施되기도 하였으나 1924년말에 中斷되었다. 調査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部落의 沿革
- ② 部落의 制度
- ③ 部落의 社會狀態
- ④ 部落의 經濟狀態
- ⑤ 風俗과 習慣
- ⑥ 民家の 構造
- ⑦ 自然地境
- ⑧ 産業狀態

(5) 舊慣調査關聯資料編纂

中樞院은 舊慣調査의 傍系事業으로서 朝鮮史 및 人文地理 등의 分野에 관한 編纂事業을 推進하여 朝鮮人名辭書(1937年, 菊版2460餘頁), 各道 邑의 地理誌 등을 刊行하였다. 地誌는 東國輿地勝覽을 基本으로 하고 이에 새로운 資料를 追加한다는 方針 아래 다음의 項目들을 編成基準으로 設定하였다(1923年).

總說(地勢 기타) 地圖

第1章 山川：山岳・河川・湖沼堤堰

第2章 沿革

第3章 行政區劃

第4章 官制

第5章 交通 및 通信：道路・古驛・汽車・通信

第6章 經濟 및 産業：農業・耕地整理・水利組合・畜産・林業・鑛業

第7章 官署

第8章 學校 및 書堂

第9章 宗教

第10章 姓氏人物

第11章 古蹟：城郭・烽燧・寺刹・廟壇祠・墳墓・碑石・窯址

第12章 名稱 및 天然物：名勝・動物・植物巨樹石木・鑛泉

II. 評價 및 活用方案

植民地時代 日本人들이 推進하였던 慣習調査는 당시 朝鮮에서 施行할 民法典을 編纂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確保한다는 정책적인 目的 아래 出發하였지만, 推進機構의 잦은 變更과 豫算不足으로 計劃만큼 實績을 올리지 是 못하였다. 또한 民事와 商事慣習의 調査項目을 設定함에 있어서 당시 日本의 實定法律에 지나치게 依存함으로써 鄉村社會 또는 地域團體內部的 살아 있는 法秩序를 探究하는데 源泉적인 限界를 露呈시켰고, 植民地支配를 위한 統治法制의 確立이라는 目的에 쫓겼기 때문에 일부의 慣習이 歪曲되었다던지, 本格的인 現地調査를 遂行하지 아니하고 探問調査方式을 주로 이용하였다던지 하는 등의 문제를 남겼다.

그러나 中樞院時代부터 調査體制를 일신하여 慣習 뿐만 아니라 制度와 風俗, 나아가 人文地理一般까지 調査함으로써 나름대로 總體的인 接近을 試圖하였다고 評價할 수 있다. 따라서 韓國 中世 및 近代의 社會·經濟的 資料가 현저히 부족하고 現代化와 더불어 전래의 慣習資料가 대부분 消失된 現시점에서 우리의 慣習法 體系를 復原함에 있어서 이러한 植民地時代의 調査資料는 매우 귀중한 第2次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 즉 調査範圍, 調査項目, 調査地域의 選定 및 關聯調査 등에 있어서 이들 資料를 토대로 하고 추후 體系的인 理論研究에 있어서 이를 批判的으로 檢討·分析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植民地時代의 調査研究資料가 計劃에 相應하는 實績을 올리지 못한 채 終了되어 상당수의 調査資料들이 一次蒐集狀態의 資料 묶음으로 또는 草稿狀態의 冊으로 전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우리에게 얼마나 承繼保存되어 있는지 明確하게 파악되지 아니하여 이의 體系的인 蒐集·整理 및 翻譯이 未完의 課題로 남아 있다.

第 2 節 調査對象選定을 위한 基礎資料明細

1. 傳來部落

현재는 傳統的인 意味에서의 同族이 상당히 疎散되었고 同族間의 紐帶도 현저히 緩和되고 있지만, 住民들 간의 紐帶가 密接하고 傳統秩序가 비교적 잘 保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同族部落은 慣習法調査研究의 對象으로서 適格이다. 이하에서는 解放前의 同族部落의 分布와 特色을 整理하여 向後의 現地調査對象地域을 選定하는데 活用하고자 한다.

(1) 同族部落의 分布³⁾

1) 有名同族部落

[京畿道]

高陽郡 漢芝面의 漢江沿岸에 발전된 金海 金氏·全州 李氏·密陽 朴氏 諸部落

[忠清北道]

報恩郡 報恩面 鍾谷里의 慶州 金氏 部落

[忠清南道]

燕岐郡 南面 陽化里의 扶安 林氏 部落

[全羅北道]

全州郡 鳳東面 新城里 九萬里의 全州 李氏 部落

淳昌郡 東溪面 龜尾里의 南原 楊氏 部落

井邑郡 古阜面 古阜·南風·長文里의 幸州 殷氏 部落

[全羅南道]

高興郡 高興面 虎東里의 高興 柳氏 部落

高興郡 東江面 大江里의 礪山 宋氏 部落

咸平郡 月也面 月也里의 晉州 鄭氏 部落

珍島郡 義新面 七田里의 密陽 朴氏 部落

3) 이에 관한 정리는 朝鮮總督府 囑託 善生永助에 의하여 수행된 생활상태조사의 일 부로 편찬된 朝鮮의 聚落 後篇(朝鮮總督府, 1935年, 994頁, 寫眞別添) 459~490頁에 의거.

〔慶尙北道〕

達城郡 城北面 山格洞의 達城 徐氏 部落

迎日郡 杞溪面 懸內里의 月城 李氏 部落

聞慶郡 永順面 栗谷里의 缶林 洪氏 部落

聞慶郡 山北面의 長水 黃氏·潘南 朴氏·宜城 金氏·安東 權氏·
安東 金氏·全州 李氏 諸部落

安東郡 豐南面 河回洞의 豐山 柳氏 部落

〔慶尙南道〕

晋州郡 智水面 勝內里 金海 許氏 部落

晋州郡 大谷面 丹牧里의 晋陽 河氏 部落

〔黃海道〕

延白郡 花城面 松川里의 順興 安氏 및 山田里의 商山 金氏 部落

金川郡 外柳面 文修里의 全州 柳氏 部落

〔平安南道〕

平原郡 東松面 君子里 및 月峰里의 延安 車氏 部落

安州郡 新安州面 東七里 및 雲松里의 順興 安氏 部落

〔平安北道〕

寧邊郡 獨山面 龍興洞의 延安 車氏 部落

定州郡 古邑面 新里의 全州 李氏 部落

宣川郡 南面 三峰洞 및 建山洞의 竹山 朴氏 部落

龍川郡 府羅面 松峴洞·栢峴洞·德岩洞·德川洞의 安東 金氏 部落

龍川郡 北中面 長山의 仁同 張氏 部落

〔咸鏡南道〕

北青郡 北青面 棠浦里의 慶州 金氏 部落

〔咸鏡北道〕

城津郡 鶴東面 荷川洞 長興 馬氏 部落

2) 大單位 有名同族部落

卷末附錄 참조

3) 特色있는 同族部落⁴⁾

〔京畿道〕

杏湖村：高陽郡 知道面 幸洲外里

德谷：廣州郡 慶安面 中岱里
 山谷：廣州郡 中部面 上山谷里・東部面 下山谷里
 柵山：楊州郡 伊淡面 保山里(*農事改良組合規約)
 古樂洞：利川郡 麻長面 梨峙里
 上奈川：振威郡 西炭面 奈川里
 希谷：振威郡 浦升面 希谷里
 道日里：振威郡 松炭面 道日里(*松炭面 道日里 共助會 規約)
 芭長洞：水原郡 日荊面 芭長里
 弘法：水原郡 西新面 弘法里
 長芝川：水原郡 東灘面 長芝里
 東村：水原郡 八灘面 舊場里
 大廟洞：江華郡 府內面 月串里
 金陵里：坡州郡 衙洞面 金陵里
 斗溢洞：坡州郡 靑石面 東牌里
 鳳谷洞：開豐郡 上道面 上道里

4) 善生永助, 前掲書 後篇 724~987頁, 참조.

각 부락단위의 규약 또는 회칙 등의 문서 명칭은 괄호안에 표기함. 이 자료는 朝鮮
 總督府 관방문서과장이 각 도지사에게 조회하여 수집 한 자료중 특색이 있다고 판
 단된 부락을 정리한 것으로서 그 세부기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락의 명칭 및 소재지
2. 소재지의 지세 및 지형
3. 부락내의 동족성씨 및 그 호수와 인구
4. 同姓 이외의 호수와 인구
5. 부락민의 주된 직업
6. 부락구성의 연혁
7. 부락의 대자산가의 성명 및 자산
8. 부락민의 지주,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별 호수
9. 宗家の 자산·지위·聲望
10. 종래 부락에서 배출시킨 저명한 인물의 성명·관위 또는 약력
11. 부락의 자치상황
12. 부락의 공동사업 및 組合·講·契의 연혁, 현상, 규약
13. 문중재산 이용법 및 동족구제시설
14. 기타 보통부락에 비하여 특색이 있는 점

陽村里：安城郡 瑞雲面 陽村里

〔忠清北道〕

葛山里：清州郡 琅城面 葛山里

蓮亭：清州郡 江內面 蓮亭里

飛上：清州郡 北一面 飛上里

飛中：清州郡 北一面 飛中里

鐮洞：清州郡 堅都面 鐮洞(*鐮洞保安組合規約施行細則)

鍾谷里：報恩郡 報恩面 鍾谷里

林閑里：報恩郡 炭釜面 林閑里

金谷里：報恩郡 懷南面 金谷里

龍坊里：沃川郡 伊院面 龍坊里

九萬洞：永同郡 楊江面 九江里

玉溪洞：永同郡 深川面 高塘里

陽村：鎮川郡 草坪面 龍亭里

外九里：鎮川郡 文白面 九谷里

龍岩：鎮川郡 栢谷面 石峴里

老院里：鎮川郡 梨月面 老院里

大實：鎮川郡 萬升面 實院里

杏井里：鎮川郡 鎮川面

〔忠清南道〕

松龍里：燕岐郡 東面 松龍里

世居里：燕岐郡 南面 陽化里

宋村：大田郡 懷德面 宋村里

塔山里：大田郡 東面 內塔里

上下鉢：大田郡 杞城面 元亭里

柳村里：扶餘郡 夫餘面 楮石里

長亭里：扶餘郡 場岩面 長蝦里

東谷：扶餘郡 世道面 東寺里

餘土里：青陽郡 飛鳳面 養土里

申菴：唐津郡 松嶽面 佳橋里

道山里：牙山郡 道高面

〔全羅北道〕

皇風里：錦山郡 南一面 皇風里

上下里：茂朱郡 茂豊面 縣內里 區內

魯壇里：長水郡 蟠岩面 魯壇里

新基里：任實郡 屯南面 新基里

內基：南原郡 金池面 宅內里

南山垚：淳昌郡 淳昌面 佳南里

佳里：淳昌郡 淳昌面 佳南里

龜尾：淳昌郡 東溪面 龜尾里

元古阜邑內：井邑郡 古阜面 古阜・南福・長文里

堂上里：扶安郡 東津面 堂上里

晴湖里：扶安郡 下西面 晴湖里

長華里：金堤郡 月村面 長華里

西溪：金堤郡 金溝面 上新里

南內里：沃溝郡 玉山面 南內里

〔全羅南道〕

忠孝里：光州郡 光州面 忠孝里

生龍里：光州郡 牛峙面 生龍里

寺洞里：光州郡 西倉面 西倉里(*忠州朴氏大門中契規例)

洞荷里：光州郡 西倉面 細荷里

雲岩里：光州郡 極樂面 大內里

玄川：求禮郡 內山面 桂川里

松谷里：寶城郡 得糧面 松谷里

道莊里：和順郡 道巖面 道莊里

鶴松：長興郡 安良面 鶴松里

秀陽里：康津郡 城田面 秀陽里

蓮洞里：海南郡 海南面 南蓮里

望湖亭：靈巖郡 靈巖面 望湖里

鳩林里：靈巖郡 郡西面 東・西鳩林里

老松亭：務安郡 朴谷面 鳳鳴里

清川里：務安郡 清溪面 清川里

社倉里：務安郡 石津面 社倉里
茶山里：務安郡 石津面 茶山里
鉢山：羅州郡 細枝面 橋山里
會津：羅州郡 多侍面 新楓里
半松里：羅州郡 老安面 金安里
楓山里：羅州郡 茶道面 楓山里
蟾岩：光郡 大馬面 福坪里
長安里：長城郡 長城面 長安里
麥洞：長城郡 黃龍面 麥湖里
黃龍里：長城郡 黃龍面 黃龍里
七田里：珍島郡 義新面 七田里
東外里：珍島郡 珍島面 東外里
浦山里：珍島郡 珍島面 浦山里
石峴里：珍島郡 古郡面 石峴里
道論里：珍島郡 古郡面 道平里
平村：羅州郡 潘南面 新村里

[慶尙北道]

山格：達城郡 城北面 山格洞 一區
漆洞：達城郡 解顔面 屯山洞 三區
率禮：達城郡 玄風面 大洞
良洞里：慶州郡 江東面 良洞里
牛角：迎日郡 神光面 牛角洞
縣內洞：迎日郡 杞溪面 縣內洞
元邱：盈德郡 寧海面 元邱洞 一區
仁上・仁下：盈德郡 蒼水面 仁良洞
甘川洞：英陽郡 英陽面 甘川洞
錦湖洞：盈德郡 盈德面 錦湖洞 一區(*盈德錦湖洞農事改良實行組合規約)
槐市：盈德郡 寧海面 槐市洞 一區
道村：安東郡 北後面 道村洞
河回：安東郡 豐南面 河回洞
蘇湖：安東郡 一直面 望湖洞

川前：安東郡 臨河面 川前洞
土溪：安東郡 陶山面 土溪洞
溫惠洞：安東郡 陶山面 溫惠洞
宜村：安東郡 陶山面 宜村洞
山雲：義城郡 山雲面 山雲洞
沙村：義城郡 點谷面 沙村洞
德川：青松郡 巴川面 德川洞
外良：軍威面 外良洞 第二區
大北洞：軍威郡 軍威面 大北洞
石田洞：漆谷郡 倭館面 石田洞
梅院洞：漆谷郡 倭館面 梅院洞
新洞：漆谷郡 枝川面 新洞
吳太洞：漆谷郡 北三面 吳太洞
西部：金泉郡 金陵面 三樂洞
上耆洞：金泉郡 果谷面 光明堂
武夷里：醴泉郡 龍宮面 武夷里
海底：奉化郡 乃城面 海底里
酉谷：奉化郡 乃城面 酉谷里
大浦洞：星州郡 月恒面 大山洞
法山洞：星州郡 志士面 甫月洞
倫洞：星州郡 志士面 修倫洞
館洞：高靈郡 高靈面 本館洞
桃津洞：高靈郡 牛谷面 桃津洞
薪旨洞：清道郡 錦川面
海平洞：善山郡 海平面 海平洞
元湖洞：善山郡 高牙面 元湖洞(*農事改良實行組合規約)

[慶尙南道]

勝山：晉州郡 智水面 勝內里
竹田里：宜寧郡 鳳樹面 竹田里
貴谷里：晉州郡 平居面 貴谷里
坪館：咸安郡 郡北面 明館里

柳原：咸安郡 漆原面 柳原里
舞沂：咸安郡 漆原面 舞沂里
牟山里：昌寧郡 大池面 牟山里
校洞里：密陽郡 密陽面 校洞里
竹東里：密陽郡 山外面 茶竹里
竹西里：密陽郡 山外面 茶竹里
石川：蔚山郡 熊村面 石川里
荷岑：蔚山郡 三同面 荷岑里
屯基：蔚山郡 三同面 屯基里(*屯基經濟緊縮貯蓄會規約)
松亭：蔚山郡 農所面 松亭里
松亭里：金海郡 進禮面 松亭里(元碧松亭)
東大洞：昌原郡 鎮田面 五西里(*五西里副業將勵會規約)
鶴洞：固城郡 下一面 鶴林里
松溪里：固城郡 大可面 松溪里
虎頭：統營郡 閑山面 龍虎里
雲山里：河東郡 良甫面 雲岩里
下介坪里：咸陽郡 池谷面 介坪里(*介坪養蠶契規約 *介坪畜牛契規約)
山圃里：居昌郡 熊陽面 山圃里
薑川里：居昌郡 渭川面 薑川里
葛溪里：居昌郡 北上面 葛溪里
武陵：陝川郡 草溪面 上臺里

[黃海道]

紫達洞：延白郡 湖南面 雌鳳里
松青洞：延白郡 松逢面 青松里
松城洞：延白郡 花城面 松川里
慕禮洞：延白郡 溫井面 慕禮里
文修洞：金川郡 外柳面 文修里(*組合規約)
栗洞：金川郡 西泉面 栗洞里(*槿花青年會會則 *李氏宗契序 *栗洞里興學契規約)
竹洞：新溪郡 栗面 九灣里
草灘洞：新溪郡 麻西面 草灘里

大内洞：甕津郡 富民面 内洞里
芳竹洞：松禾郡 蓮芳面 明禮里・馬山里
栗洞：殷栗郡 長連面 栗里
上院堂洞：殷栗郡 南部面 清溪里
漁隱洞：安岳郡 安岳面 漁隱里
長洞：安岳郡 大遠面 元龍里
豐洞：安岳郡 銀紅面 廣石里
大閑里：鳳山郡 西鍾面 大閑里

〔平安南道〕

會南洞：大同郡 南串面 孝南里 會南洞
美林里：大同郡 秋乙美面 美林里 一區
鮮于村：大同郡 斧山面 壽山里
石橋金村：順川郡 殷山面 石橋里
岐灘里：順川郡 慈山面 岐灘里
卵山：成川郡 三興面 卵山里
倉洞：江東郡 江東面 孝德里
上黃村：江東郡 高泉面 廣德里
繁洞里：中和郡 川谷面 繁洞里
竹山：中和郡 海鴨面 竹山里
大洞：中和郡 楊井面 新大里
唐村：中和郡 唐井面 唐村里
金村：龍岡郡 龍岡面 卵山里
龍洞：龍岡郡 吾新面 九龍里
古水營：龍岡郡 大代面 靈谷里
蛇山里：平原郡 西海面 蛇山里
東山臺車村：平原郡 東松面 君子里・月峰里
孟州金村：安州郡 東面 孟州里
松城安村：安州郡 新安州面 東七里・雲松里

〔平安北道〕

廉岑金村：龜城郡 西山面 立石洞
松隅：泰川郡 南面 松隅洞

金村：寧邊郡 寧邊面 龍浦洞
南山里金村：寧邊郡 古城面 南山洞
瑞南洞金村：定州郡 葛山面 瑞南洞
德達趙村：定州郡 德達面 德達趙村
新里李村：定州郡 古邑面
鳳洞：宣川郡 南面 三峰洞・建山洞 一部
杜茂谷：宣川郡 深川面 古軍營洞
惠陸：宣川郡 東面 路下洞
泰福仁平：鐵山郡 扶西面 梨福洞・仁平洞
昭義：龍川郡 龍川面 昭義洞
背陽串：龍川郡 府羅面 松峴洞
長山：龍川郡 北中面
南長洞：朔州郡 外南面 南長洞
間坪：昌城郡 昌城面 間坪洞

[江原道]

鋤吾芝：春川郡 史北面 芝村里
梧井村・元津里：春川郡 新北面 泉田里
金谷里：淮陽郡 下北面 金谷里
草溪里：高城郡 梧埜面 草溪里
金山里：江陵郡 城山面 金山里
下孟芳里：三陟郡 近德面 下孟芳里
瓶項洞：旌善郡 旌善面 愛山里 瓶項洞
密洞：寧越郡 下東面 禮密里
大野：寧越郡 下東面 大野里
魯林里：原州郡 富論面 魯林里
法泉里：原州郡 富論面 法泉里
上沙谷里：金化郡 近南面 沙谷里
九水洞：鐵原郡 新西面 道新里
龜塘里：伊川郡 方丈面 龜塘里

[咸鏡南道]

內洞：定平郡 歸林面 內洞里

禾洞里：定平郡 春柳面 禾洞里
葛田里：永興郡 順寧面 葛田里(*民風振興會規約)
蓮洞里：永興郡 古寧面 蓮洞里
杏磯：永興郡 德興面 內洞里
今水里：高原郡 下鉢面 今水里
珠塘里：高原郡 上山面 珠塘里
上坪：文川郡 龜山面 上坪里
中漁池里：安邊郡 新茅面 中漁池里
昌洞：北青郡 楊川面 上里
棠浦里金村：北青郡 北青面 棠浦里
內津：利原郡 東面 長遠里
浦項里：利原郡 南面 浦項里
栗枝里：利原郡 南面 栗枝里
龍田里李村：端川郡 廣泉面 龍田里 李村
價坪：新興郡 東古川面 京里 一區(*東古川面與京里里勢振興實行組合規約)

中相里：新興郡 元平面 中相里

[咸鏡北道]

南部洞：鏡城郡 梧村面 南部洞
石城村：吉州郡 東海面 石城洞
錦川申村：城津郡 鶴城面 錦川洞
荷川馬村：城津郡 鶴東面 荷川洞
沙河洞：富寧郡 石幕面 沙河洞
萬柳村：茂山郡 延上面 上倉洞
烟基底：茂山郡 豐溪面 明臣洞
內蒼坪：會寧郡 八乙面 元山洞
書院：鍾城郡 龍溪面 書院洞
長豐：鍾城郡 龍溪面 鍾山洞
獐項洞：穩城郡 永瓦面 龍南洞
上楸洞：慶興郡 豐海面 楸洞

(2) 特殊部落의 分布⁵⁾

1) 舊 吏族部落

全羅南道 長城郡 長城面 聖山里・福山里・南堂里

慶尙北道 義城郡 義城邑內 一圓 海州 吳氏, 慶州 李氏, 義城 金氏, 金海
金氏

2) 舊 驛吏部落⁶⁾

慶尙北道 安東郡 安東邑 安奇洞 咸安趙氏

北後面 瓮泉洞 晋州姜氏

臨河面 琴韻洞 平澤林氏

咸鏡北道 明川郡 下零面 下坪洞 驛屯里

咸鏡南道 文川郡 郡內面 營老里

3) 舊 僧侶部落⁷⁾

京畿道 高陽郡 延禧面 奉元里

京畿道 長湍郡 津西面 大院里 華藏寺

慶尙北道 聞慶郡 山北面 金龍里・田頭里

[在家僧部落]

咸鏡北道 富寧郡 富寧面 虛通洞・焯台洞

石幕面 金降洞(元金採洞)

會寧郡 八乙面 靈泉洞(俗稱 立石內)

昌斗面 茂山洞, 豐山洞(俗稱 鳳儀洞・孟軻洞・甫下洞),

靈山洞(俗稱 青草洞), 昌苔洞(俗稱 明堂隅・馬隅坪・延

頭古・蒼苔洞), 鍾岩洞

龍興面 漁雲洞

碧城面 大德洞(俗稱 梨春洞)

鍾城郡 豐谷面 豐溪洞 寺洞

穩城郡 柔浦面 豐利洞 烏啼岩

5) 善生永助, 朝鮮의 聚落 中篇: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39輯 生活狀態調査(其六)
(1933年刊, 594頁, 寫眞別添), 300~301頁 참조.

6) 같은 책, 301~302頁

7) 같은 책, 302~306頁

같은 책, 306~308頁

美浦面 月坡洞·暎月寺·豊橋洞 諸峯
穩城面 周原洞 鳩岩

慶興郡 上下面 松上洞 普賢谷

4) 舊 白丁部落⁸⁾

全羅北道 南原郡 南原邑 錦里(城底)

淳昌郡 淳昌面 校星里：平地里·烏山里·橋項里

全羅南道 務安郡 外邑面 城南里(城底里)

慶尙北道 聞慶郡 麻城面 南湖里

金泉郡 知家面 上部里 一部 元南山洞

慶尙南道 居昌郡 居昌面 中洞·東洞

黃海道 安岳郡 銀紅面 青川里 青溪洞

瑞興郡 栗里面 徐達里 白村

殷栗郡 一道面 農林里 車隅洞

江原道 三陟郡 三陟面 元堂里

5) 匠人·巫女·官奴 部落

黃海道 徐興郡 禾回面 梨槐里 越柏洞(匠人部落)

全羅南道 珍島郡 珍島面 城內里 一部(巫女·官奴部落)

2. 傳來團體：契⁹⁾

(1) 公共事業分野

洞契.大洞契.里中契.中契.共力契.部落契.洞中應役契.保安契.橋梁契.道路契.道契.社契.社倉契.均賦契.船舶契.船契.船倉契.佛亨契.惡少年契.成新契.禁酒契.斷酒契.救濟契.振興契.美風契.獎善勸學契.揚善契.一心契.名勝保存契.幼年學資契.書堂契.齊契.書齊契.洪範契.教育契.學契.學文契.獎學契.論衿契.同窓契.幼學契.學校契.冊契.硯池契.夜學契.補公契.儒林契.文廟契.百源契.井戶契.修井契.泐契.溜池契.堤堰契.戶稅契.戶布契.納稅契.市賦貯蓄契.洞祭契.洞山祭契.山祭契.

8) 같은 책, 308~309頁

9) 善生永助, 朝鮮の聚落 前篇: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38輯調査(其五)(1933年刊 944頁. 寫眞別添), 594~595頁 參照. “契”는 단순한 債權·債務關係나 利殖手段의 範疇를 벗어나 鄉村社會의 自治와 自助를 目的으로 하는 韓國 特有의 連帶組織으로 理解된다.

(2) 扶助分野

賻助契.四崇契.供役契.連班契.婚喪契.四寸契.公助契.爲親契.冠婚契.扶助契.喪具契.喪靱契.章服契.乘轎契.轎子契.遮日契.屏風契.喪布契.慎終契.博義契.初喪契.喪補契.喪輔契.喪中契.喪助契.廣成契.喪輿契.畫綵契.弔慰契.護喪花契.歲饌契.祭需契.喪契.花契.面人契.擔軍契.勸孝契.灰契.慰親契.老人契.報春契.保佐契.無憾契.保信契.相信契.碑石契.燭籠契.孝信契.相信契.互信契.金心契.大米契.白米契.酒契.酒煙草契.永興契.節酒契.冠帶契.婚具契.婚姻契.加冠契.結義契.崇倫契.金蘭契.胎護契.有物契.守信契.誠信契.和親契.賭儀契.喪表契.回甲契.新舊任契.補助契.親睦契.敬義契.附近契.蘭竹契.樂友契.誼契.圓契.五倫契.永睦契.補友契.補興契.尙德契.共樂契.鄉約契.養老契.老送契.南榭契.追遠契.十二人契.九人契.永慕契.祭祀契.宗親契.香祀契.慕賢契.文學契.師學契.門契.宗契.

(3) 產業分野

農務契.農民契.講農契.自治農契.農桑契.農事改良契.動友契.石春契.土地契.小作契.振興契.社契.種牛契.種牡牛契.購牛契.殖牛契.畜牛契.豚契.養蠶契.養蜂契.副業獎勵契.大木契.勸業契.鄉友契.勞動契.精農契.副業契.興業契.製叭契.叭契.筵織叭契.圓中契.草履契.私契.水砧契.打場契.農夫契.大豆粒選記念農業資金契.貯蓄穀物契.貯穀契.鐵店契.漁業契.殖林契.禁松契.松禁契.植木契.松契.農林契.森林契.造林契.務本契.火禁契.養林契.林業契.養松契.松林保護契.山林保護契.優良契

(4) 金融分野

月收契.金融契.勤孜契.殖產契.同一契.闢富契.太契.作百契.項契.利息契.殖利契.貯蓄契.貯金契.經濟契.商業貯蓄契.商務契.興農契.勤儉興農貯蓄契.雜契.省耕契.五穀契.牧畜契.少年契.永信契.共益契.三成契.花石契.御成婚記念貯蓄契.水害記念農業資金契.筒契.作罷契.十層契.

(5) 娛樂分野

詩契.詩傳契.射亭契.弓術契.甲契.同甲契.音樂契.山遊契.遊山契.永明契.昇平契.綠丹契.

(6) 기타 分野

墓所契.建築契.狐網契.祈禱契

第 2 章 研究諮問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實際調査와 관련하여 斯界의 專門家들에게 諮問을 하였다.

第 1 節 調査研究의 意義 및 範圍

1. 基礎法學研究의 重要性에 關하여

우리와 같은 法律割據主義 아래에서는 應用研究는 政策關係部處에 맡기고 研究院에서는 基本的으로 생색이 안나는 基礎研究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慣習調査 등은 빛이 안나지만 繼續事業으로 推進할 價値가 있다.¹¹⁾

學界에서는 이러한 일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 調査研究에 장시간 전념할 실정이 못된다. 慣習調査研究팀이 常設되어 5년이고 10년이고 이러한 일에 몰두하여야 한다.¹²⁾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서 變化의 慾求가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의 政策立案 등은 外來理論에의 依存度가 높다. 法律分野에 있어서도 1960년대까지의 基本法令體系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의 社會變動에 따른 改正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慣習에 대한 基礎調査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부 法改正이 外國法의 모자이크로 대체되는 형편이다. 예컨대 日帝時代의 우리나라의 勞動慣習法調査에 대한 批判的 再解釋 등이 필요하다. 우리 現實에 맞는 法制의 定着을 위해서는 慣習調査가 반드시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¹³⁾

2. 慣習調査研究의 必要性에 關하여¹⁴⁾

法學者들이 慣習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慣習은 制定法

11) 宋相現 教授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諮問 (1990년 12월 4일 韓國法制研究院 第 1次 研究諮問會議).

12) 宋相現 教授 討論 (1990년 12월 13일 本院 第4次 理事會)

13) 崔鍾庫 教授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諮問 (1991년 11월 12일 本院 第4次 研究諮問委員會)

14) 沈羲基 教授 (嶺南대학교 法科大學) 諮問 (1991년 10월 2일)

의 解釋과 適用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制定法이 存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補充的 法源이 된다. 오늘날과 같은 制定法 萬能時代에도 制定法 스스로 慣習의 效力을 認定하는 경우(民法 第1條, 第185條)가 있고, 法律 또는 法律行爲의 解釋에 慣習의 確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둘째, 社會變化가 활발한 分野(商法, 國際法)에서는 慣習이 立法과 行政上의 중요한 參考資料가 된다. 셋째, 慣習을 널리 認定하는 풍토는 엘리트주의(法曹法主義)가 팽배하는 現代社會에서 民衆法(Volksrecht)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法律民主主義의 達成에 도움이 된다.

民俗學, 人類學 및 歷史學者들은 慣習이 民衆生活의 중요한 일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慣習의 探究가 주로 過去와 現在의 歷史와 文化를 理解하거나 民衆文化를 保存하고 그 基礎를 다진다는 意味에서 중요하다. 慣習은 일종의 社會規範이고 社會的인 現象이기 때문에 특정한 慣習의 存在는 그 社會의 社會構造를 理解하는데 중요한 매개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3. 調查研究의 範圍에 관하여

慣習調查를 함에 있어서는 調查分野가 廣範圍하더라도 韓國的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學界에서는 토착적인 것에 주목하게 된다. 韓國的인 것이라면 海外學界나 研究支援團體 등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¹⁵⁾

慣行 및 慣習法은 그 範圍가 매우 廣範圍하므로 研究範圍를 細分化시켜 實際 調查研究를 進行시킴에 있어서는 該當 事業範圍를 좁혀야 한다. 예컨대 각종 特例法 分野에 대한 慣行들을 調查할 수도 있다.¹⁶⁾

勞働法 分野에 있어서는 慣習調查가 필요하다. 基準勤勞時間 같은 것이 그 예이다. 勞使關係慣習調查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關聯法改正이 문제이다. 日帝時代 우메젠지로 등이 행한 慣習調查를 再分析하고 이를 批判的으로 承繼할 필요가 있다.¹⁷⁾

15) 宋相現 教授 諮問(1991년 7월 23일)

16) 金相容 教授(漢陽大學校 法科大學) 諮問(1991년 11월 12일 本院 第4次 研究諮問委員會)

17) 金亨培 教授(高麗大學校 法科大學) 諮問(1991년 11월 12일 本院 第4次 研究諮問委員會)

行政法 分野에 있어서도 慣行에 주목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成文法國家에서는 각종 實定法規를 體系的으로 完備하고자 노력하여 왔지만 法規만으로 行政實務를 망라하기는 곤란하다. 行政은 복잡다기하여 成文法規가 完備될 수 없기 때문이다. 行政行爲에 관해서는 處分法規가 불가하여 法規가 抽象性을 띠 수 밖에 없으므로 實제에 있어서는 이를 具體化시키기 위한 慣行이 廣範圍하게 존재한다.

法規가 정비되지 아니한 행정영역 특히 受益的 行政行爲의 경우에서와 같이 行政廳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행정영역에서는 利害關係人의 信賴保護를 위하여서도 行政慣習法의 성립이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또 무엇을 法規로 보느냐 특히 行政規則의 法規性을 認定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慣行의 範圍가 현저히 달라질 것이다. 現行法令의 9할 가까이가 行政法規라고 본다면 수많은 行政各論 分野에 慣行이 존재하므로 法典 編別에 따라 慣行 目錄들을 抽出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慣行이 法規化되는 經過를 調査하는 것도 有益할 것이다.¹⁸⁾

4. 土着文化의 研究에 관하여¹⁹⁾

慣習調査研究가 土着的인 것을 對象으로 하여야 한다면 이는 韓國文化의 저변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토착적인 것, 저변에 깔려 있는 文化要素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가지 익숙한 현상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地方文化라는 것은 그 地方 사람들이 주로 形成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토박이들의 姓氏를 調査하고 族譜와 關聯하여 人脈을 調査하여 地域住民들의 精神的 支柱 내지 生活의 龜鑑을 根源的으로 探究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자기집의 고유음식을 접대하는 風習을 調査하면 儀禮文化의 단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지방의 俗談은 그 地域의 歷史的 特殊性이나 住民들의 意識構造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컨대, 여주에는 勢道政治를 빗대어 “안동김씨 삼촌보다 영흥민씨 열촌이 낫다”든지, “관우도 땀땀이 줄에 넘어질 날이 있더라”는 등의 俗談이 있는데 이는 은연중에 村民들의 行爲樣式에 영

18) 吳峻根 責任研究員(韓國法制研究院) 諮問(1991년 12월 10일)

19) 李洪煥 研究委員(한국땅이름학회) 諮問(1991년 7월 29일)

향을 미친다.

울타리나 담장의 樣式 또는 築造方式은 住民相互間의 連帶關係 내지 相隣關係와 關聯이 있다. 韓國의 文化는 境界意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울타리 문화” 또는 “城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地方이든지 그곳의 울타리나 담장은 인심과 사회사정을 잘 설명해 준다. 담장을 쌓을 때 시비가 訴訟으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治罪慣習은 상당히 흥미있는 분야이다. 충남 청양에는 이웃어른에게 인사를 아니할 경우 3일 이내에 마을회의를 소집하고 “개만도 못하므로 사흘간 두문불출하라”고 명하는 불문율이 있고, 경북 영덕에는 풍기문란이나 부모홀대의 경우, 契를 소집하여 집사가 비리를 열거하고 혐의자에게 이의여부를 물은 후 상석의 노인들이 이를 판단하여 유죄라고 인정되면 3일간 별거, 하루 농사일 또는 동네사람들의 교우금지 등을 명하는 관습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 法律文化의 形成하는 要素들이라고 생각한다.

第2節 方法論

1. 文獻調查 및 整理에 관하여²⁰⁾

慣行 및 慣習法을 調查·研究함에 있어서는 우선 日本人들이 調查한 資料에 대한 批判的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이 가능한 目錄을 作成하고 朝鮮總督府 慣習調查報告書 등의 번역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調查研究팀의 事業推進經過, 諮問內容, 該當 分野에 대한 討論記錄등도 후일을 위한 좋은 資料이므로 報告書 體制 속에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判例의 調查 및 整理에 관하여²¹⁾

法院實務에 종사하다 보면, 慣習法의 存在, 內容 및 適用範圍 등에 관한

20) 崔鍾庫 教授 諮問(1991년 3월 6일)

21) 金東鎮 判事(서울高等法院) 諮問(1991년 10월 1일)

訴訟當事者들의 主張과 立證이 상당히 눈에 띈다. 우리 判例에는 慣習法을 法源으로 認定한 사례가 많이 나온다. 日帝時代의 朝鮮高等法院 判決集등을 비롯한 下級審 判決들에도 慣習法에 관한 記錄들이 많다. 慣習法에 관한 體系的 調査를 위해서는 典籍調査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判例上的 慣習法資料들을 調査 整理하는 것이 필요하다.

判例의 調査와 研究 그리고 事例研究에 있어서는 이 分野에 관심이 있는 法官들의 協力이 필요하다. 法院에는 慣習法에 관한 部分的 實態調査經驗이 있거나 이러한 分野에 밝은 法官들이 상당수 있다. 일정한 協力體系를 갖추면 우리나라 慣習法 體系의 復元에 적지 아니한 도움이 될 것이다.

3. 現地調査에 관하여²²⁾

1) 意 義

現地調査는 經驗主義的 傳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文獻을 參照事項으로 파악한다. 法에 관한 慣習調査란 일종의 “惡의 脈絡(context)”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調査方法

調査項目을 定立하여 直接調査와 事例報告를 並行한다. 現地에 常住하면서 特定 紛爭이나 事件에 초점을 맞추어 綜合的 考察을 행한다. 이 때 法的인 카테고리에 속박되어서는 아니된다. 事前에 어떠한 정의(definition)를 設定해서는 아니된다. 法的 問題라고 하더라도 전체 상황 속에서 주변여건과 관련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法이란 人格的 意味가 排除된 最後의 手段이라는 否定的 視覺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은 “人間的”인 行爲方式을 먼저 찾기 때문이다.

3) 調査對象

慣行 및 慣習法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法的 門外漢들의 法的인 行爲들의 意味를 파악해야 한다 : 法的인 다툼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진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개념은 어떠한 내포를 지니고 있는가, 法的인 處罰은 과연 얼마만한 效果를 거둘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착안한다.

22) 金光億 教授(서울大學校 人類學科) 諮問(1991년 2월 1일)

다음에 紛爭의 進行 및 解決과 관련된 集團內部的 規範에 주목하고 地域間 規範의 차이에 유념해야 한다. 集團이나 地域에 따라 특이한 法的 現象들이 관찰될 것이다.

特定地域을 對象으로 調査를 實施할 경우, 그 地域內에서 日常的으로 볼 때 무엇이 갈등과 분규인가, 또 이는 어떠한 形態로 展開되는가를 살핀다. 契約, 싸움, 相續, 財産權 등을 둘러싼 여러 분쟁거리에 대하여 制度的 틀안에서 法適用의 實像을 파악한다.

이러한 관찰은 村落地域에서만 또 民事問題에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都市地域에서도 그리고 刑事件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法規範과 現實間의 괴리 속에서 法官들이 실제 事件處理에 임하는 態度나 被疑者나 辯護士가 실제 어떠한 過程들을 거쳐 그들의 당면 法律問題를 해결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도 法的 慣行의 범주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4) 調査後 處理

質的 接近法을 援用한다. 이는 民族誌를 記述하는 方式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相互間的 “關係” 分析에 비중을 둔다: 여러 要素들이 어떻게 얽혀지는가, 이를 푸는데 어떠한 文化가 동원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集團 속의 位階秩序나 構成員의 相互關係에 의하여 問題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資料記錄時에는 日常用語도 採用하여야 하며 資料處理에 있어서는 특히 統計處理의 誤謬를 克服하여야 한다.

4. 推進方針에 관하여²³⁾

1) 日帝의 慣習調査草稿本의 蒐集과 整理

日帝의 慣習調査結果는 草稿本의 形態와 이를 整理하여 出刊한 出刊本의 두 종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그 중의 일부는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日本에 있는 圖書館들의 所藏資料(예컨대, 北海島大學 圖書館의 山林關係資料)까지 찾아 보아야 한다.

2) 철저한 分析의 必要

分野에 따라서는 現存하는 資料만이라도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 것이 있다(예컨대, 小作慣行을 비롯한 不動產 慣行). 종래의 研究物들 중에는 그

23) 沈羲基 教授 諮問(1991년 10월 2일)

중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편향적인 주장을 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철저히 分析하여 再解釋을 가해야 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3) 歪曲에 대한 檢證

1980년대 후반부터 朝鮮時代의 契, 鄉約, 去來文記, 相續文記(분재기) 등이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있어 鄉村社會 내지 村落社會의 慣習法을 研究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史料들을 토대로 慣習研究가 深化되면 日帝의 慣習歪曲論에 대한 檢證이 가능할 것이다.

4) 人類學的 및 民俗學的 接近法의 援用

慣習調査는 調査項目의 設定이 매우 중요한데 日帝時代의 調査는 日本民法과 商法의 辨別에 따라 作成되었으므로 거기에 포섭될 수 없는 慣習은 아예 調査對象에서 빠져버릴 수 밖에 없다. 더우기 이들은 近代法의 認識과 概念으로 構成되어있다. 한편 官主導의 調査였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방향의 答변이 암시되거나 유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調査地域 속에 뛰어 들어가 參與觀察의 方法에 의하여 全體社會構造와의 聯關性 속에서 民族誌的 記述方法을 活用하여 慣習을 調査 分析하는 方法을 援用하여야 한다. 이는 이미 調査結果가 文獻으로 남아 있는 地域을 對象으로 행해질 때 매우 유익한 分析結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第 3 節 分野別 主要調査項目

1. 自治 및 紛爭解決

洞契 및 村契²⁴⁾: 齊馬首(詰難), 損徒(資格停止), 削籍, 不通水火, 黜洞

24) 박경하 研究委員(韓國歷史民俗學會) 諮問(1991년 11월 30일). 洞契 및 村契의 概念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研究課題이다. 여기서는 暫定的으로 契를 가장 廣義의 概念으로 보고 洞契, 村契, 기타 각종 利殖契, 相助契, 親睦契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契는 때로는 社團으로서 때로는 財團으로서 兩面性을 지닌다. 洞契와 村契는 村落地域의 自治組織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일부 研究에 의하면, 이 兩者를 班常關係를 토대로 區分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있다. 地域의 廣狹이 얼마마한 要素로 作用하였는지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研究 檢討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漁村契²⁵⁾

自然的 水利準則²⁶⁾

呪術的 紛爭解決²⁷⁾ : 도둑잡이 뱅이

禁忌²⁸⁾ : 紛爭豫防的 不文律

涉外²⁹⁾ : 入村節次 및 制限

2. 民事

宗中財産管理³⁰⁾

墓制³¹⁾ : 洞山埋葬許容範圍 및 限界. 廢墓處理方法

共有財産分割³²⁾ : 相續拋棄時限經過後 “持分0%” 觀念

境界³³⁾

賭地³⁴⁾

25) 주강현 研究員(慶熙大學校 民俗學研究所) 諮問(1991년 10월 5일)

26)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동(갓말: 枝村·本院 鄭肯植 研究員의 鄉里) 사례: 마을 가운데 고목나무가 있어 봄에 새싹이 날 때 나무 전체가 동시에 싹이 트면 동네 전체논에 같이 물을 대며, 위에서부터 싹이 트면 윗 논부터, 아래에서부터 싹이 트면 아래 논부터 물을 대다.

27) 주정규 研究員(韓國歷史民俗學會) 諮問(1991년 11월 2일)

28) 李海濬 教授(木浦大學 史學科) 諮問(1991년 11월 2일)

29) 문채규 教授(安東大學 法學科) 諮問(1991년 10월 9일)

30) 趙宗植 教授(尙志大學 法學科) 討論 및 張哲秀 教授(韓國精神文化研究院) 討論(韓國歷史民俗學會 月例發表會-1991년 10월 5일 대우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第2主題 “韓國慣習法에 대한 研究現況과 課題”: 本院 전재경과 정공식의 討論關聯)

31) 李俊雨 責任研究員(韓國法制研究院) 諮問 (1991년 11월 11일)

32) 上 同

33) 上 同

34) 沈羲基 教授 諮問(1991년 10월 2일)

35) 孫 晟 教授(東國大學校 法科大學) 諮問(1991년 9월 24일): 3의 (1)중 상사 자치규범·양도성정기예금·신종기업어음, (2)중 상무회·주주의결권·실권주·회사채발행·법정관리, (3)중 T.T. 자금이송, (4)중 장의거래·깡통계좌, (6)중 L.G.금융, (7)

鄭浩烈 教授(亞洲大學校 法科大學) 諮問(1991년 12월 13일): 3의 (5)중 모집방식, 계약체결, 손해산정 및 보험료지급, 자동차보험, 장기저축성신행보험.

李哲松 教授(漢陽大學校 法科大學) 諮問(1991년 9월 28일): 위에 열거된 항목의 의 (1)~(6)전항목

3. 商 事³⁵⁾

1) 總則 및 商行爲

- ① 商事自治規範：慣習法으로서의 要件을 갖춘 경우
- ② 商品販賣時 瑕疵擔保責任：責任期間, 擔保責任排除特約
 - ㉠ 商人과 消費者間 民法規定適用
 - ㉡ 保證期間 상당히 길어. 늘어진 期間內에서 販賣者에 대한 責任追窮 可能範圍는?
 - ㉢ 애프터서비스 期間設定이 보통. 이때 瑕疵擔保排除特約이 있다고 볼 것인가?
- ③ 金融貸出(꺼기)：꺼기에서 하는 것은 보통예금 또는 이자가 낮은 장기적금인 바, 이 경우 장기적금을 곧바로 解止하고 引出하면 契約違反인가? 별도의 不引出特約이 있으면 이를 貸付契約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 ④ 金融預金(비밀번호)：인감계출과 병행되는 비밀번호 사용, 당사자도 預金引出 拒絶당할 수 있음
- ⑤ 讓渡性 定期預金(C.D)
- ⑥ 新種企業어음(C.P.)
- ⑦ 匿名組合：원래는 利益發生에 따라 配當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통은 確定利益을 約定함. 法上의 匿名組合과 동떨어져
- ⑧ 商事保證：保證保險
 - ㉠ 保證人이 구상채권의 保證을 要求. 정형화 양상 보여
 - ㉡ 保證契約의 實體와 書名樣式의 괴리(예컨대, 자동차 세일즈맨들의 保證代行)

2) 會 社

- ① 株式會社設立：發起設立, 募集設立, 創立總會등 規定과 달리 運用
- ② 機關運營行態：株主總會·理事會
 - ㉠ 株主總會의 경우, 非上場法人은 書面으로 대체. 上場法人은 하더라도 非規範的 모습 띠어.
 - ㉡ 理事會의 경우, 上場法人도 略式으로 運營하는 수가 많아
- ③ 常務會

- ㉠ 美國會社法上の 任員會 類似
- ㉡ 理事會를 常務會로 代替
- ④ 株主議決權
 - ㉠ 證券會社 所有分은 通常的으로 議決權을 行使하지 아니함(行政指導)
 - ㉡ 議決權 代理行使
- ⑤ 資本增加(發行株式 4배) : 該當規定을 “增資後 실제 發行株式의 4 배”로 解釋해서 거의 무제한 增資 許容. 登記所에서도 이를 받아줘
- ⑥ 準備金(資本轉入) : 任意準備金의 用途變更後 資本轉入
- ⑦ 利益配當 : 差等配當
 - ㉠ 小株主에게 유리하게 大·小株主 差等配當
 - ㉡ 新株 舊株 差等配當. 法務部 有權解釋上으로는 有效
- ⑧ 優先株 : 後順位 優先株 發行
 - ㉠ 優先株의 配當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또 남으면 普通株에 주지 아니하고 普通株보다 1% 加算, 즉 普通株 配當을 基準으로 優先株 配當率을 정해
 - ㉡ 財務部에서 行政指導를 하지만 이미 發行分 많아
- ⑨ 失權株
 - ㉠ 增資의 경우 上場會社가 株式을 發行할 때 新株引受權者가 新株를 引受하지 아니하면 納入된 金額만 株式을 發行함으로써 失權株가 發生하게 됨
 - ㉡ 上場會社의 경우는 增資申告時 失權株 處理方案(예컨대 大株主가 失權主를 引受하는 方式)을 첨부해야 增資承認이 나도록 함으로써 즉 增資시 모든 新株에 대한 引受가 다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實權株를 防止함(慣行이 商事特別法으로 轉化된 사례).
- ⑩ 株式會社 計算(會社設立費用) : 變態設立事項이므로 定款上 規定 없으면 會社設立費用 支出못해. 그러나 實際 規定 없어도 移延資産으로 생각하기도.
- ⑪ 自己株式 取得 : 基本觀點에 있어서 商法은 自己株式의 取得을 例外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大陸式 思考), 企業會計에서는 美國式 思考에 의해 接近하므로 處理方式에 있어서 相異함

⑫ 株券發行：記載株式數

㉞ 株式數는 任意的으로 記載가 可能함. 그러나 證券管理委員會에서 統一規格을 要求

㉟ 10株, 20株, 50株, 100株 등으로 發行되고 있음

⑬ 會社債發行

㉞ 대부분 間接發行. 證券社 引受部에서 擔當.

㉟ 談合形式에 의한 發行 問題

⑭ 法定管理：企業에 대한 銀行의 法定管理：經營委任 類似

3) 어음·手票

① 어음發行：樣式化

㉞ 銀行度 어음이나 문구점 어음은 백지에 어음記載事項을 記錄하지 아니하고 記載事項題目이 不動文字化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음을 사용하여 빈칸 메우기식 發行을 하고 있음

㉟ 빈칸을 메우지 아니한 부분의 解釋問題 發生

② 어음割引：貨出擔保어음

㉞ 어음을 割引해서 資金을 마련하는 方式이 普遍的이라야 되는데 金融界에서는 一般貨出을 하면서 어음을 받아(債權이 貨出債權 및 어음債權의 2개가 됨)

㉟ 滿期時 어음을 改書함

㊦ 어음債權의 同一性 問題 發生

③ 어음保證(背書保證)：어음保證을 “保證”이라는 形式을 사용하지 않고 예외없이 背書讓渡함

④ 자기앞 手票(提示期間)：자기앞手票는 일반적 手票의 提示期間 10일이 무의미해짐(大判)

⑤ 백지수표의 담보화(當座手票 및 家計手票)：私債業者들은 當座手票 및 家計手票에 金額·日字를 記載하지 아니한 채 이를 貨出擔保로 받음

⑥ T.T. 資金移送

4) 證券去來

① 一任賣買

② 電話賣買

③ 會社債募集：꺼기 募集

- ④ 證券賣買委託去來：카드去來
 - ㉠ 종전에는 通帳去來
 - ㉡ 현재는 “證券카드” 去來. 허술하여 紛爭所持 發生
 - ㉢ 顧客 입장에서는 記錄不在. 컴퓨터파일 파괴시 證券會社에서 否認하면 金錢請求權者인 顧客이 立證하기 곤란함
- ⑤ 場外去來：慣行이 成文法化된 事例
- ⑥ 깡통計座
 - 所有와 處分權의 分離現象
- 5) 保 險
 - ① 保險契約：契約의 實體 및 締結時期
 - ㉠ 保險은 어김 없이 募集人 통해 契約이 締結됨. 이때 約款內容과 募集人의 說明이 달라질 수 있음
 - ㉡ 이 경우, 締結된 契約內容과 契約締結時期가 문제됨
 - ② 保險募集人의 性格：商法上 代理人 如何
 - ③ 募集方式：緣故募集
 - ㉠ 強要된 募集. 副作用 發生(告知義務소홀)
 - ㉡ 募集過程 不實, 50%이상 失效
 - ㉢ 募集手數料는 1년 이내 支給. 다른 加入者들의 損害 發生
 - ㉣ 會社側은 無過失責任 逸脫
 - ④ 契約締結：虛偽加工契約, 保險料割引(rebate)
 - ㉠ 募集 過當競爭
 - ㉡ 다른 契約者의 保險料 利用
 - ㉢ 2년전부터 억제
 - ⑤ 損害算定 및 保險料支給
 - ㉠ 損害査定人의 査定額과 訴訟에서 認定된 金額 比較
 - ㉡ 裁判結果 및 折衷過程 추적
 - ㉢ 長期 後遺症 發生時의 問題
 - ⑥ 自動車保險：對人無限責任賠償保險
 - ㉠ 法院은 人的 損害額을 관대하게 處理. 經濟實態와 맞지 않으며, 保險料率 많이 오르게 만들어
 - ㉡ 醫療費算定 任意的. 自保酬價 각각 다르고, 터무니 없이 높아

- ㉔ 고장수리센타와 事故處理職員 및 病院關係者등이 談合하는 경우, 醫院費 上昇
- ⑦ 長期貯蓄性 損害保險
- 6) 國際去來
- ① 合作契約의 “支配權” 約定
 - ㉔ 理事會 構成方法 및 合作 當事者측의 비토權 등
 - ㉕ 會社法에 위반하여 無效인 것들 많아
- ② 技術契約의 “活用” 制限：不當拘束의 問題
- ③ 信用狀：네고 問題 등
- ④ L.G. 金融：L.C. 開設후 船荷證券등 운송서류원본의 송부전에 貨物 失敗保證書(L. G. : Letter of Guaranty)를 가지고 이미 到着한 貨物을 인수한 경우 L.C.가 평크나는 때 銀行의 債權回收 問題
- 7) 海 商
- ① 物件引渡時期
 - ㉔ London Clause에 의하면 輸入國 港灣 到着時 “引渡”로 看做
 - 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荷役完了” 時點을 引渡로 看做
- ② 船舶所有者の 責任
 - ㉔ 실제 合意로 많이 處理
 - ㉕ 油濁事故時 賠償方法

4. 行 政³⁶⁾

- ① 認可·許可事務
- ② 行政調査：調査基準 調査後 不利益處分 등
 - ㉔ 稅務調査
 - ㉕ 衛生檢査
 - ㉖ 環境調査
- ③ 行政強制
- ④ 行政罰(犯則金 등의 경우)

36) 吳峻根 責任研究員 諮問(1991년 12월 10일)

- ⑤ 公務員懲戒
- ⑥ 警察官 職務執行
- ⑦ 經濟行政
 - ㉠ 外國人의 國內投資
 - ㉡ 輸出入 規制·育成
 - ㉢ 特許 라이선스
 - ㉣ 獨寡占 規制
 - ㉤ 金融上 制裁
- ⑧ 公企業：國營企業體 運營(指導·豫算 등)
- ⑨ 公物
 - ㉠ 入魚權
 - ㉡ 流水使用權(灌溉水利權·溫泉使用權 등)
 - ㉢ 道路 등 公物使用(남대문 시장：사용지역·사용시간, 노점상：단속·차별)
- ⑩ 國土關係計劃
- ⑪ 再開發：이른바 “딱지”
- ⑫ 建築行政
- ⑬ 賃貸住宅
- ⑭ 社會保障
- ⑮ 國稅·地方稅

5. 刑事節次³⁷⁾

- 1) 靑少年 善導條件附起訴猶豫
 - ① 管轄 善導委員 擔當(월2회 정도 접촉, 반성문 작성, 檢察廳 報告)
 - ② 6개월간 觀察後 적당하면 起訴猶豫
 - ③ 相當한 效果 있음. 再犯 극히 낮음
- 2) 事件處理基準：拘束

37) 記名省略. 調查期間 중 法務部 및 檢察廳 所屬 檢事 2名과의 面談 結果 整理(起訴 中止者 再起와 警察의 身柄稟申, 特別搜查 또는 認知搜查時 保護措置 依賴에 관한 內容整理 省略).

① 各 檢察廳의 首席檢事가 全國 檢察廳의 慣行을 比較하여 作成(해마다 作成하지만 거의 不變. 全國的으로 거의 비슷한 內容)

② 傷害事件 : 未合意에 3週 診斷이면 拘束. 凶器 등 所持면 1週

③ 交通事件 : 無保險 未合意時 4週 診斷이면 拘束. 有保險 未合意時 6週 診斷이면 拘束. 合意事件이라도 信號違反에 飲酒運轉 등 交通事故處理 特例法上的 8개 項目 중 2개 項目 違反에 6週 診斷이면 拘束. 1개 項目 違反에 10週 診斷이면 拘束(交通事故多發都市는 8週 診斷).

3) 罰金豫納制

① 不拘束裁判으로 處理되는 罰金刑 事件의 경우, 罰金刑의 時效 3년내 罰金を 納付하지 아니하여도 對策이 없음. 이에 刑執行의 實效性을 거두기 위해 罰金を 豫納받고 裁判을 請求함

② 飲酒運轉 등 事案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施行 當事者들도 便利

③ 裁判 後 精算

④ 分割豫納 並行(1개월 정도의 기간내 2~3차례 分割)

4) 合意誘導

① 交通事件, 親告罪事件, 反意思不罰罪事件, 財産犯罪事件 등에 있어서 初犯 또는 過失犯을 拘束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實施

② 조사시작, 조사끝, 起訴時, 被害者의 意思를 묻고 合意 如何 確認

③ 合意翻覆후 다시 處罰要求하는 사례 잦으나 取消의 取消는 法上不可

5) 陳情書處理

① 事件實務에서 자주 접하는 現象으로서 때로 參考資料로 活用됨

② 物量作戰으로 나오는 集團陳情은 비중 낮음

③ 國會議員의 陳情은 儀禮的인 것으로 看做

④ 擔任先生, 指導教授, 職場上司, 聖職者 등의 個人陳情은 비중 큼

6. 古慣習³⁸⁾

1) 試驗 : 鄉試

① 京畿道 鄉詩는 宣祖36년 이후 漢城試로 統合

② 法典上으로는 英祖 때에야 統合. 相當期間 동안 慣行으로 施行

38) 李鍾日 會長(法務部 更生保護會) 諮問(1991년 9월 26일)

2) 交換

- ① 賣渡證書받고 代金完拂이면 所有權 移轉
- ② 賣買는 肅宗 이후에 등장. 그 이전에는 交換事例만 보임
- ③ 1678년 이후에도 交換事例 보여
- ④ 葉錢流通 이후 1701년부터 “賣買”라는 用語 등장

3) 賣買：契約方式

- ① 賣買契約當事者를 자기 집의 奴婢로 선정하였음
- ② 代理權 賦與 如何는 미지수이나 顯名
- ③ 예컨대, 公州鄉校文書에 의하면 1829년 당시 空株 南部의 賣買 文書에 “俞氏宅 奴婢 丁金(署名)”이라는 記錄이 보임³⁹⁾

4) 人事行政：通清之規

- ① 前現職 少壯 官吏들이 合意하여 후임물색, 3배수 圈点(抽籤)
- ② 吏曹正郎·佐郎 등 5品 이하의 官吏들을 對象으로 實施
- ③ 世宗 때부터 發端. 經國大典成立 以後 英祖 때 一時廢止. 正祖 卽位 후 復活
- ④ 品階의 높낮이는 크게 의미 없었음. 身分, 出身, 職位 더 重視

5) 人事行政：遞兒職

- ① 下位 武官 자리에 高位 文官 任用
- ② 交替時 받는 자리이며 이 자리로 位階評價는 不可
- ③ 經國大典 이후 世祖 功臣 優待方案의 일환

6) 人事行政：影職

- ① 예컨대, 果川縣監 6명을 同時에 任命. 1명만 實職이고 나머지 5명은 名譽職
- ② 教旨는 받았음. 任命節次 약간 달랐음
- ③ 後期는 官階는 있으나 官職은 대개 없었음
- ④ 納稅를 免除받는 약간의 특전도 있었음
- ⑤ 大典會通시대 陽性化. 조문화 이전에 慣行으로 施行
- ⑥ 常賤은 못주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 大邱驛吏들에게도 수여

39) 李鍾日, “公州鄉校文書解題”, 韓國史料叢書34 朝鮮社會史資料2(公州) 下(國史編纂委員會, 1991), 1363~1388쪽, 參照

第3編 文獻分析

第1章 分析の目的・範囲と方法

第2章 地域別分析

第3章 市場別分析

第4章 団体・機関別分析

第3編 文獻分析

第1章 分析의 目的·範圍 및 方法

既存의 調查研究文獻(第2次 資料) 중 本調査와 關聯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가려 그 調查過程, 項目, 規模, 方法 및 問題點 등을 分析하여 향후의 慣行 및 慣習法 調查研究의 基礎資料로 活用한다.

여기에서는 단순한 文獻研究資料나 總論的 研究資料 대신에 現地調査 또는 事例研究資料를 選定하여 分析한다. 즉 調査文獻에 의거한 事例分析을 行한다.

第2章 地域別 分析

第1節 全南 羅州郡 洞契¹⁾

1. 調査地域 및 調査時期

調査地域: 全南 羅州郡 노안면 금안리 1구 3구 12개 自然部落

調査時期: 不明(資料刊行年度로 보아 1990~1991년경으로 推定됨)

2. 調査方法

現地調査 및 典籍調査 並行

1) 朴鍾彩, 朝鮮後期 羅州 金安洞 洞契의 구조와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碩士학위논문(1991), 16~24, 35~43, 44~58쪽 참조.

3. 調査內容

(1) 金安洞 洞契의 組織構造와 運用

1) 組織構造(洞契)

① 組織構成員：上契員(洞員, 約內, 上契로 표현)과 下契員(田民, 下契로 表現)으로 構成

② 洞中：班村(길 윗 마을)과 民村(길 아래 마을) 그리고 上下民 모두를 포함

③ 洞會：公會(義務的 參與)

④ 執行部：洞任 또는 約任

[3洞首 7執綱(公事員1, 掌議2, 有司4) : 17세기]

[3洞首 4執綱 : 18세기 이후]

2) 充員構造(入契式)

○ 東床禮：17세기에는 男家에서 행하는 婚姻慣行 (신랑달아매기). 18세기 이후에는 洞中 成員이 되는 入洞節次로 變化

3) 洞契의 運用：洞中の 모임을 통해 解決

① 春秋講信：洞員만의 모임

洞任選出 등 大小事의 決定, 친목도모

② 公會(洞會)：洞員과 田民의 모임

賞善罰惡(善惡籍에 記載)

③ 村會：田民만의 모임

村祭, 두레共同勞動의 組織運用, 農事設備, 婚喪扶助 등

4) 洞財政：民庫(雇馬廳)의 運營

① 上下契員의 出穀

② 民庫牛나 洞 등의 經營

③ 國家賦稅에 대한 對應, 쌍계亭 등의 保修費用, 洞契運營經費, 寡婦 등 老弱者에 대한 扶助, 救荒食品의 具備, 巫女에의 출금

(2) 金安洞의 洞契와 鄉約과의 關係

① 金安동은 壬亂후 約內가 주도하는 洞契가 成立되어 洞中之事를 담당하던 중 1681년에 鄉約이 하첩되었다. 約內를 구성해 오던 洞員들이 자연스럽게 鄉約上契案 座目에 그대로 올랐고 公會의 運用이나 善惡籍의 作

咸도 이미 約內가 主管하고 있었기 때문에 鄉約은 별무리 없이 수용되었음

② 18세기 중엽에는 鄉約 條文을 洞契의 節目과 결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예컨대, 英祖15년(1739) 洪就大가 만든 約條25條 중에는 鄉約에서 採擇한 4個條가 있었음). 즉 금안동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洞契에 鄉約이 일부 접목되었음

(3) 金安洞의 洞契와 村契와의 關係

① 部分的인 研究結果에 의하면⁴²⁾ 洞契는 村落을 觀念的으로 支配하는 上位組織으로서 身分的 및 社會 經濟的으로 下位에 있는 基層民을 그 예하에 두고자 하였던 반면에, 生活共同體로서 오랜 傳統的 基盤을 가진 村契는 支配와 被支配라는 概念 以前에 生活 그 자체를 媒介로 하여 自然村落 單位로 結束된 組織임. 이러한 村契는 時期와 地域에 따라 香徒, 村契, 小契, 各契, 下契, 私契 등으로 불리우며 존재해 왔음

② 금안동 어느 마을이나 각기 村契가 있었고 지금도 각 마을에 존재함. 洞契가 洞中을 對象으로 身分制를 전제한 不平等關係 속에서 包括的인 機能을 하였던 반면에, 村契는 남녀 모두가 參與하는 등 階級性이 排除된 철저한 平等을 전제로 村中の 일을 해결하였음

③ 임란후 洞契는 ‘上下合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前期 士族 사이의 ‘鄉規’와 下層民 사이의 ‘村契’라는 二元的 規範을 地緣을 매개로 하여 一元化시킨 것으로 이해됨

第2節 全南 咸平郡 慣行水利權⁴³⁾

1. 調査地域 및 日字

이 件 調査는 標本調査地域으로 全南 咸平郡 鶴橋面을 選定하였고 關聯 調査資料로서 경남 울산, 경북 풍기, 전북 김제, 충북 청원, 경기 양주 地

42) 예컨대, 이해준, “朝鮮後期 洞契·洞約과 村落共同組織의 성격”, 조선후기 향약연구(민음사, 1990), 127쪽 참조

43) 이에 관한 조사연구자료는, 崔柄煜, 한국의 관행수리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碩士학위논문(1961년, 146쪽), 60-70쪽, 참조

方の 것을 參照하였다. 調査時期와 期間은 불명이다. 資料出刊年度로 미루어 1960년경 調査를 實施한 것으로 推定된다.

2. 調査方法

여기에서는 理論的·總論的 考察과 병행하여 標本地域의 實態를 調査하였다. 現地調査項目이나 過程 및 方法 등에 관한 別도의 記述은 하지 아니하였다.

3. 調査內容

- 1) 錦江川을 중심으로 한 現地概觀 및 水利施設 ‘泐’의 概要
- 2) 多利泐를 중심으로 한 水利權의 內容
 - ① 水利權의 效力
 - ㉠ 水利權者의 權利
 - ㉡ 물이 부족하지 않을 때
 - ㉢ 물이 부족할 때
 - ㉣ 水利權者의 義務
 - ② 水利權의 主體
 - ③ 水利權者의 團體: 名稱, 目的, 構成, 組織, 團體性
 - ④ 水利權의 變動
 - ⑤ 水利紛爭
 - ⑥ 물방아(水車)와의 關係

第3節 濟州道 南濟州郡 入漁慣行⁴⁴⁾

1. 調査地域 및 時期

- ① 重點調査地域: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馬羅島(1966년 8월)
- ② 關聯調査地域: 제주도 전연안 97개 어촌부락(1967년 1월)

44) 이에 관한 조사자료로서는, 高翔龍, 韓國의 入漁權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碩士학위논문(1967년, 128쪽), 99~128쪽, 참조

2. 調査目的 및 方法

이 件 調査는 제주도 海域의 漁民의 生活과 漁場에 관한 法制度 및 慣行의 綜合的 考察을 위한 現地實態調査이다. 調査規模나 方法 등에 관한 別도의 記述은 하지 아니하였다.

3. 調査內容

1) 典籍調査 [馬羅島鄉約]

- ① 總綱：總則·管轄·任員·報酬
- ② 海產物：海產物의 禁 및 解禁, 和布(미역) 및 김, 툇의 採取에 대한 監視, 入漁資格
- ③ 賦役：動員, 時祭
- ④ 冠婚喪祭：婚禮, 葬禮
- ⑤ 牛馬場
- ⑥ 會 議
- ⑦ 財 政
- ⑧ 罰 則
- ⑨ 附則 (公布 및 施行：1965년 2월)

2) 實態調査

- ① 漁業活動의 排他性 및 連帶性
- ② 邑面別 漁民數
- ③ 主要 漁業의 種類
- ④ 入漁權：入會權과 類似한 物權性 如何
- ⑤ 入漁料：初入漁者
- ⑥ 入漁拒絕：共同負擔不履行者, 出嫁後 1年經過者, 外地人
- ⑦ 漁業紛爭事例：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와 용당리간의 紛爭(1964년)
- ⑧ 共同入漁 調整線：“장대코지” 기점

第3章 市場別 分析

第1節 金融市場

1. 與信 및 受信 關係 非正常的 慣行⁴⁵⁾

(1) 經濟的 背景 分析

1) 資金의 需要 및 供給 側面

① 우리나라의 경우 資本蓄積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辭典的 意味의 期待 投資收益率이 名目金利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資金의 需要가 利子에 비해 非彈力的임

② 名目金利는 行政指導 등을 통하여 事實上 규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金利가 媒介變數의 機能을 발휘하지 못함

③ 결국 資金의 需要가 供給을 超過하는 狀態 아래에서는 資金割當이 불가피하며 實세금리와 名目금리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金融慣行들이 發生하게 됨

2) 金融市場內의 獨寡占現狀

① 우리나라의 金融制度가 單店主義가 아닌 支店主義를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競爭機關의 진입을 制度的으로 제어함으로써 資金仲介의 獨寡占現狀이 빚어짐

② 資金事情이 어려울 때 각종 基金 등 일부 巨額資金運用機關이 金融機關을 통한 資金供給餘力을 事實상 獨占하고 있어 資金供給의 獨寡占現象이 초래됨

(2) 非正常的 金融慣行의 發生經過

① 각종 基金 등 巨額資金運用者는 獨占의 位置를 利用하여 金融機關에

45) 財務部 內查資料 [金融篇](1989年) 참조.

高收益率 保障을 要求함

② 資金의 超過需要가 존재하는 한, 金融機關은 調達金利를 불문하고 많은 資金量을 確保하는 것이 營業신장에 유리하므로 이들에게 高金利를 保障함

③ 金融機關은 高金利로 調達한 資金을 역시 高金利로 運用하면서 當局의 指導나 規制 그리고 高金利에 대한 社會적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의 獨占的 地位를 背景으로 非正常的 金融慣行으로 나아감

(3) 非正常的 金融慣行의 類型과 內容

1) 基本型 꺼기

① 銀行이 企業에 대한 貸出의 일부를 다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에 들도록 권유함

② 企業이 短資社에게 資金支援을 요청할 경우 短資社가 기업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그 일부로 自發어음, 無擔保어음 또는 CP를 買入하도록 권유함

2) 連繫型 꺼기

① A단자사가 甲기업에게, B단자사가 乙기업에게 각각 기업어음을 할인하면서 乙로 하여금 A단자사의 CP나 無擔保어음 등을 買入하도록 하고, 甲으로 하여금 B단자사의 CP나 無擔保어음 등을 買入하도록 함

② A단자사가 甲기업에게 企業어음을 할인하면서 甲과 같은 계열인 乙기업에게 自發어음, CP, 無擔保어음의 買入 또는 CMA 등의 加入을 유도함

3) 與信管理回避

○ 大企業 중 일부는 월말 여신관리를 회피하기 위해 그룹내의 短資社의 하루자금을 빌어 銀行의 貸出을 일시 상환한 후 다음날 다시 銀行貸出을 받아 이를 償還함

4) 高收益率 確保

① 證券社의 BMF나 단자사의 CMA의 運用에 있어서 各社는 높은 金利의 豫定收益을 광고한 후, 金融市場의 상황과 무관하게 당해 收益을 保全하기 위하여 既存의 企業어음과 高金利 위주의 企業어음을 交替

編入시킴

② 甲은행은 特定 金錢信託의 收益을 乙基金에 事前에 提示한 후 資金이 부족한 丙단자사와 協議하고, 金融市場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동안 상당히 높은 일정 金利로 단자사 保證어음의 買入契約을 締結함

2. 債權擔保慣行⁴⁶⁾

현재 私金融去來에서 人的擔保가 홀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物的擔保와 병행해서 債權擔保가 이루어진다. 法律上的 擔保物權制度도 일반의 債權去來에서는 자주 외면되고 대신 비전형의 擔保方法이 안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債權者가 보다 신속하게 擔保實行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전형담보에서 금하고 있는 流擔保를 원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經濟生活이 發展함에 따라 전형담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담보가치를 발견하거나 擔保技術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하 몇가지 중요한 擔保方法의 類型들을 살펴본다.

1) 假登記와 提訴前 和解를 이용한 擔保

○ 讓渡所得稅의 回避와 관련하여

2) 賃借權의 擔保化

○ 賃借人(債務者)이 債權者로부터 資金을 빌면서 이를 擔保하기 위하여 賃貸人의 同意를 얻어 店鋪賃貸契約을 다시 한다. 이 때 賃借人을 債權者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債權者가 店鋪를 賃借하는 形式이 되고 賃借人이 본래 賃貸人에게 支給하였던 賃借保證金返還請求權은 債權者가 이를 取得하게 되며 債務者는 다시 債權者로부터 그 店鋪를 賃貸하여 사용한다.

3) 割賦賣買에서의 擔保方法

○ 販賣代金債權의 擔保를 위하여 所有權이 賣渡人에게 留保되고, 買受人의 債務不履行時 그 履行을 擔保하기 위하여 賣渡人의 自力救濟가 許容되며, 保證金 및 借賃은 解約時 原狀回復 또는 損害賠償을 擔保한다.

46) 李哲松, “債權擔保方法에 관한 去來慣行의 研究”, 명지대논문집 제13집(1982년), 365~395쪽 참조.

4) 積金 또는 賦金擔保貸出

○ 積金 또는 賦金の 예금주가 滿期에 支給받을 契約金額 또는 滿期에 이르기까지 定期的으로 納入하여 累增되는 積金 또는 賦金を 擔保로 하여 當該 與信銀行 등에서 貸付를 받는다.

5) 保險約款貸付

○ 保險契約者が 保險金 또는 保險契約의 解止時에 受領하게 될 還給金を 擔保로 하여 保險者로부터 金融을 얻는다.

6) 팩토링金融의 擔保

○ 去來企業이 팩토링業者에게 讓渡한 賣出債權의 代金を 擔保로 하여 팩토링業者로부터 金融을 얻는다.

第2節 債券市場：機關別 資產運用慣行⁴⁷⁾

1. 證券會社

1) 債券發行 周旋과 관련하여

① 會社債 發行金利와 流通金利의 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引受手數料 引上만으로 保全되지 아니하는 部分을 發行社에 對한 “리턴”이나 主幹社의 BMF 또는 還買債에 資金을 預置시키는 등의 變칙적인 方法을 통하여 債券發行을 主선

② 系列企業에 편중된 會社債 發行 主선

2) 株式賣買 委託을 받기 위한 變則的인 債券賣買

① 生命保險社의 株式賣買 委託을 條件으로, 保險社 保有債券을 市場實勢보다 높은 價格으로 買入한 후 일시에 市場賣渡(市場收益上昇 招來)

② 收益 下落時에는 實勢보다 낮은 價格으로 保險社에 債券을 賣渡하고, 實勢價格과의 差額은 株式委託手數料로 保全받음(株式約定庫競爭)

2. 投資信託會社

○ 會社債 引受手數料 計算時點：取得時點(會社債納入日)에 全額一括

47) 財務部 內查資料 [證券篇](1989年), 참조.

3. 銀行信託計定

- 信託貸(保證어음 買入) : 短期貸出(7~15일), 金利水準最高

4. 保險會社

1) 保險加入을 條件으로 한 資金支援

- ① 證券社등 金融機關은 保險社의 從業員退職保險 加入
- ② 保險社는 BMF, CMA, 定期預金 등에 資金預置
- ③ 一般企業이 保險社의 從業員退職保險 加入
- ④ 保險社는 銀行, 單子사 등에 資金을 豫置하고 同 資金을 保險加入企業에 貸出하도록 措置(當該 企業에의 直接貸出이 어려울 경우)

2) 保險加入 企業과의 株式 通情賣買

- ① 企業은 保險社에 從業員退職保險 加入
- ② 企業이 特定 株式을 特定價格에 處分하고자 할 경우, 株式約定을 條件으로 證券社를 指定하여 事前 談合
- ③ 企業은 約定된 條件으로 證券社에 株式賣渡, 保險社는 指定된 證券社를 통하여 株式買受

3) 株式賣買 委託을 條件으로 한 不公正 債券賣買

- ① 保險社의 債券調達 필요시 株式約定을 條件으로 實勢보다 낮은 價格(높은 收益)으로 證券社로부터 買入
- ② 證券社 損失分을 株式賣買 委託手數料로 保全
- ③ 保險社의 債券(通貨債 引受分 등)處分 필요시 實세보다 높은 價格(낮은 收益)으로 證券社에 賣渡
- ④ 證券社 損失分을 株式賣買 委託手數料로 保全

5. 短資會社

1) 兩鍵性 企業어음 割引

- 企業이 單子사에서 어음을 割引할 경우, 名목상의 割引金利와 市中 短期資金 實質貸出金利와의 차이를 保全하기 위하여 受信金利가 낮은 自己發行어음 또는 無擔保어음의 買入을 강요함

2) 顧客別 收益率 差等適用 : 追加利子

○ 一般顧客에 대하여는 CMA 運用收益을 그대로 지급하나 特定 大規模資金去來 顧客에 대하여는 運用收益外에 追加利子を 支給할 것을 事前 約定하여 資金을 예치하도록 유도하고 運用收益外의 追加利子 支給額은 資金需要者에게 高金利貸出(어음割引)을 適用하여 이를 保全함

第3節 國際去來市場

1. 商品市場：輸出代行者의 慣習上 瑕疵擔保責任⁴⁸⁾

輸出代行者는 免責特約이 없는 한 買受人에 대하여 商慣習上 直接 瑕疵擔保責任을 져야 한다. 責任의 根據는 다음과 같다

① 客觀的 要件을 보면, 이러한 慣行이 貿易業界에서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일정불변하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② 主觀的 要件을 보면, 設問調査結果 貿易業界에 종사하는 사람 중상당수가 同 瑕疵擔保責任을 豫想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規範的 要件을 보더라도, 輸出代行者가 賣渡人 등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瑕疵擔保責任의 受益者 및 責任者를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 貿易業許可業者로서 利益에 相應하는 責任을 지는 것이 衡平에도 맞다.

2. 投資市場⁴⁹⁾

(1) 國際最小標準

① 國際投資와 關聯하여 19세기부터 形成되어 온 傳統國際慣習法에 의하면 資本導入國은 外國會社의 進入을 規制하거나 一定한 條件을 賦課하

48) 林梁云, 商去來上의 代行者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博士학위논문 (1989년, 361쪽, 부록), 290~310쪽 참조.

49) 文俊朝, 對中國直接投資의 國際法的 保護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博士학위논문(1991년, 318쪽), 109~155쪽 참조.

는 등의 主權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外國人 및 그 財産에 대한 公正하고 衡平한 待遇(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賦與하여야 한다는 國際 最小標準(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을 遵守할 義務를 진다.

② 新國際經濟秩序를 確立하려는 제3세계국가들은 國家의 富와 資源에 대한 永久主權의 確立, 經濟的 自立의 成就, 自決權의 強化, 外國人의 投資 기타 活動의 規制 및 衡平한 世界經濟秩序의 再構成을 위한 國際的 行動統一을 도모하고 있어 國際投資에 관한 傳統慣習法은 동요되고 있다.

③ 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의 “制限的 商去來慣行에 관한 準則”(國際聯合總會 採擇: 1980년)은, 實效性的 側面에서는 상당히 流動的이지만, 多國籍企業이 市場支配力を 濫用하여 不當하게 市場接近 또는 競爭을 制限하거나 國際去來 특히 開發途上國의 國際去來 및 經濟發展에 不리한 影響을 주는 特定の 慣行이나 合意를 禁止하고 있다.

④ 同會議의 “技術移轉에 관한 準則”은 아직 最終案이 確定되지는 아니하였지만, 回收條項, 附帶約定, 販賣 또는 代理權의 獨占, 獨占的 去來, 價格固定, 調查研究, 職員使用, 改造, 輸出, 特許共有 또는 交叉라이센스 約定, 公開 등에 대한 制限과 같이 開發途上國에 不리하다고 看做되는 技術移轉에 관한 一定한 制限的 慣行을 規律하고 있다.

(2) 外國人 財産의 國有化와 補償

① 傳統國際法上の 既得權尊重主義에 의하면 外國人 財産에 대한 國有化에는 公共의 目的, 無差別, 適法節次와 迅速, 有效, 충분한 補償의義務가 수반된다.

② 그러나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開發途上國들에 의한 外國人財産 國有化 事例 154件的 補償에 관한 國際聯合 多國籍企業센터의 報告書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경우 財産의 市場價格을 適用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報償妥結에서도 特정한 算定方式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支拂方法도 대부분 補償金의 据置支拂을 행하였고 据置期間 以前에 支拂하는 때에는 相當額을 控除하는 事例가 많았다.

(3) 外交的 保護權의 行事範圍

① 國家가 自國民의 對外投資와 關連하여 해당 個人에 대하여 外交的

保護權을 行使하여 國際裁判所に 訴訟을 提起하는 경우에는 國內的 救濟 完了의 原則이 適用된다. 예컨대, 해당 會社의 法人格이 消滅한 경우 또는 會社의 設立이 進行中인 경우에는 株主의 本國에 의한 外交的 保護權의 行使가 原則적으로 認定된다(通說).

② 그러나, 企業의 解散이나 破産 또는 操業의 中斷 등 事實上 消滅의 경우, 外交的 保護權의 行使가 許容된다는 國際慣習法은 形成되어 있지 아니하다.

第 4 章 團體 · 機關別 分析

第 1 節 政 黨⁵⁰⁾

公薦「公職選舉候補者推薦」節次에 관하여 現行 政黨法은 각 政黨의 黨 憲에 일임하고 있다. 1980년대 國會議員選舉에 의한 우리 政黨들의 公薦은 政黨의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한다는 原則(1987년의 憲法 第8條 第2項 前段, 1962년의 政黨法 第31條 前段) 또는 “地區黨 代議員大會에서 推薦한다”는 일부 黨憲規定(예컨대, 1987년 5월의 統一民主黨 黨憲 第42條 第3項)과 달리 運營되는 慣行을 보였다. 그 類型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 모델 [上向式 集團決定形]: 이 모델에서는 國會議員選舉候補者는 地區黨代議員大會에서 推薦하고 市·道支部 代議員大會의 提請을 거쳐 政務會議에서 決定한다.

② 제 2 모델 [下向式 集團決定形]: 國會議員選舉候補者는 黨務會議에서 選任推薦하되 黨務會議는 “候補推薦特別委員會”를 設置하여 이를 委任할 수 있다.

③ 제 3 모델 [上向式 單獨決定形]: 地區黨의 意見을 들어 中央執行委員會의 審査를 거쳐 黨總裁가 決定을 내린다.

50) 全在慶, “政黨公薦이 憲政秩序에 미치는 영향”, 法曹, 第39卷 第5號 (1990, 5), 62~83쪽 참조.

④ 제 4 모델 [下向式 單獨決定形]: 黨推薦은 黨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黨總裁가 決定한다.

第2節 宗 中⁵¹⁾

1. 宗中の 構成

中國의 大宗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宗中에는 契約集團的인 特性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것을 제외하고는 본래 상당한 組織體系가 발달해 있었다고 본다

- ① 宗孫과 門長
- ② 宗契 또는 門契
- ③ 宗會 또는 門會
- ④ 有司, 都有司 등의 任員

2. 宗中の 機能

- ① 祖上에 대한 祭祀
- ② 儒敎的 血緣秩序의 豎立·維持
- ③ 吉凶事時의 相互協助
- ④ 子弟敎育

3. 宗中の 法律行爲

宗契 또는 門契 組織을 바탕으로 하는 宗中은 우리 고유의 慣習法上 獨自인 法律行爲의 主體로 認定받고 있었다.

- ① 宗中財産 賣買 事例(1853년)
- ② 宗中財産 抵當設定 事例(1832년)
- ③ 訴訟行爲 事例 (丙戌年)

51) 李鎬奎,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단체적 소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碩士학위논문(1987년, 121쪽), 37~51쪽 (전적조사자료중심) 참조.

第3節 漁村契⁵²⁾

法定漁村契의 상당수는 自然漁村契를 承繼한 것이므로 그 法律關係는 多분히 慣習上의 것으로 이해된다. 남해안 淸州와 通靈 지방의 漁村契들이 所有하고 있는 漁業權의 行使는 주로 水産物의 種類에 따라 대체적으로 4가지 形態로 나뉘어진다

1. 共同利用形態

- ① 1960년대까지 普遍的인 形態, 차츰 消滅
- ② 採取權者, 採取時期, 採取方法 등에 관한 共同規約 存在
- ③ 各 權利者마다 排他的·私的 支配領域 缺如
- ④ 一部 水産物에 대한 個別採取 許容
- ⑤ 採取 物件 또는 收益 자체는 個別 歸屬

2. 團體直轄利用形態

- ① 構成員들의 個別的 採取 禁止
- ② 海域 共同管理
- ③ 共同販賣後 收益分配 또는 共同支出

3. 個人分割利用形態⁵³⁾

- ① 事例稀貴
- ② 各 權利者別 利用區域 規定(돌 등으로 分割區域 公示)
- ③ 分割基準 抽籤

52) 李德勝, 權利能力 없는 社團財産의 法的 性格에 관한 考察, 大邱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碩士學位論文(1984년, 66쪽), 21~34쪽 參照.

이 資料에서는 漁村契가 所有하고 있는 漁業權의 利用實態를 調查하기 위하여 淸州와 通靈군 일대의 새마을지도자들을 面談하였다. 이 件 調查對象이 된 漁村契에 自然漁村契도 包含되어 있을 듯 하지만 각 漁村契의 沿革 및 現況 說明이 缺如되어 있어서 확실하지 아니하다. 일단은 모두 水産業法 및 水産業協同 組合法 등에 의하여 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이른바 法定漁村契로 이해된다.

④ 契에 대하여 少額의 利用料 納付

4. 契約利用形態

- ① 契와의 契約을 통해 特定個人이 바다를 利用
- ② 落札 등의 方式에 의하여 獨占的 利用權 保障
- ③ 原契約者는 採取希望者들에게 少額의 利用料를 받고 再契約 締結

53) 이 건 조사에서 처럼 공동소유물의 개별적 분할이용이 아닌, 특정 수산물에 대한 私所有權에 관한 조사보고가 있다: 李鍾吉, “藪田(미역 밭)私所有權의 史的 考察”, 한국법사학회 정례발표회(1990. 6. 29~30. 한림대학교 의학관 세미나실) 발표요지 참조. 이 조사보고에 의하면, 동해안 광전의 현행 소유(경영)형태는 다음의 세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가型-광전을 관행상의 소유자(누대에 걸쳐 수익, 처분, 상속을 행해 온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신 은행초, 천초, 성계 등 1종 공동어업장의 수익배분권을 포기함

나型-어업권을 갖는 어촌계원이 조를 짜서 공동으로 광전을 관리, 수익함(혹산도 형태). 이 경우, 藪主와 非藪主 간의 분쟁 계속

다型-광전이 소유권의 객체로서 절대 보장되며 도지, 매매, 상속 등에 의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위의 어떠한 형태에 속하든지 간에 동해안의 어촌에서는 공히 地先漁場(연안공동어업구역내)의 광전에 대해 “00네 미역밭”, “00네 돌”이란 호칭으로 私所有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조사보고에서처럼 이러한 표지가 소유권 표지인지 아니면 “계속적 이용권”의 표지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해안의 울진군 거일리에서 관찰되는 “짬” 행사권 또는 미역(和布)행사권은 私所有權論과 대조된다.

第4編 現地調査

第1章 地域別 調査

第2章 市場別 調査

第3章 団体・機関別 調査

第4編 現地調査

第1章 地域別 調査

第1節 村落地域

I. 濟州道

1. 調査計劃

- ① 調査特性：村落地域 廣域 豫備調査
- ② 調査地域：北濟州郡 및 南濟州郡 일대 集姓村 및 土俗部落
- ③ 調査期間：1991년 4월 22일 ~ 4월 28일
- ④ 調査目標：濟州道 傳來의 慣習法 探索 및 地域 特異性 규명
- ⑤ 假 說
 - ㉞ 濟州道 傳來의 慣習法이 상당부분 斷絶되었다.
 - ㉟ 濟州道 土着社會에 殘存하는 慣習法은 陸地의 그것과 다르다.
- ⑥ 調査項目：慣行 및 慣習法 全般에 걸친 調査項目을 設定하는 대신 이 調査가 初期의 豫備調査라는 점, 그리고 濟州道의 傳統社會는 상당히 閉鎖的이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諸項目들만을 調査項目에 編入시켰다.
 - ㉞ 基礎調査項目：마을 家口數·被面談者의 人的事項
 - ㉟ 一般調査項目：마을 共同規約·契
 - ㊱ 個別調査項目

- ㉠ 法的紛爭의 解決方式
- ㉡ 信義誠實·事情變更
- ㉢ 共同財産管理·用水權·相隣關係·名義信託·擔保
- ㉣ 過失相計·違約金·保證·危險負擔·노름빚
- ㉤ 約婚者의 權利義務·事實婚 當事者의 權利義務·夫婦間 家事代理權·離婚慰藉料·子女養育·扶養·宗親會·相續

㉦ 調査方法

㉦ 調査對象 部落을 직접 訪問한다.

㉧ 老人亭, 마을會館, 里長, 새마을指導者, 婦女會長, 青年會長 또는 인근 가게 등을 찾아 提報와 面談에 適當한 人을 推薦받는다.

㉨ 該當部落의 住民 중 高齡者로서 比較적 記憶력이 明確한 提報者 1명 내지 3명과 面談한다.

㉩ 質問은 開放式으로 한다.

㉪ 調査用 設問紙는 따로 印刷하지 아니하고 調査員들이 調査項目을 메모하여 이를 토대로 問答式으로 質問하고 記錄한다.

㉫ 調査員은 言語確認의 原則, 逐語의 原則, 具體性의 原則을 遵守한다.

㉬ 調査員은 本人의 既存知識이나 觀察·傳聞을 통해 새로 認知한 事實을 별도로 표시하여 記述한다.

㉭ 各 項目別 調査에 있어서는 現在의 狀況을 먼저 묻고 다음에 過去의 狀況과 沿革을 묻는다.

㉮ 質問時 가급적 法律用語를 피하고 口語體를 使用한다.

㉯ 調査責任者: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2. 調査經過

(1) 現地諮問

㉰ 土着마을과 集姓村의 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濟州鄉校의 漢學講師 吳文福 선생과 韓國家庭法律相談所 濟州支部 오욱화 幹事에게 諮問하였다. 吳文福 선생은 애월읍 수산리에 濟州道 土俗的인 鄉約이 전해지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러한 諮問結果 選定된 마을은 다음과 같다

㉱ 山村

- 조천읍 선흘리(安氏)
 덕천리(金海 金氏, 약 260여년전 設村, 제일산골, 火田마을)
- 구좌읍 송당리(광산 金氏, 犯罪 없는 마을)
- 한림읍 금악리(姜氏)
- 한경면 조수리(吳氏, 조氏, 朴氏, 金氏, 甕器村)
- 애월읍 상가리(梁氏, 卞氏)
 봉성리(晋州 姜氏)
 광령리(光令鄉約 保有)
- 남원읍 한남리(玄氏)
 수망리(玄氏)
 신예리(梁氏)
- 표선면 自然民俗村
 토산리(慶州 金氏, 光山 金氏, 半農半漁村)
- 성산읍 삼달리(姜氏)
- 안덕면 창천리(朴氏, 犯罪 없는 마을)
 동광리 · 서광리
- ㊤ 漁 村
- 대정읍 신도리(奧地)
 인성리(鄉里規約 現存)
 상모리 모슬포 상모리(漁村契)
 고산리(漁村契)
- 서귀포시 월평리 (里事務所에 海女作業規約 保管)

② 濟州道の 慣習調査에 관한 方法論에 관하여, 濟州大學校 法政大學 韓三寅 教授에게 諮問하였다. 韓教授는 濟州道の 家族慣習에 관한 調査方法과 評價 그리고 慣習法 調査에 관한 研究協力の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提示하였다. 이 調査의 項目은 다음과 같다⁵⁵⁾

㉞ 婚姻 : 中媒, 定婚, 이버지

55) 이 調査結果는, “濟州道の 家族慣習에 관한 研究(1)”이라는 標題下에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29輯 人文·社會科學編(89~120쪽)에 收錄되어 있다.

㉔ 分家：長子分家(박거리, 안거리)

㉕ 債務의 承繼：單純承認, 관심制度

㉖ 祭祀相續：分擔制 祭祀

㉗ 財産相續：出家女の 財産相續權 否認, 生前處分에 의한 分財, 被相續人 生存 중에 相續財産의 分割을 指定하는 方法에 의한 分財, 法定相續에 의한 財産의 分配, 遺産分割의 時機·節次, 均分主義

③ 宗中 또는 門中の 組織 및 財産管理에 關하여 일반적인 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梁氏宗會總本部 梁龍海 副會長에게 諮問하였다. 諮問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㉘ 宗中 또는 門中の 名稱은 집안마다 다르다. 과수회, 宗門, 宗親會 등의 名稱을 사용하기도 한다.

㉙ 宗中 또는 門中은 各 계과나 지과별로 細分되며, 各 계과나 지과들은 “제월전” 이나 “소제전” 등을 관장한다.

㉚ 親族相續에 關한 規範은 各 집안별 口傳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㉛ 宗中과 宗員 間에 財産을 둘러싼 不和가 가끔 있다.

㉜ 濟州道를 대표하는 高씨, 梁씨, 夫씨 大宗中の 財産은 3姓氏가 協力하여 1921년 12월 三姓祠 財團을 設立하였고 여기서 宗中財産을 管理한다. 1966년 8월에 設立登記를 한 이 財團은 三姓始祖의 尊崇奉祀와 教育機關의 設置 및 기타의 育英事業과 財團維持에 필요한 收益事業 등을 修行한다. 1974년, 1978년 및 1982년에 걸쳐 改正된 이 財團의 定款은 總則, 會員, 任員, 總會, 理事會, 財政, 社務局, 補則 등 全8章 34個 條文으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이 財團의 梁成鎭 事務局長의 설명에 따르면 任員選出과 關하여서는 任員을 3姓 中에서 3명씩 選출하고 理事長도 順番制로 하는 慣行이 있다. 이 財團에서는 3姓始祖의 出現說話와 關련이 있는 이른바 “三姓穴”을 觀光名所로 造成하여 收益을 올리고 있다.

(2) 調査協力

現地調査員으로 濟州大學校 法學科 4학년 高聖恩, 文柄哲, 金京淑, 朴庚淑이 參與하였다. 金京淑은 文獻資料의 調査와 蒐集에 助 力하였고, 朴庚淑은 일부 마을조사를 맡은 外에 調査責任者를 爲해 사투리통역을 擔當하였다. 法學科 金美淑 助教는 調査員 選定에 助 力하였고 資料蒐集에도 助 力하였다.

濟州大學校 圖書館 金宗九 선생과 康日好 선생 그리고 같은 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강영순 선생은 資料調査와 蒐集에 협력하였다. 宗親會關係 資料 蒐集에는 高氏宗門會總本部 高龍海 事務局長, 그리고 夫氏恪公系宗親會 夫昌玉 會長이 협력하였다.

濟民日報 文化部 허영선 차장은 調査 및 資料蒐集과 관련된 인사들을 조사팀과 연결시켜 주고 각 部落에 대한 事前情報를 提供해 주는 외에 現地調査에 필요한 諸般 支援을 맡아 주었다.

(3) 調査員 教育 및 評價

각 部落別 現地調査에 들어가기 전에 調査員 전원을 소집하여 慣習調査에 관한 全般的인 윤곽을 설명하고 각자 맡을 부락들을 분담한 후에, 각 調査項目의 意味를 分說하고 조사기념품 전달요령, 질문요령 등을 주지시키고 蒐集이 필요한 關係資料目錄을 일러 주었다.

當日の 調査가 끝나면 該當 調査結果를 점검하고 調査時의 의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 다음날의 活動指針을 전달하였다.

3. 調査內容

(1) 北濟州郡

1) 朝天面 善屹里

提報者 : 오태권 (남, 76세, 2633번지)

강이순 (여, 67세, 1295번지)

박경일 (여, 57세, 1111번지)

調査者 : 全在慶

① 마을共同規約

㉞ 종래 鄉會 運營, 尊長의 意見을 重視하였음. 問題人物에 대하여는 '덕석거리'를 행하였음. 근래에는 이러한 事例 없음.

㉟ 私的紛爭에 대하여는 주변의 설득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鄉會에 回附하지 아니하였음.

② 마을共同財産

㉞ 共同牧場契

㉟ 目的 및 所有關係 : 소사육을 위한 牧場地 共同所有(70여정보). 總有關係. 共同名義로 登記. 전체 構成員 同意時 賣買 可能

㉠ 構成員：예전에는 가구마다 소를 사육하였으나 현재는 50여호 정도 加入(현재 선흘1리는 150여호)

㉡ 運營：草地造成은 共同作業, 費用은 頭數當 分擔.
草地管理는 當番式으로 組를 짜서 행하며 일지 기록.
放牧 開始는 일제히 實施, 放牧 終了는 각각 실시.

職制로는 契長을 두며 일년에 1회 總會, 投票權 委任은 없음.

㉢ 山林契：冬栢동산

㉣ 웃山林契와 下山林契로 構成

㉤ 폐목 採取

㉥ 伐採許可 얻어 同時 採取後 자기가 作業한 몫을 가져감

㉦ 各契：주로 門中 單位로 다음의 契 또는 점을 運營

㉧ 대성契 (천막)

㉨ 신진契 (상여, 천막)

㉩ 소방상契, 화단점 (상여)

㉪ 쇠괴점 (쇠괴)

㉫ 제기점 (가마, 그릇)

㉬ 검질契 (검질)

㉭ 그릇契

㉮ 장막契

㉯ 물利用：봉천수

㉰ 빗물을 받아 두는 웅덩이의 물을 生活用水로 使用

㉱ 順番制 實施

㉲ 相隣關係：담장 붕괴시 양측이 共同築造 事例

㉳ 품앗이：‘수늘엄’, ‘수늘멍’ 또는 ‘수누렁’(최고 50명까지 참여)

㉴ 相計：‘애기대기’

㉵ 辨濟：‘애워불기’

㉶ 家 事

㉷ 中媒：聞婚

㉸ 婚需：富者의 경우 밭 한 떼기, 보통은 이불 한 채

㉹ 新房風習：1950년대 이전에는 신부집에서 따라오는 이, 新房에서 같이 잤음.

㉔ 離婚：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는 현재보다 離婚率 높았음.
離婚時 財産分割 거의 없었음.

㉕ 相續은 父母의 裁量事項. 遺言 없었을 경우 一家間 妥協

2) 舊左邑 上德泉里

提報者：金正彩 (남, 62세, 1187번지)

김순화 (여, 61세, 1230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마을 共同規約

○ 종래 鄉會 運營：리장(註：이곳에서는 누구나 里를 ‘리’로 里長을 ‘리장’으로 발음)이 座長을 모시고 마을會議 進行. 산에 불을 지르는 사람, 동네에서 싸우는 사람 등에 관한 議論 및 決定. 現在는 部落總會로 名稱 變更

② 共同牧場

㉔ 이 부락 20여호중 4호만 제외하고 전원 가입

㉕ 신규 전입자도 집과 땅 所有하면 입회 가능

㉖ 외방 사람들의 소도 입장 가능：1마리당 10만원 정도 납부

㉗ 현재 입회비 40만원. 해마다 비료값 추가

㉘ 탈퇴시는 입회비 돌려받지 못함

㉙ 순번제로 각 가구가 초지 관리(하루2~3번 순찰, 외방사람은 불참)

③ 田의 公示：近代式 登記制度가 施行되기 이전까지는 地番制度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특정한 田을 중심으로 그 田의 所有者를 基準으로 하여 “甲의 동쪽 田” 또는 “乙의 서쪽 田”과 같은 방식으로 土地 등을 特定하였음

④ 賭 地

㉔ 불모지(생땅)를 대상으로 목초를 갈고 경작하거나 머두리(돌무더기)를 치우고 경작함

㉕ 4년 간은 무상 경작

㉖ 그 이후 소출의 3분의 1을 땅 주인에게 지급

3) 舊左邑 松堂里

提報者：高汝鳳 (남, 73세, 1366번지)

김영자 (여, 43세, 1480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自治組織

㉞ 里民總會

㉠ 沿革：종래 향회 운영. 일제초부터 이러한 명칭 대신에 ‘리민회의’라는 말 쓰여지기 시작하였음. 일제는 때로 각 마을의 尊長들을 면사무소에 소집하기도 하였음.

㉡ 運營：마을에 공동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리장이 향회 또는 리민회의에 부쳐 그 결과에 대해 존장의 추인을 받았음. 존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다시 결재하는 형식을 취하였음. 일제는 이러한 운영을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였음.

㉢ 懲罰：존장의 下命에 거역하거나 문제를 일삼는 사람에 대하여는 존장이 불기를 치도록 명하기도 하였음

㉣ 其他 組織

㉠ 婦女會：자체 기금 형성. 놀이계, 그릇계 및 상조회 등을 관장. 경노효친 행사, 마을청소, 폐품수집, 명절봉사, 빈민층 학비보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老人會, 青年會

② 共同牧場：牧場組合

㉠ 沿革 및 所有關係：원래는 牧場을 東場과 西場으로 나누어 가운데 성벽을 쌓고 순번하면서 축산하였음. 이는 部落所有가 아니라 個人所有였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모두 國立牧場으로 轉換시킴. 國家에서 經營을 하다가 적당하지 않게 되자 이것을 個人에게 委託하기도 하였음. 제3공화국 때에는 里有地들이 郡有化되었음(註：變遷內譯不明).

현재 목장조합은 畝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외에 개인 땅을 조합소유로 구입하여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음(註：규모미상). 현재의 개인소유 목장지들은 외지인들에게 거의 다 넘어가고 다른 마을도 9할 이상이 부락소유목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特性 및 構成：이 지역의 共同牧場은 마을의 共同財産이 아니라

각 組合單位로 所屬 組合員들의 合有 또는 賃借地의 占有임. 이러한 牧場 組合은 인근의 각 자연부락 단위로 1개씩 있고 셋송당에는 2개가 있음

㉔ 셋송당 第2組合의 例: 1990년, 郡有林을 賃貸하여 出범. 個人牧場을 保有하고 있는 사람은 加入資格 없음. 현재 所屬 家口數는 72가구. 家口當 12만원씩의 分擔金 출연, 共同設置作業 遂行. 組合長과 總務 아래 監視人 2명을 두고 있음.

③ 家事: 婚需

㉕ 20년전까지는 혼인시 예단 또는 예물 없었음. 예물로는 반지 정도.

㉖ 요즈음은 예단 보냄. 예물은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돈을 쥐 하게 함.

4) 舊左邑 東·西金寧里

提報者: 이근만(남, 73세, 서김녕 1001번지)

김병두 母(여, 82세, 동김녕 1069번지)

調査者: 문병철

— 現在家口數: 1,000

① 慣習調査各目

㉗ 組 織

㉘ 漁村契: 漁村契가 組織되기 전에는 私人이 所有했던 구정어공장(소라공장)에서 구정어알(소라알)을 간절여 보관했다가 商人에게 팔았다. 약 20년전부터 海女와 漁夫로 구성되는 名目上 漁村契가 構成됐다. 漁村契의 共同財産인 共同漁場인 경우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동김녕·서김녕이 각각 따로 共同漁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서김녕리, 전부같이 管理했다. 그러다가 뱃바다(뱃치보다 조금 큰 어류가 잡히는 해역. 물살이 무척 센)를 基準으로 동쪽은 동김녕리공동어장, 서쪽은 서김녕리공동어장으로 區分하였다. 각 漁場 海女들은 자기네들이 採取한 것만을 팔아서 共同資金으로 이용하고 있다. 海女들은 자기네 共同漁場에서 말고는 다른 共同漁場에 가서 採取 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1년에 일정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내에 한해서 각 共同漁場 사이의 일정공간에서는 물질을 하게 한다.

㉙ 宗中: 과거에는 交通上 問題로 시간상 애로점이 많았기에 시제(10월에 지내는 제), 묘제(3월에 지내는 제)로 나눠 제를 지내기도 했음

데 보통은 시제가 많았다. 5~6대까지는 묘제를, 그 이하인 경우는 시제를 지낸다. 親族會規範을 어긴 자에 대해선 집안유지나 그 집안사람이 모여 訓戒. 親族會 規範自體에 紛爭이 있을 때는 親族간에 원수로 지낼 필요가 없다해서 서로 양보.

㉔ 社會 經濟

㉕ 民事

a) 物 權

○ 相隣關係 : 과거 김녕리에도 축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축담을 헐었을 때는 그 담을 무너뜨린 자가 새로 세우는게 원칙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밭주인이 세웠고, 남의 가축이 밭의 담(축담)을 쓰러뜨린 경우에는 대주가 다시 세웠고,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放牧時 번갈아 가면서 牛馬를 監視하였다.

b) 債 權

- 過失相計 : 상호간 차액이 많지 않으면 그냥 놔둠.
- 損害賠償 : 소, 말이 남의 農作物에 被害를 줬을 때는 被害當時를 基準으로 해서 一定量을 計算해 놓은 다음에 나중 收穫後에 그에 합당하게 갚았다.
- 違約金 : 約束不履行時 되돌려 받지는 못했으나 극히 예외적으로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긴 했다.

㉖ 家 事

a) 親 族

○ 婚姻 : 約婚 후에 시부모와 같이 사는 등 結婚한 者와 同一하게 生活했다. 살다가 離婚하는 경우에 대부분 慰藉料를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는게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일부에선 夫婦가 合議에 의해 어머니가 일부 기르는 경우도 있었다.

○ 婚姻外의 子 : 後妻의 자식인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長孫으로 看做하기도 했지만 '다슴아들'(배다른 아이)인 경우는 제사때 삼혼상도 받지 못하게 했고 財產도 相續해 주지 않았으며 집안어른에게도 인사하지 못하게 했다.

b) 相 續

- 相續分 : 長子가 祭祀, 名節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에 總財產의 반

이상을 주기도 했다. 長子が 있긴하나 次子が 扶養을 하는 경우엔 相續問題는 兄弟, 父母들이 合議에 의해 決定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長子는 父, 次子는 母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식이 많을 경우에는 財産相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 勞 動

○ 품앗이 : 수눌음(어울음)

지금보다 과거에 더 많이 행해졌는데 한때는 동네끼리 한 적도 있었다.

② 傳說·說話·民謠 目錄 : 뱀이야기

③ 洞祭·堂祭

㉡ 따제귀신(뚝제귀신=돼지귀신=김녕리를 지키는 할아버지)이라 해서 과거에는 집집마다 돼지, 말, 소 등을 길렀는데 약 70~80근하는 돼지를 잡아가서 이웃, 동네, 마을 등의 평안을 기원했다. 김녕리에서 시집간 여자도 그 시집간 곳에서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기원한다고 전함.

㉢ 성쇠기堂 : 정월, 7월, 9월에 밥과 국만 해서 섬김.

㉣ 일리기堂 : 어린아이를 나면 잘키워 달라고 기원했는데 7일날만 아녀자들이 갔다.

㉤ 큰堂 : 집안에 육지에 간 자식이 있는 경우 아녀자들이 잘되게 해 달라고 기원

* 해신제 : 해녀들이 미역, 톳, 천초 등을 해녀질(물질)하는데 있어 1년에 한번 3월말이나 4월초에 해신제를 지냈다. 그 기간 얼마전부터는 해물을 채취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어부들인 경우는 선주로 하여금 1년에 한번정도 선당신에 대해 제찬(밥, 반찬...)을 마련해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즉 어부는 어선마다 그리고 해녀들은 동, 서 따로 해신제를 지냈다.

5) 翰京面 今樂里

提報者 : 김경숙 (여, 41세, 1882번지)

김축생 (여, 43세, 1880-2번지)

朴南璣 (남, 56세, 1912번지)

調査者 : 고성은

① 事前調査事項

㉞ 現在家口數：약304가구

㉟ 人口數：1100여명

② 慣習調査各目

㉞ 組織

㉟ 마을總會：마을 공동문제가 발생하면 總會에서 決定되며, 마을 어른들의 발언권이 매우 강함.

㊱ 各契：갑장계, 그릇계, 천막계, 농기계구입계 등 존속. 각 조직의 회장은 운번제로 돌아가며 맡으며 意思決定은 계원의 합의로 決定하여 집행함. 자체내에서 懲戒하는 일은 거의 없고 경고하는 정도임.

㊲ 司法：명석말이 (도둑질을 한 자에게는 이 벌을 주었음)

㉟ 社會·經濟

㉟ 民事

a) 共同牧場：‘금당목장’이 있고 100명으로 구성된 組合이 있음. 組織은 組合長, 副組合長, 監事, 總務 및 理事등 14명으로 管理者를 構成함.

중요사항은 理事會 및 總會에서 決定·執行함. 각 組合員은 두 수알(출값; 소먹이)값을 1인당 6,000원정도 내야 하며, 소관리인에게 賃金을 支拂하기 위해 一定額의 會費를 支拂해야 함.

b) 물利用：‘병데물’이라는 작은 연못 정도의 물이 있어 牛馬 給水場으로 사용한다. 가뭄이 심한 경우에는 인근 조수리 주민들까지 찾아오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반이상의 물은 사용하지는 못하게 함.

c) 相隣關係：담이 무너진 경우 넘어진 쪽의 소유주가 돌담을 다시 세움.

㊱ 家事

a) 親族

○ 分家：독립된 주택에서 살기도 하지만, 같은 울타리 안의 旣 宅에서 夫婦생활이 이루어짐.

○ 扶養義務：長男이외에는 奉養義務를 지지않고 父母 스스로 살아감.

b) 相續分：제월전(제사를 봉양하기 위해서 마련한 땅)은 長男

에게 물려주고 딸에겐 거의 相續이 없음. 주는 경우에도 動産으로 물려줌.

㉔ 勞 動

○ 두레(出力) : 친분있는 사람끼리 10여명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일을 도와준다. 주로 친목계를 중심으로 출력나간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나갈 경우 하루치의 노임을 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다음부터는 그 사람 집안일을 돌봐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조직에서 탈퇴시키는 경우도 간혹있다.

㉕ 參考事項 : 4·3사태이후 제일 늦게 복구된 지역이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의대로 구획 분할하여 기존의 토지를 차지해 버렸음. 일부는 합의를 봐 원주민이 찾기도 하였음.

6) 翰京面 高山里

提報者 : 조창익 (남, 60세, 2826번지)

김용한 (남, 56세, 2763번지)

調査者 : 고성은

— 現在家口數 : 1,500여호

① 組 織

㉖ 漁村契 : 漁村契는 과거에는 그 명칭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촌계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과거는 물질(해녀질) 나가서 얻은 것은 전부 팔아 자기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웃마을인 용수리에서는 □(툇)은 공동재산으로 팔아서 수익금은 공동을 위해 사용했고 툇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가(각자가) 팔아서 사용했다. 과거의 어촌계는 해녀조직이었다.

㉗ 門中會 : 과거에는 엄격하게 운영됐다. 종손과는 다른 개념인데 총상(代數가 가장 위인 자)이 제일 윗자리에 앉았고 윗자리에 앉은 만큼 강했다. 문중회운영규범에 관해서는 거의 모두가 윗사람 말에 따랐기 때문에 紛爭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운영규범을 어긴자에 대해서는 매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

② 社會·經濟

㉘ 債 權

㉙ 損害賠償 : 가축을 방목한 탓으로 남의 밭에 가서 농작물에 被害

를 준 경우 그 被害額에 따라서 배상을 가끔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㉔ 不法給與 : 녀동백이(웃놀이)가 노름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많았다.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받는게 원칙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에는 이것도 정당하게 돈을 꾸게 되어서 적정이자를 붙여 물기도 했고 돈이 없을 때에는 토지를 강제로 팔아버리기도 했다.

㉕ 家事

㉕ 親族

○ 婚姻外의 子 : 後妻자식인 경우에도 本妻자식과 相續權이라든가 모든 權限이 동등했고 本妻자식이 後妻자식보다 늦게 태어나는 경우에 먼저 태어난 자식을 長子로 여겼다.

결혼시 어머니가(여자측에서) 데려온 자식의 경우, 이름하여 ‘머슴아들’인 경우에는 그에게 財産을 相續해 주지도 않았고 설령 그가 本妻자식보다 나이가 위일지라도 그를 아주 천하게 생각해서 戶籍에도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사때 삼혼상(제사때 맨처음 집사에게 술을 받아 건네주는 걸 초혼, 두번째를 아혼, 세번째를 삼혼이라 했다)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집안어른에게도 인사조차 못드리게 했다. 20~30년전 부터는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는 한, 나이에 따라 장자로 여겼다.

㉖ 相續分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여자에게도 조금씩 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㉗ 勞動

○ 품 : 수눌음(품앗이)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해에 갚지 못하면 이듬해에 갚는 경우도 있었다.

③ 習俗規範(영등굿) : 음력으로 이월 보름에 신방(무당)과 함께 바다에서 해녀가 영등할멈이 온다고 하여 할망울 때 서답(빨래)도 (나쁜 액이 낄다고 해서) 하지 않았고 해녀들은 영등할멈에게 자기네가 바다에서 물질(해녀질; 소라등을 채취하는 일)을 할 때 무사고와 다수확을 기원했는데, 영등할망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영등할망으로만 알고 있다.

提報者：朴坪林 (남, 71세, 2947번지)

朴昌憲 (남, 52세, 3167번지)

調査者：박경숙

① 事前調査事項

㉞ 行政區域變遷：운신동 → 광령 1852 → 광령2리 1919[장전동(진발동네), 자중동(자중이) 포괄] → 광령리 1950(合理. 地方自治法施行令)

㉟ 現在家口數：90여호

② 慣習調査各目

㉞ 組 織

㉟ 自治組織：鄉長－里長(경민장)－書記(해서원)－有司－都監

향장은 마을에서 나이가 있고 지모(지혜)가 있는 사람이 한다. 향장을 뽑을 때는 마을 주민들의 구두호천(말)에 의해 선출했다. 경민장(이장, 구장)은 어떤 일이 있어 그 일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선 향장에게 가서 의견을 묻고서 후에 주민들의 다수결로써 결정했다. 지금도 이 향장은 남아 있지만 그 위세는 예전보다 매우 약해졌다. 지금은 이장밑에 開發委員長이 있어 대부분 이사람한테 가서 논의를 한다. 開發委員長은 마을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나이에 그렇게 구애받진 않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추천된다.

㉟ 契

a) 白米契：쌀같은 곡식이 귀하었기 때문에 큰행사나 喪이 났을 때는 계원들이 차례차례로 쌀을 내어서 그 쌀을 모아서 밥을 하였다.

· 공헌(회장)；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가장 윗사람으로 추대해서 예의를갖추었다.

· 소임(총무)；계에서 쌀을 받는 일들을 하였다.

b) 좁쌀계：큰일이나 상이 났을 때 계원들에게 조금씩 좁쌀을 받아다가 떡을 함. 여기에도 공헌과 소임이 있었다.

c) 화단계：상여를 빌려주는 계. 회장은 일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 임원은 약 30명. 하루의 식금(대여비)은 약 3,000원 정도.

- d) 솟계 : 가마솥 빌려주는 계. 계원은 약 30명. 하루 빌려주는 식금은 15,000원 정도.
- e) 그릇계 : 계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는 그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
- f) 牧場組合 : 80년전쯤 만들어짐. 땅은 개인 소유인데 여러사람의 땅을 모아 계를 만들어 운영. 60년전쯤에는 7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40명쯤이 계를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 회장은 2년에 한번씩 계원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데 두(소한마리)당 하루에 200원씩 낸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또는 같은 마을의 사람이라도 원래의 계원이 아닌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의 계원이 아닌 사람이 자기 소를 다 팔던지 다른 쪽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탈퇴했을 때 자기의 權利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그냥 둘 수도 있다. 현재는 그 權利를 팔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많다.

㊤ 紛爭解決

마을에 어떤 紛爭이 생겼을 때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는 면장격인 호장(풍헌)이 직접 와서 해결을 보았다. 마을 주민들도 이들의 말에 대체로 잘 따랐고 만약 호장(풍헌)이 해결을 못했을 때에는 제주목(제주도지사)한테 가서 해결을 보았다.

㊤ 社會・經濟

㊦ 民事

물利用 : 보통때는 우자뒤편(우영밭, 두결밭)에 물통을 파두었다가 죽은 물(빗물)을 받아 먹었고 제사때에는 거육대물(산물)을 먹었다.

㊦ 家事

- a) 婚需 : 종래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돼지, 쌀, 닭, 술등을 잔치에 쓸 수 있도록 직접 물품으로서 몇 바리씩(어느정도) 물건으로 실어다 주었다. 신부집에선 이불정도만 혼수로서 해갔다.
- b) 離婚 : 慰藉料는 없었다(일제시대까지). 만약 아들이나 딸이 이혼했다면 그 집은 중급 또는 하급으로 계급이 내려갔다(조선조).
- c) 相續分 : 조상전은 큰아들에게만 상속을 하였다. 父母재산은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상속해 주었다. 딸에게는 父母가 잘사는 경우에만 약간씩 주었다.

㉔ 通過儀禮

a) 조선조 때에는 남자애기가 태어나면 구실(큰일꾼)로서 세금을 냈다. 선배(선비, 양반)의 경우에는 피(깨)석대(세되)이고 중급, 하급인 경우는 땀나무나 닭을 세금으로 냈다.

b) 검은 쇠(소)가 나면 관청에서 약경이 調査나와서 관청의 반찬용으로 돈도 안주고 끌고가 버렸다.

㉕ 參考資料：光令里 鄉約

光 令 里 鄉 約

1962. 9. 21

第1章 總 則

第1條 本 鄉約은 本里行政을 法令의 範圍內에서 리민의 自治로 行하게 함으로서 鄉土發展과 地方住民의 民主的 發展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광령1리에 대한 公共事業 및 法令에 대하여 委任된 사무를 처리한다.

第3條 本 鄉約은 光령1리내에서 適用된다. 區域은 自然의 部落으로서 宗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 本里의 事務所는 鄉舍 또는 형편에 의하여 이장사택에 둔다.

第5條 本里의 區域內에 적을 둔 자는 물론, 3개월이상 居住를 요하는 자는 본리의 리민으로 한다. 단, 개인으로서 3개월이상 居住時는 이장에게 寄届를 提出하여야 한다. 리민은 法令 또는 鄉約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리의 財産과 公共施設을 公用하는 權利가 있고 리내의 모든 負擔을 分擔하는 義務를 진다.

第2章 執行機關

第1節 里長

第6條 리장은 法令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리민의 選舉에 의하여 選任 또는 推薦된다.

第7條 리장의 任期는 法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만2년으로 한다. 단, 選舉에 의하여 1차 重任될 수 있다.

第8條 리장은 본리를 統轄하고 代表한다.

第9條 리장은 다음과 같은 사무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指示 혹은 下達된 사항
2. 본리의 經費로서 支給할 案件執行과 一般事務處理
3. 리재산과 公共施設을 管理 또는 監督
4. 收入·支出과 會計
5. 證憑書類 및 公文書類를 管理 또는 監督
6. 總會 또는 代議會의 議決에 의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負役·現品の 賦課와 徵收
7. 기타 본 鄉約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한 사항

第10條 리장은 所屬職員인 서기 1인과 급사를 임명하고 指示·統制한다.

第11條 리서기는 리장의 指示와 統制下에 리전체에 대하여 事務를 取扱하며 活動한다.

第12條 본리 12개반으로 나누고 20호를 기준으로 編成하되 17호 내지 23호 範圍內에서 한다. 단, 南竹洞과 沙羅洞은 例外로 한다.

前項의 規定은 사정에 따라서 改編할 수 있다.

第13條 각반에는 반장 1인씩을 둔다. 반장은 이장을 보좌하며 이장의 통제 지시하에 각기 반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각반 단위로 任期滿了前 3일내에 選出하여 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第14條 리장은 미풍양속과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方法대책을 강구하고 懲戒할 수 있으며 特別委員會 또는 團體機關에 위촉할 수 있다.

第15條 리장의 顧問격인 鄉長 1인을 둘 수 있다. 鄉長은 總會에서 選任·推薦한다. 단, 尙장은 리장의 諮問에 의하여 지시할 수 있다.

第2節 代議會와의 관계

第16條 1. 代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規에 違反된다고 認定할 때에는 리장은 이유를 附하고 再議를 요구한다.

2. 前項의 要求에 대하여 再議의 結果 議員定數 3분의 2이상의 出席과 出席議員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서 議決을 얻지 못하면 議案은 廢棄된다.

3. 前項에 의한 再議의 結果 역시 越權이 되거나 法規에 違反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리민總會를 소집하여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다.

第17條 리장의 처사가 違法이라고 인정될 시는 代議會에서 리장의 不信任을 발의하여 리민總會에서 議決할 수 있다. 不信任議決은 戶當 1人을 기준으로 하여 18이상의 出席과 出席人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第18條 리장은 代議員의 助力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전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그 助力을 요구할 수 있다. 前項의 要求에는 公益上 適當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第3節 選舉

第19條 리민인 이십세 이상의 자는 리장의 選舉權이 있다.

第20條 리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의 자는 리장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選舉權과 被選舉權의 年齡 算出은 選舉日 現在로 한다.

第21條 選舉는 任期滿了前 10일 이내에 행하되 選舉日은 代議會에서 決定하며 代議會 議長이 리장의 確認을 얻어 選舉日 10일전에 公告하여야 한다.

第22條 選舉事務를 管理하기 위하여 代議會 議員중에서 5명을 選定하여 選舉委員으로 委囑한다.

第23條 리장候補選定은 選舉當日 總會에서 推薦하되 5명 이상의 同意者가 있어야 한다. 投票의 秘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第24條 選舉는 單記·無記名으로 投票한다.

第25條 當選人은 選舉委員會가 결정하되 有效投票의 多數得點者로 정한다. 단, 得票數가 동점인 경우에는 年長者로 한다.

第26條 當選人이 결정되었을 시는 選舉委員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通知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27條 當選無效 또는 選舉無效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代議會에서 選舉日을 정하고 再選舉를 公告한다.

第28條 리장이 闕位되었을 시 代議會議長은 闕位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케 하여야 한다.

第3章 代議會

第1節 組織

第29條 代議會의 議員數는 16인까지로 하되 地域代表로서 1개班當 각 1인씩과 職能代表로서 協同助合長, 在鄉軍人會長, 再建青年會長, 婦女會長으로 構成한다.

第30條 代議會의 議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第31條 代議會 議員의 任期는 만 3년으로 한다. 단, 職能代表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前項의 任期는 總選舉일로 부터 起算한다. 補選議員은 前任者의 殘餘期限을 在任한다.

第2節 權 限

第32條 代議會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議決한다.

가. 리민總會召集과 리장選舉에 관한 사항

나. 豫算과 決算에 대한 사항

다. 使用料·手數料·里政費分擔金·負役·現品の 賦課와 徵收에 관한 사항

라. 財産 또는 積立 金穀의 設置와 管理 또는 處分에 관한 사항

사. 기타 鄉約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한 사항

前項의 議決은 리민總會時 事後 發表해야 한다.

第33條 代議會는 리장을 助力하는 義務를 지며 勸告 또는 忠告할 수 있다. 法令과 規則에 抵觸되지 않는 한, 리自治에 관한 行政事務를 監視하기 위하여 리장 또는 所屬職員을 出席시켜 答辯을 要求할 수 있다.

으며 書類를 監査할 수 있다.

第3節 會 議

第34條 代議會의 定期總會는 매년 12월 24일과 6월 30일에 소집한다.

總選舉후 最初로 集會되는 臨時總會는 리장이 그 選舉日로 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第35條 代議會 議長은 本人 또는 리장이나 議員定數의 3분의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總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第36條 代議會의 開會, 休會, 閉會와 會期는 代議會 스스로가 정한다.

第37條 代議會는 在籍議員 3분의 2이상의 出席과 出席議員 多數로서 議決한다.

第38條 代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議長이나 議員 3인 이상의 署로 發議할 수 있다. 단, 豫算案의 發議權은 리장이 가진다.

第39條 議長은 書記로 하여금 議會錄을 작성케하고 出席 議員의 姓名을 記載하고 捺印케 한다. 議長은 會議의 結果를 通告해야 한다.

第4節 任 員

第40條 代議會는 議員중에서 無記名 投票로서 議長과 副議長을 각1인 選舉하고 書記 1인과 幹事 若干명을 選任한다. 代議員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한다. 단, 補選議員은 前任者의 殘餘期間을 在任한다.

第41條 議長은 議場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議事를 整理하고 代議會를 代表한다.

第42條 부의장은 議長을 保佐하며 議長의 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다. 議長, 副議長 모두 有故時는 臨時議長을 選任한다.

第43條 書記는 代議會의 事務를 整理한다. 幹事는 선전과 연락 기타 필요사항에 활동한다. 會議의 規則을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44條 代議員은 代議會의 許可를 얻어 辭職할 수 있다.

第45條 代議會는 本 鄉約 또는 會의 規則에 違反된 議員에 대해서는 議員으로서 懲戒를 할 수 있다. 懲戒에 관한 細則은 會議規則에 정해야 한다.

第5節 選舉

第46條 代議員의 選舉權과 被選舉權은 第19條, 第20條를 準用한다.

第47條 代議員의 選出은 第29條에 의하여 地域單位와 職能單位로 행하되 任期滿了前 10일까지에 當選人을 確定하여 반장은 리장에게 報告 하여야 한다. 報告를 받은 리장은 지체없이 代議會議長에게 通告 해야 한다.

第48條 代議員이 缺員되었을 시는 議長은 缺員地域 또는 職能責任者에게 즉시 補選을 要求하여야 하며 그 要求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當選人을 確定하여 代議會議長에게 報告해야 한다.

第4章 會議

第49條 리민總會의 定期總會는 매년 2회, 春秋 제향일 3일전에 集會한다.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代議會議의 決議로서 要求가 있을 때에는 리장은 臨時總會를 소집해야 한다. 總會가 부득이한 경우에 리장의 有故시는 代議會議長이 總會를 소집해야 한다.

第50條 리장이 總會의 議長이 되며 議場內의 秩序를 維持하며 議事를 整理한다. 會議 중에 議長은 臨時議長을 選任하여 代行할 수 있다.

第51條 리민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가. 規約을 制定 또는 改廢하는 사항

나. 決算報告를 承認하는 사항

다. 리장과 所屬職員의 報酬 및 里政費에 관한 사항

라. 法令에 規定된 이외의 使用料·手數料·分擔金·負役·現品の 賦課와 徵收에 관한 사항

마. 리재산과 公共施設에 관한 사항

바. 財政에 관한 사항

사. 본 리가 當事者로 된 訴訟 또는 和解에 관한 사항

아. 리장不信任에 관한 사항

자. 본 鄉約에서 委任된 것과 리발전에 필요한 사항

第52條 리민總會에는 호당 1인 이상이 出席해야 한다. 단, 成人男子가 없는 戶와 불가피한 호에 대해서는 반장에게 委任함으로써 闕을 면한

다.

第53條 總會時는 중간 点名과 최종 點名을 한다. 點名時 不參席者는 關員으로 한다. 不참호에 대해서는 勸員으로서 1일 1당의 반을 徵收한다.

第54條 總會에서 議決할 사항은 議長 또는 代議員 5인 이상이나 里民 15인 이상의 署로서 發議할 수 있다.

第55條 里民總會에서 70인 이상의 出席과 出席人員의 過半數로서 議決한다.

第56條 里民總會에서 提案할 때는 2인 이상의 찬동자가 있어야 議題로서 成立한다.

第57條 會議의 議長은 서기로 하여금 會議錄을 作成케하고 閉會直前에 통과하고 代議員 2인 이상과 議長은 署名하여야 한다.

第5章 財 政

第58條 본 리는 指定한 目的을 위한 基本財産을 設置하거나 또는 金穀 등을 積立할 수 있다. 본 리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59條 본 리는 公共施設의 使用에 관한 使用料와 一 개인의 사정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60條 본 리내에 公共災害 또는 個人에 대한 非常災害가 유할시는 援助할 義務를 지며 특별한 需要가 유할 시는 負役 또는 現品을 徵收할 수 있다. 負役 또는 現品은 金錢으로 代納할 수 있다.

第61條 里民自治事務遂行에 필요한 經費를 年 2반기로 구분하여 支出할 義務를 가진다. 세대당 前반기 나락 3근, 후반기 3근을 納付한다. 단, 形편에 의하여 數시 變更할 수 있다.

第62條 里장은 會計年度마다 歲入歲出을 豫算·編成하여 年도 개시 20일전에 代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代議會는 前項의 豫算案을 年도 개시전까지 議決해야 한다. 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하며 第1 總會 10일전에 폐기한다.

第63條 里장은 代議會의 議決을 얻어 既定豫算外 追加 또는 更正을 할 수 있다.

第64條 본 리 경비로서支給할 案件으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代議會의 議決을 얻어 계속비로 할 수 있다.

第65條 본 리 豫算外의 支出 또는 超過支出에 相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둘 수 있다.

第66條 본 리 出納은 會計年度마다 2회 監査해야 한다.

前項의 監査는 代議會에서 2인 이상의 監査委員을 選定하여 行한다.

第67條 리장은 決算書를 作成하여 일체의 證憑書類를 添附, 第1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6章 生活改善

第68條 우리들의 生活을 革新·簡素化하기 위하여 現代社會에 상응하는 正心을 기르며 婚喪祭에 消費할 物質을 절약하며 리민의 生活安定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69條 道義昂揚과 新生活運動 및 儀禮簡素화와 管理를 再建青年會에 委任시킨다.

第70條 婚姻時에는 簡素化 規定의 範圍內에서 生活必需品에 한하여 取扱하여야 한다.

第71條 葬禮 또는 大小忌에 祭物, 祭酒로서 扶助함을 엄금한다. 단, 祭物만은 친족에 한하여 許容할 수 있다. 金錢 또는 穀物로서 하는 것은 此限에 在한다.

第72條 慶事 또는 祥事に 飲酒시킴을 엄금한다.

第73條 飲酒하여 他人에게 해를 끼치거나 醉精하여 社會秩序를 紊亂케 하는 行爲를 防止하고 經濟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飲酒 및 그 販賣함을 엄금한다.

第74條 리장, 代議會, 再建青年會로 하여금 리민에게 前條를 監視·實踐케하고 前條의 規定을 違反한 자에 한해서는 다음에 의한다.

1. 販賣는 現品을 押收한다.
2. 飲酒者는 罰金 백원
3. 秩序紊亂者는 依法措置

단, 부득이 응치 않는 자는 總會를 소집하고 本人을 출두시켜 施行方案을 강구한다.

第75條 日常飲用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는 자는 罰金 30원을 科한다. 公衆의 飲用에 供하는 淨水에 汚物을 混入하거나 沐浴 또는 세탁 등을 하는 자는 역시 前項과 同一하다.

第76條 야간 10시후 騒音하여 인근에 害를 끼치는 자는 公開謝過를 시킨다.

第77條 農村文庫를 設置하여 晝耕夜讀을 指向하고 文盲退治運動을 展開시킨다.

第7章 附 則

第78條 本 鄉約 改正의 提案은 里長, 代議員 5인 이상 또는 里選舉權者 50인 이상의 贊成으로서 한다. 鄉約改正의 議決은 里長選舉權者 70인 이상의 出席과 在席 3분의 2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第79條 本 鄉約 施行時에 在任하고 있는 里長과 鄉長 또는 代議員은 이 鄉約에 의하여 選任된 자로 看做된다. 그는 殘餘期間 在任한다.

第80條 本 鄉約에 未備된 사항은 慣例에 의한다.

第81條 本 鄉約은 서기 1962년 9월 21일부터 施行한다.

(2) 南濟州郡

1) 城山邑 三達1里(臥江里)

提報者：高萬松 (남, 73세, 721번지)

玄鳳現 (남, 43세, 1204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自治組織 및 規範

㉠ 鄉會 運營

㉡ 姜, 金, 高, 玄, 鄭氏의 5姓만 居住(120여호)하는데, 部落名을 바꾼후 意識的으로 仝民들의 流入을 막아 왔음. 三達이란 지명은 윗대 어른들이 “①朝廷에서는 規律이 중요하고(朝廷莫如爵), ②고을에서는 윗어른을 섬겨야 하며(鄉堂莫如齒), ③세상에 報恩과 百姓을 위하는 것은 德으로 하는 것이다(輔世長民莫如德)”를 生活規範으로 표방하였음에 淵源을 두고 있음(1986년 삼달국민학교 刊行, 三達里誌 參照).

㉢ 沿革：조선조 때부터 “상뒤동산”에서 鄉會 開催. 각 집안 대표

(어른)들이 의견 모으면 可決. 訓長 또는 좌수영이 尊長 역할 수행하였음. 實務는 政民長(里長)이 擔當. 現在에도 ‘포제동산’에서 포제(부락제) 지냄.

② 共同牧場

㉠ 60여년전 각자 出捐金 내 設立. 現在는 組合費 내지 아니함.

㉡ 順番制로 監視.

㉢ 生物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規律 엄격: “마시(말과 소) 도름(당번)은 머리 푼 상주도 해야 한다”는 인식 계승.

2) 南元邑 新禮1里

提報者: 양성운 (남, 75세, 1350번지의 1)

調査者: 全在慶

① 마을특성

㉠ 대표적 集姓村. 300여호 중 6할 정도가 梁氏

㉡ 약 2백여년전부터 他姓 流入

② 自治組織 및 紛爭解決

㉠ 最高齡 男子를 ‘영의뜸’으로 推戴

㉡ 部落民들은 “영의뜸에게 여쭙었느냐”고 확인하는 것이 常例. 里長은 마을共同事務를 영의뜸에게 報告하며 때로는 꾸지람 듣고 다시 處理하는 경우도 있음.

㉢ 部落民 사이의 紛爭은 “領宅”집에서 判가름

㉣ 영덕어른 말이 불쾌해도 수용. 그렇지 아닐 경우, 부락 전체의 따돌림을 당함.

③ 共同牧場: 각 牧場을 輪番制로 使用

④ 契: 이식계는 없었고 천막집, 화단집, 그릇집 등 運營

⑤ 財產關係

㉠ 信義則 重視

㉡ 無效 또는 取消: “설러빌자” 즉 “설러버리자”(거래가 없었던 일로 하자)는 관념 원용(註: 提報者는 “애워버린다”는 말의 의미에 관해 調査者가 質問하자, “설러버린다”와 같은 뜻이라고 답하였음. 조천면 선흘리에서의 提報者의 陳述과 相異함. 原狀回復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처럼

럼 답하였음).

㉔ 地役權 問題 事例 없었음.

⑥ 家 事

㉕ 分家 및 兄弟扶養 : 父母가 살아 있는 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分家하지 못하였음. 父母 死後에는 長男이 次男 이하를 扶養하다가 次男 이하가 結婚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때 살림을 떼어 주고 살 집을 마련하여 分家시킴.

㉖ 相續 : 長男이 전체의 6할 이상을 받고 그 나머지를 次男 이하가 兄弟姊妹 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分配하는 경우가 많았음. 딸은 아들에 대한 相續分이 여유가 있을 경우, 어머니가 시집을 때 가져왔던 밭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음.

3) 大靜邑 新桃2里

提報者 : 이대영 (남, 50세, 3023번지)

調査者 : 全在慶

① 漁村生活與件

㉗ 제주도 西端의 半農半漁村으로서 십오륙년전부터 농업(고구마, 맥주보리, 유채) 所得의 增加와 더불어 漁業쪽에 약간 무관심하다가 郡費 支援을 받아 다시 漁場開發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狀況임.

㉘ 養殖事業은 自然條件이 부적합하여 행해지지 아니하였고 소규모 投石으로 소라서식처를 育成하는 정도.

㉙ 海女作業對象物 : 소라, 전복, 문어, 해삼, 성기(성게)등. 미역은 퇴조.

② 漁村契

㉚ 特性 : 종래의 入漁 慣行을 부분적으로 強化시켜 法規化

㉛ 關係規程 : 水産業法, 水産業協同組合法, 共同漁場管理規程, 漁村 契定款

㉜ 構成 및 規模 : 2리 93명 (남자9명 포함. 남자는 관리자). 里漁村 契는 1, 2, 3리 합하여 形成. 總加入 家口數는 3백여호

㉝ 入漁資格 및 節次 : 漁村契員에 한하여 採取. 事前通知

㉞ 禁漁地域 設定 : 섯바퀴 가며 作業

㉞ 禁漁期間 設定, 産卵期 등을 피하여 ‘해경’(바다개방)

* ‘구정어’(구재기 : 소라) : 4~5년전에는 5~8월 금지
현재는 5월~10월 금지

* 전복 및 오분자기 : 10월~12월 금지

* 해삼 및 문어 : 7월~8월 금지 (자연적 금어)

* 툫 : 8월 및 11월~1월 금지

* 성게 : 自然的 禁漁 이외에는 禁漁期間 없음. 해적동물 취급.

㉟ 慣 行

㉠ 契員 중에 大事를 치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該當家口가 入漁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契員이 入漁를 삼가함.

㉡ 作業을 進行함에 있어서는 管理者들 보다 여자들의 의견을 우선 시킴.

㉢ 漁村契長 : 潛水會員들이 選出. 本人이 중도에 하기 싫어도 잠정 기간 동안 직책수행.

㉣ 潛水會長 : 潛水會員들이 會長의 報酬(手數料)를 정함

㉤ 미역 採取 및 分配 : 각자 採取한 만큼 몫 차지. 약 20년전까지는 管理人들의 몫과 共同作業不能家口의 몫을 때 주기 위하여 ‘해경’ 전날 上中下군 중 상군들 몇명이 作業하여 미역을 採取하였음.

㉥ 漁場賃賃 慣行 : 약 10년전까지 水協과 법정어촌계가 미미할 때 部落에서 툫 어장을 特定人 또는 農事改良俱樂部 등에 賃賃하여 그 收入을 部落經費로 사용. 현재에도 濟州道 管内에 두어 곳 정도 存續.

③ 漁業權紛糾

㉦ 개인들이 경영하는 ‘잠수기선’(일명 ‘해적선’) 문제 : 제1공화국때 부터 이들에게 잠수기 어업권을 부여하여 늘 해안가 주민들과 마찰.

㉧ 禁漁期間 중 또는 禁漁地域에서 잠수기선들이 암암리에 作業하는 경우도 빈발하여 民願의 對象이 되고 있음.

4) 大靜邑 上臺里

提報者 : 정성두 (남, 60세, 2리 3804번지)

이인경 (남, 58세, 3986번지) 어촌계장

고달진 (남, 66세, 3980번지)

調査者：문병철

① 事前調査事項

㉞ 現在家口數：1,500호

㉟ 洞祭·堂祭：바닷가 부근에 담(돌)이 있어,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신방(무당)이 가서 굿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마귀한테 어린아이가 아프면 낮게 해달라고 기원하기도 했는데 해방후 군인들이 파괴해 버렸다.

기우제 형식으로 1년에 한번 부락에서 리장이 대표로 해서 모슬봉(지금의 모슬포 공군기지)에 가서 제를 지낸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② 慣習調査各目

㉞ 漁村契

㉟ 組織：지금은 契員이 280명이나 되나 (과거에도 契員들의 숫자는 정확히 모르나 지금과 대동소이하게 조직이 되어 있었다) 그 중 總代議員이 15명. 契員들을 監視·監督하는 幹事 1명. 會長, 副會長 각 1명씩으로 構成됐다. 물론 이러한 形態는 漁村契라는 名稱을 사용할 때(40년 전)부터이고 그 전에는 이러한 職責은 없었지만 形式的으로 행해졌다.

㊱ 漁村契의 共同財産인 1種共同漁場 問題：거의 海女로 構成되어 있는 일종공동어장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 漁場이 組合長 名義로 되어 있었기에 水協에서 관장을 했고 地域漁村契長 역시 水協長이 任命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選舉制(民選制). 그래서 과거에는 漁村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독자적으로 못하고 반드시 水協과 의논해서 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水協과 對立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契員들이 출원하는 출자금으로 사업이 수행됐기 때문이다.

㊲ 財産(共同漁場) 管理：契員 交代制.

㉟ 紛爭解決

㉟ 마을에 공동문제가 생긴 경우, 상모리 자체를 지금과 같이 세개로 나누어 3개 리장과 유지들이 모여 앉아 타협 결정했고 마을 공동재산을 분배할 때도 이와 같이 하되 현저히 불공평하게 분담된 자에게는 따로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다.

㊱ 계원간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총대로 하여금 會議를 자주

해 서로가 알맞게 調整했다.

㊤ 社會·經濟

㉠ 民事

a) 物 權

○ 마을財産: 각 리마다 里長 責任下에 管理. 일제시대부터 송악목장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긴 수익은 목장조합원만이 분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합원은 일제시대때 가입한 사람에 국한. 가입하려면 돈이나 토지 등을 出捐.

○ 相隣關係: 담(돌)이 무너진 쪽 土地主人이 다는게(다시 쌓는게) 原則.

○ 擔保物權: 當事者끼리 借用金證書에다 家屋, 논, 밭 등을 特定하여 抵當잡혔다 (法的인 形式을 반드시 밟은 것은 아니었음).

b) 債 權

○ 過失相計: 過失相計의 問題에 대해선 意見이 엇갈리고 있었다. 그게 가능했고 실제로 행해졌다고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런건 없었고 나도 갚고 相對方도 갚고 했다는 분도 있다.

○ 損害賠償: 가축이 農作物에 被害를 준 경우 그 被害가 적으면 그냥 넘겼으나 그 被害가 많으면 賠償을 要求하는 경우도 있었다.

○ 不法給與: 노름해서 진 빚도 정당하게 돈을 꾸고 꿇준(빌려준)게 돼 適定利子를 더해 갚았다. 만약 돈이 없는 경우 現物이나 土地 등으로 갚기도 했다.

㊤ 家 事

a) 親 族

○ 離婚: 慰藉料問題는 없었고 離婚인 경우도 書類上 離婚은 없었고 같이 살다가 여자측에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 그때를 사실상 離婚으로 看做했고 그 후 養育問題는 아버지가 맡았다.

○ 事實婚: 婚姻申告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婚姻申告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은 후에야 비로소 申告를 했다.

○ 婚姻外의 子: 婚姻外의 子의 경우에도 本妻의 소생인 자식과 동일하게 相續, 奉祭祀 등의 權利가 주어졌고 後妻자식보다 늦게 태어난 경우 아무리 本妻자식일지라도 後妻자식을 長孫으로 삼았으며 여기에 本妻가

반대할 경우에도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남편말에 따랐다. 그러나 後妻가 데려온 자식인 경우에는 자식으로 看做하지 않고 財産相續 등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허락한 경우는 가능했다.

○ 扶養義務: 父母가 늙기 전에는 안거리(안채)에서 거주하다 자식이 장가가고 나이가 들면 父母는 밖거리(사랑채)로 나가 살았다. 扶養은 대부분 長子가 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次男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b) 相續分: 扶養問題, 祭祀問題 등으로 인해 長孫에게 일단 많은 比率의 財産이 돌아갔고 父母가 거주하던 집 역시 長孫에게로 相續됐다.

㉔ 勞動: 품(수놓음 성행)

5) 安德面 倉川里

提報者: 오문태 (남, 57세, 463번지)

김용진 (남, 27번지) 里長

調査者: 고성은

— 現在家口數: 200세대

— 人口數: 900여명

① 慣習調査各目

㉔ 組織

㉑ 住民總會

㉒ 山林組合契나 開發契는 없고 새마을指導者會로 통합

㉓ 婦人會에서는 '그릇계' 등 각종 계를 組織·運營하고 있고 青年會에서는 '천막계' 등을 組織해서 活動을 하고 있다.

㉔ 開發委員會

㉕ 司法

㉑ 紛爭解決

a) 法的紛爭은 가능한 總會에서 解決

b) 이웃주민들 중 나이 많은 地域有志들에게 부탁하여 和解 또는 仲裁를 했다.

㉒ 刑罰: 동네에서 말썽을 부린 자에게는 낭(나무)에다 묶어 두고 때치거나 '멍석말이'를 했다.

㉔ 社會・經濟

㉕ 物 權

- a) 마을財產(상하창 共同牧場) : 32만평 規模에 組合員 230명으로 構成. 70년대 중반에 ‘特別措置法’으로 7인에게 ‘名義信託’을 하여 管理하다가 91년 名義信託을 解除시켜 個人名義를 消滅시키고 組合員 總員의 名義로 登記시켜 ‘상하창 共同牧場’으로 하고 確定證明을 얻었다.
- b) 물利用 : 가뭄이 심할때에는 어승생이나 금알리까지 물을 끌어다 썼는데 쇠통(물을 가두기 위해 만든 통)을 만들고 보초를 세워 물을 끌어다 썼고 계량기를 몰래 잠궈버려 싸운 사례도 많았다.
- c) 相隣關係 : 지역의 높낮이가 다른 土地所有의 境界인 돌담이 무너지면 높은 지대의 땅임자가 그 무너진 돌담을 자신의 경비로 세웠다.

㉖ 家 事

- a) 離婚 : 요즘보다 과거에 離婚이 더 많았다. 뜻이 안맞거나 거짓중매로(사기의 형식으로) 속았다고 해서 어느 일방 當事者가 離婚을 請求했고, 慰藉料는 거의 안주는 편이었으며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金錢보다는 現物(보리, 조)로 慰藉料를 대신 함. 離婚時 자식을 키우는 쪽은 80%가 아버지쪽임.
- b) 相續分 : 長子에게 제월전을 주어 제사를 봉양하게 함. 딸에게는 재산이 남으면 土地, 動産(소, 말) 등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㉗ 扶助(고적쌀) : 슬픈 일(葬禮式)을 당한 사람에게 ‘고적쌀’을 모아 葬禮費用의 負擔을 덜어주었다. 보통은 親族이 負擔

㉘ 勞動(두레 : 출력) : 班別로 17~20호씩 조를 이뤄 가구당 장정한사람씩 나와 勞動力을 提供해야 하며 여자 55세 이상, 남자 60세 이상은 勞動力提供義務者에서 除外시킴. 勞動力을 提供하지 못한 경우는 ‘闕費’라하여 一定金額(만원정도)을義務적으로 내거나, 음식이나 술을 내며 闕費는 班基金으로 使用됨

② 參考事項

- ㉞ 상창리는 犯罪없는 마을로 指定됨.
- ㉟ 鄉約이 있고 수시로 그 內容을 修正·補完함.

6) 表善面 城邑里

提報者：李東栢 (남, 72세, 679번지)

玄奉珍 (남, 66세, 813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自治組織 및 共同規約

㉞ 新城邑鄉約을 制定하고 鄉會를 運營. 매년 음력 12월 25일에 總會. 각 집의 代表 參席.

㉟ 沿革：조선조에는 정의현과 거리가 멀어 자연히 소소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감의 司法權의 일부를 호장이 行使. 尊長은 “영의뜸”이라고 呼稱하였음. 영의뜸은 實際會議에는 參席하지 아니하였으며 顧問格으로 最終的인 決裁權을 行使하였음. 영의뜸의 命에 거역하는 경우, 마을사람들에 대하여 함구령을 내리고 불복자는 물도 못길도록 하였음.

㊱ 新鄉約의 주요 골자：冠婚喪祭 規律. 포제(마을 안녕 기원) 運營(해마다 세대단위로 추렴). 公園墓地 運營(마을을 7개반으로 나누고 1개반은 남정 30명 内外를 基準으로 하되, 수가 적은 반은 이웃반에서 支援함). 罰則은 없음.

㊲ 紛爭解決：일부는 “공론동산”에서 公論에 붙임

② 집

㉞ 일을 目的으로 구성된 契. 뚜렷한 名稱은 거의 없었음.

㉟ 종래 邑을 밭‘田’字 형국으로 구분하여 동(현재의 반)마다 집을 두었음(예컨대, “웃동네집” 등)

㊱ 利用物件：천막, 제기, 식탁, 가마솥, 식기, 쇠괴(지렛대)

㊲ 運營：年長者를 집장으로 選出. 非契員, 즉 타반 사람에게는 약간의 使用料 徵收. 基金을 形成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큰아들이 權利를 相續하지만, 오래되면 물건이 낡아 물건이 인계되는 경우 희귀.

③ 牧場組合

㉞ 郡有地 賃貸, 東의 영주목장과 西의 모지악목장 運營

㉟ 전체 가구3백여호 중 50~60호 정도 참여

㉔ 임대료는 坪단위로 계산하며 소를 입목시키지 아니하여도 權利는 남음. 입목료는 6개월 단위로 마리당 계산. 조합장과 재무 아래 일당제 牧監을 두고 있음

④ 財産法關係

㉕ 事情變更 許容

㉖ 日常家事代理權 認定

㉗ 門中財産：親族會別 管理

㉘ 典當 내지 抵當：정산 없었음

㉙ 保證：“보증 았았다”

㉚ 擔保物：주로 소를 일시적 擔保物로 設定

㉛ 損害賠償：現物賠償(가축이 곡식을 먹으면 곡식으로 받음)

㉜ 소 去來：非職業的인 동네의 ‘소장시’가 仲介. 사는 사람이 마리당 仲介料 支拂. 生物이므로 외상거래 없으며 사후 瑕疵擔保責任 묻지 아니함. 價格騰落 문제되지 아니함.

⑤ 家事關係

㉝ 約婚：돈보다 집안을 고려하였으나 거의 행해지지 아니하였음

㉞ 結婚：20세 넘으면 “늬었다”. 戶籍이 없던 당시에는 동네인정으로 婚姻申告에 같음. 結婚費用 없으면 신랑측에서 대어줌. 여자의 경우 婚需는 이불 한 채, 돼지 한 마리 정도. 현재는 이와 달리 변모되어 감.

㉟ 離婚：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었음. 아들 못낳아도 배척사유 불성립. 여자가 살기 싫다고 하는 경우 현청의 ‘과상청’에 보내 기생을 시켰었음.

㊱ 婚姻外의 子：“첩가지”, 相續 못받았고 방에서도 차별. 때로는 방에 들어가지 못하였음.

㊲ 相續：相續分 差等 (長男：0.5, 次男：0.25, 三男：0.25, 딸：시집 보내주는 정도. 때로는 작은아들분의 5분의 1 또는 2에 상당하는 分配). 死後에 “한때(都鄉 기준) 츄릴 分”을 큰 아들이 分配하는 경우도 있었음(親族會에서 後援).

㊳ 儀禮文化(守護神)：縣廳舍 안에 “안할망”(일명 ‘관청할망’)을 수호신으로 하여 위패를 모시고 있음. 확실한 유래는 잘 모르며 외지인도 참배. 4·3사태 때 이곳에 떨어진 폭발물이 불발되었다는 등의 영험을 믿고

있음.

⑦ 參考資料：新城邑 鄉約

新城邑 鄉約

머릿 약 속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 성읍마을은 日帝 強占下의 정의현의 廢止, 동중 面事務所 및 각 기관과 불모의 濟州教育의 요람지의 하나였던 普通學校도 표선으로 이설되고 또한 解放後의 저 악명높은 理念亂動인 4·3폭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遺跡, 遺物의 일실을 겪어야 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歷史物은 5·16軍士革命後의 당시의 當爲性인 새마을운동이라 일컫는 잘살기운동 등으로 말미암아 毀損 또는 滅失을 당해야 했습니다.

짧게는 이조 오백년 동안의 유서 깊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 긍심을 심어주던 우리의 歷史가 위대한 歷史였다는 사실에 비로소 눈을 뜬 國家當局의 때늦은 깨달음에 힘입어 이제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조상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들의 발자취를 保存·發展시키며 또한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대대로 물려주기 위하여 이에 우리들은 서로가 지켜야 할 여러 도리들을 약속한다.

第1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 規約을 본회는 성읍1리 鄉約이라 부른다.

第2條 (目的) 本 鄉約은 성읍1리민 서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相扶 相助하는 傳統을 익히며 나아가 國家指定民俗마을의 住民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다.

第2章 里民의 權利와 義務

第3條 (資 格)

第1號 성읍1리민이 되려면 住所地가 성읍1리라야 한다.

第2號 다음과 같은 경우 명예리민을 둘 수가 있다.

가. 本籍이 성읍1리

나. 居所가 성읍1리

다. 성읍리에 貢獻이 있는 자 중 開發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推薦된 자
第4條 모든 리민은 本 鄉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 미성년자제외)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가진다.

第5條 모든 리민은 마을運營에 대하여 자신의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第6條 1리에는 里長 1인과 里長 포함 10인내의 開發委員, 監事 2인,
班長 7인을 둔다.

第7條 里長과 開發委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班長은 班會에서 選出한
다.

第8條 里長·開發委員·監事 1년, 班長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다.

第9條 里長·開發委員·監事は 法人體의 任員이 될 수 없다.

第10條 里長은 마을을 代表하여 里政을 總括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監事は 연1회 이상 里政을 監視하며 總會에 報告한다.

第12條

第1號 里長의 有故時는 開發委員 중 그 연령순에 의하여 그 職을 代
行한다.

第2號 里長의 缺員時 그 職 代行者는 10일 이내에 前任者의 殘餘任
期에 관계없이 補選해야 한다.

第3號 里長과 全開發委員이 不信任되었을 때는 首席班長이 그 職을
代行하되 그 補選은 第2號에 준한다.

第13條 里長은 里政의 圓滑한 遂行을 위하여 1명의 里書記를 둘 수 있
다.

第3章 會議

第14條 (性格·運營)

第1號 總會는 리민의 最高議決機關이다.

第2號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누되 定期總會는 연1회 음

력 12월25일에, 臨時總會는 필요시 開催한다.

第3號 臨時總會는 里長 또는 開發委員, 班長 定數의 過半數 이상, 里民 10세대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里長이 召集해야 한다.

第15條 總會는 최소한 5일 이전에 放送, 公告를 통하여 알려야 하고 開發委員會와 기타 會議는 3일 이전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16條 (議事)

第1項 總會의 成員은 40인 이상 出席으로 하되 1세대당 1인으로 하며 기타 會議의 成員은 過半數 以上 出席으로 한다.

第2項 議決은 出席員 過半數 以上으로 한다.

第3項 議長은 表決에 參加하지 않는다.

第4項 可否同數일 경우 議長의 決定에 따른다.

第17條 總會의 議決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第1號 里長, 開發委員 選出

第2號 鄉約의 變更

第3號 財産의 處分行爲

第4號 豫算·決算의 承認

第5號 事業計劃 承認

第6號 기타 중요한 사항

第4章 開發委員會

第18條 (構成 및 任務)

第1項 開發委員會는 里長과 開發委員으로 構成하되 里長은 開發委員長을 겸한다.

第2項 開發委員會에는 副委員長 1인과 事業部長 1인, 總務 1인, 재무 1인을 둔다.

第3項 開發委員會는 諸般業務에 대하여 里長을 補佐하여야 한다.

第19條 (運營)

第1項 里長이 필요시 (會議召集)

第2項 成員과 議決에 있어서는 第16條를 準用한다.

第20條 開發委員會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第1號 業務執行

- 第2號 事業計劃의 承認
- 第3號 豫算·決算書의 作成
- 第4號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處理
- 第5號 規約變更案 作成
- 第6號 財産管理事項
- 第7號 總會에서 附議할 案件의 作成
- 第8號 기타사항

第5章 財 政

第21條 (運營費)

第1項 모든 리민은 리運營에 따라 리運營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2項 리長은 開發委員會의 決議에 따라 리政의 運營에 있어서 非協
助者에게는 그에 따른 應分の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22條 리運營에는 다음의 歲入으로 그 歲出을 充當한다.

- 第1號 里運營費
- 第2號 補助金
- 第3號 贊助金
- 第4號 기타 收入

第23條 본회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4條 리長과 리書記·班長에게는 總會의 議決에 따라 應分の 報酬를
支給해야 한다.

第25條 본회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내규는 開發委員會의 議決로서
정할 수 있다.

第26條 (補 則) 冠婚喪祭時는 가능한한 간소한 차림을 하여야 한다.

第1號 婚喪시 扶助는 現金으로 하고 답례품을 없앤다.

第2號 初喪시 負役과 參禮는 班에 한하고 酒食을 없앤다.

第3號 복제는 亡人의 성팔촌, 외사촌 이내로 한다.

第4號 포제시 제청출입은 祭官과 關係者에 한한다.

第5號 포제시 祭官과 關係者는 儀式에 正성을 들여야 한다.

附 則

第27條 (施行日) 이 鄉約은 總會의 議決을 거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본 規程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參席者의 代表를 選定하여 記名捺印한
다

7) 表善面 兎山2里

提報者 : 김대은 (남, 60세, 439번지 5호)

김동규 (남, 58세, 451번지 3호)

박점례 (여, 70세, 447번지)

調査者 : 고성은

① 略 史

㉞ 設村年代 : 약 1,000년전

㉟ 設村背景 : 耽羅王朝의 일파인 夫氏가 設村

㊱ 行政區域變遷 : 旌義郡 中面에 所屬됨 (1416) → 旌義郡 東中面
兎山으로 改名 (1913)

㊲ 現在家口數 : 180가구

② 慣習調査各目

㉞ 마을總會

㉟ 召集 : 議長 또는 理事長, 住民 1/3 이상의 要求時 소집

㊱ 權限 : 任員의 選出, 事業計劃·決算, 新年度豫算案審議, 規約改
正, 理事會의 決議事項深意, 財産의 取得·處分

㊲ 議決 : 代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過半數 贊成

㊳ 理事會議 : 會長, 部長(5명) 등 20명으로 構成

㊴ 處罰 : 公開警告

㊵ 涉 外(中媒·通婚)전설상 토산리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처
자를 뱀 세 마리가 꼭 따라 다닌다고 전한다. 만일 뱀을 소홀히 하면 집
안이 망한다는 토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서 신주 모시듯 한다. 濟州
地域住民들은 토산리지역출신의 처자를 며느리감으로 삼는 것을 매우 꺼
려하여 토산리내의 젊은 청년과 처녀끼리 혼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㊶ 社會·經濟

㉠ 民 事

a) 共同漁場：共同漁場을 ‘탐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로 어장바닥이 모래여서 경계침범은 드문 편이나, 간혹 문제가 발생하여도 漁村契 相互間에 解決하는 편이며 警告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웃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힘이 적다. 따라서 일방적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b) 마을共同財産管理規約

- 適用範圍：마을基金造成, 조례의 적용을 받는 現金, 金錢등의 動産과 農協, 山林契, 水利契 등의 다른 法令에 의해 따로 管理하는 財産은 除外. 住民共同으로 造成한 財産, 篤志家가 寄贈한 財産, 전해 내려오는 財産, 個人所有財産으로서 마을 住民이 共同으로 契約 등에 의해 共同收益·管理하는 財産, 기타
- 權利義務：마을 주민은 누구나 共同財産에 대하여 受益權이 있고 財産의 造成·管理義務가 있다.
- 轉出入時 資格得失：양묘, 육성우등에 관해 약정에 따라 參與意思가 있으면 새로운 移住者는 加入金을 負擔해야 하며, 이사가는 사람은 그 意思에 따라 權利該當額을 還付받거나 權利를 계속 維持할 수 있다.
- 財産의 管理責任者：3인의 財産管理委員을 둔다. 마을 리장, 새마을 지도자, 리개발위원 중에서 開發委員會가 指名하는 자로 構成한다.
- 職務：一般的 管理事項, 登記申請에 관한 事項, 財産登記事項의 (면)마을財産臺帳에의 登載, 住民總會의 決意된 財産에 관한 買受·賃貸·處分契約 處理 事項, 財産의 決算處理 事項, 기타
- 不動産登記：주민 總有로 한다.
- 管理者의 權限：住民負擔이 수반되는 마을財産의 設置事項, 마을財産의 處分, 年度決算事項, 기타

㉡ 家 事

a) 婚需：約婚式 費用은 신부집에서 負擔. 결혼할 때에는 신부가 적어도 이불 두채, 요 세채, 경대, 옷장, 화로 등의 가구를 마련.

b) 相續分：위토전(제사를 봉양하기 위해 사농은 땅)을 長子에

게 주며 여분이 있으면 나머지 자식에게도 나눠 줌. 딸에게는 財産을 나눠주는 일은 거의 없고 설령 나눠준다거나 여유가 있어서 물려주는 경우에는 土地나 家屋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나 말 또는 일정한 金額 등의 動産으로 財産을 나눠 줌. 특이한 것은 아들 중 長子나 次子 혹은 三子가 高等教育(大學을 졸업하는 경우)을 받으면 당연히 이들에게 돌아가는 財産은 적고 高等教育을 받지 못한 자식이 財産을 많이 받는다는 것.

㉔ 勞動(두레)출력 여러 개의 班(보통 10명안팎)으로 組織하여 마을 公共事業에 勞動力을 提供하기 위해 동원되며, 수놓음(契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契員들의 발일을 서로 돌아가며 도와주는 것)과 함께 勞動力 提供 義務는 法的義務보다 강하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일당 임금(약 2~3만원)을 내고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음식이나 술을대접해야 한다.

(3) 西歸浦市 : 西歸浦市 月坪洞

提報者 : 임옥순 (남, 60세, 383번지 5호) 농업

調査者 : 문병철

- 現在家口數 : 150가구

1) 慣習調査各目

① 司 法

㉕ 紛爭解決 : 財産分配時 紛爭이 생길 경우는 집안 年長者의 責任下에 解決하는 경우(일종의 중재 형식)도 있었다. 만약 그래도 解決이 안되면 계속.

* 마을規約에 대한 紛爭時는 總會에서 決定

㉖ 刑 罰

㉗ 部落行事時 습관적인 불참자에 한해서 당장 시머와(데려와) 질책을 가했고 지금의 始末書形式으로 覺書를 받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

㉘ 部落에서 問題兒로 찍힌 사람에(예; 도둑질 - 도둑쟁이...) 한해 總會때 마을회관에 시머와(데려와) 산태(사다리)에 묶어 멍석(조금 두껍고 넓은 일종의 포대모양)으로 말아서 거꾸로 세워서 곤장형식으로

구타를 했고, 그런 후에 고치면 다행이나 안되면 계속적으로 반복했다고 한다.

② 入·出村儀禮 : 다른 부락에서 이사온 경우에는 入洞禮를 내야만 部落戶籍에 이름이 적혔다.

③ 社會·經濟

㉠ 民事

㉠ 物 權

a) 마을財産 : 마을共同財産인 경우 部落里長이 管理했고 거기서 나온 利益金은 마을共同財産으로 썼다. 월평리인 경우는 部落 밑에 소낭밭(소나무밭)이라는 共同財産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소나무를 자르는 경우는 罰金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 소나무밭에서 자라는 출(풀)은 베어서 팔았다.

b) 相隣關係 : 축담붕괴시는 담(축담)이 넘어진 쪽 밭주인이 새로 세워야 했다.

㉡ 債 權

a) 債務不履行(패같이·판셈) : 돈을 빌려간 뒤 기간내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해에 패(借用金證書)를 갈아서(바꾸어) 適定利子를 더하고 갚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利子만 計算하고 원전을 다음해에 갚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갚지 않는 경우는 친족에게도 그 화가 돌아갔다.

불가피하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판심(판셈)이란 게 있었음. 이는 과는 자가 물건을 주기전에(現物引導前) 그 물건이 없어져버린 경우 그 사람이 전재산을 팔아서 돈빌려준 사람의 각 액수의 비율에 따라 배급(할당)하는 형식인데 판심을 한 집안의 자손은 번창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b) 過失相計 : 서로 過失이 있는 경우 債務關係가 있는 경우에 相計.

c) 損害賠償 : 가축이 저지른 損害의 많고 적음에 따라 賠償을 하기도 했는데 만일 물지(賠償)않으면 마을에서 共同懲戒.

d) 危險負擔 :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긴 경우(危險負擔)는 합의에 의해 해결했는데 합의되면 契約金을 이자없이 되돌려 받았고

간혹 합의가 안되는 경우 물건을 건네줄 자는 그 물건과 거의 닮은(합당한)물건을 사다주었다.

e) 不法給與 : 노름으로 빚을 진 경우도 정당하게 돈을 꾸준게 되어 기간내에 적당한 이자를 더해주고 갚아야 했다.

㉔ 家事

㉑ 約婚 : 約婚이라는게 거의 없는 반면 慰藉料 비슷하게 이버지라는게 있었는데 이는 좀 괜찮은 신랑집인 경우 신랑이 신부집에 장가갈 때 돈을 가져오는 형식인므로, 민영(옷을 해 입는 것) 또는 보리 몇 말로 대신하기도 했다. 이버지를 받는 쪽 여자는 다행으로 생각.

㉒ 離婚 : 書類上 離婚은 거의 없었고 살다가 버치면(못 견디면) 어머니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

㉓ 事實婚 : 일종의 지금 말로 경제상 문제로 시집을 가도 자식을 3~4명 나온 후에도 자식이 죽든가 마음이 서로 안 맞을까봐 여자 호적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고 다시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갔다.

㉔ 婚姻外의 子 : 나중에 아버지 戶籍에 入籍을 시켰는데 財産을 줄 경우에도 어머니가 반대할 경우는 안주는 경우도 있었고 절을 할때도 마루에서 절을 못하게 해서 제삿날인 경우 그 종손집이 아우일지라도 제창문(문사이 조그마한 문) 낭간에 방석을 내줘 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장가가서 자식이 없는 경우 後妻를 얻어 자식을 낳았는데 다시 前妻가 자식을 낳은 경우는 前妻가 낳은 자식을 長子로 삼고 後妻가 낳은 자식은 婚姻外의 子라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

㉕ 相續分 : 長男이 祭祀 등 모든 行事를 도맡아 하기에 總財産 중 반을 주고 셋거(次男)는 남은 財産의 반을 주는 등의 방식 채택.

2) 參考資料

① 峽 : 마을沿革 및 運營內容이 기록된 책자(洞長이 管理)

② 마을共同規約

4. 調査結果分析

(1) 共同體意識의 艱배

① 意識的 側面에 있어서 濟州道民들은 하나의 긴밀한 정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듯이 보였음.

② 法律關係에 있어서도 같은 濟州道民이라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信賴하고 있다는 態度를 취하였음.

(2) 西歐式 法律概念의 不要

○ 濟州道民들의 法律生活에 있어서는 去來關係 또는 財産關係에 있어서의 總則 또는 債權規定 등의 西歐式 法律概念은 別로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概念들을 細分化시켜 여러 번 질문을 던졌지만, 概念分化가 되어 있지 아니한 듯이 보였음. 質問의 趣旨를 이해한 후의 答변은 “그런 것은 다 人情에 따랐다”는 식이었음.

(3) 傳統의 重視: 新鄉約 등의 制定施行

① 道民全體가 한 덩어리가 되어 傳統文化를 복구하는데 열성을 다 바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地域社會 內部的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 마다 傳統의 優秀性을 표방하였음.

② 鄉約이라는 이름을 붙여 마을 共同規約 등을 새로이 制定하고 이를 外部에 널리 알리려는 태도에서도 傳統에의 傾倒가 엿보임.

(4) 濟州 特有的 慣習과 法律概念 保全

① 상뒤동산의 運營, 共同牧場의 運營, 봉천수이용, 入漁權, 婚需, 分家, 相續制 등의 分野에 있어서 濟州 固有的 생활상을 반영하는 慣習들이 形成되어 있었음을 보여줌

② 영의뜸, 접, 애워불기, 설러불기 등의 法律概念은 단순한 사투리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實定法規上의 類似概念들과 그대로 부합될 수는 없는 複合的 要素들을 內包하고 있어, 이러한 用語들의 用例와 使用習慣을 分析할 경우, 濟州民 特有的 法律行爲 樣式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5) 規律의 순박성

○ 동네의 秩序維持 또는 풍기 현황 등에 관하여는 觀察할 겨를이 없었지만, 提報者들의 證言內容으로 미루어 볼 때, 秩序維持를 위한 강력한 制裁措置가 드물었다는 점으로 보아, 地域住民 相互間의 法的 紛爭의 頻度와 強度가 낮았던 것으로 추측됨

(6) 村落社會構造의 變貌와 慣習의 逸失

① 상덕천리와 같이 輿地라고 일컬어지는 곳들은 普遍的인 離農現象으

로 慣習이 保全될 만한 人文地理的 基盤이 취약하였음

② 신에리 등과 같이 集姓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들도 이미 너무나 開化되어 濟州道 特有的 慣習과 一般常識이 혼동을 빚고 있음

③ 一般的인 濟州村落들은 물의 農村社會의 전형과는 달리 閑村으로서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法律行爲의 發生頻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調査所感

1) 關聯資料의 豊富性

현지 文化界 인사들과 門中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刊行事業들을 감안할 때, 제주사회에는 土着 文化的 傳統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共感帶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속속 발간되고 있는 民俗誌 또는 部落誌들은 제주도의 慣行 및 慣習法 조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調査準備上의 隘路

제주는 사계절 관광지인 탓으로 언제나 숙박시설이 만원을 이루고 있다. 대체적으로 제주는 육지의 주말이 주초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예비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적당한 숙박장소를 얻지 못하여 고심하였다. 웬만한 정도의 숙박시설은 벌써 오래 전에 모두 예약되어 있었다고 하며, 비상용은 보통 요금의 2~3배를 요구 한다. 차기 조사는 목요일 이후부터 착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상 촌락에서 민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대학교에 법과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사원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법학과 4학년 학생들이 성실하게 협력해주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3) 閉鎖的 態度

신도읍 대정리를 방문하였다가 어촌계 문서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음은 잊을 수 없다. 당해 면담자는 자기가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해녀회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둘러대 그냥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해녀회장에게 문의하였더니 당초의 면담자가 보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면담자에게 전화하여 그 뜻을 확인하였더니 외지인에게 뭐 그런 문서를 다 보여주겠냐 싶어 그리하였다고 답하였다.

4) 住民接觸의 困難性

현지주민들의 사투리는 본인들이 애써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알아 듣기 어려웠다. 이 예비조사에서는 동행한 조사원이 통역을 맡아 주어 곤경을 면하였다.

거동이 극히 불편한 노인들 이외에는 모두 들이나 바다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담자 접촉이 어려웠다. 점심 때를 기다려 주민들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일을 가로막는 것 같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부득이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밤 늦게 까지 다니게 되었다. 이 점은 조사에 협력한 제주대학생들도 공통적으로 겪은 애로사항이었다.

현지주민들은 조사자가 원하는 답변을 좀처럼 해주지 아니하였다. 덕천리에서 만난 어느 제보자는 너무나 할 말이 많아 무척 많은 말을 하였지만 정작 조사에 필요한 말은 별로 없었다. 말을 끊으면 잠시 후 다시 본인의 논리로 되돌아 가버리곤 하였다. 법적인 개념에 익숙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하게 생각되었다. 참여관찰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면담자를 상대하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5) 同質 文化圈의 廣範性

처음에는 제주에 자주 오기 어려운 만큼 제주에 온 김에 골고루 둘러 보아 각 지역별 법률문화의 상이점을 개괄적이거나 파악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강행군 끝에 결국 제주 전역을 골고루 둘러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였다. 제주는 하나의 道이지만 道 전체가 하나의 文化圈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였다.

文化的 同質性이라는—적어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측면에서 본다면, 濟州‘道’는 육지의 郡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 같다. 같은 文化圈에 속하는 지역들이 모두 하나의 道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조사에 있어서는 제주를 郡面 단위로 구획을 지어 조사하기보다는 제주 전체를 하나의 域內로 보고 특색 있는 부락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6. 蒐集資料目錄

- 城邑1里鄉約
- 光令1里鄉約
- 高粱夫氏 門中會則 각1부
- 高粱夫 三姓祠財團 定款
- 李元鎮, 耽羅誌, 耽羅文化叢書 (9)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翻譯本. 原文附錄)
- 耽羅遺事 (夫氏 門中會總本部, 1988)
- 光令略史 (광령1리, 1990)
- 濟州道部落誌1~4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9·1990. 2·1990.4, 1991)
- 耽羅文化 第1號 第11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2~1991)
- 濟州說話集成 (1)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5)
- 濟州의 마을 (1)~(10) (도서출판 반석, 1985~1989): 도두리, 오조리, 함덕리, 호근, 서호리, 고성리, 애월리, 봉개리, 대정고을, 화북리, 한림리
- 企劃連載 海女, 金榮墩 (한라일보 주간 칼럼 :1990. 9. 19~1991. 12. 25 現在, B4 규격 70回分 掲載) 寫本

7. 關係資料目錄

古文書目錄 및 論著目錄

- 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 古文書(土地賣買, 財產相續, 戶口單子, 准戶口, 契則 기타): 金智弘 1986.7. 現地蒐集資料. 耽羅文化 第6號, 75~116쪽
- 濟州道誌(下) 473~545쪽 (第4章 學術編): 解放後 부터 1980년 사이 濟州道 學術界의 成長過程, 主要論著 및 學術行事 紹介, 分野別 主要論著目錄 掲載
- 解放後 濟州研究概觀 및 論著目錄 (1)~(3): 耽羅文化 創刊號 216~235쪽(語文學 및 民俗分野), 第2號 314~328쪽(歷史 및 考古學分野), 第4號 357~427쪽(社會科學分野)

- 濟州大學教 論文集 第30輯(1990年)附錄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輯：
1969年～第29輯：1989年분에 掲載된 論文 題目과 著者目錄 收錄)

II. 慶尙北道

1. 蔚珍郡

(1) 調査計劃

- 1) 調査特性：村落(半農半漁村 包含)地域 廣域豫備調査
- 2) 調査地域：慶北 蔚珍郡 일대 自然部落
- 3) 調査期間：1991년 7월 30일～8월 4일
- 4) 調査目標：村落地域의 慣習法의 傳承程度 및 效力範圍 把握
- 5) 調査項目
 - ① 自治制 및 特殊集團의 組織 및 運營
 - ㉠ 名稱·性格·沿革
 - ㉡ 體系·構成·資格
 - ㉢ 意思決定方式·執行節次
 - ㉣ 構成員의 權利義務
 - ㉤ 財 政
 - ㉥ 規律 및 制裁
 - ② 村落共同行事 및 共同作業
 - ㉦ 目的·內容
 - ㉧ 社會經濟的 意義
 - ㉨ 運營體系 및 方式
 - ㉩ 收益·負擔 關係
 - ㉪ 基金管理·會計
 - ㉫ 償勳·罰則
 - ③ 涉外活動
 - ㉬ 村落間 또는 集團間 儀禮
 - ㉭ 入村·出村 儀禮
 - ㉮ 外部人의 統制와 接賓
 - ④ 社會·經濟 制度
 - ㉯ 法律行爲의 主要準則

- ㉔ 財産關係
- ㉕ 勞動 및 雇傭關係
- ㉖ 特殊去來
- ㉗ 社會扶助
- ㉘ 民事罰·刑事罰
- ⑤ 家族制度
 - ㉚ 親族制度
 - ㉛ 相續制度
- ⑥ 爭 訟
 - ㉜ 社會的 葛藤의 種類·背景
 - ㉝ 爭訟 內容·節次·效果·限界
- 6) 調査方法：前記 濟州地域 現地豫備調査 方法과 같음
- 7) 調査責任者：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共同調査：本院 法令編纂部長 安相述

(2) 調査經過

1) 現地諮問

① 調査部落 및 面談者 選定을 위하여 울진군 議會 李守鎭 議員과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이경화 面長에게 諮問하였다. 風水地理關係로 現地調査 經驗이 있는 厚浦農協 李明光 支所長에게도 諮問하였다.

② 이에 의하면, 울진의 主要 姓氏는 순흥 安氏, 평해 黃氏, 평해 孫氏이며 지금도 은연중 班常의 區別을 하고 있기 때문에 婚事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國道를 基準으로 內陸쪽은 대체적으로 예전의 班村의 유습이 그리고 海邊쪽은 民村의 유습이 남아 있다. 완전한 漁村 마을은 海村이라고 하여 종래 또 하나의 區別을 하였었다. 그러나 交通의 發達과 장터의 盛衰 등에 영향을 받아 居住의 移動이 많이 행해졌고 따라서 지금은 서로 다른 마을 출신들이 國道연변 部落들에 같이 모여 살고 있다.

③ 部落에 따라서는 예전의 鄉約이나 洞契가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에 따라서는 현재에도 이를 상당히 遵守한다. 현재 施行되고 있는 마을 鄉約은 평해읍 거일2리에서 찾을 수 있다.

④ 평해읍 직산2리에는 유서 깊은 洞內規가 있다. 여러해 전에 內務部 새마을과에서 이를 복사하여 갖다고 한다.

2) 調査協力

○ 事前調査 및 現地協력과 연락은 모두 올진 출신인 本院 安相述 部長이 맡았다. 후포면의 화신물산(株) 李宗浩 사장, 평해읍 평해鄉校 全棟煥 총무, 평해읍사무소 黃慶壽 係長은 關係資料의 蒐集과 提報者 面談周旋, 마을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3) 訪問 및 面談

① 協力先을 통해 전날 面談約束을 하고 다음 날 차례로 마을들을 순방하는 方式을 취하였다. 넓은 地域을 對象으로 여러사람들을 接觸하기 위해 그리고 相對方의 日程에 맞추기 위해 夜間調査를 並行하였다.

② 面談은 되도록 日常的인 話題부터 進行하였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식으로 接近하였다. 提報者가 成長하면서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주변에서 겪은 經驗을 陳述해 주도록 要請하였다.

(3) 調査內容

1) 平海邑 巨逸里 2區

提報者：鄭相鎬 (남, 56세, 228번지)

張白龍 (남, 67세, 227번지)

崔連錫 (남, 74세, 200번지)

調査者：全在慶 · 安相述

① 自治組織

㉞ 洞中總會 및 老班會

㉞ 會則：洞自治規約(연대미상의 舊規約 분실후 1983년 새로 制定) 및 老班規約(1920년대 制定). 洞自治規約 중 上水道關係規定은 현재 效力喪失.

㉞ 洞階級(임방)：座上 아래 三任 (尊位, 洞首, 有司), 任期 6月 (20여년 전까지는 1년), 돈으로 洞首 자리를 산 사람에게 대하여는 ‘와체’라는 呼稱을 앞에 붙이고 정식과정을 거친 사람은 ‘時’자를 붙임. 임방에 任命되면 각자 한번씩 한 톱을 냄. 祭祀飲食을 먼저 먹는 등 行實을 잘못 하면 有司 등 임방직을 剝奪당함(매우 힘들여 復職).

㉞ 老班會：有司를 歷任하여야 어른대우를 받으며 有司 이상의 經歷者들로 班會를 構成. 洞法은 班會에서 制定하고 總會를 열어 이를 통과

시킴. 또한 班會는 冠婚喪祭用 제기구(상여, 가마, 병풍, 천막등)를 管掌함.

㉔ 洞運營委員會 및 里長 : 洞運營實務를 全擔하기 위하여 合議制 運營機構인 洞運營委員會와 委員長을 두고 政府의 委任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里長을 둠(里長은 運營委員會의 一員).

㉕ 老班會와 洞運營委員會와의 關係 : 運營委員會의 諮問을 위하여 班會員으로 構成된 10명 이내의 顧問을 두며 顧問은 洞業務執行에 있어서 最終決議權을 가짐.

㉖ 有司 選出 및 職務 : 시월 보름 “대동추”(大同會) 때 選出. 競合熾烈. 座上이 참모들 意見들어 指名함. 洞會計전담.

㉗ 集會 : 대동추(연2회 잔치. 주요 洞事 및 財政 報告, 決定, 記錄) 패추(牌 - 일종의 契. 區分 : 初패, 2~5패, 新패. 패꾼 13-15인. 초상때 5~6인씩 등불 갖고가 밤샘, 葬禮. 대동추 이후 패추).

㉘ 洞舍運營 : 洞事務所 겸 敬老堂. 日日 經過報告實施. 겨울연료는 共同負役으로 마련함. 座上이 들어 오면 전원기립. 客地에 다녀온 사람은 洞舍에 들러 인사.

㉙ 大老班契

㉙ 尊位 階級 履修者(보통70세 정도) 以上으로 構成

㉚ 職制는 洞階級과 같음

㉛ 元老院 役割

㉜ 草 軍

㉜ 構成 : 소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집의 일꾼을 통해 초군이 됨 (머슴이 없으면 주인이 됨)

㉜ 職制 : 座上, 副座上 : 동네어른이 指名

유사(재무), 매쟁이 : 座上이 指名

㉝ 職務 : 초군 座上은 放牧地에 따라가 現場指揮

㉞ 集會 : 후포 장날 초군 문다(모은다)

“초 무로 나오소”라고 윈다. 그 후 씨름등을 벌림

㉟ 懲戒 : 누구네 소가 곡식을 망쳤다든지, 누구네 일꾼이 호박줄을 베었다든지 할 경우 좌상이 징계 명령. 물푸레나무로 종아리 또는 발 뒤꿈치를 침(初犯은 2~3대, 常習犯은 10대에 罰金 併科).

㊸ 소모듬 : 날을 정해 1년간 모은 罰金으로 일꾼들을 잘 먹임(소모듬 뭉는다). 이 날은 일꾼들에게 일 시키지 아니함. 일꾼들은 자기들끼리 고사 지내고 질편한 잔치를 벌임.

㊹ 沿革 : 196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음. 그 후 命脈만 유지되어 있음. 고사는 지금도 지내고 있음.

② 規 律

㉑ 洞 法

㉒ 法意識 : 國法은 어겨도 洞法은 못 어김

㉓ 處罰 : 訓戒 (동네 불러감 : 座上주재로 호통)

罰金 (김 30~50톨)

매 (20~30대. 중한 경우 50~100대)

짬 박탈

水火不通

㉔ 事由 : 不孝, 姦通, 伐木, 禁酒令違反, 放恣(며느리들이 동네 앞을 지나는 등 발칙하거나 남자가 어른들 앞에서 자기 아이들을 안고 다닐 경우)

㉕ 連帶責任 : 外地人이 洞法을 어기면 집주인을 다그침.

㉖ 沿革 : 조선조 중엽 殺人事件이 發生하면 고을 원이 육방관속들을 데리고 와서 常住하면서 家禽, 穀食 등을 모두 消費하기 때문에 “殺人 나면 동네 망한다”는 認識이 이어져 내려 왔음.

a) 과거 보리고개가 심해 살기가 어렵던 시절, 미역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곤 하였기 때문에 잘못하여 “짬” 떨어지면 죽는 것으로 알고 洞中の 命命을 尊重하였음 .

b) 歸鄉왔거나 落鄉한 벼슬아치들이 이 마을에 계속 居住하면서 評海군의 원에 대해서도 影響力을 行使하였고 고기잡이들의 거친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規律을 엄하게 세웠음.

㉗ 事例 : 방자하다고 하여 訓戒하는 것은 약60년 전까지 施行되었음. 罰金 및 짬박탈은 현재에도 施行되고 있음.

금주령은 1972년 내지 1973년에 施行하였었음(제사 때도 막걸리 1되로 제한. 외지에서 술 취해 오면 그냥 조용히 자야함. 큰

소리 나면 問責. 술 몰래 파는 집은 1회 違反에 벌금1만5천원, 2회면 잠박탈. 술 마신 사람은 1회 違反에 罰金5천원, 2회면 벌금1만5천원. 申告者는 償金5천원. 벌금 받아 防衛誠金 納付)

㉔ 호실계

- ㉑ 事由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不孝할 경우
- ㉒ 節次 및 處罰 : 존위, 동수, 유사들이 연행하여 소 '지르메'(줄로 묶어 소에 매달고 마을을 한바퀴 돌) 태운 다음, 座上 앞에 꿇어 앉힘. 며느리 있는 시어머니는 모두 와서 문초. 변명하면 시어머니들 주먹세례. 나부대면 매로 침. 勸答 받은 후 귀가시킴.
- ㉓ 連帶責任 : 남편은 그날 저녁에 불러 호통을 친후, 동네 職位에 立候補할 수 있는 資格을 剝奪함
- ㉔ 體驗事例 : 해방직후

③ 마을 共同財産 : 짬

- ㉑ 概念 : 部落境界線內에 있는 바닷가 물 위와 아래의 바위
- ㉒ 收益內容 : 짬에서 자라는 海産物 採取
 짬 行使權 또는 미역(和布) 行使權으로 불리움
 현재는 미역만 洞中에서 觀賞함 (和布權).
 김, 전복, 운단(성게)은 漁村契에서 觀賞
- ㉓ 區分 : 바위 이름 따라 바다 쪽 직선으로 7개 구역으로 분할.
 현재는 부근의 (주)한진開發 때문에 6짬으로 줄어 듦
- ㉔ 畚 調整 : 전년도 收穫量에 비추어 區域 家口數를 再調整 전성기
 때는 가구당 미역 120-150단 배당
 현재는 수요공급 줄어 10여단(20여만원 상당) 배당
- ㉕ 管理 : 시월 보름에 제비 뽑아 내년치 간수, 管理 責任 賦與
- ㉖ 權利의 取得 : 外地人은 집을 사고 3년 經過되어야 參與시켰음
 현재는 5년 경과 要件
 동네 子孫은 分家後 外地人보다 짬 기간 단축
- ㉗ 特例 : 앞 바다 강섬(홍합)바위
 - ㉑ 平소에는 채취 및 해수욕 엄금

㉔ 대동추 등 큰 일 있을 때 채취

④ 어획물 분배 : 뱃짓 논기 (나누기)

㉕ 잔고기 (멸치, 양어-양미리)

㉖ 船主 (배와 그물 제공) : 45% 내외 (네 짓까지 받는데 어획량 줄면 다 받고 어획량 많으면 덜 받음)

㉗ 船長 : 두 짓 또는 (자기 몫 50% 포함이면) 짓 半

㉘ 망쟁이 (높은 산 위에서 고기떼 파수) : 짓 반

㉙ 뱃머리 진두 지휘자 : 짓 반

㉚ 초심자 : 반 짓

㉛ 큰고기 (방어 등) - 잔고기보다 덜 받음

선주와 그물주 : 두 짓 (어로를 직접하면 한 짓 추가)

⑤ 入參禮

㉜ 新參禮라고 불리움

㉝ 집 장만을 하여야 禮資格 있음

㉞ 종래에는 성의를 다해 음식을 질편하게 대접함

㉟ 현재는 쌀40kg(반가마니) 出捐

⑥ 夜警 : 상죽돌기

㊱ 동네에 火山 있어 화재 잦았음

㊲ 全家口가 참여, 하루 4명이 2명씩 交代 勤務

㊳ 대나무를 두들기며 火災, 盜難防止등을 目的으로 巡察 實施

㊴ 제사 지내는 집들은 상죽꾼 불러 음식접대

⑦ 冠婚喪祭禮

㊵ 婚姻 : 장가들일 때 임방들 통해 마을 노인들 초대. 접대 아니하면 지탄의 대상이 됨. 扶助는 아니하였음.

㊶ 問喪 : 노인 동료가 죽을 경우, 만서(만장)를 매달며 상여가 나갈 때에는 노인들이 洞舍 앞에서 갓과 망건을 갖추고 늘어서서 망인에게 절을 하며 산에 가서도 땃과 제사에 동참.

- ㉔ 동네제사 : 큰제사, 정초제사(정월보름안쪽), 성주제사(3월보름 :
洞舍 지을 때 모신 土神), 제밋(齊米)고사(햅쌀, 햇과일)
- ㉕ 마을 수호신 : 고을막 님 (동네 생긴 후 최초로 죽은 이). 거일리는 方氏 터전에 金氏가 자리잡음.
별신굿 유명.
마을 진입로(새길) 낸 후 평균수명 줄어 들었다고 믿고 있음.
- ㉖ 제관 3명 및 식모 1명 選出 : 좌상 및 원로급들이 의논 후 選出.
제관들은 그 생일, 기일 등을 맞춰보고 뽑음. 상주는 제외. 며느리가 임신한 경우도 제외. 처가쪽 상복 입은 경우도 제외.
- ㉗ 전동네가 청소를 함.
- ㉘ 삼일전부터 禁色함. 그 후 洞舍에 들어 감.
- ㉙ 집 앞에 '검구' 친다. 검줄 밑에 황토를 4~6군데 깔아 둠.
- ㉚ 제사 직전에는 清水(동해물)에 목욕.
- ㉛ 당일 밤(11:30-12:00)에는 洞舍 앞 通行禁止.
- ㉜ 禁忌 : 제사날 받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 해산해야 하고, 분노도 못 치우고, 초상이 나도 곡소리 내지 못하고 상여도 못나가며 시신도 동네 밖에 안치하고 제사후 장례를 치름.
- ㉝ 個人祭祀 : 동네 노인들 초대. 제사고기는 찌지 않고 모두 굽는다.
- ㉞ 參考資料 : 班規約, 同改正規約, 洞自治法一部規約, 洞自治規約

巨逸 2 里 老班規約

自古로 본 동은 老班秩序가 確立되어 왔으나, 수 년이 지난 오늘 老班數가 증가함에 따라 秩序가 문란함으로 秩序確立을 위하여 左記 항목을 遵守할 것을 誓約하고 署名捺印 한다.

1. 座上의 保護를 위하여 首班 十名을 構成하여 座上을 보좌하고 座上의 신변을 保護한다.
2. 老班 중에서 班會의 意見을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意思를 제출치도 않고 誹誹行訪하며 老班을 誹笑한 자는 老班職을 解任한다.
3. 老班 중에서 飲酒로 만취하여 老班會나 老班席上에서 雜談하는 자는 老班職에서 解任한다. 즉, 會館에서 오락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高

聲하며 言爭을 심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한 자.

4. 老班死亡時 出喪時 묘소까지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나 출타한 자 이외에 참석치 않을 시는 오백원 이상 이천원 이하의 過料에 처한다.
5. 老班에서 공익사업에 決定한 의안에 대하여 항의한 자는 老班에 사관(除名)시킨다. 단, 老班의 議決時 他地로 출타한 자는 此案에 在한다.
6. 三任, 즉 有司, 洞首, 尊位등 중 일인이라도 행위에 나빠지거나 부정이 있을 시는 連帶責任하에 三任全員 그 職을 解任한다. (誓約書 제출, 三任書下에 행함)

記名捺印 64명

老班規約改正案

금간 老班規則과 秩序가 문란하기로 老班總會決議에 의하여 左와 如히 決議한다.

1. 신사당 告祀는 연간 지정일로 정하여 행사한다.
1. 告祀祭官은 任員으로 지정하되, 任期 중 故意로 祭官을 기피할 경우에는 任員서열 高하를 막론하고 削案한다.
1. 老班으로 수시 洞會堂에 출입할 시는 상하를 구별하여 起座, 기타 예의를 엄수하여 一般洞民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甲寅年 10月 16日

巨逸洞 班會

老班規約改正案

1. 老班會 加入制度, 현행 매관매직(본동 거주하는 자로서 육십세 이상 된 자로서 금 이십만원을 洞中老班會에 納付하고 酒飯을 베푼 후에 解任 洞首을 임한 직책을 가진다)을 하던 制度를 追後 일체 폐지하고 종전대로 실시한다.
1. 본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老班會에 wachero 가입하여 老班會員이 되고 자하는 자는 新參禮를 하고난 후에 가입을 허용한다.

1985年 11月 11日 (陰曆 乙丑年 九月 二十九日)

巨逸洞 老班會

以下 署名捺印

西紀 1985年 乙丑年 十月 十六日 決議事項

1. 每期 실시하는 三任職의 순위는 본인의 有故가 없는 한 행사를 하며 有故가 없이 그 직을 회피할 때에는 순위해당 年度의 有司가 任職을 任命할 때 執行키로 한다.

老班會員 一同

西紀 1986年 丙寅 三月 三十日 改正案 決議事項

1. 종전에 실시하던 사항, 즉 老班會員 중 別世하여 洞會館앞 광장에서 永訣式에 참석하는 일을 실시해온 결과, 불참사유가 불명하며 인정하기가 곤란하기에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추후 有故時는 老班會員 중 外地에 출타하거나 가정에 순산을 하고 부득이 참석치 못할 회원을 제외하고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필히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불참한 자는 罰課金 이천원으로 정한다. 단, 出漁한 날은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는 인정치 않는다. 有故時라도 洞會館에 출석하여야 한다.

右記 條項을 어길시는 老班會員에서 除名處分을 한다.

老班會議 臨時總會

西紀 1986年 陰曆 四月 十六日 總會時 決議함.

決議事項

洞中에서 吉凶事가 있어 當家에서 요청이 있을 때 老班會에서는 老班會名義로 扶助金조로 금 일만오천원을 扶助하기로 정한다. 그 目的은 과거의 전통을 살리고 老班會의 단합과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運營의 妙를 기함에 있다.

西紀 1987年 陰曆 十月 十六日 規約修正案

第1條 현재까지 老班 有司 충당한 經費에 대하여는 額의 高하간 이자

계산은 없었는데 차후 부터는 금 오천원 이상 부터는 이자를 가산하여 精算하기로 정함.

西紀 1988年 陰曆 十月 十六日 規約修正案

目的

과거부터 내려온 본 老班會規約을 存續하며 시대의 繁昌에 따라 현실에 부합한 制度로 規約을 修正하여 일층 더 老班會의 運營에 있어 老班相互間의 화합과 단결을 강화하며 친목을 도모하여 秩序와 체제를 確立하고 地域社會 발전을 위하여 영원한 運營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본 동의 運營機關을 다음과 같이 制定한다.

1. 洞運營委員會를 둔다.
2. 老班會는 座上을 위주로 하고 首班으로 洞事를 보좌한다.
3. 運營을 전담하는 會長團을 構成하고 모든 洞事는 會長團에서 발단하며 그 외의 기관은 이로 부터 이행된다.

構成員：會長 1명, 副會長 2명, 運營委員長 1명, 총무 즉 幹事 1명, 老班會 座上 1명, 副座上 1명, 首老班 3명 이상

第2條 洞資金 支出方法은 會長團의 決議를 얻어 지출기로 한다.

西紀 1989年 九月 十日 決議事項

第1條 과거의 예를 볼 때 老班辭官을 당하였을 때도 老班들께서 인정에 치우쳐 解除를 하고보니 例가되어 老班運營上 지장을 주기 때문에 추후로는 일단 사관을 당하면 三年間은 解除하지 않는다. 본인이 반성하고 자제하는 자세가 보일 때 한한다.

第2條 老班께서 會議에 참석하지 않고 議決事項에 대한 議決事項 경유의 질문은 할 수 있어도 議決事項에 대해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물의를 제기하여 혼란을 초래한 자는 規約에 의하여 處罰한다.

西紀 1990年 陰曆 十月 十六日 決議事項

第1條 洞中祭祀는 舊風俗을 變更하지 않고 실시한다. 正初 告祀, 九月 中양고사, 성조고사는 삼일기도. 단, 신미고사는 당일기도를 하고 행사를 한다.

第2條 앞으로 上老班께서 老班規約을 따라 辭官을 당하였을 때 解除方法에 있어 일방적으로 洞會의 席上에서 제의하여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 본인의 사정을 참작, 그 외 老班들이 上老班들께 제의하여야 하며 上老班께서는 형상을 참작하여 決議에 의하여 決定할 수 있다.

西紀 1991年 陰曆 十二月 二十六日 決議事項

老班總會議決條項

老班 中에서 吉凶事가 發生할 시 扶助金額의 變更條項

1. 凶事가 發生할 시 初喪시는 금 오만원, 吉事시는 금 삼만원, 小祥시는 금 삼만원으로 정하고 老班外人으로 老班을 초청할 시는 吉凶事를 막론하고 금 이만원으로 정하고 방문하기로 함.

以上 老班規約 끝

洞自治法一部規約

西紀 1969年 12月 16日 巨逸2里 洞中 規約

- 第1條 里長선거 실시시에 금전으로 매표한 자는 當選을 無效로 한다.
만일 적발시는 任期중에라 할지라도 里長職을 解職함과 동시에 募穀 보상도 없기로 한다.
- 第2條 里長 經費 限界는 다음 항에 의하여 규정한다.
1. 行政的 接客은 里長이 전적으로 그 經費를 負擔한다. 단, 기관장이 初頭人事차 來洞時는 此項에서 제외한다.
- 第3條 年 2회에 한하여 洞民이 行政監査를 실시한다. 단, 監査員은 洞中에서 2명을 選出한다. 만약 監査하여 부정이 적발시에는 職務를 解任하고 不正額을 보상한다.
- 第4條 里長은 身元保證人 2명을 保한다(財産保證).
- 第5條 漁村契幹事 및 漁村契長은 財産保證人 2명을 立保한다.
- 第6條 洞中老班加入權은 1970년 음력 시월 십오일 부터 里長職을 만 4년을 經유한 자로 정하며, 만 4년을 經유하더라도 洞中職務實行이 좋지 못한 자에는 老班加入權을 인정치 못한다.

以上 洞自治法一部規約 끝

洞自治規約 西紀 1984年 2月 起草

巨逸洞中

洞自治規約

第1章 總 則

第1條(名稱) 본規約은 거일2리 洞規約이라 칭한다.

第2條(目的) 본規約은 洞民 상호간의 협동단결로 安寧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地域社會의 불신과 부조리를 제거하여 정의사회구현과 복지사회건설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施行範圍) 평일읍 거일2리에 거주를 가진 洞民에 한한다.

第2章 總 會

第4條(總會) 總會의 構成은 洞民 중 세대주로서 構成하며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한다.

第5條(定期總會) 定期總會는 연2회로 정하고 음력 4월·10월 15일로 정한다.

第6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있을 때 議長이 召集한다.

1. 議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2. 運營委員會가 필요하다고 要請할 때

第7條(監事の總會召集) 監事는 다음 각 항의 사유가 있을 때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1. 總會召集을 할 자가 없을 때
2. 總會召集을 하여야 할 사유임에도 召集을 하지 않을 때

第8條(議決) 總會는 過半數出席으로 會議를 進行하고 出席人員의 過半數贊同으로 議決한다. 단, 總會의 定足數가 未達할 시는 出席人員의 會議執行 여부에 議決을 거쳐 會議執行을 하되 出席人員數의 三分의 二이상의 찬동으로 議決한다. 但, 參席人員 20명 未達시는 此案에 在함.

第9條(議事錄作成) 1. 意思錄은 總會의 議事에 관한 內容을 記載하여

備置하여야 한다.

2. 議事錄 作成에는 會議 經過, 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總會에서 選出된 5명 이상의 洞民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章 運營委員會

第10條(運營委員會) 1. 본 洞의 諸般運營을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2. 運營委員會 構成은 다음 部署를 둔다.

- 委員長, 幹事 각 1명, 감사 2명, 委員 15명

第11條(委員의 選出) 委員의 選出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의한다.

1. 里長, 새마을指導者, 漁村契長, 산림계장, 正화위원장, 수협총대, 향군소대장, 청년회장. 이상 8명은 자동적으로 委員의 자격을 賦與한다.

2. 기타의 委員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위원수와 選出方法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選出하며 運營委員會에 위임할 수도 있다.

3. 委員長과 總務 選出은 運營委員 중에서 運營委員會가 選出한다.

監事 選出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議決에 따라 運營委員會에 위임할 수도 있다.

第12條(委員의 任務) 본 洞規約을 모체로 하여 본 洞의 諸般業務에 걸쳐 指導, 運營한다.

1. 委員長은 본 洞 諸般業務運營을 장악하며 運營委員會 및 總會의 議長이 된다.

2. 總務는 委員長을 보좌하며 洞中の 書類一切를 취급하며 會計業務를 담당한다.

3. 監事는 洞財政 및 業務執行狀況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總會에 報告해야 한다.

第13條(任員의 任期) 1. 任員의 任期는 만 2년으로 정한다.

2. 任期滿了前 委員의 闕員으로 補選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3. 第11條 1項에 해당하는 者중 職位가 만료되어 再任을 받지 못하

여도 임기일까지 存續한다.

第14條(委員의 資格制限) 본 洞規約을 違反한 자 또는 部落의 책임자로서 재직중 부정을 범한자 또는 部落의 名義損傷을 끼친자는 委員이 될 수 없다.

第15條(委員의 誠實 및 解任) 1. 委員은 洞規約 및 總會의 議決을 遵守하고 洞規約을 公正하고 성실하게 執行하여야 한다.

2. 委員會가 그 職務를 태만하거나 일방적으로 處理하여 部落에 損失을 끼칠때에는 委員會는 해산한다.

3. 委員 중 部落의 名의 및 委員會의 名의를 損傷시킨 자 또는 사유 없이 會議에 不参加한 자는 그 직을 해직 또는 제명한다. 단, 3회이상 不参加

第16條(顧問) 1. 運營委員會의 諮問을 위하여 老班會員으로 構成된 顧問을 둔다.

2. 老班會에서 顧問을 선임하되 構成人員은 10명 이내로 한다.

3. 顧問은 本洞 業務執行에 있어 最終決議權을 가지며 運營委員會가 重要하다고 認定한 案件은 顧問의 議決을 얻어 執行하여야 한다.

第17條(運營委員會 會議) 1. 會議은 일말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구분한다.

2. 각 단체장이 會議召集을 요구할 시 委員長은 會議召集事由를 검토하여 召集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召集할 수 있다.

3. 會議은 과반수 이상 出席으로 執行되며 出席인원 과반수 이상 찬동으로 決議한다.

第18條(運營委員會의 議決) 1. 部落의 제반운영에 관한 문제를 審議·決定한다.

2. 매월말 定期會議 시는 당월 수지결산을 審議·決定한다.

3. 總會에 부의할 安건에 대하여 審議·決定한다.

第4章 里長 및 開發委員會

第19條(里長の 選出) 1. 里長の 選出은 行政當局의 里長추천에 관한 條例에 準하여 運營委員會에서 選出하며 읍장에게 추천한다.

2. 경우에 따라 里長の 選出을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出할 수도 있

다.

3. 里長選出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洞中에서 負擔한다.

第20條(里長의 任期) 1. 里長의 任期는 만 2년으로 정한다.

2. 里長이 任期도중 사임할 시는 신임된 里長은 임명일로부터 새 任期로 정한다.

第21條(里長의 報酬) 1. 行政當局에서 支給받는 月手當은 里長의 임의로 한다.

2. 洞中에서는 里長手當을 6개월 마다 금 30만원을 연 2회로 양력 6월, 12월로 정기적으로 支給한다.

第22條(里長의 經費支出) 1. 里長은 行政的 業務上 發生하는 제반비용은 里長이 負擔한다.

2. 기타 部落發展 및 기관장들의 초도순시 또는 里長職務 이외에 發生하는 經費는 洞中에서 負擔한다.

第23條(里長의 解任) 1. 任期 종료시는 자진사표를 하여야 한다.

2. 任期 중 職務를 태만하거나 이로 인해 部落에 損失을 초래하였을 때 또는 부정을 범하였을 때에는 解任시킨다.

3. 第19條 第1, 2항에 의하여 里長을 選出할 때 금품으로 매표한 사실이 인정될 시는 當選을 無效로 한다. 만약 任期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적발될 시는 그 직을 해직하고 洞中에서 支給하는 手當은 支給하지 않는다. 단,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한다.

第24條(里長의 財産保證人) 里長에 任命된 자는 財産保證人 2명을 保하여야 한다. 財産정도는 1인당 일금 오백만원 이상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

第25條(開發委員會) 1. 里長傘下에 開發委員會를 두되 運營委員중에서 法定 員數를 위촉한다.

2. 里長이 開發委員을 주체로 會議를 召集할 시는 里長이 議長이 된다.

第26條(里長의 水道管理兼職) 水道管理에 있어 다음 각 항을 遵守하여야 한다.

1. 水道管理者 手當은 일금 팔만삼천오백원정을 매월말 회계시 支給한다.

2. 전기요금은 洞中에서 負擔한다.
3. 기한은 里長 임기일로 정한다.
4. 취급도중 정전 이외 타사정으로 3일간 給水치 못할 시는 매일 일금 사천원씩을 벌과금조로 洞中에 納付하여야 한다.
5. 취급도중 15일간 계속 給水치 못할 시는 월 手當支給金を 지불치 않는다.
6. 機關室의 원동기 및 설비일체를 인수·인계 시는 완전가동을 洞中 負擔하며 기간종료 후 동중에 인수·인계 시는 완비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7. 機關室 이외의 고장 및 사고가 發生하였을 시는 洞中에서 보수에 필요한 자재일체를 인부를 제공하고 기술면은 管理者가 責任을 진다. 단, 원선에 한하며 지선부터는 자재일절을 수용가가 負擔한다.
8. 매월 1회 이상 투약하여야 하며 약은 洞中에서 공급한다.
9. 취급도중 병환 또는 移家 이외에 타사정으로 인해 해약은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약하고자 할 시는 계약일, 임기시작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매월 일금 삼만원씩 계산하여 罰課金조로 洞中에 納付하여야 한다.
10. 취급도중 사정에 따라 타인에게 취급·관리를 임시위임을 하고자 할 시는 事前에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는 管理者에게 責任을 추궁하고 차에 대한 상당한 변상을 청구하며 해약 또는 노임지불도 중단할 수 있다.
11. 第4項의 3일간 給水中斷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2일간 給水中斷이 연 3회 이상 發生할 시는 해약하여야 한다.
12. 기관실의 도구, 비품은 洞中에서 備置하며 비품대장에 記載하고 管理者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3. 이상 기술한 관리규칙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이행하며 지급자가 규칙대로 완전 이행치 못할 시는 그 保證人이 그 責任을 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第27條(水道管理規則) 水道管理 運營規則은 다음 각 항에 준한다.

1. 수도수용가는 본 동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遵守하여야 한다.

2. 신규로 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시는 수도사용권리금조로 일금 삼만원을 洞中에 納付하여야 하며 支線 및 개량기 기타 자재일체는 수용가가 負擔하여야 한다.
 3. 수도가 설치된 공간은 매월 기본요금을 納付하여야 하며 2개월간 계속 納付치 않을 시는 시설물을 철거한다.
 4. 일단 철거된 가옥이 필요에 따라 재차 설치를 하고자 할 시에는 신규로 인정하고 第2項에 준하여야 한다.
 5. 매월 수도요금 納付에 있어 기일을 違反할 시는 과태료 2할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更次 지정한 기일을 違反할 시는 수도를 철거한다.
- 第28條(새마을指導者) 1. 새마을指導者는 명예직으로 한다.
2. 任期는 2년으로 하며 중임도 할 수 있다. 任期前에 사임할 시는 후임자를 選出하고 任期는 새 任期로 한다.
- 第29條(새마을指導者의 選出) 새마을指導者는 開發委員會에서 選出하여 運營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第30條(經費支出) 새마을指導者의 諸般經費는 洞中에서 負擔한다.
- 第31條(새마을事業)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제반문제는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새마을指導者가 執行한다.
- 第32條(새마을指導者의 誠實과 義務) 새마을指導者는 헌신적으로 모든 새마을지도사업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할 것이며 새마을사업의 執行에 대한 전반적 責任을 진다.

第5章 洞自治法

- 第33條(洞中新參) 1. 洞中에 신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동의 거주자 중 가옥을 소유한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入參할 수 있다.
2. 入參手續은 洞中에 백미 高升 二十升到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에 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써 納付하여야 한다.
- 第34條(和布行使權) 第1種共同漁場의 和布行使權은 漁村契에서 이관을 받아 洞規를 遵守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洞中에서 施行하되 老班과 運營委員會에서 관장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고로 관행권이 있는 자는 和布行使權을 가진다.
 2. 본 동에 자고로 거주한 자로서 분가하여 가옥을 매입 또는 신축을

하고 본 동에 입참하여 漁村契員이 됨으로써 만 1년만에 和布行使權을 賦與한다.

3. 본 동에 입참하여도 漁村契員이 아닌 자는 만 3년만에 和布行使權을 취득한다.
4. 외래인으로서 본 동에 입참하고 漁村契員이 된 자는 만 3년이 경과하여야 和布行使權을 취득한다.
5. 외래인으로서 본 동에 입참하고 漁村契員이 아닌자는 만 5년만에 和布行使權을 취득한다.
6. 외래인으로서 본 동에 10년간 거주한 자는 본 洞民으로 인정하고 漁村契員일 시에는 本條 第2項에 준하고 漁村契員이 아닌 자는 本條 第3項에 준한다.
7. 자기 사정과 형편에 의하여 타지로 移家할 시에는 和布行使權은 洞中에 반환하며 매매 또는 양도치 못한다. 만약 違反할 시는 대금을 몰수하고 그 行使權을 중지시킨다.
8. 가옥을 두고 2개월 이상 기거하지 않을 시는 和布行使權을 洞中에 반환하여야 한다.

第35條(山林契) 본 동 구역내의 산림은 동산림계에서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관장한다.

第36條(罰則) 산림계에서 지시한 사항을 違反할 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處罰한다.

1. 생목을 도벌한 자는 수종을 구별치 않고 그 수령과 수량을 감정하여 罰課金 오천원 이상으로 처한다.
2. 입산금지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違反하였을 시는 罰課金 삼천원에 처한다.

第37條 사정에 의하여 생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山林契의 承諾을 得하여야 한다.

第38條 公共施設物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運營한다.

1. 公共施設物 使用은 공무집행 외에 개인의 使用은 일체 금하며 본 洞 老班會에서는 경로당으로 이용한다.
2. 公共施設物의 管理責任者는 里長, 새마을指導者 및 洞中三任으로 정한다.

3. 公共施設物の 保護管理費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얻어 지출하되 취급책임은 洞中三任 주재하에 使用한다.
4. 洞中の 기구 및 비품은 洞中三任들의 책임하에 任期중 管理하며 임기종료시 洞監事 임회하에 후임에게 완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만약 숫자상 이상이 있을 시는 책임지고 尙당한다.

第39條(債務履行) 채무이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遵守하여야 한다.

1. 대출은 신용대출로 한다.
2. 利殖은 매월 3분으로 정한다. (현재는 한푼반으로 改正되었음)
3.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불이행할 시는 連帶保證人이 채무상환을 당일 오후 5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4. 채무상환을 이행치 못한 자가 대출을 요구할 시는 대출을 중지한다.

第6章 淨化 및 賞罰

第40條(淨化) 본 洞에 淨化委員會를 두고 다음 각 항에 의하여 淨化運動의 제반문제를 다룬다.

1. 委員會의 構成은 委員長, 副委員長 및 幹事 各 1명과 委員으로 構成한다.
2. 委員會의 委員은 洞運營委員會委員을 위촉한다.
3. 委員會의 任務는 地域社會의 淨化運動에 앞장서며 불신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尙호사상을 함양하여 融化단결로 상호신뢰 받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部落의 安寧과 질서를 確立함을 目的으로 한다.
4. 委員會에서는 중대한 事件 이외의 경범은 이를 선도하고 훈계하며 洞自治規約에 準하여 직분의 구별없이 公正하게 事件處理를 하여야 한다.

第41條(表賞) 洞民의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과 고래의 미풍양속을 再確立 시키기 위하여 表賞制를 실시하며 다음 각 항에 準한다.

1. 表賞의 種類는 3종으로 구분한다.
 - ① 孝道部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가정이 融化하며 수상과 수하를 分別하고 서행이 방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② 功勞部門: 部落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부락공사에 임하

며 애항심으로 부락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지극한 자

③ 勤勉部門 : 착하고 부지런하고 예의바르며 어려운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며 근면과 자립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

2. 對象者 選定

對象者選定은 洞運營委員會에서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選定하며 洞老班會, 즉 顧問의 諮問을 얻어 最終的으로 選定한다.

3. 施賞은 洞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實施한다.

第42條(罰則) 洞民으로서 洞規約을 違反하였을 시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處罰한다.

1. 公共施設物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괴하는 자는 원상복구를 하되 고의로 범할 시는 罰課金 2만원에 처한다.
2. 洞中會議時 음주, 폭행 또는 會議進行을 방해하는 자는 회의장에서 추방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자는 罰課金 5천원에 처한다.
3. 洞民으로서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는 그 직위해제는 물론이며 當해 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4. 洞民으로서 和布를 盜取하였을 시는 和布行使權 1년을 정지처분한다.
5. 洞民으로서 타인의 농산물을 盜取하였을 시는 罰課金 3천원 이상에 처한다.
6. 洞規約을 執行하는 老班會와 運營委員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폭행, 욕설하는 자는 和布行使權을 1년간 정지처벌한다.
7. 洞民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야에 음주, 폭행, 고성방가로 안면방해를 하는 자 또는 洞秩序를 문란케한 자는 罰課金 5천원에 처한다.
8.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한 행동을 하여 洞中에 告發할 시는 정상을 참작하여 正化법에 의뢰하여 處罰한다.
9. 洞民 중 유언비어를 하여 민심을 소란케하고 풍기를 문란케 한 자는 罰課金 3천원에 처한다.
10. 도박은 엄금하며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나 도박을 감행한 자가 있어 洞中에 告發이 있을 시는 罰課金 1만원에 처한다.

11. 洞民으로서 洞運營 전반에 걸쳐 이의가 유할 시는 洞運營委員會에 제의하여 해결할 것이며 무조건 行政當局에 밀고 또는 투서를 하여 部落名義를 損傷시킨 자는 洞民權을 박탈하며 和布行使權 2년 이상 정지에 處罰한다.
 12. 洞共同出에 불응하여 인두출역을 하지않을 시는 罰課金 5천원에 처한다.
 13. 오물은 지정한 장소에 버려야 하며 違反한 자를 발견할 시는 罰課金 2천원에 처한다.
 14. 水道給水에 있어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 시는 즉시 管理者에게 申告할 것이며 申告치 않고 물을 他方法으로 도용하는 것을 발견할 시는 罰課金 3천원에 처한다.
 15. 支線故障으로 수도물을 과다하게 使用하였다고 인정할 시는 검침한 使用料의 삼분의 이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계산한다.
 16. 第15項의 사실이 계속할 경우에는 전량요금으로 계산한다.
 17. 상기 각항의 犯行을 洞中에 告發하였다고 申告者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하며 불예한 행동을 한 자는 和布行使權을 2년간 정지처벌한다.
- 第43條(罰過金納付) 第36條 각항 및 第42條 각항의 罰課金 납부기일을 일주일로 정하고 기일을 경과할 시는 과태료 1할을 가산하여 納付 하여야 한다. 만약 또 일주일을 경과하였을 시는 罰課金納付는 물론 和布行使權을 추가 1년간 정지에 處罰한다.
- 第44條 洞自治規約의 制定 및 改正이 洞運營에 필요하다고 洞運營委員會에서 인정할 때 신설 및 改正案을 洞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하여 總會의 議決을 얻어 施行한다.
- 第45條(效力發生) 이상 기술한 各條項의 洞自治規約은 總會의 決議를 얻어 公布日로부터 效力이 發生한다.
- 第46條(附則) 1. 본 規約은 서기 1983년 2월 20일자 總會의 議決을 거쳐 서기 1983년 2월 22일자로 公布한다.
2. 본 規約을 찬동하여 遵守하며 이를 실천할 것을 誓約하고 다음과 같이 署名捺印한다.
 3. 본 規約 이외 發生하는 문제는 해당 條例에 의하여 處理한다.

老班會 全員 64名中 50名이 이 規約에 대해서 書名捺印하였음.

2) 箕城面 尺山里

提報者：安柄洛(남, 65세, 208번지의 2호)

安盈源(남, 62세, 265번지의 5호)

調査者：全在慶·安相述

① 沿革 및 特性

㉞ “죽은 자를 위한 사회”：落鄉 280여년 門中組織이 일체의 組織에 같음. 영해 남씨들의 規律에 영향을 받았음. 노소를 막론하고 담배를 물고 다니지 못함. 社會通念을 중시하고 最高齡者 門長(宗孫 및 行렬여하 무관)에게 구두결재를 받음.

㉟ 紐帶關係：일제 말엽까지 해안가 어부들과 유대 단절. 타성받이 입촌 못하였음. 현재에도 婚姻 폐쇄적 인습 남아 있음. 정명리에서 척산2리로 장터가 이전된지 60여년 경과되었는데, 처음에는 본거지인 척산1리에서 2리로 이주도 하지 아니하다가 해방 이후 점차 완화되었음.

② 門中契

㉞ 大門中契

㉟ 中門中契：옥암派契, 가야派契

㊱ 小門中契：體系 (위토답 등 派宗中 財産管理)

㊲ 燉陸契：亭子(火樹亭) 세울 때 모은 기금을 계속 管理

㊳ 景慕契：落鄉 祖上 모시기 위한 제사(경모제) 봉사용

㊴ 譜建契 (族譜基金), 保宗契(宗孫保護基金), 追遠契(始祖祭祀)：기금 줄어 1990년에 景募契로 통합

③ 門中財産管理

㉞ 門中土의 경우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도 관계없다고 보아 옛 故人名義로 登記되어 있음. 税金은 명의자 이름으로 納付. 현재 後孫 못 가려 名義變更 못하고 있는 건수 많음. 사기당할 위험도 있음.

㉟ 여러 지파들은 각 契 名義로 간단히 登記할 수 있기를 희망

④ 牌契

㉞ 喪禮와 관련하여 패를 組織

㉔ 조직자 이름은 “00돌이” 등으로 천한데 이는 양반이 組織을 유도하고 組織者 名義는 常民으로 하였기 때문임.

㉕ 척산리에 현재 3패가 있음 : 양지패, 음지패, 南패(季次자식들 組織)

㉖ 運營 (南牌契中) : 附屬土地의 所出로 계추.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口頭 運營. 일년에 한번 會計 및 經過整理(문서 막는다). 規約은 없으며 근거문서에는 창계자들의 이름만 열거되어 있음(근거문서 펴보지 말라는 구전). 팻웃놀이 (패별로 웃놀이를 벌임. 상민들은 이 때 심부름).

⑤ 悖倫 또는 不倫에 대한 規律

㉗ 풍기문란에 대한 罰則 없었음

㉘ 兩班社會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

⑥ 冠婚喪祭

㉙ 約婚 : 婚姻 때까지 얼굴 모르는 원칙 철저. 約婚請婚書에 대한 회답오면 여자는 그 집 귀신이 됨. 約婚 破婚 사례는 없었음

㉚ 結婚 : 신랑은 結婚 3일만에 신부댁 “퇴상”받고 귀가. 다시 3일만에 신부집 再行. 于歸(신행)때 일가친척 예물(논 서마지기치)을 해 오는데 반드시 친정아버지가 동행하며 시부모용 보름치 찬단지를 가져옴. 신랑측에서는 농, 옷터(신부예복) 정도 해 감. 눈물정성(친정에 처음 갈 때 신부가 해 가는 음식) 때에는 반드시 시아버지나 시삼촌이 데려 감(시기는 불특정). 시부모에게는 사관(매일 조석 문안)을 드림

㉛ 離婚 : 사례 모름

㉜ 葬禮 : 최고 23일 장사 (10일 이상 방에 모신 후 마당에 안구). 과거에는 3일장, 5일장, 7일장은 사례를 볼 수 없었음

⑦ 成年擬制

㉝ 장가가면 어른 대접.

㉞ 그러나 부모, 조부 생존시에는 法律行爲能力 생각 못하였음.

㉟ 所有權은 최고령 생존자가 보유하였음.

㊱ 할아버지가 손자의 빚도 갚아 주었음.

3) 平海邑 梧谷里

提報者 : 黃鼎九(남, 65세, 719번지)

黃道龍(남, 71세, 696번지)

調査者: 全在慶 · 安相述

① 老 契

㉞ 마을 最高會議體(수장: 좌상)

㉟ 座上의 資格: 환갑을 지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으며 기부 또는 공로가 있을 것 (이 요건은 점차 완화되었음)

㊱ 集會: 연2회

㊲ 案件: 주요 洞事 (현재는 특별 안전 없음)

㊳ 沿革: 약70년전쯤 (경신년)에 완의문 등을 갖춰 성문화, 추후보완.

② 洞會 및 洞規

㉞ 最高齡者를 座上으로 하고 住民全體가 참여

㉟ 환갑 지난 자 중에서 1년 순번제로 有司 選出 (無報酬)

㊱ 일제말까지 지켜진 洞規上의 罰則: 逐出, 訓戒, 회초리

㉞ 逐出: 불효, 술주정 등 패륜아, 절도범, 유부녀(과부포함)상통, 간통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유지들의 주도하에 동회에서 청문후 이구동성으로 결정

㉟ 訓戒: 깍연, 싸움, 도벌, 부녀자 고성 등의 경우에 시행하는 일종의 명예형

㊱ 회초리: 소 먹이는 애들이 가축을 잘못다뤄 곡식을 망친 경우 시행

㊲ 財産다툼 등의 私的紛爭은 다루지 아니하였음

㊳ 아주 오래 전부터 술집 금지

㊴ 洞規는 현지 소실되어 전하지 아니함

③ 山林契

㉞ 식림契(일제때) 또는 松契 등으로 불리움

㉟ 職制: 松長, 有司

㊱ 財源: 部屬土地

㊲ 加入資格: 村民. 移住者는 입참례를 준용하여 입계

㊳ 配當: 가을 한 철 균분. 불참자는 무배당

㊴ 把守制度: 巡山(순번제로 하루 3번). 패(증표) 交換으로 교대

㊸ 罰金：規約 違反者는 나무 값에 해당하는 약간의 罰金을 물며 이는 契 財産으로 歸屬됨

㊹ 登記：契員 相互間의 합의하에 2 3명 共同名義로 登記

㊺ 集會：연2회

④ 喪布契：약간명씩 순번제로 출력

⑤ 入參禮：입촌시 술 한말, 담배 한발 출연

4) 平海邑 三達里

提報者：黃慶壽(남, 43세, 409번지)

參照：오곡리에서의 면담시 길 안내차
동행하였던 黃氏의 제보

風紀規律

— 告發事由：不孝, 姦通

— 告發權者：부모, 친척

— 罰則：訓戒, 勞役(땀나무, 거름풀), 매질, 罰金(곡식), 追放

(4) 調査結果分析

1) 班村規律微弱

이른바 班村이었다는 곳은 기대만큼 慣習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鄉校를 중심으로 한 鄉約을 주된 典據로 내세우곤 하였지만 전래의 鄉約은 분실되었다고 전하며 平海鄉校에서 소장하고 있는 箕城鄉憲(1580년대경:선조초, 명종말 制定. 制定者 大海 先生)을 慣習의 典據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典據上의 規約들이 현재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2) 民村의 自治組織 變貌

農業을 主業으로 해 온 이른바 民村이었다는 곳은 나름대로 共同生活에 관한 規約들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 마을의 共同問題 또는 風紀團束이나 紛爭解決 등을 위하여 慣習上의 組織會合을 현재에도 개최한다는 事例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慣習上의 規約들을 執行할만한 組織體가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3) 海村의 慣習法

① 地方自治의 原形：약간의 農業도 겸하고 있는 海村인 平海邑 巨逸里

의 경우를 보면, “國法은 어겨도 洞法은 못어긴다”는 口傳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慣習法 體系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현재에는 노년층의 감소와 청장년층의 외지전출 등으로 共同體秩序가 상당히 이완되어 예전의 모습에 재현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傳統에 의한 支配, 合議制, 全權能性, 兩院制 등의 원형이 발견되며, 固有事務와 委任事務의 조화, 새로운 自治機構에로의 점진적 權限移讓 등이 관찰된다.

② 規範力の 源泉: 경제규모가 零細하던 시절 生業의 主要 手段이었던 이른바 “짬”(해산물들이 성장하고 있는 해안 바위 또는 이 바위들에서 해산물을 採取할 수 있는 權利)이 秩序維持를 뒷받침해주는 힘의 원천이었음이 관찰된다. 아울러 거일리의 사례에 있어서는, 經濟規模의 擴大, 소득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짬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共同體의 規律도 함께 해이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短期間의 訪問과 單一事例 分析만으로는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와의 關係를 단정 짓기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는 추후의 深層調査 이후로 미룬다.

4) 후포항의 魚販場을 중심으로 한 慣行調査 可能性

후포항은 “영덕계”의 주요어장 내지 집산지이고 근래 울릉도행 여객선의 선착장이 개설되는 등 동해안의 중심 항구의 하나로 발전되고 있다. 어판장에서의 경매 등 水産物去來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수산물 가공공장 및 중개회사가 밀집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동해안 지역의 漁撈慣行 및 水産物 去來慣行의 調査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

(5) 調査所感

① 家門과 門閥을 重視하는 提報者들은 이 調査의 본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法的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동네나 家門 또는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취하곤 하였다. 사전에 들은 정보가 있어서 그 변죽을 울려도 되도록이면 좋은 사례만 말하고자 노력하곤 하였다.

② 村落地域에서도 이제는 이른바 목가적인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농업이외의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상당히 바빠 보였다. 일정 잡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약속을 하고서도 숨바꼭질 하듯이 여러 행선지를 추적하기도 하였다. 결국 조사팀은 밤에까지 면담하는 일이 잦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밤12시가 넘는 날이 많아 더운 날씨에 몹시 피곤하였다.

③ 調査期間의 부족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廣域豫備調査의 特性上 부득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面談을 暫定的으로 약속해 놓고도 만나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걸렸고, 거일리와 후포항구에 대한 참여관찰을 행할 수 없었음도 유감스러웠다.

(6) 蒐集資料目錄

- 巨逸洞 老班規約, 自治法一部規約, 洞自治規約
- 郷土史研究厚浦洞誌(厚浦 洞中 老班契, 1989년, 137쪽)
- 蔚珍文化 第5號(울진문화원, 1990년, 205쪽)
- 郷土史研究 第1輯(蔚珍郡 향토사연구회, 1988년, 263쪽)
- 郷土誌 第1輯, 平海郷校 유도회(平海郷校, 1989년, 50쪽)
- 平海校誌 下一箕城郷憲 收錄分一(연대미상, 平海郷校 所藏) 寫本
- 郷憲令(연대미상 任申年, 平海郷校 所藏) 寫本
- 古今郷案序(연대미상 乙丑年, 平海郷校 所藏) 寫本

2. 盈 德 郡

(1) 調査計劃

- ① 한 調査팀이 蔚珍郡과 영덕군을 함께 調査함.
- ② 調査計劃은 蔚珍郡의 경우와 동일

(2) 調査協力

① 調査經過는 基本的으로 蔚珍郡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調査協力에 관하여만 記述한다.

② 영덕 출신인 淸州大學校 經濟學科 權琥基 教授를 통해 현지 면담에 정자 내역을 입수하고 그 중 몇몇 인사와는 출발전 서울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盈德(寧海)의 5대 성씨는 安東 權氏, 英陽 南氏, 務安 朴氏, 載寧 李氏, 水原 白氏라고 하는 바, 面談豫定者들은 주로 이 姓氏들 중에서 選定하였다. 영해의 小作農 體系와 묘제 調査도 권고받았다.

③ 蒼水面事務所 李台熙 面長은 調査팀을 위해 친절하고 헌신적인 배려를 해 주었다. 전래 慣習에 밝을 것으로 생각되는 地域人士들을 面事務所에 초청해 주고 본인이 면담에 응해주는 이외에 關係資料의 蒐集을 도와 주었다. 務安 朴氏들의 도곡향약을 調査해 보도록 勸告하기도 하였다. 蒼水面 노인회 昔重燦 회장은 면담에 응하기 위해 버스도 잘 드러들지 않는

30리길을 와 주었고 창수面事務所 金旭煥 계장은 밤길을 마다 않고 읍내까지 나가 資料를 복사해 오는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

④ 柄谷面事務所 이문석 副面長과 권호달 係長 그리고 김홍섭 單位組合長은 提報者 紹介와 資料蒐集에 協力하였다. 아울러 병곡면 각리1리에 현재에도 振興契가 시행되고 있으며 백석2리에는 尊位關係文書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한편 영덕군에 관한 郷土史關係資料蒐集에 노력하고 있는 이병목 前蔚珍郡守는 所藏文獻들을 복사해 주었다.

(3) 調査內容

1) 寧海面 槐市 2洞

提報者：權相左(남, 79세, 604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傳統의 消滅

㉞ 年老者를 尊重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풍토가 사라진 점과 男性優越社會의 權威가 消滅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㉟ 自由는 자숙이다. 자유의 ‘自’는 ‘身’의 윗부분이므로 행동의 任意性(下體)은 없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자유는 자기 몸을 지키는 정도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대는 달리 변했음

② 蓮桂所

㉞ 영해4개면(영해, 병곡, 창수, 축산) 출신 벼슬아치들(마을 또는 門中의 생원 이상 진사, 도사 등 16명)의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

㉟ 出捐基金으로 土地(종래 50~100두락. 추정치)를 사서 그 所出로 活動費를 支援하였음. 日帝의 土地收奪로 인해 분할 일실

㊱ 현재는 각 門中에 약간씩의 土地를 分割하여 ‘연계소토지’로 管理(權氏 門中의 경우, 600평 보유. 有司 2명). 16名義 直系 子孫들이 1년에 1차례 모여 상징적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냄

③ 門中財產：위토管理

㉞ 小作人을 겸하고 있는 제지기가 소출의 5~6할을 차지

㉟ 그 나머지 2~3할로 제사를 지내고 그 나머지는 公課金 및 備蓄基金으로 사용함

㊱ 현재는 土地가 묵고 제실이 빈 경우 많음

㊲ 제사만 지내주면 위토를 붙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

④ 湫

- ㉠ 송천보, 읍보 등 존속
- ㉡ 管理人으로 보도감을 두고 한마지기 당 술 한말 값 정도를 거출
- ㉢ 현재는 水利組合 체제로 탈바꿈
- ⑤ 洞規 : 마을전체(洞會)단위의 懲罰制度는 없었음

2) 蒼水面 蒼水里

提報者 : 昔重燦(남, 72세, 395번지)

調査者 : 全在慶 · 安相述

① 沿 革

- 영해(禮州)의 律法 模範地域이었음
- 산지가 많았던 탓으로 선산 많았음. 조상숭배풍조 일반화.

② 洞 法

㉠ 法意識

- ㉡ 洞法이 官法보다 더 무섭다
- ㉢ 도둑 자손은 낳아도 고발하는 자손은 낳지 말라
- ㉣ 동네 어른(원로) 모듬
 - ㉤ 죄수, 존위 등의 직제
 - ㉥ 부락의 주요사는 이 모듬의 하명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함
 - ㉦ 불효 문책, 부락 대사(불상사, 흥년, 범출몰 등)의 경우에는 모

듬 개최

㉧ 罰 則

- ㉨ 水火不通
- ㉩ 對話斷絶, 품앗이 불응
- ㉪ 田賣買 不可

③ 초군 모듬과 草宴

㉠ 소를 잃은 경우, 소가 곡식을 망친 경우, 소 머구리를 끼우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 초군 모듬에서 당사자를 불러 5-6차례 종아리를 때리고 소머리돈(벌금)을 물리거나 한 사람의 하루 노임 내지 팽머리 하나

가득 분량의 곡식으로 변상하게 함. 이 돈은 초연 때 쓰임.

㉔ 풀잔치(초연)는 제초사업이 끝날 때 쫄 길도 고치고 부락 자축연을 베풀. 남녀노소 다 모이고 각 가구는 사는 형편에 따라 알아서 음식을 장만해 음.

④ 洞 祭

㉕ 음력 정월보름에 오륙백년생 자연수와 사당 등에서 제사. 불상사나 전염병의 창궐시에도 임시 제사

㉖ 指定된 祭官은 목욕제계후 근신 대기. 도가(제사음식 모신 집)에 모여 복주. 소지(종이에 불 붙여 공중에 띄움)후 기원

㉗ 이 날은 他地轉出한 洞民도 誠金 出捐

㉘ 傳統的으로 축문낭독. 이를 미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며 아니할 경우 반대급부로 폐를 받는다고 생각함

3) 蒼水面 仁良3里

提報者：李台熙(남, 54세, 444번지)

調査者：全在慶·安相述

① 婚 姻

㉕ 이 고장은 他地域보다 婚姻慣習이 엄격하였음

㉖ ‘간선편지’ 交換하고 맹약하면 約婚成立. 이 편지(예장지)는 평생 보관하며 죽을 때 관에 함께 묻음

㉗ 便紙交換方式：請婚書와 許婚書를 써 가지고 양사돈이 모여 딸의 것은 밑으로 보내고 사위 것은 위로 보내 깔고 앉음

㉘ 改嫁 엄격히 規制. 改嫁하면 일평생 이 고장에 못 오게 하였음. 約婚한 경우, 通書(請婚書, 許婚書의 交換) 後면 約婚者가 죽었을 때에도 適用됨. 口頭로 定婚해도 해당

㉙ 破婚할 경우 損害 전부 賠償

② 葬 禮

㉕ 傳統的으로 묘터를 크게 잡았음

㉖ 風水地理說에 크게 依存, 풍수를 불러 망자와 생기가 맞도록 설정

③ 參考資料：仁良3區洞案

仁良3區洞案

乙未年(1919年) 12月

洞案序

節目

1. 父母를 섬기는데 誠과 孝를 다 하라
2. 子弟를 가르침에 있어서 올바르고 떳떳하게 지도하라
3. 兄弟와 宗族 相互間에 友愛를 돈독히 하라
4. 長幼와 벗은 서로 敬愛와 信義로써 대하라
5. 吉凶事와 哀慶事에 있어서는 物心兩面으로 서로 도우라
6. 위 條項의 實踐에 힘쓰고 권하는 자는 洞中에서 施賞한다
7. 위 條項을 違反하여 不良한 자는 洞中에서 罰한다
8. 洞案에 登載된 사람에게 凶事가 생긴 때에는 큰 초 두갑과 탁주 두 되를 扶助한다
9. 모임은 매년 동지달 말일에 開催하여 會計하며, 有司는 會費의 完納을 지체시키지 말고 돈과 곡식을 바꿔내지 못하도록 하라
10. 父親이 入案된 때라도 次子도 加入한다(이 條는 己酉年:1969년 정월 보름 洞會序에서 改正함)
11. 洞案人이 다른 洞으로 이사할 때에는 洞案 會計에 干여하지 못한다
座目 (李昌熙 壬申生 外 以下 省略)

4) 蒼水面 美谷里

提報者：金旭煥(남, 55세, 337번지)

調査者：全在慶·安相述

① 泂 契

㉞ 水利組合에 속하지 아니한 區域이 전체 농토의 80%차지, 아직도 泂契를 施行하고 있음

㉟ 職制：도감을 둠. 도감은 모자리 하기전에 平員들이 정함. 막음보 때 結산하고 도감에게 수고비 줌

수문관리인을 따로 뒀 비올 때마다 管理하게 하고 수해에 대한 책임을 물음. 고차례 때에는 별도감 2명을 둠

㉔ 運營 : 400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200평 마다 탁주 1말 출연. 가물 때에는 차등 출력하여 냇가 굴착(굴사보). 물 대는 방법은 고차례를 원칙으로 하고 “交上交下”(위 아래 번갈아 급수)制로 보완함. 高차례 때 盜水의 경우는 처벌엄격.

㉕ 보막음 : 남정네가 없는 농가는 보에 출력하는 비용을 내고 면책

② 畝 풀

㉔ 畝날 (음력 4월, 소만경)이 되면 새벽부터 구역 따라 풀을 베었음.

㉕ 그 전에 풀을 베면 풀을 회수하고 벌칙부과(수화불통)

㉖ 새벽 1시부터 봉화 피워 자기 구역들을 확보하였으며 초군들은 밤새도록 지계를 다듬었음.

㉗ 비료가 흔해지기 전(약15년전)까지 시행되었음

5) 蒼水面 佳山1里

提報者 : 白淳植 (남, 54세, 247번지)

調査者 : 全在慶 · 安相述

① 兩村契

㉔ 영해면 원구와 창수면 인량 간에 해마다 한번씩 번갈아 개최

㉕ 무안 박씨와 재령 이씨 간의 친목 도모

㉖ 분가시 새로 加入

㉗ 1년에 나락 1말씩 출연

㉘ 有司 안내로 각 가정 방문, 각 가정은 음식 차려 놓고 환대

㉙ 5백여년의 傳統 維持

② 門 契

㉔ 保宗契(宗家保存)

㉕ 체契(兄弟間)

㉖ 宗契(四寸間)

㉑ 兩派 宗契

③ 學 契

㉑ 스승 위해 학동들이 生計, 葬禮支援. 碑石建立 및 祭祀奉養

㉒ 學契 田畓 및 山 運營

④ 各種契

㉑ 松 契

㉒ 喪布契

㉓ 燈燭契(전등의 등장과 함께 소멸)

㉔ 동갑契

㉕ 돈의契

㉖ 泐 契

6) 丑山面 陶谷里

提報者：朴寅煥(남, 60세, 118번지의 1호)

調査者：全在慶

① 地域的 特性

㉑ 병곡을 발상지로 하는 영해지역은 고려조까지 慶州文化圈이었고 조선조부터는 安東文化圈이었음

㉒ 영해 주변의 부곡, 역, 봉수에서는 律이 엄격하였음

㉓ 官僚로서 刑을 받은 사람들이 역병 또는 봉수병으로 근무. 논밭을 결로 지급받았음.

예전 영해의 부곡 : 영양군 서포면 黃腸山

舊 역촌 : 영해면 연평동

봉수대 : 대소산(동해안 제일 요충)

㉔ 이 地域의 절들은 산등성이에 위치하여 道路가 발달하지 아니하였던 시절 交通요충지로서 기능하였고, 빙골은 기온이 낮은 밤에 水産物을 서울로 運送하여 주상께 진상하는데 사용되었음

㉕ 各 村落들은 기와를 구울 수 있는 흙의 산지를 고려하여 발달

② 自治組織

㉑ 鄉 會

㉠ 郷校 (典校 및 수명의 掌議)를 중심으로 運營. 現在에도 存續

㉡ 5대 성씨 중 最高齡者를 鄉卒老로 推戴

㉢ 派中 代表와 姓氏 代表들을 次卒老로 任命

㉣ 鄉員이 되려면 향전 納付

㉤ 門 會

○ 門中의 最高齡者를 門卒老로 推戴. 次卒老 任命

③ 洞 法

㉠ 法意識 : 洞規가 제일 무서웠음

㉡ 이웃과 싸우는 등 불순하면 1차로 경고, 2차때에는 대처에 불려서 문초하고 '두문불출'시킴. 마을 어른들이 가시나무로 대문을 막고 물도 퍼가지 못하게 하고 이웃도 왕래하지 못하도록 함(수화불통).

㉢ 處罰을 받는 家口는 달밤에 물을 훔쳐가야 함

④ 家 事

㉠ 結婚後에도 40전까지는 내외가 각 방을 쓰도록 하고 어른의 지시에 따라 일진과 생기 맞춰서 합궁

㉡ 이를 어기면 친정에 보내는 등의 강경수단으로 굴복시킴. 부모의 눈 피하는 야화 많았음

㉢ 高宗 이후에는 엄한 집안에서만 시행하였음

㉣ 45세 전후면 상노인 대접 받았음

⑤ 相 續

㉠ 安東 류성룡 宗家의 相續法을 準用

㉡ 딸에게도 相續

⑥ 婚禮·喪禮

㉠ 가마도둑 : 금슬 좋은 부부 중 남자를 태움

㉡ 상여도둑 : 상여 만들면 복스러운 개를 넣어 의식 거행

(4) 調查結果分析

① 單純形態의 洞案(洞法) 傳承 : 영해 5대성씨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蒼水面 仁良里의 경우

② 狀를 비롯한 각종 洞契 내지 村契의 存續 : 農耕生活을 위주로 한 여러가지 團體와 集會 傳承

③ 特殊部落의 慣習 嚴格 : 律은 대체적으로 特殊部落에서 엄격하였음

④ 같은 生活圈의 慣習의 類似性 : 같은 生活圈인 蔚珍과 비교할 때 村落共同體의 自治體系 및 農耕生活와 관련하여 서로 類似한 慣習들을 발견할 수 있음

[예] 洞法이 國法 또는 官法보다 무섭다는 意識, 洞會의 位階秩序, 制裁手段, 풀잔치 등

(5) 調査所感

① 調査의 活力素 : 크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慣習調査를 遂行함에 있어 現地의 친절한 協力은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활력소임을 절감하였음

② 調査要領의 터득 : 객관식 질문이 아닌 주관식 질문을 던지고 재미도 없는 法律問題에 관해 현지주민과 면담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음. 傳統을 자랑하고 유서를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먼저 그들의 家系와 祖上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끈기 있게 들어줘야 상대방도 이쪽의 지루한 질문에 답해 줌. 그러나 때로는 시간과 인내심의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도 하였음. 陶谷鄉約을 調査하기 위해서 축산면 도곡리 상원1동을 방문하여 3시간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調査者가 원하는 바를 알고자 하였지만 단 한가지의 항목도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

③ 郷土史家들의 活躍과 調査協力體制의 構築 : 이 調査에서는 現地 郷土史에 관심을 가지고 關係資料를 蒐集하고 郷土誌의 刊行에 노력하는 인사들을 몇 명 만났는 바, 그들의 郷土史에 관한 知識과 故郷에 대한 愛情에 탄복하였다. 國史編纂委員會는 이러한 인사들과 調査研究協力體系를 갖추고 있었다. 예컨대, 도곡리 거주 朴寅煥 國史編纂委員會調査委員은 경북 동해안 일대의 社會經濟史에 관심을 가지고 烽燧, 寺刹, 氷窟등에 관한 해박한 설명을 들려주어 흥미있게 들었다. 慣習法調査를 體系化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현지 전문가들과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蒐集資料目錄

○ 仁良三區 洞案(작성년대: 乙未年. 李台熙 창수面長 소장. 6쪽) 사본

○ 樊浦里(도곡리의 옛지명) 完議文(작성년대: 약3백년전. 도곡리 朴寅煥씨 소장. 9쪽) 사본

- 海州素言 (제16권) 중 鄉約節目 (영해읍 괴시3동 162-12 이병목씨 소장. 7쪽) 사본
- 竹老集 乾 중 院規, 論罰, 損徒 부분 등 (이병목씨 소장, 10쪽) 사본
- 柄谷面 白石2洞 里洞法規綴(1991년 작성. 4쪽) 사본
(7) 關係資料目錄
- 영덕군지 (1981년 12월, 영덕군 발행)
- 盈寧勝覽 1권~3권 (1927년 刊行, 原著: 慶州人 金鎔濟, 소장: 이병목씨)

3. 尙州郡

(1) 調査計劃

- ① 調査期間: 1991년 8월 24일 - 8월 29일
- ② 調査特性·目標·項目·方法은 前記 영덕군의 경우와 동일
- ③ 調査者: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2) 調査經過

1) 調査協力

① 朴潤成 事務局長(尙州文化院)과 全在彬 係長(尙州郡廳 企劃室)은 關係資料蒐集과 현지 專門家 및 현지 住民들의 면담 주선에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주었다. 李相紀 係長(尙州郡廳 公報係)과 金哲熙 記者(尙州月報)는 關係資料蒐集에 協力하였다. 郡廳의 協助를 얻는 과정에서는 金台熙 文化公報室長과 李秀夫 企劃室長의 배려가 컸다.

② 金基卓 教授(國立尙州産業大學 國文學科)는 調査對象으로서의 尙州地域의 특성과 調査方法上的의 문제점에 관하여 조언하여 주었다. 朴炳默 總務(尙州郡老人會)와 金현숙 會長(尙州市 女性團體協議會) 및 이예희 會長(尙州市 새마을婦女會)은 관계자 면담을 주선하여 주었다. 尙州地域 鄉土史家 盧天可 副會長(尙州市·郡盧氏화수회)은 방문면담에 응해 준 외에 關係史料의 사본도 제공하여 주었다.

2) 現地諮問

① 朴庸熙 研究委員(尙州文化研究會)에게 諮問하였다. 박 위원은 구시대의 律法에 관해 아는 이가 많이 死去하여 調査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口傳資料에 관하여 같은 硏究會 所屬 유시완 선생에게 諮問할 것을 권하였다(공교롭게도 유선생은 서울로 출타하여 체류기간 내내 면담할 수 없었음).

한편, 契에 대해서는 洞有財産들이 1960년대초 국가에 귀속된 후 財産, 人員이 줄어 상당부분 호지부지되었다고 말하였다. 박 위원은 洞祭를 지낸다는 것은 곧 洞契와 洞規 및 洞財産이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調査適格 部落으로서 다음을 꼽았다:

은척면 장암리(洞祭 및 洞契 잔존)

사별면 원흥리(洞祭를 尙州에서 제일 크게 지내며 전통 깊음)

중동면 우물리(洞祭)

이안면 대현리(사실)(서낭제)

② 朴贊善 先生(尙州高等學校)에게 諮問하였다. 박 선생은 尙州의 속사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언급을 한 후에 원흥리 안쪽에 위치한 용담 3리(조골, 약50여호)가 풍습이 엄하였다며 調査適格 部落으로서 다음을 들었다:

내서면 능암리(능바우)

중동면 오상리(합창 김씨)

은척면 우복동·오복동(전설중의 이상향으로 추측)

옥산면 오광리(교회가 들어선 후 규범 갈등 심함)

③ 유강하 神父(尙州 서문동 聖堂)에게 諮問하였다

㉞ 民衆의 慣習에 관하여 : 이른바 민중은 줄잡아 한일합방 이전에는 小作人들이었고 支配階層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기 힘들었으며 그들의 行爲樣式이 法의 次元으로 승화되기 보다는 단순한 풍습으로 남았을 것임.

예컨대, 奴婢들이 婚禮式 같은 것을 올렸는지 극히 疑問이며 離婚事例도 들어본 바 없음. 백정들의 제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학이 있는 자들이 당사자가 읽지도 못하는 축문을 써 주는 등 조롱을 하였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예법이 발달되었을지는 미지수. 해방이후 형성된 관습규범에 관하여는 좀 더 심층적 調査 요망.

兩班과 奴婢들 간의 悲劇(간통, 겁간 등 은밀한 뒷혼사)으로 형성된 어중간한 계층들은 양반의 형식을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이들의 후손들

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마을들은 규범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오히려 민중적이었기 때문에 지선 스님(조계종 본부)같이 민중불교를 연구하는 이들을 찾으면 민중의 律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함.

㊸ 尙州地域의 特性에 관하여 : 支配階層과 基層民들 간의 갈등이 심하였음.

尙州와 安東 地域의 中下層民들이 천주교에 입문한 배경을 살펴보면 이 地域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이 地域도 세도가들의 수탈이 심하였고 中人들은 이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대거 천주교에 입문하였음. 한불수호조약 체결 당시 고종황제는 프랑스 신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상당한 배려를 하였고 조약문안에 敎誨 권능을 선교자유조항에 넣음으로써 정부에서는 설교 및 학교설립을 가능케 하는 증표를 발행하였고 이것을 보이면 관리들이 후퇴하였기 때문에 尙州의 퇴강, 안동의 도양 등지의 마을에서는 세도가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기층민들이 ‘洋大人’(천주교 선교사)의 휘하에 들어가 보호받고자 하였음(예컨대, 중동면 길마리 宋씨 집안과 柳씨 집안간의 선산 장지를 둘러싼 ‘7인의 결사대 비화’ 참조).

㊹ 調査資料에 관하여 : 安東地域을 調査할 경우 文化院을 통해 中人 마을들을 수소문하여 慣習調査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함.

하회와 같은 權門만 찾지 말고 예컨대 하회마을 柳씨 門中の 奴婢나 小作人을 지냈던 분들이 더러 거주하였던 도양동 같은 곳도 찾아 보는 것이 균형있는 관점 확립에 도움이 될 것임.

嶺南地域은 민중 쪽에서 보면 잊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 될 수 있는 한 과거지사를 회피하려 할 것임. 차제에 전라도쪽을 조사하는 것도 資料蒐集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

(3) 調査內容

1) 豊壤 趙氏 宗宅

所在 : 尙州市 신봉동 동아아파트 1동 306호

調査協力 및 提報：宗孫 趙誠穆 先生

① 洞法과 國法の 關係

㉞ 洞規가 國法보다 앞섰음：패륜아의 경우, 시비곡직이 확실해지면 동네 명예를 위하여 官에 告하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洞中에서 ‘멍석말이’ 등의 私刑을 가함.

㉟ 國法으로 移管한 例：

㉠ 洞有山에 山所를 쓸 경우：洞山の 山所 자리를 놓고 어느 한 쪽에서는 풍수지리상 꼭 여기에 써야겠다, 다른 한 쪽에서는 거기에 쓰면 풍수지리상 자기 후손들에게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니 아니된다고 하여 洞民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에 관하여 동네 의견도 서로 갈려서 동규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國法에 의뢰하였음.

㉡ 嫌疑事實을 극구 否認할 경우：姦淫 등의 풍기문란으로 洞中에 회부된 당사자들이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쉽게 해결이 나지 아니할 경우, 國法에 의뢰하였음.

② 契

㉢ 契의 區分：종래 門中契나 동네契는 金融, 利殖, 遊戱 등의 관념이 개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契’라고 명명하였음.

‘契’字 앞에 벼 禾변을 붙인 ‘계’는 예전에는 상당히 드물었고 해방후 친목이나 금융을 위주로 생겨나 사실계로서 발전하였음. 洞規처럼 罰則 條項을 거의 두지 아니한 것이 특색이었음.

㉣ 풍양 趙씨(尙州) 門中契：歸益契, 篤知契, 古谷契, 義庄所 등

㉤ 同參契：尙州地域의 유생들이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길에 친해져 결성한 일종의 同志契. 과거를 치른 다음 낙향 후에도 지속됨. 6·25 전까지 각 집안의 長子가 이를 계승하였음.

③ 門中과 寺刹과의 關係：尙州 南長寺는 본래 절 所有財産이 많았음.

舊韓末 및 일제시대에 尙州地域의 유력한 어느 姓氏의 권세에 南長寺의 재산과 재물이 자꾸 유실되고 농사철에 승려 인력도 차출되는 등의 시달림을 받자 주지가 趙氏 문중에 보호를 요청하였음. 이후, 南長寺 관계자들은 “우리 절은 조씨네 절이다”라고 표방하였음.

2) 沙伐面 元興1里

提報者：禹五錫(남, 86세, 318번지)

朴鎔杓(남, 67세, 264번지)

① 洞 法

㉞ 道豐年祭를 이곳에서 지내는 경북내 모범부락으로서의 자부심

㉟ 禮를 強調

㊱ 風習은 유순하지만 洞中の 命을 거역하는 경우 집단으로 강제 : 이웃간 왕래 금지(“상관하지 말자”) 및 일체의 거래 금지. 심할 경우, 동네에서 쫓아냄.

㊲ 根據文書는 기억할 수 없고 口頭條約으로 施行하였음

㊳ 洞財政(“동네합니다”) : 이장이 관장, 일년에 한번 모여 收入支出 計算. 부역 때 일군 없는 집에서 내는 돈과 초상 때 자손들이 상여에 거는 돈 등으로 재원을 삼고 이는 동네 접대비로 주로 지출. 부인회의 소득은 부인회가 별도 관리.

② 마을 共同財産

㉞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洞畓(약 2천평) 보유

㉟ 里長에게 報酬를 주지 아니하는 대신에 이를 里長畓으로 줌.

㊱ 婦人會 財産 : 畓 약 1천평

③ 補助契

㉞ 동네 전체가 참여, 나락 1가마니씩 출연하여 기금조성. 10년 역사.

㉟ 자녀들 혼례 때 1회 나락 1가마니 배당

㊱ 有司(임기 1년)가 관장

④ 水利組合

㉞ 용수가 원활하여 조합 불필요

㉟ 5·16직후 조합가입을 강제하였으나 눈 내리던 날 130명이 군수에게 항의하여 중덕, 낙상, 원흥, 이탑 등지는 ‘공금’수리조합지구에서 탈퇴.

⑤ 共同作業

㉞ 두 레

㉟ 반별 운영 : 원흥1리에 4개반 편성(구역을 ‘구미’라고 부름). 각 반에 12호 정도 소속되어 있고 반장이 주도. 역사 10여년.

- ㉠ 모심기, 추수, 영농기계구입 등의 활동 수행
 - ㉡ 일꾼 없는 집은 품삯을 班에 냄(현재 1만원 정도)
 - ㉢ 부 역
 - ㉠ 풀깎기, 길고치기 등에 每戶가 참여. 이장 주관
 - ㉡ 참여하지 못하면 年2만원 정도 기부
 - ⑥ 紛爭, 和解 및 訟事禁止
 - ㉠ 가뭄에 물대다가 싸울 경우 등
 - ㉡ 이장이 동네 어른들 모시고 합의 또는 화해 주선
 - ㉢ 관공서에 송사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유도
 - ㉣ 지금도 작은 문제들은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
 - ⑦ 地役權
 - ㉠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地域權 설정 필요한 경우 있었음.
 - ㉡ 문제 사례는 없었고 각자 원활한 협조
 - ⑧ 雇傭 : 머슴
 - ㉠ 상일꾼에게는 나락 7~10섬 지급
 - ㉡ 한해 단위로 고용
 - ㉢ 50년 전에는 이 마을 130여호 중 머슴 30여명 있었음
 - ㉣ 7월에는 명석 하나를 짜야 하루 놀려주고 명석값 지불
 - ㉤ 해방후에는 머슴제 거의 없어졌음
 - ⑨ 入參禮
 - ㉠ 동네에 술 돌림
 - ㉡ 출촌례는 없었음
 - ⑩ 洞 祭
 - ㉠ 동구의 고사목 두그루(산 것을 본 이도 없고 본 일이 있다는 윗대의 전언도 없었음)를 ‘수문장님’으로 모심.
 - ㉡ 정월 보름에 지내며 동네 성씨의 숫자(20여 성씨)대로 한지를 태워 燒祭 올림. 동네가 해를 입는다고 생각되면 새로 날을 받아 다시 지냄.
 - ㉢ 禁忌 : 朴씨와 禹씨는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쌀 1홉을 출연하고 음복에 초청은 받지만,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함. 먹으면 해를 입는다고 믿음.
- 제사날은 삼경부터 각 가정이 두문불출하며 개도 짓지 아니함.

洞祭 지낼 때에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도록 금줄을 칩.

제관 등은 1년 내내 굶은 일 못 봄. 이를 어기면 자기에게 해가 돌아온다고 믿음.

도살금지. 일정 때 제사날 소 잡다가 눈이 빠져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 다시 들어간 사례 있었음.

동네에 초상이 나도 곡도 못하며 그냥 덮어 둬. 초상난 줄 알면 제사날을 다시 잡음. 제사날을 피해 초상나면 아주 운이 좋다고들 생각함.

⑪ 마을행사

㉔ 7월 백중에 동네 전체가 모여 유희

㉕ 비용은 각 가정마다 일정액씩 추렴

3) 內西面 綾岩里

提報者：成鶴煥(남, 80세, 48번지)

成百周(남, 67세, 41번지)

① 自治組織

㉔ 洞會 運營. 別途의 營農組織은 없었음.

㉕ 同族部落이므로 宗親會長이 洞會長을 맡음. 다른 명칭들은 없음.

㉖ 文書로 전해오는 洞規 또는 門中規約은 없음.

② 洞 規

㉔ 洞法이라는 用語보다 洞規라는 用語를 선호함

㉕ 國法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 : 지서 등에 동네 紛爭을 들고 가지 못하게 함. 도박이나 싸움 등의 사례 여러 건 있었음.

㉖ 適用範圍 : 싸움, 불경, 불륜 등 禮를 올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웃어른의 지시가 부당한 때라도 일단 이를 수용하고 더 윗어른에게 상의하여 이 지시를 철회토록 조치함이 관례.

㉗ 制定 : 전례가 없거나 확실하지 아닐 경우 또는 비상시에는 洞中에서 새로이 정하였음.

㉘ 實效性 : 마을에 사는 이상 무조건 따랐음.

㉙ 節次 : 싸움의 경우, 洞中에서 시비를 판단하고 사죄를 권고함. 그 자리에서 화해하는 수도 있으며 약간의 시일을 두고 다시 화해를 붙이는 수도 있음.

㉔ 罰則 : 洞中의 下命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일을 시키지도 해주지도 아니함(“상대하지 말자”. 교류 완전두절). 심할 경우, 소작권 또는 洞畵에 대한 경작권을 박탈함. 명석말이 등은 거의 행해지지 아니하였음

㉕ 變遷 : 일제시대까지는 동규가 매우 엄했고 따라서 잘 지켜졌으나, 해방후부터 동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음. 핵가족제가 보편화되면서 급격히 쇠퇴. 문서화된 동규는 전하지 아니함

㉖ 提言 : 동규의 보존과 시행은 화목도모, 단결증진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계속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의 행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즉 마을의 분쟁에 대하여 동네 어른들의 탄원이 있어야 이를 官에서 접수한다든지, 동규에 기하여 자치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례만 官에 가져오도록 國法이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③ 門中契 : ‘애향회’

㉗ 1980년 成씨 자손들이 기금 출연, 부락내에 聽竹會館 운영.

㉘ 공부 및 취사 설비 갖춰, 공부 뒷바라지. 고향 찾은 후손들의 숙소 및 사랑방 역할도 겸함.

㉙ 職制 : 會長 및 有司

㉚ 宗畵 및 宗田(약 20여 두락)은 廟社用(尙州郡내 성씨 자손들 전부참여, 聽竹公 모심)

④ 共同財産

㉛ 動産은 없고 宗山만 있음

㉜ 예전에는 타성받이가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임(현재 능암리에는 成씨가 약 80호, 타성받이가 약 30호).

⑤ 扶 助

㉝ 상여계 존속

㉞ 喪 당하면 쌀 1되씩 추렴, 부락장으로 장례 치름.

⑥ 小 作

㉟ 小作料는 洞會에서 정함.

㊱ 대체적으로 반갈림. 때로는 지주가 정하는 대로 하기도 함.

⑦ 雇 傭

㊲ 노동품 : 동회에서 일 부리는 측과 일 하는 측을 불러 수의후 결정

㊳ 머슴 새경 : 나락 5~6섬

4) 洛東面 云坪里 雲谷洞

提報者：趙世熙(남, 54세, 169번지)

① 洞 規

㉠ 불효하다 또는 불칙하다는 평판 들릴 경우

㉡ 1차 : 그 측근 어른을 통해 警告

㉢ 2차 : 종가집 큰 사랑에 가해자와 부모를 불러 對質審問

㉣ 3차 : 정월 보름에 ‘명석말이’(이 경우에는 집 전체가 이주)

㉤ 6·25 전까지 체험

② 契

㉠ 門中契：義庄所. 和樂契. 慕任堂崇慕會

㉡ 원래 남양주군 진근면 일대의 풍양 趙씨 집안들이 피난와서 살던 勝壓, 養眞堂(현재는 前記 마을과 합쳐져 升谷里), 雲谷(갈가실), 書谷 거주 자손 150호 정도가 참여하여 120여년 전에 창설.

㉢ 規約 ‘義庄序’ 전해짐.

㉣ 出捐基金으로 土地를 買入하여 그 所出로 조씨집안 子孫들 및 타성반이(주로 양반 밑에 종속된 노비)들에 대한 社會扶助를 행함.

㉤ 해방 후 土地改革過程에서 土地賣却 基金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돈으로 각 출자자들에게 반환하고 해체됨.

㉦ 해체후 자손간 친목 및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화락계 조직.

㉧ 연2회 정월과 봄에 각각 윷놀이와 화전놀이 시행(주관은 남자가하되 향유 대상은 딸 및 시집온 부녀자들).

㉨ 6·25사변후 소멸, 모임당송모회로 다시 승계.

㉠ 松 契

㉡ 宗家에서 산을 기증하여 동네 산으로 운영(연료공급)

㉢ 새로 이사온 가구는 가임비 나락 1말 출연

㉣ 3년 이상 거주자가 타지로 이사가면 나락 돌려 줌

㉠ 상조계

㉡ 節糧농가 또는 효자에게 구호

㉢ 초상의 경우, 과거에는 양반집안에 대해서는 양반과 상민 각각 팔죽과 미음을 1버지기씩 분담하여 喪主들 먹게 하였음. 하배들에게는 쌀

과 돈으로 부조. 현재는 호당 탁주 1말 값 부조

③ 小 作

㉞ 10여년 전부터 지주 40%, 경작자 60% 할당

㉟ 땅 부치려는 사람 점차 줄어 곧 3·7제로 될 전망

④ 雇傭 : 머슴

㉞ 상머슴 : 약 20년전까지는 집과 의복 및 식량을 대주는 외에 나락 40~20말을 새경으로 지급. 현재는 집 마련해 주고 연 5백만원 쥐도 지원자 없음.

㉟ 풀머슴 : 장가 들어 주고 이 때 혼수 약간에 나락 석섬 지급. 새경은 없었음.

⑤ 洞 祭

㉞ 정월 14일 밤에 동구 나무에 제사.

㉟ 洞神의 영험 믿어 아들 못낳는 이가 숨어 있다가 참기름 불종쟁이 먼저 가져가는 풍습 전해짐.

㊱ 제수비용 분담. 남에게 빌려 내는 것을 불경으로 간주(현재는 3년전에 기증받은 洞畚으로 비용지출).

㊲ 보름에 동회를 개최하고 음복후 송제의 재무결산.

㊳ 금기 : 제사 당일은 금주. 또한 날이 춥다고 제주가 호구 숫자대로 燒紙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환이 겹치고 수난이 많다고 믿음.

⑥ 參考資料 : 義庄所의 義庄序

5) 牟東面 龍湖里

提報者 : 盧天可(남, 62세, 68번지)

① 洞規 : '동네불기' 사례(1947년 가을, 제보자 체험)

㉞ 事案 : 홀시아버지 모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학대

㉟ 節次 : 이장(당시 구장)이 동네 원로들 모시고 저녁에 공회당에서 동회를 열어 마을사람들을 소집. 본인에게 신문 후 원로들의 의견을 물어 징벌을 결정(대질신문이나 확인은 없었음).

㊱ 懲罰 : 가마니로 몸을 감아 회초리로 야지리 한대씩 때림.

㊲ 意味 : 아프지는 않으며 정신적 고통에 중점을 두고, 때리는 측도

자성의 기회로 삼도록 함.

㉔ 效果 : 며느리 품행 개선. 다만, 몇 해 후 시아버지가 죽자 며느리도 이 마을을 떠났음.

② 堂 契

㉕ 일종의 學契

㉔ 沿革 : 조선조 중엽 상주목사 신잠이 각 문중에다 후학 양성을 위하여 書堂을 짓자고 제안하여 상주목에 속한 문경, 예언, 선산, 보은 일부를 포함한 상주목 관내에 18채의 서당을 지었던 바, 그 중의 하나인 '白華' 書堂(소재지 : 中牟西歸洞. 지명미상)의 契案(丁巳年)(원래 中牟縣地域 백화산 아래 위치한 琴川里 소재).(이 제안은 '契'字 앞에 벼 禾변을 붙였음).

㉕ 제보자가 인근 금천리에서 입수한 이 계안을 소장하고 있지만, 기재내용 이외에는 그 시행경과 및 전모를 파악할 수 없음.

㉖ 계안의 기재내용(盧天可씨 解讀)

㉗ 각 가정마다 일전씩 거두고 次子가 있으면 추가로 일전을 더 내 기금을 형성한다.

㉘ 삼백년이 경과하여 舊案이 좀이 슬고 쥐가 갇아 먹어 고증자료가 소실되었으므로 새로 안을 만들자.

㉙ 堂員의 승계가 끊어지더라도 입계를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㉚ 24년전(癸巳年)에 작성된 추가안의 기재내용(盧天可씨 解讀)

㉛ 나락을 5말씩 걷어 기금을 조성한다.

㉜ 맏아들 및 맏손자만 승계해 나간다.

6) 牟東面 德谷 1里

提報者 : 鄭競在(남, 64세, 478번지)

① 洞契 : 松梨契

㉕ 연혁 : 梨洞3區(웃배울)와 德谷1區(솔피 : 松山洞) 가구 전체가 연료확보를 위해 약 2백여년 전에 설립(재산 출연내역은 미상). 두 마을의 두문자를 따서 松梨契로 호칭.

· 약 1백년전 이학래 씨가 契의 체제를 정비. 이 당시 契山은

130여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네산이었음.

6·25후 옛날 장부가 없어서 자손들이 모여 재정비(동네산에서 契員들만의 소유로 변경, 15인 명의로 등기)

약 15년전 계원 전원의 명의로 재조직(최초 거주자들 후손 약 40여호를 구성원으로 함. 동리 주민 전체는 현재 약 130호).

㉠ 規模 및 組織 : 임야 약 120정보(7필지). 회장, 총무, 모듬有司를 둠.

㉡ 財源 : 산간지대 농토의 '賭租'가 주된 수입원

㉢ 運營 : 共有登記

㉣ 燃料採取 및 墓地로 活用(향후 과수원 개발 계획). 벌목 또는 그 收益均等分配. 비계원이 나무 해 때는 것은 묵인.

㉤ 마을 新規入住者 入契 불가. 다만, 산소 쓰는 것은 가능(약간의 기부금을 계에 납부). 원래 거주자의 자손이 귀향하는 경우에는 당연입계.

㉥ 두 마을이 번갈아 연1회 계추(양력 1월 5일. 有司가 음식장만).

㉦ 特性 : 다른 地域의 松契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동민들은 이를 洞契로 이해하고 있음. 가입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즉 배타적이기 때문에 洞契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所有와 利用을 분리하여 비계원에게도 使用 및 部分的 收益을 허용하는 등의 운영형태를 보임.

㉧ 洞規 및 門規 : 다른 地域에서와 같은 형태는 없으며 송리계의 제척만 시행.

◎ 參考資料

松 梨 契 契 則

壬子年(1972年)

第1章 總 則

第1條 本契는 松梨契라 稱한다.

第2條 本契는 本契所有의 野 管理 一切를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本契는 松山洞 및 上梨洞의 居住者이며 希望者로서 組織한다.

第2章 任員 및 任期

第4條 本契는 左의 任員을 둔다.

契長 1人, 副契長 2人, 有司 2人

第5條 本契任員은 總會時에 契員이 推戴한다. 但, 競合時는 議決로서 정한다.

第6條 本契契長 및 副契長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有司의 任期는 一年으로 한다.

第3章 職 能

第7條 本契契長은 契員을 代表하고 契務를 掌握하며 副契長은 契長을 보좌하며 契長有故時 契長을 代行하고 有司는 契長指示에 依하여 林野와 財産管理 및 契務全般에 亘하여 議決事項을 執行한다.

第4章 會 議

第8條 本契會議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로 구분한다. 定期總會는 매 年 11월말 以前으로 하고 臨時總會는 必要時 契長이 隨時召集한다.

第9條 本契總會는 契員 三分之二以上 參席으로서 成立하고 參席契員 過半數以上 贊同으로서 議決한다.

第5章 財 政

第10條 本契資産은 契員의 出資에 依하여 所有한 林野(別紙明細와 如함)

第11條 本契는 前條外 資産을 基礎로 하여 收入된 財産으로서 會費 및 기타 一切의 經費에 充當한다.

1 항 本契의 所有野 및 기타 資産을 이용한 者에게는 所定의 賃賃料를 徵收한다.

2 항 本契의 所有野에 墳墓를 設置할 시는 一座當 正粗 오십斤을 徵收한다. 但, 契員은 此項에 不在한다.

第12條 本契契員중 松山洞 및 上梨洞에서 他地域으로 移住하였을 시는 本契契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1 항 前項에 依하여 契員資格이 喪失된 자는 資産 一切를 환불치 않는다.

2 항 前項의 該當者로서 松山洞 및 上梨洞에 再入住時는 本契契員 資格이 回復된다.

第6章 附 則

本契는 本契則制 以前에 行한 契務全般에 亘한 運營에 있어서 本契則에 準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契則은 決議日로부터 施行한다.

西紀 一九七二年 一月 五日

署名人：徐炳夏 外 38人

－ 資産明細書(省略)

7) 靑里面 佳川1里(달내：西川. 옛지명 松鶴洞)

提報者：李暎河(남, 74세, 641번지)

① 典籍調査 및 傳聞：이 마을은 南村四面鄉約을 지은 이진 先生(1558년~1648년)의 향리이며 “지금도 옛날과 조금도 다름 없이 동족부락을 형성한채 이진, 李垞형제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전통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마을”이라고 평판이 나 있다.

이진 先生은 朱子增損呂氏鄉約과 退溪의 鄉立議 그리고 金世濂의 苞山規約을 당시 尙州의 형편에 맞도록 新立約을 정리하여 尙州 일대에 실시하고 초대 約正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동생 李垞이 지었다는 家戒四條는 祭式, 治喪, 居喪, 守法의 네 가지 면의 諸禮를 간소화하되 극진히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② 訪問結果

㉞ 鄉約을 소장하고 있는 종손 李晚澈씨(659번지)는 자주 출타하여 면담하지 못하였다.

㉟ 이 마을은 해방 당시에는 도합 1백여호 정도이었고 이진 선생이 거주하던 달내에 후손이 약 20호 정도 살았으나 지금은 마을 가구 구성이 많이 바뀌었고 후손도 10여호 정도만 살고 있다. 현재 宗宅이 있는 개울 건너 산 밑에는 몇 가구 살지 아니하며 달내 맞은편 국도 연변에 새로 형성된 마을에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국도 연변의 新村은 전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이곳에서는 제보자를 물색하지 아니하였다.

㊱ 提報者의 증언에 의하면, 남촌사면향약이 언제까지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으며 洞規나 洞契 등의 존재에 관하여도 알려진 바가 없다. 달내에서 洞會를 개최하였음을 기억하지 못한다.

㉔ 다만, 禮에 벗어났던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요즘도 환갑 지난 아들이 모친에게 종아리를 맞는 유품이 남아 있다고 한다. 윗대 어른들은 농사일을 머슴들에게 맡기고 글 읽을 것을 토론하거나 글 짓기가 주된 관심사였다고 한다.

㉕ 이 마을은 종가마을로 평판이 나 있던 마을 치고는 기대만큼의 調査資料를 얻지 못하였다. 체류기간이 짧은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적이 드물었다. 제보자가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嶺南學脈’(대구매 일신문에서 약 1년간 연재 : 1회~162회. 이전, 李垞 형제에 관한 연재는 88회~89회분) 마스타本을 빌려올 수 있었음이 망외의 소득이었다.

8) 化北面 壯岩1里

提報者 : 姜仁秀(남, 58세)

① 調査對象 村落의 特性·現況 概觀 : 장암리는 속리산 문장대 뒷편에 위치한 오지. 청천을 지나 송면으로 들어가는 길과 尙州市에서 들어가는 두가지 길이 있음. 전체가구는 67호이며, 메밀과 담배 농사가 주. 산세가 험해 산에 들어가기 어렵고, 버섯등의 채취도 어려워 살림에는 보탬이 되지 못함.

② 個別調査 項目

㉔ 自治組織

㉕ 喪布契

- a) 沿革 : 1940년대에 발족하여 현재에도 존속
- b) 運營 : 會長이 총체적인 일을 추진하고 수명의 계장이 하부조직을 담당하여 추렴 및 인력동원을 맡음.
- c)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效果 : 어른을 모시고 있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동리에 살아야 함. 계에 들어오면 자유로운 탈퇴가 불가능함.
- d) 構成員의 權利·義務 : 소속회원은 의무사항으로 초상이 생겼을 경우 소주 한잔(예전에는 곡물 또는 막걸리)에 해당하는

회비를 지불하고, 자기가 상을 당했을 경우 회원들이 지불한 회비를 가지고 경비로 쓸 수 있음

e) 域內 다른 組織과의 關係: 구성원은 회비만을 내면되고 초상에 관한 일처리는 청년회에서 처리

㉠ 各契: 위친계, 견우계, 동갑계, 상록수

㉡ 青年會

a) 沿革: 1950년대에 발족하여 현재에도 존속

b)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效果: 18세 부터 45세의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가입됨

c) 主要活動內容: 마을의 경로잔치등의 준비 및 초상이 낮을 경우 생이(상여)때는 일을 맡아서 함

d) 意思決定方式: 회장이 고문에게 보고하고 고문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

e) 規律 및 制裁: 강제성은 수반하지 않으나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제재없이 이행되고 있음

f) 域內 다른 組織과의 關係: 부녀회와의 연계로 일을 추진

g) 財政: 장례가 있을 시 초상집에서 내는 뒷돈(경비)에서 받은 경비로 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부녀회와 반으로 나누어 사용

㉢ 婦女會

a) 沿革: 1953년경 모자회로 발족하여 현재에는 부녀회로 개칭 존속

b)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效果: 본동으로 시집온 여성은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50세까지를 회원으로 함

c) 主要活動內容: 마을의 慶·喪事時 음식을 만들거나 뒷바라지 하는 일을 담당

d) 意思決定方式: 회장이 고문에게 보고하고 고문의 지시에 의하여 결정

㉣ 制裁·司法: 과거에는 동네어른이 잘못이 있는 자를 불러다 동네 한복판에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음.

㉤ 涉外·交流: 入村 儀禮: 洞田加入(가입금 쌀 1되)

㉔ 社會·經濟

㉔ 民事分野

- a) 委託飼育 : 송아지나 염소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에는 어린 송아지를 어미가 되도록 먹여야 새끼를 낳으면 한마리 줌.
- b) 小作 : 과거 논농사는 주인과 반반, 밭농사는 주인이 2/3, 현재는 논농사, 밭농사 모두 주인과 반반
- c) 賭地 : 논, 밭 모두 마지기(200평)당 주인에게 쌀 2가마
- d) 머슴 : 1년에 나락 7가마

㉕ 家事分野

- a) 親族의 범위 : 친족의 범위를 남자의 8촌, 여자의 6촌까지로 봄
- b) 約婚의 절차·효과 : 특정한 절차가 없었으며, 어른들이 결정한 배우자와 혼인약속이 되면 옷감(치마저고리)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
- c) 婚姻의 節次·效果 : 배우자가 결정되면 택일을 한 후 사주와 옷감을 보내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잘사는 집은 남자는 말을 타고 오고, 여자는 가마를 타고 오는데 사주만 건네면 무조건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남자가 죽어도 여자는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없었음.
- d) 分家 : 종래 여자쪽도 친정에 가서 부모의 승낙을 받아와야 되었음.
현재는 지차(차남등)는 결혼함으로써 분가.

(4) 調査結果分析

1) 典型的인 農村地域의 慣習

이 地域은 영남 내륙의 전형적인 農村地域의 慣習法 現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곳이다. 경북 북부해안地域(울진, 영덕)과 달리 매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歷史속에 묻혀버린 貧富間 또는 班常間의 反復的·階層的 葛藤과 紛爭이 尙州民의 法意識에 저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慣習으로 轉化된 면모는 얼른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同質集團 相互間에는 法的인 紛爭이나 去來라고 일컬을 만한 것들이 희

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연변의 비옥한 들판을 배경으로 한 尙州民들의 삶이 그렇게 각박하여 規律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덜 하였었는지 여부는 좀 더 관찰해 보아야 확실해지겠지만, 經濟的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소수의 法律關係는 道德과 家戒에 의한 規律로 크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共同財産의 法律關係 變遷(總有에서 合有로)

비교적 靜的인 이 地域도 8·15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생활변화와 인구이동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마을 共同財産이 村落全體 住民의 總有에서 一部 住民의 合有로 轉化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모동면 덕곡리와 이동리 사례). 이는 새로 이주해 오는 부락민에 대하여 洞契에의 加入을 부정하고 옛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만이 共同財産에 대한 所有權을 行使하다가 이를 合有로 登記함으로써 빚어진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共同財産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村落地域의 전통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의 자격에 기하여 약간의 特殊地役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融通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所有와 利用을 분리시켜, 所有에 대하여는 부분 집단의 共有로, 利用에 대하여는 전체 집단의 準總有로 하는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

3) 隣近地域의 影響 및 地域의 分割

종래 이 地域의 支配階層은 安東地方의 법식과 의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생활하였다는 편린들이 면담과정에서 때로는 자랑스럽게 때로는 비아냥조로 언뜻언뜻 나타나고 있다. 尙州地域의 鄉約施行에 관한 既存의 研究資料들이 安東地域의 洞規를 援用하여 설명하고 있음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이 地域은 地形上 사방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보여 尙州地域 전체가 하나의 군단위 單一生活圈 내지 文化圈을 형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함창을 중심으로 하는 北部地域은 일제시대까지만 하여도 하나의 生活圈(별도의 邑誌 제작)을 形成하고 있었으며, 화북면 등의 서부 地域은 속리산과 충북 보은 쪽에 가까워 말씨조차 慶尙道의 그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모동면 등의 남부 地域은 지형과 교통 등의 여건에 있어서 尙州 生活圈이라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아니하였다(주민들은 행정업

무 이외의 일에 관하여는 주로 추풍령과 김천 쪽으로 드나들고 있음).

(5) 調査所感

① 洞規 典籍의 빈곤 : 만나는 인사 마다 문서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규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모동면 덕곡의 최근 洞契 이외에는 한 건도 찾아 내지 못하였고 어디에 이러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전언도 듣지 못하였다. 尙州文化院과 이웃하고 있는 尙州市立圖書館은 開館 歷史가 일천한 탓인지 의외로 郷土史 關係資料가 不充分하였다.

② 郷土史研究 畧 造成 : 尙州文化院, 尙州産業大學, 尙州高等學校 및 尙州文化研究會 등을 축으로 하여 이 地域 郷土史에 관한 研究事業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음을 느꼈다.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리에 대한 애정으로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地域人士들의 활동이 깊은 인상을 주었다.

아직까지는 門中과 姓氏, 유물과 유적 그리고 洞祭 기타 民俗學的 次元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律과 慣習도 중요한 文化遺産이므로 調査研究의 對象으로 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蒐集資料目錄

1) 第1次 資料

- 牟東面 松梨契契則(1972년) 寫本
- 白華堂書堂契案(丁巳年)(盧天可씨 所藏) 寫本
- 慕任堂延安李氏崇慕豎立告由文(1990년, 모임당승모회)

2) 第2次 資料

- 尙州誌(1989년, 尙州市郡, 1867쪽)
- 行政誌(1988년, 尙州郡, 752쪽)
- 商山誌(1617년 着手, 1749년 續補, 1832년 續錄, 1928년 增補 : 1984년 金子相 譯刊. 361쪽 및 原本附錄 214쪽)
- 尙州의 鄉約(黃永穆 편저, 1983년, 尙州郡, 117쪽 및 鄉約原文 附錄)
- 尙州文化 創刊號(1989년, 尙州文化院, 249쪽)
- 尙州 第3號(1987년, 尙州誌發刊會. 尙州文化院, 327쪽)

- 趙靖先生文集全(李鉉淙 編譯, 1977년, 조정선생문집간행위원회, 471쪽)
- 西門洞聖堂五十年(1987년, 천주교 서문동교회, 574쪽)
- 李源周 의 “尙州地域 傳承文化의 양상” 調査研究(尙州農蠶傳聞學校 論文集 第10輯, 1974년, 101~146쪽)
- 金基卓, “洞神祭와 솟대신앙 -尙州 원흥리의 솟대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第16輯(1989년, 嶺南語文學會, 大邱, 15~31쪽)

4. 安東郡

(1) 調査計劃

- ① 調査特性: 村落地域 광역 豫備調査
- ② 調査地域: 安東郡 일대 集姓村 및 土俗部落
- ③ 調査期間: 1991년 10월 8일 ~ 10월 12일
- ④ 調査目標: 村落地域의 慣習法의 傳承 정도 및 效力範圍 파악
- ⑤ 假說: 儒敎文化圈 特有의 慣習規範이 존속한다.
- ⑥ 調査項目: 具體的인 調査項目에 관하여는 이번 豫備調査를 위해 따로 준비한 다음의 “村落地域 慣習法 全數調査表 1” 參照
- ⑦ 調査方法: 前記 濟州地域 現地豫備調査方法과 같음. 調査員들을 위해 다음의 調査指針을 作成함.
- ⑧ 調査責任者: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共同調査: 本院 研究員 鄭肯植

1) 調査指針

- ① 提報者 選定: 되도록 노인남자층에서 기억력이 온전한 분을 모신다.
- ② 提案說明
 - ㉞ 韓國法制研究院 紹介
 - ㉞ 調査의 目的·活用方案 등을 설명한다.
- ③ 質問方式
 - ㉞ 6何원칙에 입각하되 調査種類別로 法的概念·要件·節次·效果·特記事項 등의 內容을 묻는다.
 - ㉞ 專門用語의 使用을 피하고 提報者가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말로

묻는다.

④ 調査單位의 區分

㉞ 全體單位→部分單位→個人單位

㉟ 部落單位→門中單位 →親族單位

⑤ 實定法과 慣習의 區分: 現行 實定法의 內容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다른 慣行 慣習의 內容 을 묻는다.

⑥ 時代區分: 과거의 것을 먼저 말해 주도록 요청하고 다음에 현재의 것을 말해 주도록 요청한다.

⑦ 出處區分: 提報者의 直接體驗事例와 先祖 이웃 등에게 들은 事例를 區分한다.

⑧ 記錄原則(調査者 直接記錄)

㉞ 言語確認의 原則

㉟ 縮語의 原則(사투리는 그대로 표기하되, 표준말을 괄호속에 넣어 준다.)

㊱ 具體性의 原則

⑨ 蒐集對象資料: 洞法·洞規·門中規約·鄉土誌·鄉約·契文書·私文書·文集 등

⑩ 村落概觀·調査所感 記錄(별지활용)

2) 村落地域 慣習法 全數調査表

① 事前調査 項目

— 調査地域 / 調査日字 / 調査者

— 提報者(漢字) / 本貫 / 宗教 / 性別 / 住所 / 居住期間 / 나이 / 職業 / 職位 / 電話番號

* 調査對象 村落의 特性 現況概觀

1) 略史(設村年代·入鄉始祖·行政區域 變遷事項 包含)

2) 主要生業手段·肥沃度 또는 產出量의 豊富性 如何

3) 現在 大略의 家口數·근래 전성기 때의 가구수

4) 地理的 特性(交通·灌溉·燃料事情 등의 편리성 여하 포함)

5) 같은 生活圈內에 속하는 里·洞·村名

- 6) 村落人들이 주로 利用하는 장터 또는 市場
- 7) 주요 交通관문인 地域 또는 都市名
- 8) 生活의 귀감이 되는 同鄉出身 先祖
- 9) 村落內 多數 姓氏
- 10) 住民들이 두드러지게 믿는 宗教가 있다면?
- 11) 가 타

② 基礎調査 項目

㉞ 認知度(洞法·村規 또는 門規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까?)

㉟ 典據 및 解釋(洞法·村規 또는 門規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잘생각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㊱ 依存度(紛爭發生時 慣習規範과 國法중 어느 것을 먼저 찾습니까?)

㊲ 效力(현재의 洞法·村規 또는 門規는 잘 지켜 집니까?)

㊳ 實效性의 源泉(慣習規範이 잘 지켜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㊴ 改廢(洞法·村規 또는 門規는 어떻게 바뀐다?)

㊵ 變遷史(慣習規範의 체계가 크게 바뀐 것은 언제쯤입니까?)

㊶ 提言(慣習規範에 대한 그밖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③ 一般調査 項目

㉞ 村落 또는 宗中등의 自治團體：鄉會·洞會·里會·村會·大同會·人會·青年會·婦女會·宗中·門中 기타 自治 또는 行政的 性格을 지닌 契 및 一般組織을 포함하되 傳來의 組織을 중심으로 함.

㉟ 總綱：名稱 / 目的 / 設置根據 / 法的 性格 / 沿革

㊱ 團體의 組織 및 構成：位階秩序 / 任員의 役割 / 任員의 資格 / 任期 /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效果 / 加入強制 또는 世襲如何 / 비고

㊲ 團體의 運用：主要活動內容 / 意思決定方式 / 意思執行節次

㊳ 團體構成員의 個別的 法律關係：構成員의 權利 / 義務 / 罰則

㊴ 團體의 財政：財源 / 豫算規模 / 會費·分擔金 등의 負擔 여하 /

使用權·受益權·處分權 등의 內容/비용

㉔ 制裁·司法(特定團體 構成員의 地位에서 받는 制裁가 아닌 村落 住民의 地位에서 누구든지 받는 一般的인 制裁)

㉕ 近隣生活上의 制裁(대문봉쇄·우물이용금지·이웃간 왕래두절·상부상조단절·동네축출 등)

㉖ 民事的 制裁(마을共同財産權 향유제한·違約金賦課·法律行爲의 效力制限 등)

㉗ 刑事的 制裁(매질·罰金·모욕 등)

㉘ 行政的 制裁(村落內 職責就任制限·公開謝過 등)

㉙ 自律的 紛爭解決 節次: 擔當機構 또는 處理主體 / 適用準則 / 要件 / 節次 / 처리내용(和解·調停·仲裁·處罰 등) / 效果 / 비고

㉚ 涉外·交流

㉛ 村落內 또는 宗中 등의 團體가 村落內·外的 다른 團體·組織과 맺고 있는 關係

a) 團體의 重層構造(大小 또는 類似團體 상호간의 支配·從屬·協力 關係 與否)

b) 團體 相互間의 權利·義務의 內容

c) 財政的 支援 또는 의존관계

㉜ 村落 또는 集團間의 勞動力·物資등의 經濟的 交流 또는 通婚慣習: 命名 / 沿革 / 時機 / 內容 / 條件

㉝ 入村·出村 儀禮: 命名 / 方式 / 內容 / 效果

㉞ 外地人 또는 他人의 出入統制: 命名 / 方式 / 社會的 意味

㉟ 손님맞이(接賓): 命名 / 方式

㊱ 社會·經濟(住民들은 다음의 여러 概念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㊲ 民事分野

[總則篇]

○ 信義誠實(어떤 약속이나 행동이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으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

○ 事情變更(처음 맺은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 錯誤·詐欺(잘모르고 또는 깜박 속아 일을 처리한 경우)

- 無效・取消(없었던 일로 하고자 할 경우)
- 權利能力・行爲能力(미혼자・부녀자・심신쇠약자에게는 어디까지 일을 맡겼는가?)
- 條件・期限(임시 또는 시한부로 일을 처리할 경우)
- 代理(남의 일을 대신할 경우)

[物權篇]

- 마을 또는 宗中の 共同所有財産의 現況과 利用에 대하여
- 물의 利用에 관하여(泔・물대기 등)
- 相隣法律(공사・도랑・굴뚝・가축・나무 등으로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 地役權(이웃 또는 마을의 땅 또는 산의 利用에 관하여)
- 入漁權(바다・하천・저수지 등에서의 고기잡이 또는 採取에 관하여)
- 讓渡擔保(빚을 갚으면 되돌려 받기로 하고 땅이나 물건을 넘겨주는 경우)
- 名義信託(겉으로만 財産의 名의를 넘기는 경우)

[債權篇]

- 不完全履行(약속을 지키긴 했으나 엉터리로 지킨 경우)
- 過失相計(피차간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계산 여하)
- 信賴利益・履行利益(약속대로 됐더라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경우)
- 損害賠償의 範圍・方法
- 保證의 種類・方式・效果
- 債權讓渡・債務引受(빚받을 權利 넘기기・빚 떠안기)
- 危險負擔(약속을 지키기 전에 약속한 물건이 뜻하지 않게 또는 갑자기 망쳐진 경우)
 - 契約解除・解止의 方式・效果
 - 委託飼育(소 키워주기 등)
 - 共同財産 등의 임대차
 - 賭地
 - 小作의 種類・權利義務關係
 - 머슴의 種類・대우・정년

- 契의 種類와 運營方式(財産증식을 目的으로 한 契)
- 不當利得(땃땃하지 못한 공짜를 얻었을 경우)
- 不法原因給與(노름빚으로 넘겨준 財産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 家事分野

[親族篇]

- 親族의 範圍
- 約婚의 節次·效果
- 婚姻의 節次·效果
- 婚姻의 無效·取消의 사유·方法
- 夫婦間의 權利와 義務
- 家族의 特有財産의 인정여부·관리 여하
- 日常家事代理의 한계(부인이 진 빚을 남편이 어디까지 갚았는가?)
- 離婚의 사유·效果
- 分家の 시기·方法·內容
- 再嫁의 要件·節次
- 事實婚의 法律效果(동거생활 신부는 相續·자녀양육 등에서 부인취급을 제대로 받았는가?)
- 胎兒의 法的 地位(잉태중의 아기는 戶主相續·財産相續 등을 받았는가?)
- 婚姻外의 子의 法的 地位(私生兒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 繼母의 法的 地位
- 入養의 要件·效果
- 扶養義務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宗中·門中の 財産의 種類·管理方式
- 宗親會·門會 등의 기능

[相續篇]

- 限定承認：相續拋棄(부모의 빚을 相續하는 경우)
- 相續分
- 遺言의 方式·效果

㉡ 社會扶助(불우이웃돕기의 전통)：名稱 / 財源 / 要扶助者의 要件 / 運營方式 / 비교

㉔ 共同作業

- a) 共同作業組織(촌전체를 範圍로 하는 일시적 作業組織의 種類 · 構成 · 運營方式은?)
- b) 共同作業內容(수렵 · 採取 · 풀베기 · 길닦기 등의 시기 및 규칙)
- c) 個人的 協業(품앗이 등의 種類 · 方式)

㉕ 場

- a) 5日場: 장터 / 장날 / 主去來 品目 / 장터使用關係 / 域內 장꾼들의 주된 活動區域 / 返品(瑕疵擔保責任)如何 / 외상거래관계 또는 代金決裁方式
- b) 牛市場: 委託 · 中繼方式 / 瑕疵擔保責任의 限界 / 代金決裁方式 / 去來條件 / 既得權 / 市場의 所在地 / 장날 / 去來規模 / 利用顧客의 地域的 範圍
- c) 기타 特殊市場: 名稱 / 所在地 / 開設時期 / 運營方法 / 去來條件 / 특기사항 / 비교

㉖ 文化 · 民俗

- ㉗ 學術 · 教育: 團體 또는 組織의 種類 / 目的 / 變遷史 / 財政 / 內容 / 비교
- ㉘ 洞祭 · 傳承놀이 등: 命名 / 主管團體 / 變遷史 / 財政 / 時期 및 內容 / 비교
- ㉙ 禁忌: 命名 및 內容 / 意義 / 由來 / 期間 / 方式 / 違反時 制裁 / 體驗事例 / 傳聞事例 / 비교

④ 關聯村落 · 提報者 名單

- ㉚ 補完調査를 요하는 村落
- ㉛ 追加 · 補充提報者 성명 · 연락처
- ⑤ 參考資料 法律文獻 目錄: 題目 / 性格 · 要旨 / 所藏者 / 연락처

⑥ 調査所感

- ㉜ 當該村落 및 생활상이 주는 인상 여하

- ㉔ 洞法·村規·門規 등에 대한 話者 및 주변인들의 태도 여하
- ㉕ 調査者는 當該 村落에서 洞法·村規·門規 등이 살아 움직인다고 느꼈는가?
- ㉖ 本調査 또는 追加調査의 必要性·方向·內容 如何
- ㉗ 기타소감

(2) 調査經過

1) 現地諮問

① 임재해 敎授(安東大學 민속학과)

㉘ 地域特性에 관하여: 安東地域은 男性 중심의 文化圈임. 절이 시내 도처에 흔했으나 유교세력들이 이를 강점하였음. 전답의 모양이 다른 점으로 미루어 경주와 불교 종파는 달랐음.

㉙ 調査方法에 관하여: 村落特性別 調査를 요망함. 다만, 班村과 民村의 概念은 상대적이라는 점에 유념할 것.

㉚ 現地調査에 관하여: 慣習같은 분야는 필드 워크가 필수불가결함. 강의나 집필시 기억이 오래 가고 자기 이론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 調査者나 학자가 이를 등한시 하고 책상에서 글만 쓰려 하면 생동감 있는 연구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곧 도태됨.

현지住民들을 접촉할 때는 농번기 때를 피하고 주로 저녁에 막걸리 등을 받아 놓고 주변의 흥미있는 소재부터 말해달라고 할 것. 녹음을 할 경우에는 시험녹음을 들려주어 상대방의 관심을 유도할 것. 피면담자가 말머리를 잘 끄집어 내지 못하면 다른 지방 또는 동네에서의 조사사례를 예로 들어 줄 것.

㉛ 調査員에 관하여: 풍산읍내 청음 김상헌 선생 후손들(같은 마을 같은 성씨인데 黨色 달라서 말씨까지 다르게 나타남).

임하면 금소동(安東布의 주산지. 낫다리 밟기, 동체싸움 전승. 泐 運營. 번성기 때 300여호, 현재는 200여호. 목계어른 임수진씨, 길안국민학교 장 임치대씨 등 면담요망)

일직면 조탑동(各姓마을)

풍천면 오미동·마에동(班村)

㉜ 기타 면담 또는 접촉 요망 인사: 북후면 웅천동 강대각씨(진주

강씨), 북후면 저전동 조차기 할아버지, 시내 목성동 목성교 옆 경로당 아
전 출신 金씨, 경북일보사 김경태씨(古書수집 전문)

② 유한상 원장(安東문화원)

㉠ 地域的 特性에 관하여 : 안동지방은 지형, 기후 등의 풍토의 영향
으로 文化의 流入이 늦었음. 이 지방의 기후 내지 풍토는 참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었음. 즉 날씨가 가물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낙차가 없
어서 홍수가 빈발한 탓으로 참고 사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봄. 한일합방
당시 문을 달아 걸고 굶어 죽은 건수가 전국 제일이었음도 安東人의 기질
탓이라고 봄.

이 地域의 경우, 소송거리가 별로 없었음.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
식을 선호하였음. 일부에서는 우리의 자치능력을 문제시 하지만, 조선왕
조의 경우, 지방자치를 유지한 덕분에 중앙정치의 문란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 요즘은 서구식으로들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地域 사람
들은 合理보다 인간의 感情을 중시하였음.

㉡ 調査資料에 관하여 : 댐 수몰로 많은 부분 일실. 귀중문헌들의 도
난이 잦았던 탓으로 잘 공개하지도 아니함. 김완섭 변호사, 安東地域 郷土
史 關係 古本 소장.

㉢ 秩序維持의 根幹에 관하여 :

[名 譽] 조상에게 累를 끼쳐서는 아니된다는 자부심이 질서유지의 핵
으로 작용하였음. 金力, 權力, 名譽의 3가지가 분리되어야 나라가 잘 다스
려진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명예가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秩序가
유지됨.

[垂 範] 어느 組織社會든지 잘 다스려지려면 존경의 대상이 있어야
됨. 현대 정치는 權力이 金力은 못 먹었으나 名譽는 먹어버리고 따라서
존경의 대상이 상실되고 말았음. 安東人들은 명예를 존중한 탓으로 “先
生”이라는 말을 최고의 존칭으로 알고 마을마다 先生을 두고자 노력하였
음. 예컨대, 위패에도 “영의정”이라는 호칭 대신에 “西涯 柳先生”으로 표
기함.

[家庭教育] “인간이 되라”는 人情主義보다 “공부하라”는 合理主義가
팽배해 있는 상황속에서 가정교육이 혼선을 빚고 있고 따라서 規範教育이
결핍되어 있음. 가옥구조 자체가 급속히 변한 것도 이러한 教育不在에 상

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

이 지방의 경우, 예전에는 집안 내에 각자의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어른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질서유지가 가능했음. 현대식 소파 같은 것은 “자리 없는 자리”이고 현재는 가정에서 손님을 맞는 예 자체가 줄어 들어 가정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전통 規範 아래에서는 사랑에 손님이 오면 가정이 정돈되었고 예의범절을 통해서 規範意識을 키웠음.

[良心]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 法이나 시행되지도 아니하는 法은 부작용도 크고 속이면 그만이며, 法網을 피하려는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儒敎文化圈에서는 良心을 강조함으로써 속인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였음.

[兩班論]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兩班精神도 질서유지에 있어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음. 行動規範에서 벗어나면 “쌍놈된다”는 계율은 매우 큰 효과를 거두었음. 이러한 兩班은 할 짓 못할 짓을 다하고도 혈연만으로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조상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兩班이 되었다고 봄.

㉞ 서낭祭와 마을 協同心에 관하여 : 堂祭를 지내기 위해 出捐을 하고 서로 협력하였으며, 원한이나 불만 등은 이 때 풀었음. 이는 마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일제시대의 사범교육은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요소들을 ‘迷信’으로 몰아 세웠고 근래의 새마을 사업은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때에도 없애지 못한 堂들을 파괴시킴으로써 전래의 精神的 支柱들을 무너뜨렸음.

㉟ 鄉約과 洞規 및 門規에 관하여 : 과거의 鄉約 등은 범죄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 自然部落 내에서는 法의 制裁 이전에 윤리가 엄격하여 어떠한 불상사를 마을 자체의 불명예로 간주하고 이를 다스렸음. 門中會議에 있어서도 문제아 또는 패륜아 등에 대하여 宗家집 벽에 이름을 거꾸로 써붙여 징계하였음. 중한 경우에는 호적을 배제하고 족보에서도 성명을 삭제하였음. 그래도 반성하지 아니하면, 水火不通하였음.

㊱ 李鎮九 관장(가톨릭 安東문화회관)

㊲ 地域的 特性에 관하여 : 이 地域은 그간 産業社會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었지만, 댐 때문에 이러한 特性들이 많이 파손되었고 현재도하여

서 갈등의 요소가 잠재하고 있음. 이 地域의 문화적 特性을 살펴보면, 우선 法보다 사람을 중시하고(法治<人治) 다음에 혈연과 지연을 매우 중시하여 화수회, 종친회, 동기회 등이 성황을 이룸. 또한 현재에도 同姓同本間 婚姻을 許容하면 풍기문란으로 集姓村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고 있음. 安東의 경우에만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어떠한 규제법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住民들의 생활양식과 습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봄.

이 地域은 퇴계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받들고 있으나, 생각보다는 儒林의 實體가 없다고 봄. 물론, 퇴계는 칩거하면서 고향을 이상향으로 만들고 싶어하였고 이러한 생각이 예안향약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地域의 의병운동 등에 나타난 政體에 관한 사고방식을 보면 共和政에 가까운 면모를 보임.

㉠ 調査資料에 관하여 : 書院에 대한 調査 요망(洞規도 서원에 모여서 制定하였으며 예컨대 유인식의 동산문고를 보면 학과문벌에서 과문당하는 사례도 나타남). 현재 洞法이나 洞規는 거의 없다고 봄.

‘내림상두契’(선소리꾼) 調査요망(提報者 물색 가능).

民村은 잘 드러나지 아니하며 中人 이하의 후예들이 다 떠나 調査 實益이 없을 것임(예 : 안동시 옥정동).

㉡ 調査협력선에 관하여 : 安東大學 經濟學科 崔晟基 教授(임동면 챗거리 장터 : 동해안 소금과 어물 去來, 현재는 수몰후 조성된 이주단지에 관한 “조선 후기 지방상업연구”. 박사학위논문 집필).

川島藤也 教授(미국 Bowling Green State Univ. 역사학 教授, 철학박사. 안동문화회관 숙박부 706호에 居住하면서 朝鮮中期社會史를 연구하고 있음).

㉢ 柳 熙 杰 관장(안동시립민속박물관)

㉣ 地域的 特性에 관하여 : 이 地域의 경우, 道德에 의한 規律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예컨대, 패륜아가 發生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安東府가 安東縣으로 강등된 사례가 두번 나타남).

㉤ 調査資料에 관하여 : 각 마을의 의장소 規律(예컨대, 하회마을조사 보고서 수록), 門規 내지 家訓錄(예컨대, 安東 김씨, 權氏의 ‘태사묘’關係資料) 調査 요망.

㉥ 韓陽明 학예사(安東郡廳 문화예술과)

㉞ 各姓 集姓村(班村)은 이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 현재의 지배적 성씨들이 他姓들 축출하였기 때문임.

㉟ 班村은 생각만큼 關係資料가 나오지 아니할 것임.

2) 調査協力

① 權英俊 教授(安東大學 法學科), 문채규 教授(安東大學 法學科), 李海善 사무국장(安東文化院)은 현지 전문가들의 諮問과 提報者의 面談 등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었고 각 마을의 特性 등에 관하여 사전지식을 알려 주었다. 朴鍾培 공보계장(安東郡廳), 金昌鎬 과장(安東郡廳 文化예술과), 權五仁 간사(安東圈발전연구소)는 關係資料의 수집에 힘써 주었다.

② 嶺南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이우석 석사, 安東大學 法學科 4학년 김경동, 김장현, 남동재, 권기원 및 同 1학년 김영진이 각 마을에 대한 現地 調査를 分擔하여 주었다.

3) 調査對象마을의 選定

① 安東에서 만난 사람 모두가 邑內 部落들 중 民村, 驛村 등으로 발전해 왔던 마을이나 그 후손들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말하기를 꺼렸다. 말해 주는 경우에도 무기명을 요청하였다. 調査팀은 되도록이면 옛 民村 내지 驛村 등을 調査하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班村과 民村을 포함하는 다음의 마을들과 宗家를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班村과 民村의 구별은 생략).

② 풍천면 하회마을(풍산 柳氏), 도양동, 가곡동(安東 權氏)

풍산읍 소산동(安東 金氏), 오미동

풍산면 청음마을

일직면 조탑동, 구운산, 소호리

북후면 웅천동, 도촌동(安東 權氏)

서후면 성곡동(安東 張氏), 저전동

임하면 금소동, 신덕동

길안면 목계동

의성 金氏 종택. 영천 李氏 종택. 광산 金氏 종택. 진성 李氏 종택

(3) 調査內容

1) 豊川面 道陽洞

提報者：宋데레사(여, 75세, 36번지)

調査者：全在慶

① 部落環境과 生活與件

㉠ 經濟的으로는 대체적으로 빈한한 생활들을 하였음. 마을소유의 山기타의 共同財産이 없었음.

㉡ 도둑들이 자주 출몰하여 삿갓 형태로 집을 짓기도 하였음.

* 삿갓집의 특징과 構造

* 집전체가 둥그런 형태이며 지붕경사가 가파르고 외부출입문 하나.

*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마루. 그 너머 뒷칸이 셋방. 마루 및 셋방을 가운데 두고 왼편 앞쪽이 마구(작은 출입구가 하나 달렸음). 그 뒷칸이 정지. 그 뒷칸이 방. 마루 및 셋방의 오른편 앞쪽이 방. 그 뒷칸이 큰방. 각 부분들의 내부 출입구는 마루로 통합.

㉢ 提報者가 尙州에서 천주교인 집안끼리의 혼사가 성립되어 시집 올 당시 가구수 13호(삿갓집 2호 포함).

㉣ ‘兩班, 중인, 종’의 시층(세 층)거리로 살았음.

㉤ 60여년전 갑술년, 병자년 흉수때 물길 바뀌어 部落民들이 부치던 논들이 많이 떨어져나가 남정네들은 고기잡이 또는 객지(일본등지)로 출타해 버리고 여자들끼리 사는 경우 많았음.

㉥ 장가 갔어도 세 동서 네 동서들 끼리 동거하는 수도 있었음.

② 賭 地

㉦ 논：“도지로 산다”

논 所有者는 빚을 갚거나 장사를 할 目的으로 “땅을 1년을 판다”. 도지로 “사는” 사람은 초봄에 돈을 주고 산다. 소출은 자기가 가진다. 근년까지 시행되었다. 요사이는 나락 매상이 부진하여 도지제의 운영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집터：“도지준다”

③ 小作：“땅 부친다”(소출과 비용을 半分)

④ 家屋賣買 : 집과 집터를 별도 관념으로 이해. 契約書 作成

⑤ 入漁權 : 앞의 江(낙동강)에서 고기들을 잡았으나 특별한 權利의 존재 여하 인식하지 못하였음. 아무나 個別的으로 기술 여하에 따라 고기를 잡았던 것으로 기억.

⑥ 特殊地役權 : 연료採取權 여하

㉠ 江 건너 柳씨네 산에서 땔감 해왔었음.

㉡ 나무 빼앗기기 일쑤.

⑦ 都給 또는 雇傭 : 募穀

㉠ 뱃모곡 : 뱃사공에게 지급하는 渡江 對價. 보리 수확때 소두 1말, 나락 수확때 소두 2말 지불. 길손들은 그때그때 현금으로 납부. 다리 완공까지 시행되었음.

㉡ 질(길)모곡 : '질딱계꾼'에게 보수지급. 보리 수확때 보리쌀 1되. 나락수확때 쌀 1되. 새 길 놓일 때까지 시행되었음.

⑧ 委託飼育 : 배맥이(배내기) : 소를 대상으로 이식수단으로 활용.

⑨ 洞法 : 불효 사례 없었고 우물 봉쇄 등의 사례도 없었음.

⑩ 契

㉠ 상포계 : 쌀을 모으거나 부족하면 돈을 더 내서 喪布를 사 줌. 지방실, 셋터, 상자섬('도양'의 별칭. 마을 앞에 있는 섬 지칭) 연합으로 構成. 어른들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였음. 윗대까지 시행되었음.

㉡ 술계 : 환갑 또는 초상 중 계원이 선택하는 것에 술 다섯말 지급. 管理者로서 2명의 有司를 둠(나이 순으로 또는 심지로 選出. 1명은 지방실에서 다른 1명은 셋터 및 상자섬에서 選出). 현재에도 시행.

⑪ 품앗이 : 농사철에 시행

⑫ 家事 : 딸의 婚需 및 相續, 호칭

㉠ 딸을 팔아 먹는다고 생각하여 딸에 대한 婚需 내지 相續 없었음.

㉡ 옷가지, 농, 이불 정도 장만하여 줌.

㉢ 며느리에 대해 "우리 젊은이"라는 호칭 즐겨 使用.

⑬ 禁 忌

㉠ 外出制限 : 음력 매월 초하루날 아침에 여자들 못 다니게 함. 요사이도 지키는 집 있음. 음력 정월 토끼날 오전중 여자들 못 다니게 함(다니면 닭이 잘 안된다고 믿음).

㉞ 出入制限 : 음력 2월 초하루 '영두할매' 오시는 날 물떠 놓는데 여자들 못 오게 함.

2) 豊川面 河回

提報者 : 柳端夏(남, 78세, 하동고택)

調査者 : 鄭肯植

① 事前調査事項

㉞ 現在家口數 : 120호

㉞ 全盛期家口數 : 300호

㉞ 人物 : 謙菴 柳雲龍, 西厓 柳成龍

㉞ 姓氏 : 류씨중 겸암후손이 40호, 서애후손이 40호, 타성이 40호임.

② 慣習調査各目

㉞ 組織

㉞ 宗中 : 宗會

a) 任員의 役割 : 문장 3인. 나이순.

b) 任員의 資格 : 有司 3~5인. 선거. 宗孫이 參席하지만 권한 없음.

c) 構成員의 權利 : 겸암·서애 자손간의 큰 구별 없음(묘지 使用關係에서 쌍방이 개방적임). 山訟은 드뭄.

* 財源 : 위토(20斗落), 정자토(100斗落), 宗山

* 使用權·受益權·處分權 : 위토는 山直에게 賭地중, 정자토는 자손이 管理, 宗山은 벌채가능. 經濟的 가치 미약함.

㉞ 기타 團體 : 義座所

a) 目的 : 婚姻·喪祭·扶助. 세금대납, 社會救助

b) 財政 : 經濟力에 따른 共同出資. 적립금 이자 최고 800석.

c) 沿革 : 正相代 一族이 세금을 미납하여 安東郡에서 杖弊후 부인이 殉節함에 근거함. 30년전 소멸.

㉞ 司法

㉞ 紛爭解決 : 朱子 禮說 존중

㉠ 刑罰：명석말이는 하인을 대상으로 함(불확실)

㉡ 行政制裁：水火不通(불확실)

㉢ 社會·經濟

㉣ 民事

a) 行爲能力：冠禮치뤄야 어른행세. 편의상 結婚 결정후 함. 그러나 結婚 전에도 관례를 함. 계례는 아니함.

b) 物 權

○ 宗中財産：洞川 5만 ha. 문물보호관리위원회에서 관리. 20대 선조 때 형성. 1~4牌로 구분하여 管理·受益. 자손共同所有(벌채 등). 개간금지 또는 도지징수. 이주자는 소액의 加入金 납부후 資格취득. 1~4牌 소속은 마을 公論으로 결정. 수입금 처리는 패에서 결정, 주로 저축. 단, 土地는 不動.

○ 物利用：高차례

c) 債權(賭地)：고정액. i) 看坪：한 해의 作況에 따라 결정
ii) 단거리：정율제(수확후 그 양의 1/2. 단으로 결정). iii) 비용負擔：물세, 종자, 비료는 지주·작인반분. 세금·공과금은 지주負擔. iv) 논두렁에 심은 콩은 작인 소유. v) 마름(舍音)：小作者 결정권. 지주는 도지 한섬당 5홉을 마름에게 지급.

㉤ 親 族

a) 親族範圍：친가 8촌, 외가 4촌, 장인·장모(처남·처제：준친족). 외가는 無服이므로 婚姻가능.

b) 妻權利義務：財産의 근거가 다른 것(처가 또는 외가로 부터 받은 財産)은 별도 취급.

c) 離婚：칠거지악이 적용되었는지는 불분명.

d) 分家：結婚후 가세에 따라서임. 이때 일정 정도의 財産 分여(相續分概念)

e) 婚姻外의子：嫡子 구분. 祭祀·相續 등 차별함.

f) 入養：他姓 예외적. 과양가능. 과양체험사례는 없음.

㉥ 勞動(품)：손바꿈. 班常 구별 없으며 他姓도 參加.

3) 豊川面 佳谷里(가일리)

提報者 : 권오빈(남, 68세)

안기경(남, 70세)

調査者 : 이우석

① 事前調査事項

㉞ 略 史

㉞ 設村年代 : 570여년전 * 姓氏變遷 : 유씨→순옹 안씨→安東 權氏

㉞ 行政區域變遷 : 枝谷이나 불리였으나 현재는 풍천면 가곡1리이고 속칭 街日里라고 불리웠음.

㉞ 人文地理

㉞ 域內部落 : 가곡2리와 하회, 구남, 금례 등임.

㉞ 장터 : 풍산장, 안동장, 구남장

㉞ 人物 : 연산조때 사화(남인계열)를 당하면서 遺言으로 벼슬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은 적이 있어 벼슬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음. 독립운동을 한 사람 권오설 등 좌익계인사가 다수 있었음.

㉞ 姓氏 : 130호중 安東 權氏 80호, 순옹 안씨 20호, 타성 30호 정도임.

㉞ 儀禮文化 : 洞祭

㉞ 擔當機構 : 洞祭를 지내기 위한 별도의 有司와 당지기가 있었음. 제관은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주로 權氏가 아닌 사람이 많이 담당했음.

㉞ 變遷史 : 發生연대는 알 수 없으나 20년전에 그만두게 되었음. 權氏의 권유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祭祀를 지내는 측은 타성들이고 비용은 權氏가 負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음. 매년 제기를 교환하고 음식물 비용이 대단했음.

㉞ 財政 : 洞祭를 지내기 위한 논(약 300평)이 있고 洞祭를 지내는 날 놀이를 열고 팽과리와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모금을 함.

㉞ 內容 : 당나무에서 7일 전부터 금기를 지키며 찬물로 목욕한 제관이 마을에서 각 성씨를 적은 소지(문종이에 安東 權氏, 순옹 安氏 등을 쓴 것)를 태우면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

㉞ 비고 : 洞祭를 지내지 않으면 得災한다고 믿었음. 洞祭를 지내지

않은지 몇 년후 목사가 당나무를 베려다가 병을 얻은적이 있었다고 함.

② 慣習調査總目

㉑ 認知度：國家法에 違反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財産, 행동에 대한 법규가 지켜지고 있음.

㉒ 妥當性源泉：鄉約에 기초한 순리에 의함.

㉓ 改廢：財産에 관한 사항은 각 所의 회의에서 바뀜.

③ 慣習調査各目

㉔ 宗中：枝谷所(노동소)

㉕ 目的：마을 전체의 安東 權氏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함.

㉖ 설치근거：門會의 규칙 및 鄉約에 의해 規律된다고 생각함. 鄉約의 문언을 보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㉗ 法的性格：실제로는 安東 權氏의 모임이지만 마을의 중요한 意思를 결정하는 기구. 洞會의 역할수행.

㉘ 位階秩序：枝谷所외에 接賓所, 老人所, 公費所, 喪輿所 등의 所가 있으나 각각 독립된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枝谷所나 他所가 다른 所의 결정을 지시·감독할 수 없음.

㉙ 任員의 역할：문장이 宗孫을 견제하고 有司를 관리·감독함. 대사는 각 宗孫과 문장에게 물어서 행하고 소사는 스스로 처리후 각 所에 보고함.

㉚ 任員의 資格：문장은 3명(삼문장)으로하며 항렬·학식에 關係없고 연장자로 정하며 종신임. 枝谷所의 有司(60세 정도)와 各所의 有司(40~50세정도)는 수리에 밝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함.

㉛ 任期：문장은 종신이고 有司는 2~3년이지만 중임, 연임이 가능함.

㉜ 組織員의 加入 및 탈퇴：가입·탈퇴에 특별한 제한은 없음. 所員이 외지로 이사가면 각 所의 회의에 參加해 발언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㉝ 意思決定：누구나 參加하고 누구나 발언권을 가진 회의에서 결정하지만 다수결의 방식이 아니라, 반대자에게는 설득시켜 만장일치 유도.

㉞ 執行節次：有司가 執行. 돈이 드는 경우에는 품삯을 주고 일을

진행시킴.

㉞ 構成員의 權利 : 宗中員으로 회의에 參加하고 그 회의결정에 따른 이익을 받음.

㉟ 義務 : 義務는 주어지지 않음. 다만 外地의 사람은 權利行爲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㊱ 罰則 : 과거에는 행동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排子시켜서 宗中會議에 參加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음.

㊲ 財源 : 財政은 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宗中財産으로 運營. 枝谷所(노동소)의 財産보다는 다른 所의 財産이 더 많음.

㊳ 司 法

㉠ 民事制裁 : 有司가 業務에 대만한 경우 賠償을 하게한 경우가 많았음.

㉡ 刑罰 : 공개장소에서 자백하게 하고 가벼운 매질도 있었음.

㉢ 行政制裁 : 심한 경우 排子시켜서 宗中會議에 參加시키지 아니하였음.

㊴ 涉 外

㉣ 外部人統制 :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순옹 安氏, 安東 權氏와 그 노복들만 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他姓은 노복이었던 사람은 아님. 그들은 해방이 된후 거의 대부분 떠나 갔다.

㉤ 接賓 : 특별한 형식은 없으나 接賓所를 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손님이 온 경우에도 잘 대접할 수 있게 하였음. 접빈소는 독립된 財産(논, 밭 등)을 가지고 다른 所와 같이 문장과 有司가 있었음.

㊵ 社會·經濟

㉦ 民 事

a) 地域權 : 각인은 자신의 所에 속하는 土地의 연료만을 採取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시기에 採取하여 가구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分配했음.

b) 都給 : 송아지를 24개월 키워주고 송아지 값의 1/2을 받음.

c) 賭地 : 옛날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생겨남. 도지의 경우에는 특별한사유(몇십번만의 흥작, 수해등)의 경우에는 賭地所有者가 도지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됨.

d) 小作 : 정하기에 달렸지만 일반적으로 작인이 7, 지주가 3임. 대신에 小作人이 종자, 비료비용을 맡음. 그러나 水稅는 반반씩 負擔함. 각 所에서는 宗中員에게 小作을 시키는 경우는 없음.

㉠ 家事

a) 親族

- 親族範圍 : 10촌정도, 당내 8촌정도, 처가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친척이라 할 수 없음. 외가, 진외가등 越三姓하고 8촌 밖이면 婚姻 가능.
- 約婚 : 서사왕래 → 面約(신랑집에서 兩婚主, 중매인이 모여서 하룻밤을 지냄) → 관례 → 許可
- 妻權利義務 : 처가 財産을 가지고 온 경우는 처의 特有財産을 인정, 이 財産은 賣買가능.
- 離婚 : 칠거지악으로 離婚한 경우는 본적이 없음.
- 胎兒 : 戶主相續 및 財産相續 모두 인정되나 태아가 딸로 출생하면 養子를 들어서 財産相續 · 戶主相續을 하게 함.
- 婚姻外의 子 : 祭祀를 충밀에서 지내게 하고 財産相續에 영향을 받음.
- 入養 : 아들이 있는 경우에 양자를 들일 수 없음. 異姓養子는 許容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아들 房에서 구함.

b) 相續

- 相續分 : 長男의 비중이 절대적임. 次男은 長男의 1/10도 안됨. 딸은 相續하지 않음. 그러나 안씨의 경우 외손봉사하는 山이 있음.
- 遺言 : 遺言하는 경우도 있지만 財産문제에 있어서는 장자의 相續이 강대한 것이어서 遺言마저도 效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勞動

- a) 머슴 : 노숙(중)은 집안에서 居住하며 종신임. 머슴(1년)은 현물로 지급하고 다친 경우에도 1년의 세경을 모두 줌.
- b) 두레 : 共同作業은 1호당 1명씩 병이나 출타로 인하여 共同作業에 빠진 경우에는 빠진 사람에게 돈으로 내게 하는 경우는 없지만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에는 돈으로 내게하여 마을 비용

으로 쓰게함.

㉞ 習俗規範：祭祀를 지내는 날에는 마을과 당나무에 금줄을 치고 모든 사람의 이동을 통제했음. 제관은 7일간 휴사등의 험한 일을 보지 못하고 洞祭를 지내는 날 새벽에 찬물로 목욕을 해야 함. 違反時는 제관을 바꿈.

④ 調査員 意見：洞法·村規·門規 등에 대한 화자와 주변인들의 태도는 組織的인 활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와해되는데 대해 안타까워 하고 있음. 國法에 違反되지 않는 範圍內에서만 洞法·村規 등이 살아 있다고 느꼈음. 安東 權氏의 調査만이 가능했고 안씨등 타성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調査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의 調査가 필요함. 이 마을은 좌익계 인사들이 많아서 행정관료출신이 적고 일제시대에도 마을 앞에 주재소가 있었다고 함. 宗中인 所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세한 調査를 한다면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豊山邑 五美里

提報者：金元在(남, 87세 233번지)

金鎬在(남, 66세 261번지)

調査者：권기원

① 事前調査事項

㉞ 設村背景：입향시조 김자순이 개성·서울·영주로 다니다가 선조 때 이곳에 자리잡음. 14대조의 5형제분이 과거에 급제하여 인조대왕이 오미라는 이름을 하사.

㉞ 行政區域變遷：오묘→오리→오릉으로 불리움.

㉞ 全盛期家口數：100여가구

㉞ 域內部落：괴정동, 송지동

㉞ 장터：예천장(2, 7일), 풍산장(3, 5일)

㉞ 姓氏：풍산 김씨

② 慣習依存度：宗家에서 門規를 먼저 적용하고 큰 사건은 國法을 따름

③ 慣習調査各目

㉔ 宗中：門會

㉔① 法的性格：門規가 곧 洞規임. 門會에서 결정을 하면 동민 모두가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함.

㉔② 位階秩序：宗孫이 모든 일을 관장하며 원로적인 문장(최고연장자), 次문장(다음 연장자), 末문장(3번째 연장자)이 있음.

㉔③ 入會의 資格：풍산 김씨면 당연히 資格이 주어짐. 단 성년이 되어야 門會에 參席 할 수 있음.

㉔④ 任期：문장이 사망하면 다음 연장자가 취임.

㉔⑤ 主要活動內容：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모여서 생활제반사, 祭祀, 정자·사당수리 등을 처리함.

㉔⑥ 意思決定方式：門會를 열어 공론을 수렴한 뒤 宗孫과 3문장이 이를 결정함.

㉔⑦ 罰則：잘못을 저지르면 門會에 참여시키지 아니하며, 일가에도 끼지못함.

㉔⑧ 會費 分擔金등의 負擔여하：별도의 會費는 내지않고 門中財産에서 나는 受益金을 가지고 활용함.

㉔⑨ 使用權·受益權·處分權 등의 內容：宗孫名義. 有司가 使用, 受益權이 있고 門會를 열어야만 處分가능.

㉕ 門 規

㉕① 紛爭解決：유가의 가르침을 토대로 宗孫이나 웃어른이 訓戒.

㉕② 罰則：제관 門會 등에 參席하지 못했으며, 직책도 맡지 못하였음. 서민들의 경우에는 우물使用을 금지한다던가 동네에서 축출함.

㉕③ 外部人統制：다른 성씨들은 못들어 오게하고 다른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도 들어와 살지 못함. 즉 근거지로 살기 위해서는 못들어오고, 농사(小作)를 지으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음. 족벌로 독재와 비슷함.

㉖ 社會·經濟

㉖① 民 事

a) 總 則

○ 事情變更：불가항력의 경우 인정, 지킬 수 있는데도 못지키면 비난

○ 行爲能力：미혼자, 부녀자, 심신쇠약자는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門會에서 발언권이 없었음.

b) 物權(宗中財産) : 산, 전답, 제공(祭祀지내는 곳)이 있는데 宗孫이 管理.

c) 債 權

- 契約 解除·解止 : 구두로 통지.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함.
- 都給 : 소를 키워주면 송아지 한마리를 줌.
- 賭地 : 서로 합의해서 구두로 契約하며 보통 6~7할의 지대를 받음.

㉠ 家 事

a) 親 族

- 親族範圍 : 당내(집안) 8촌까지, 외척은 4촌까지, 처가는 장인과 장모임.
- 約婚 : 간선(사돈으로 맞는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혼서 교환)
- 婚姻無效 : 쌍방중 어느 일방이 불구자이거나 부도덕한 경우에 구두로 파혼.
- 妻權利義務 : 여자의 特有財産은 인정되지 않았음.
- 家事代理 : 남편이 어떠한 경우라도 다 갚음.
- 離婚 : 칠거지악을 범하면 시댁에서 쫓겨남.
- 胎兒 : 母가 相續하였다가 나중에 相續을 받음.
- 婚姻外의 子 : 자식 대접 받지 못하고, 權利 주장도 못하였으며, 호부 호형도 못하였음.

b) 相 續

- 承認·拋棄 : 포기하는 경우는 없고, 모두 갚아야 함.
- 相續分 : 長男은 많이 받고 次男, 삼남 등은 균등하게 받았으며 여자는 받지 못함.

㉡ 教 育

- a) 鄉校 : 鄉校의 땅을 財源으로 賭地를 주어서 그 受益金으로 運營함.
- b) 오릉학술강습회 : 일제시대에 세워져서 1926년에 풍북국민학교로 바뀌었음. 門中의 財産으로 經費를 充當하였음

㉢ 勞 動

- a) 품 : 門會에서 의견 수렴한 후 결정
- b) 머슴 : 1년契約으로 일을 하며 대가로 土地를 주었음. '담사

리'라는 집안일을 하는 여자머슴도 있었음.

㊦ 商事(牛市場)

- a) 去來方式 : 仲介人이 흥정을 붙여서 함.
- b) 瑕疵擔保責任 : 잘크지 않거나 병이든 경우 다른 소나 돈으로 바꾸어줌.
- c) 市場의 所在地 및 장날 : 풍산(3일, 8일), 예천(2일, 7일)
- d) 去來規模 : 백여마리 정도

㊧ 習俗規範

㉠ 內容 : 洞祭지내는 제관은 금색하고, 잠인출입금지, 목욕재계 등을 지켜야 함.

㉡ 違反時 制裁 : 訓戒를 하였으며, 중한 경우 추방함.

④ 調査員 意見 : 農村의 소박함이 잘 나타난 곳으로 兩班과 서민층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음. 이 部落에서는 미약하나마 門規가 지켜지고 있음. 兩班의 意識이 아직 너무 강하여 나쁜 일은 잘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음.

5) 豊山邑 素山洞

提報者 : 김형동 (남, 73세, 248번지)

김홍동 (남, 81세, 81번지)

김석교 (남, 59세, 253번지)

調査者 : 김장현

① 事前調査事項

㉠ 設村年代 : 1465년(세조 11년)

㉡ 域内部落 : 소산2동(설못)

㉢ 장터 : 풍산 (3, 8일)

㉣ 姓氏 : 172호 중 安東金氏 71호, 상락金氏 18호

㉤ 기타 : 소산1동은 크게 본동과 역골(역동) 그리고 '나바우'의 세 自然部落으로 나뉘어져 있음.

㉥ 洞祭·堂祭 : 동신제

運營 : 전체住民, 祭官, 有司

財政：동답에서 나온 經費로 하며 모자라는 경우 호별로 각출.

意義：마을의 안녕, 풍성기원. 住民들의 단합도모.

② 慣習調査總目

㉞ 認知度：아직까지 門規가 곧 법임.

㉟ 依存度：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대개 門規를 먼저 적용.

㊱ 妥當性源泉：長幼有序, 향렬

③ 慣習調査各目

㉞ 組 織

㉟ 契

a) 상포계

○ 門中과 별도로 組織. 상락 金氏 많음.

○ 沿革：약 30여년전

○ 構成：참여가구 27호. 유사, 제기유사(物品管理), 도유사

○ 運營：組織員이 한번씩 계를 타먹으면 끝남. 연령을 고려해서 새로 構成함.

b) 山林契

○ 沿革：100여년

○ 運營：떨감벌채·식목 등 호수대로 分配.

○ 加入：淸州 鄭氏, 安東 金氏, 상락 金氏중 동네 居住者에 한함.

㊱ 宗中：역동소.

a) 目的：김계권의 위토管理 및 祭祀

b) 意思決定方式：管理運營委員會에서 다수결

c) 財政：대지 2000평, 논 3800평, 임야 40~50정보

d) 會費 分擔金 여하：豫算超過時 호별로 負擔

㉟ 社會·經濟

㉟ 民 事

a) 物權：門中 및 마을財産：門中 대지 2000평, 논 3000평, 임야 40~50정보. 祭祀日 및 門中行事의 經費로 지출. 宗孫의 祭祀經費조로 논 3~4마지기 배당. 마을 동답 논 423평. 현재는 도지중. 수입은 동네經費로 지출.

b) 債 權

○ 損害賠償：損害의 範圍를 명확히 가리지 않고 대충 損害賠償을 해 주고 그냥 넘김.

○ 危險負擔：물건所有者가 負擔함.

○ 都給：배메기(소 키워주기)

황소(일소)는 契約當事者의 일을 해줌. 송아지(암소)는 새끼를 낳으면 키워던 집에 주고 어미는 가짐. 암소(일소)는 송아지가 생기면 반으로 나눔.

○ 賭地：小作과 같은 뜻으로 이해.

○ 小作：小作農은 지주집의 잡일을 해주며 수확량의 반을 받음.

㉠ 家事

a) 親族

○ 親族範圍：10촌까지

○ 約婚(의혼)：옛날엔 필수였으나 현대는 생략하고 편지교환

○ 婚姻無效事由：후손에게 영향을 미칠 악질, 칠거지악

○ 妻權利義務：부인의 財產權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남자가 管理

○ 家事代理：무조건 남편이 갚아줌.

○ 再嫁：節次는 대개 생략함.

○ 事實婚：첩(소실)으로서 대우 받았음.

○ 胎兒：戶主相續, 財產相續 등 모든 權利가 인정됨.

b) 相續(相續分)：相續은 長男에게만 함. 次男은 부모 생존시 증여.

㉡ 教育(역동강당)：원래기능은 祭祀. 1910년 新教育(국어, 역사, 영어, 수학, 지리, 일어) 초중등 過程의 教育에 利用.

㉢ 勞動

a) 품

○ 메기：식사는 本人負擔. 1일 쌀 3되

○ 삼시：식사제공. 1일 쌀 1되

b) 머슴：2월 초하루부터 12월 12일(동지)까지 일함. 상머슴은 나락 10섬. 중머슴은 6섬. 여름에 삼베옷 각 1벌. 젓머슴(유모)은 겨울에 무명바지저고리 해주고 衣食住를 주인이 解決함.

c) 기타：꽃구(늦여름, 음7월). 추수직전 동네 길닦기·풀베기 등

④ 調査員 意見 : 마을住民의 대다수가 安東 金氏이므로 마을전체의 意思決定過程에서 寸적으로 우세한 安東 金氏가 他門中보다 우월적 立場에 서 意思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될수 있으면 門規를 지키려고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고 했으며 門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 했음.

6) 西後面 芋田洞

提報者 : 조차기 (남, 75세, 446번지)

調査者 : 남동재

① 事前調査事項

㉞ 略 史

㉞ 設村年代 : 1591년경

㉞ 設村背景 : 주변이 모시밭이어서 芋田이라 불리움.

㉞ 生産關係(生業手段) : 논농사와 밭농사. 옛날에는 논에서 보리, 수수재배함. 밭에는 약초, 도라지, 황기, 고추, 산야 등을 재배함.

㉞ 人文地理

㉞ 現在家口數 : 228호

㉞ 全盛期家口數 : 246호

㉞ 域内部落 : 서후면 태장동, 광정 1동, 2동(가야), 소산동, 이송천

㉞ 關門 : 安東, 영주

㉞ 장터 : 安東場(2·7일), 용천장(4·9일)

㉞ 姓氏 : 228호 중 184호가 한양 조씨

㉞ 餘暇文化(傳承놀이) : 화상놀이

㉞ 擔當機構 : 門會

㉞ 財政 : 마을주민이 共同負擔

㉞ 由來 : 150년전부터 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5월 단오날 썩은 뽕나무 뿌리에 불을 붙여 5월 4일 저녁에 마을의 작은 개천을 사이에 두고 음지와 양지로 나누어 편싸움을 하면 화재가 예방된다는데서 유래.

② 慣習調査各目

㉗ 組織

㉗ 宗中：門會

- a) 沿革：입향후 현재까지.
- b) 조직원의 가입 및 탈퇴의 요건 효과：옛날에는 60세전에는 참여 못했지만 현재는 성년만 되면 자동가입됨. 본인의 탈퇴 意思 없이는 탈퇴되지 않음.
- c) 주요활동내용：門中제사와 門中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처리.
- d) 意思決定方式：문회의 삼문장(나이순으로 3명)이 합의하에 결정하여 有司에게 통고하는 형식을 취함.
- e) 意思執行節次：삼문장의 결정, 有司에게 통고, 각임원들에게 有司가 문회를 소집하여 전달.
- f) 재원：門土의 곡수로 하며 200평당 쌀 4말 출연. 부족할 시는 각자가 조금씩 출연.

㉘ 契：노인계

- a) 목적：1년에 한번씩 봄에 60세 이상되는 노인들을 위한 잔치 개최.
- b) 沿革：문회가 생기면서부터
- c) 계원의 자격：60세가 넘으면 가입
- d) 재원：노인계의 토지 600평에서 나오는 곡수로서 운영

㉙ 司 法

- ㉗ 담당기구 또는 처리주체：문회의 삼문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함.
- ㉘ 처리내용：주로 화해로서 해결함.

㉚ 集團間位階：다른 지역의 문회와 연결되어 초상, 문회의 대사 때 서로 통고하여 부조금을 주고받음.

㉚ 社會·經濟

㉗ 民 事

- a) 都給(위탁사육)：암소 1마리 키워주면 새끼 1마리를 주거나 팔아서 이익금 분할.
- b) 小作：논은 지주가 1/3, 소작인이 2/3이고, 밭은 무조건 300평당 콩 3말임.

㉘ 家 事

- a) 親族範圍 : 부락에 살고 있는 한양 조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친족으로 봄.
- b) 妻權利義務 : 모든 재산은 남자에게 귀속.
- c) 家事代理 : 모두 변제해 줌.
- d) 胎兒 : 남자일 경우에만 호주 재산상속함.

㉞ 習俗規範

㉟ ① 기간 : 동제지내기 일주일전부터

㉟ ② 내용 : 有司는 일주일 전부터 손톱, 발톱, 머리는 깎지 않고 타인의 인사도 받지 않으며 제사음식 장만하는데도 물건 값을 깎지 않음.

③ 調査員 意見 : 안동-영주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 전체로서 아직도 옛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전형적인 농촌. 門中の 위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쁜 일은 대답을 거의 회피. 追加調査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음. 모든 일처리를 틀에 박힌 규범에 의존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믿음이나 함께 살아온 정으로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음.

7) 西後面 城谷洞(춘파동)

提報者 : 장석기 (남, 82세)

김호학 (남, 83세)

調査者 : 김경동

① 事前調査事項

㉟ ㉟ 設村背景 : 三太師 金, 權, 張의 묘가 있음.

㉟ ㉟ 人文地理

㉟ ㉟ ① 現在家口數 : 200여호

㉟ ㉟ ② 交通 : 불편

㉟ ㉟ ③ 灌溉 : 물이 풍부하지 않음.

㉟ ㉟ ④ 人物 : 학봉 김성일, 하위지

㉟ ㉟ ⑤ 姓氏 : 安東 張氏

㉟ ㉟ ㉟ 洞祭·堂祭 : 풋구(초연)

㉟ ㉟ ㉟ ① 담당기구 : 동네의 농군들이 有司를 뽑아 7월쯤 의논.

㉟ ㉟ ㉟ ② 재정 : 기부금 없이 각자 맡은 음식을 마련해 감.

㉔ 내용 : 일정한 날 없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날을 정하고 바로 전날 동네 길뒹고 풀베고 당일날 일정장소에서 음식을 모두 모아 놓고 제사지내고 음식 평을 하고 연장자 순으로 앉아 가지수대로 음복함.

② 慣習調査各目

㉑ 宗中 : 門會

㉑ 임원의 자격 : 門中자손들 중 20~30세이상의 자손들로 이룸.

㉒ 임기 : 首문장 1명, 부문장 2명은 평생이고, 有司는 3년임.

㉓ 주요활동내용 : 門中の 제사, 잔치 등

㉔ 意思決定方式 : 문장어른(수·부문장)과 有司 그리고 宗孫과 집안 어른들이 상의하나 대개는 문장어른의 결정에 따름.

㉕ 罰則 : 예전엔 門中자리에서 罰을 붙임. 글로 이름을 써서 종가 집벽에 부치는 것으로서 벌을 떼어내어야만 門中자리에 올 수 있음.

㉖ 회비·분담금의 負擔여하 : 종가집 수리, 門中 상석시 기부금 받음. 의무적이지 않아 현재 빚을 내쓰고 있음.

㉗ 사용권·수익권·처분권 등 : 門中山(70여정보)에서 땀감하는 정도이고 합부로 벌채는 하지 못함.

㉘ 洞 規 : 마을 어른들이 동네에서 쫓아내거나 水火不通 시켰음.

㉙ 社會·經濟

㉚ 民 事

a) 物 權

○ 物利用 : 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든 보가 있고 큰 곳은 차례대로 물을 씬. 논물 막음으로 싸우기 싫어 밭으로 만든 경우도 있음. 큰 곳은 도감이 있음. 도감은 작인들이 선출하고 임기는 자잘못에 따라 바뀜.

○ 相隣關係 : 사전양해를 구해서 하고 안되면 못함. 나무도 임의로 자르지는 못하고 의논해서 자름. 예전에 가축이 해를 입힌 경우가 많았으나, 그냥 손해보았음. 요즘은 가축을 가두어서 기름. 담은 자기가 보수.

○ 去來方式 : 田地를 사면 증권이 있었음(명문). 명문에 한손 모두를 사용해서 수결을 찍음.

○ 名義信託 : 門中에서는 2~3명이 共同으로 등기하며 임의로 처리시律을 당함. 宗孫이 처분하더라도 달리 조치할 방법 없음.

b) 債 權

- 債權讓渡 : 구두로 가능하고 약속이 있어야 함.
- 危險負擔 : 물건소유자가 負擔함.
- 都給 : 예전에는 소를 키워주면 새끼를 주거나 황소는 원금 따로하고 半 가르거나 소가 일한 것과 상계. 고의외의 병사때에는 손해배상 없음.
- 賭地 : 일정기간 일정금액 사전약속. 요즈음은 먼저 일정금액을 받기도 함.
- 小作 : 半作. 땅주인이 비료대금 및 농약값 負擔
- 不法給與 : 현금 뿐 것은 마찬가지로이므로 갚아야 함. 몇명에서 고의로 짜고 했을시는 안갚아도 됨.

㉠ 家事

a) 親族

- 親族範圍 : 8촌까지 복을 입음. 일가개념과 비슷. 服입은 것으로 구분
- 約婚 : 현재는 편지교환. 예전에는 신랑집에서 신부를 청해서 중매자를 통해 편지교환. 육례가 있었음.
- 家事代理 : 일정한 한계 없이 무조건 남편이 갚아야 함.
- 離婚 : 칠거지악 適用
- 分家 : 과거에는 결혼 후에도 자식이 1명 정도 있어야 하고 착실하게 살림을 맡을 만 해야 함. 재정은 형편에 따라 보조.
- 再嫁 : 비공식적(몰래 도망함)으로 있었으나 節次는 없었음.
- 事實婚 : 예전에 부부취급.
- 胎兒 : 부인 앞으로 상속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자면 상속하고 무남독녀이면 양자를 들여 양자에게 호주상속함.
- 婚姻外의子 : 예전에는 생활권·상속권도 없고 제사도 참석 못했음.

b) 相續分 : 묵은 살림(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은 분할하지 못하고 그외는 첫째에게 많이 주고 그 다음은 형편에 맞추어서 분할함.

㉡ 勞動

- a) 품 : 품앗이가 있으면 온집이 다 가서 해주고 농사지을 것이 없다면 돈으로 환불해 줌.
- b) 머슴 : 일년씩 바뀌거나 다시 고용함. 보통 음력 동짓달에 나

가고 들어옴. 보통 같은 마을 사람임. 평생머슴은 없음.

㉔ 習俗規範

㉔ ① 의의 : 질병예방

㉔ ② 기간 : 해산후부터 3·7일(21일)까지

㉔ ③ 方式 : 새끼에 숯과 고추등으로 문에 묶어둠. 동물살생금지.喪 당한 사람 또는 외부인 출입금지.

㉔ ④ 위반시제재 : 제재는 없고 삼신에게 해입은 사실을 빌어서 낮게 해야함.

③ 補完·追加調査事項 : 보완調査를 요하는 촌락은 금계. 현재 동제를 지냄.

④ 參考資料 : 금계지

㉔ ① 성격·요지 : 금계와 서후면 일대를 설명한 책

㉔ ② 소장자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사무실 김시인

⑤ 調査員 意見 : 밀집촌이 아니라 부락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安東 張氏 종가대도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함. 그저 평범한 농촌임. 자기 門中에 대한 자랑만 이야기 하고 불미스런 일들은 대답을 회피함. 洞法·村規 등이 살아 움직인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음. 특정대상을 위주로 한 調査보다는 임의적으로 촌락을 찾아다니면서 만난 분들에게 여쭙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음. 상세한 調査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됨.

8) 臨河面 琴韶洞

提報者 : 임치대 (남, 63세, 509번지)

調査者 : 全在慶·鄭肯植

① 組 織

㉔ ① 洞會 : 수리시설 및 洞山 管理. 최고령자를 중심으로 운영.

㉔ ② 宗 中

㉔ ① 종류 및 재정 : 金谷齊 (林野 20斗落), 枝洞齊 (林野 20斗落), 永募亭齊 [林野 60여정보, 土地 40斗落(8,000평)]임. 金谷齊는 化萇亭, 募河亭 으로 나뉨. (西河先生 高麗代 文章家 諱 林春)

㉔ ② 운영 : 門中 총재산은 大門中에서 소유. 종파별, 계파별 재산 별 도 管理. 門土는 묘지기가 소작. 門中재산으로 宗孫 학비보조 사례있음.

㉔ 錦陽書塾 (金谷齊)

㉑ 임원 : 門長(최연장자), 有司 3-4人

㉒ 재정 : 門中 토지, 산

㉓ 회비 : 宗宅수리시, 족보제작시 특별출연

② 司 法

㉔ 民事制裁 : 泐 高차레때 벌과금

㉕ 刑罰 : 북을 지워 동네 일주를 시킴. 50~60년전 이야기로는 門中山 벌목시 벌금물렸음.

㉖ 行政制裁 : 근린생활상의 제재는 이웃간 왕래두절. 동네축출

③ 社會·經濟

㉗ 民 事

㉑ 物 權

a) 마을財産 : 洞畓(6백여평 : 洞祭用), 洞山

b) 물利用 : 泐운영(도감선출)

c) 墳墓 : 宗員은 門中山에 묘지를 쓸 수 있음.

㉒ 債 權

a) 危險負擔 : 물건소유자가 負擔.

b) 都給 : 배몹이

c) 賭地 : 坪當 돈 '얼마'를 주고 산다(2백평당 연칠만원 내지 십만원). 일년내 자기가 깨, 땅콩, 고추 등을 갈아먹고 일년 지나면 다시 계약한다. 논도 도지한다. 시기는 三冬에 한다. 方式은 "당신네 토지중 '어디께'있는 것을 내가 도지를 하고 싶다"고 청하고 돈을 한꺼번에 준다.

d) 小作 : 마지기당 소출이 25~30말이던 시절 10~13말 받았음. 요즈음은 40말 수확중 15말 받음. 농지세는 주인 負擔. 水稅는 부친 사람 負擔. 매상시 일등받아도 소작료는 이등가격 기준으로 셈함.

e) 利殖契 : 絃典契 (70년전), 枕流台契 (40여년전)

三一契 (50년전), 永慕亭契 (40여년전), 愚慕契 (17년전)

㉘ 家 事

㉑ 親 族

a) 親族範圍：10촌이내, 외4~5촌, 처가.

b) 離婚：칠거지악 適用사례 모름.

c) 分家：이때 어느정도 分財(집, 땅, 소)

㉠ 相續分：장남은 적서구별 없었음. 딸 시집갈 때는 한두마지기 분배.

㉡ 勞 動

㉢ 품：모심기 품앗이

㉣ 두레：길쌈 두레(자기것 자기가 짬)

9) 臨河面 新德1洞

提報者：정재수 (남, 55세, 567번지)

調査者：남동재

① 事前調査事項

㉢ 略 史

㉣ 設村年代：1540년경

㉤ 入鄉始祖：남양 홍씨→영양 南씨→의성 김씨

㉥ 行政區域變遷：신당→신덕

㉣ 生産關係

㉣ 肥瘠度：좋은 편임

㉤ 產出量：풍부함

㉣ 人文地理

㉣ 現在家口數：128호

㉤ 域内部落：길안면 천지동, 오대동, 임하면 고곡동, 금소동, 신덕

2동

㉥ 姓氏：의성 김씨, 안동 권씨가 대부분임.

㉣ 儀禮文化

㉣ 洞祭·堂祭

a) 담당기구：동회 제관 1명과 有司 1명

b) 변천：일제시대에 규모가 축소되고 새마을 운동시 인식의 변화초래

c) 재정 : 洞畵의 수입금으로 재원확보

d) 기타 : 窠제사라는 형태의 제사를 따로 모심.

㉔ 外來宗教 : 불교가 대부분이고 기독교도 조금 있음.

② 慣習調査總目

㉕ 依存度 : 동법·촌규·문규에 의해 해결이 안될 때는 국법을 따름.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문제해결.

㉖ 適用範圍 : 불효자·패륜아 등 도덕적으로 벗어난 행동이 발생할 때 주로 適用.

㉗ 妥當性源泉 : 같은 생활 共同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임.

③ 慣習調査各目

㉘ 組 織 : 상두契

㉙ 沿革 : 이 마을 형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㉚ 位階秩序 : 연장자 순으로 하되 契長의 명에 순응함.

㉛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 계원의 자격은 계속.

㉜ 조직원의 가입 및 탈퇴의 요건·효과 : 신가입시 현재 기금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성기금배분을 내놓아야 가입가능함. 탈퇴시 기금을 찾을 수 없음.

㉝ 主要활동내용 : 초상을 당하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일을해 줌.

㉞ 의무 :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충원해 주어야 함.

㉟ 재원 : 장례식을 치뤄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 재원의 전부임.

㊱ 司 法

㊲ 體罰 : 남의 자녀라도 잘못을 하면 교육측면에서 매질 許容.

㊳ 懲罰 :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과. 과렴치한은 동네에서 축출함.

㊴ 涉 外

㊵ 中媒·通婚 : 納采(청혼서, 허혼서)→연길(택일, 납폐)→친영(관례, 계례, 전안례, 합근례, 현구례, 초행, 재행, 근친)

㊶ 外部人統制

a) 方式 : 금줄이후(정월 14일밤) 외부인이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고 나가면 들어오지 못함.

b) 社會的 意味 : 생활 共同體 成원의 意識집중

㉔ 社會 · 經濟

㉕ 民事

a) 物權

○ 마을財産 : 共同소유재산으로 임야가 있고 연료채취와 임야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분배함.

○ 물利用 : 보 운영. 농번기에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수로를 정비하는데 참여하여야 함. 그렇지 아니한 경우 일정 금액의 노임을 지급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었음.

b) 債 權

○ 危險負擔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는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함.

○ 解除 · 解止 : 구두로도 가능했으며 서면에 의한 효과와 동일하다고 봄.

○ 委託飼育 : 암소의 경우에 새끼를 가지고 어미소는 돌려줌. 황소는 일을 시킬수 있음.

○ 賭地 : 토지의 가치나 위치에 따라 수확의 반을 주는 경우나 지주에게 1/3을 주는 경우가 있음.

○ 小作 :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

○ 不法給與 : 다시 돌려 받을 수 없음.

㉖ 家 事

○ 約婚 : 의혼(중매, 궁합, 간선, 면약)은 관행상의 節次로 인식.

○ 婚姻無效 : 강요(강서), 답서를 서로 되돌려 받으면 파혼으로 인정.

○ 妻權利義務 : 부인의 재산은 인정이 되지 않음.

○ 離婚 : 칠거지악에 해당되면 離婚사유가 됨.

○ 分家 : 차남부터는 본인의 意思와는 관계없이 婚姻과 함께 분가를 해야 함.

○ 再嫁 : 許容되지 않음.

○ 繼母 :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당연히 어머니의 지위를 가졌음.

○ 入養 : 1500년 이후 양자제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으며 妻妾無一子女일 경우에만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으며 후에는 딸만 있을 경우에도 양

자입양이 가능했음.

○ 宗中財産 : 所. 위토라고도 함. 조상을 모시기 위한 재산으로 有司가 管理.

㉔ 勞動 : 품 : 농번기 때의 품앗이

④ 調査員 意見 : 당해촌락은 安東市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옛날의 정취는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보였음. 동법·촌규·문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음.

10) 臨河面 川前1里

提報者 : 金時雨 (남, 63세)

金時鐸 (남, 82세)

調査者 : 김경동

① 事前調査事項

㉑ 現在家口數 : 130여호

㉒ 全盛期家口數 : 130여호

㉓ 交通 : 양호

㉔ 灌溉 : 양호(낙동강)

㉕ 域内部落 : 임하동

㉖ 人物 : 학봉 김성일

㉗ 姓氏 : 의성 김씨

② 慣習調査總目

㉑ 存在樣式 : 가선사략이란 책이 있으나 별로 참고가 되지 아니하며 향약이 남아 있으나 책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액자에 들어 있음.

㉒ 依存度 : 동네 주민이 일가일 때는 문규에 의존. 예전에는 서당을 통해서 해결하였음. 그외는 국법으로 처리함.

③ 慣習調査各目

㉑ 組 織 : 門會

㉒ 목적 : 門中の 여러 행사계획 시행, 경비조달

㉓ 설치근거 : 각 所의 문서

㉔ 沿革 : 420여년

㉕ 位階秩序 : 향고연장

㉔ 주요활동내용 : 門中제사, 손님접대, 재산관리

㉕ 자원 : 각소의 재산과 門中員들의 기부금

㉖ 재정 : 門中山 700여 정보

㉗ 司 法 : 예전에는 동네에서 쫓아 냈었고 일가일 경우는 門罰에 불
임. 불문을로 당연시되고 직책 취임이 제한됨.

㉘ 涉 外

㉙ 入·出村儀禮 : 일정 方式 없음. 입촌자는 門中山을 사용하는 비
용으로 약간씩 재정보조를 함.

㉚ 接賓 : 宗孫이 각 宗中員들에 연락하면 종중원들이 참석하면서
접빈료를 약간씩 보탬. 門中위주로 접빈함.

㉛ 社 會·經 濟

㉜ 民 事

a) 物權(名義信託) : 門中재산은 각 所의 宗孫명의로 등기함. 宗
孫이 임의대로 이월했을시 배상해주며 개인배상이 안될 때는
각 所의 有司들이 배상해줌.

b) 債 權

○ 不完全履行 : 할 수 없이 그냥 손해봄.

○ 都給 : 암소인 경우는 송아지를 주며, 황소일 때는 말길 당시와 팔
당시의 차액을 반반씩 나누거나 소가 일한 것과 상계함.

○ 賭地 : 예를 들면 200평당 나락 매상 2등가로 다섯가마니 등으로 事
前合意.

○ 小作 : 토지상태에 따라, 작황에 따라 곡식을 나눔.

㉝ 家 事

a) 親 族

○ 親族範圍 : 유복지친으로 구별함. 부계 8촌, 모계 6촌, 처가는 당사
자와 장인·장모임. 유복지친은 부계 10촌이내, 모계 4촌(모계 6촌은 服
이 없었음), 처와 장인·장모임.

○ 妻權利義務 : 특유재산은 없고 管理는 집안 어른(호주)이 함.

○ 家事代理 : 離婚을 하지 않는 한 남편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함.

○ 分家 : 장가를 가면 분가. 이때 형편에 따라 재산을 나눠줌.

○ 胎兒 :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야 상속할 수 있음. 그 동안은 부인이

管理함.

- 婚姻外의 子 : 종과 비슷하고, 제사참석도 안됨.
- 繼母 : 예전에는 종보다도 더 대우가 안좋았으며 육례를 갖추어야만 계모가 될 수 있었음. 육례를 안 갖추면 첩으로 인정함.
- 入養 : 입양문서를 작성하고, 양친부모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잔치를 했음.
- 扶養義務 : 지키지 않는 경우 동네에서 쫓아 내거나 매질을 했음.
 - b) 相 續
- 承認·拋棄 :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음.
- 相續分 : 따로 정해진 바 없음.
- 遺言 : 친필로써 서류로 적성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통은 말로함. 서류작성시 임회인이 있고 필사가 작성함.

㉞ 教 育

- a) 단체 또는 조직 : 운곡서당
- b) 변천사 : 구한말까지 명맥을 유지
- c) 재정 : 서당토지가 있었음.

㉟ 勞 働(머슴)

- a) 반머슴 - 하루는 자기일을 하고 하루는 머슴일을 함.
- b) 온머슴 - 보통 1년 계약으로 머슴일만함.

④ 調査員 意見 : 외떨어진 곳이어서 그런대로 의성 김씨 門中위주로 마을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외관상으로는 표가 나지 않음. 조용하며 집의 구조도 규모가 있었고 마을도 깨끗했음. 宗孫에 의지하는 경향. 宗孫의 대답이 명쾌하지는 않았고 특히 문집같은 것은 내놓기를 꺼려 했으며 구체적인 문규는 모르고 있었음. 洞法, 村規 등은 상당히 소실되었으나 다른 동네에 비해서는 약간은 살아있는듯 했음. 본 지역은 정부기관에서 방문하면 더 잘 응해줄 것 같음.

11) 吉安面 默溪里

提報者 : 金世圭 (남, 73세)

金宰東 (남, 59세, 749번지)

調査者 : 권기원

① 事前調査事項

㉞ 略史

- ㉟ 設村年代：연산군 당시
- ㊱ 入郷始祖：보백당선생
- ㊲ 行政區域變遷：거목촌→목계동

㉟ 人文地理

- ㊳ 現在家口數：120가구
- ㊴ 灌溉：보를 막아서 물이용
- ㊵ 域內部落：목계1동(국망, 선항리, 상리, 하리), 목계2동(오락동), 고란동
- ㊶ 關門：길안, 청송
- ㊷ 장터：길안시장(5, 10일)
- ㊸ 人物：연산군당시 대제학, 대사헌을 지내신 金係行(보백당선생)
- ㊹ 姓氏：60% 정도가 安東 金氏임.

② 慣習調査各目

㉞ 組織

- ㊱ 契：서당계(학동들 상호간). 學契(스승생계. 제사). 宗契(사촌간).

㊱ 宗中：門會

- a) 位階秩序：宗孫이 모든 일을 지휘하며 각 所의 有司가 執行함.
- b) 意思決定方式：宗孫이 의견을 수렴하여서 門判(門中判決)함.
- c) 罰則：水火不通, 추방
- d) 財源：5개 所(정소, 대문소, 원소, 본소, 대청소)마다 각각의 토지가 있음.

㉟ 司法

㊱ 紛爭解決

- a) 담당기구 또는 처리주체：宗孫, 門長
- b) 適用準則：宗孫, 門長이 자의적으로 도리에 맞게 판단함.
- c) 節次：門中判決을 거쳐서 시시비비 가림.
- d) 效果：판결에 따름.

- ㊲ 民事制裁：산에는 자기구역이 정하여 져서 다른 곳에서는 나무

를 할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도 없음.

㊸ 刑罰 : 부랑아, 부양의무 불이행자, 호를 망각한 행위(부모구타)를 한 사람 등은 몰매쳐서 추방함.

㊹ 行政制裁 : 조상에 죄를 범하면 門中출입이 통제됨. 상스러운 행동, 줌도둑, 강간은 우물사용금지. 처녀 총각이 부정한 짓을 하면 자발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가족 모두 도망감.

㊺ 社會·經濟

㊻ 民事

a) 物 權

○ 物利用 : 팻물은 물을 돌려대는 것을 말함. 팻물도감은 월급을 주고 물 대주는 사람. 원도감은 泔를 운영하고 물전체를 管理하는 사람임.

○ 相隣關係 : 불편(피해)이 작은 경우는 그냥 둠.

○ 名義信託 : 문서만 갖고 있으면 주인이 되므로 명의신탁이 없음.

b) 債 權

○ 都給(베메기) : 송아지를 키우면 나중에 송아지를 사육자에게 주고 어미는 주인이 가져감.

㊼ 家 事

a) 親 族

○ 親族範圍 : 당내 8촌, 외척 4촌, 처가의 장인 장모.

○ 約婚 : 신랑측이 간선을 신부측에 보냄. 신부측에서 허혼과 연길을 정하여 회답함. 신랑측은 대례를 치르기 전에 '이양'(신랑의 신체치수)을 적어보냄.

○ 婚姻無效節次 : 받은 편지를 되돌려 보냄.

○ 再嫁 : 여자가 자식을 못 낳거나, 남자가 죽을 경우 재가를 할 수 있는데, 대례를 치루어야 함. 치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첩으로 간주

○ 婚姻外의 子 : 어떤 행사나 모임에 참여 불가

b) 相 續

○ 承認·拋棄 : 모두 상속되며 빚을 갚아야 함.

○ 遺言 : 문서로 하며 재산관계는 기재하지 아니함.

㊽ 教 育 : 청단

- a) 목적 : 지방 유림들의 친목도모, 학문연구, 강론등
- b) 재정 : 서원의 재산으로 충당함.
- c) 내용 : 매년 꽃필시기 지나 푸른 빛이 도는 시기에 경상도 향내의 모든 유림들이 모여서 친목도모, 강론등을 함.
- d) 비고 : 양반이외는 출입이 통제됨.

㉑ 勞動(돌패) : 머슴들이 대우개선, 세경인상을 요구하며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일컬음. 머슴이 적어서 대접을 잘해야 하였음.

㉒ 特殊市場 : 마전(시계전)

- a) 소재지 : 길안 시장내
- b) 특징 : 곡식만 사고 파는 장소임.

㉓ 習俗規範 : 서원 앞을 지나갈 때 말에서 내리지 않으면 벌을 줌. 당집출입금지. 이웃마을에 전염병이 돌때 동네 입구에서 피마자 기름을 짜서 적을 구워 주고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산으로 돌아 가라고 했음. 이는 전염병예방을 위해서이고 적을 구워주는 것은 미안하다는 뜻으로 주는 것임.

③ 參考資料

㉔ 제목 : 寶白堂先生 遺訓

㉕ 性格·要旨 : 선생의 약력임. 이것이 문규이상으로 효력이 있음.

㉖ 內容 : 吾家無寶物 寶物惟清白 持身謹慎 待人忠厚 (우리 가문에 보물은 없다고 하나 청렴과 결백을 보물로 삼노라. 몸가짐을 삼가할 것이며, 사람을 대함에 있어 마음을 다하라)

④ 調查員 意見 : 비교적 소박한 촌락. 별로 잘 응해주지 아니 하였고, 좋지 않은 일들은 대답을 모두 회피하여 민사분야는 잘 정리하지 못하였음.

12) 一直面 造塔洞

提報者 : 권학문 (남, 68세, 102번지)

김갑동 (남, 63세, 89번지)

김용채 (남, 60세, 25번지)

황태영 (남, 59세, 72번지)

調査者 : 全在慶

① 事前調査事項

㉞ 儀禮文化：서낭堂 제사 (정월대보름)

㉟ 담당기구：도감 1, 제관 3명(各마을), 제사차리는 집 별도 지정.

㊱ 내용：새로 제기를 매년 삼.

㊲ 비고：현 3동(송곡, 조탑, 현촌) 합동

㊳ 餘暇文化：꽃게 싸움, 씨름

② 慣習調査各目

㉞ 各契：洞총회 운영. 상두계(일봐주기), 초룻계, 상포계, 술계, 팔죽계

㊴ 渉 外

㉟ 入·出村儀禮：들禮(신참례)

a) 내용：열이레날 총회 때 탁주 1말, 안주제공. 이후 동민자격이 주어짐.

b) 효과：동네 재산 사용권리를 줌.

㊱ 外部人統制：금줄

a) 方式：당제지낼 때 14일날 마을 입구.

b) 社會的意味：부정방지, 동민전체가 자숙.

㊲ 社會·經濟

㉟ 民 事

a) 物權(물利用)：못契, 泐契는 규모가 작았고 특별제도는 없었음.

b) 債 權

○ 집賣買：집을 매매할 경우 건물과 대지를 일체의 개념으로 파악하였는지 아니면 대지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 또는 지상권, 도지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하에 관하여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됨. (집=건물+대지? 집=건물?)

○ 都給：배뎁이 송아지는 24삭후 새끼가짐. 풀뎁이 뎁이는 사용대차 개념으로 이해됨. 송아지는 半半 나누는 수 있음. 닭은 배뎁이이고 개, 염소는 현금으로 봄.

○ 賭地：집터대상 (텃세)

○ 小作：농지대상

㊱ 家事(離婚)：칠거지악 適用. 그러나 조강지처이거나 부모 상복

을 입었을 경우는 離婚불가.

㉔ 商 事

a) 소재지 : 구미장 → 일직장

b) 장터사용관계 : 場稅 2/100정도 面에 납부. 농산물 판매시 장 세는 예전의 경우 파는 사람이 냈었으나, 현재는 마늘만 파는 측이 냄. 나머지는 사는 측(상인)이 냄.

13) 一直面 龜尾洞

提報者 : 김두주 (남, 60세)

이일복 (남, 72세)

調査者 : 김경동

① 事前調査事項

㉔ 略史(設村年代) : 350여년전

㉕ 人文地理

㉑ 現在家口數 : 90여호

㉒ 域內部落 : 소호리, 성남촌, 알말, 지신, 지곡, 내귀미, 구운산

㉓ 장터 : 귀미장, 운산(일직)장 (6, 11일)

㉔ 人物 : 입향조 어우당 김원

㉕ 姓氏 : 의성 金氏

㉖ 儀禮文化

㉑ 洞祭·堂祭 : 천신제, 산신제

a) 擔當機構 : 이동네 주거민으로 그날에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 소수로추진. 이들은 담배, 술이 금기되며 출입도 통제됨. 바로 전날 장을 보러 갈 수는 있음.

b) 財政 : 동네 경비로함. 장사를 지낼때 상여꾼들이 장난을 치거나 혹은 상두계에서 경비가 3만원정도 나오는 것등을 동네경비로 모음. 동네경비 형성 전에는 가구당 分擔.

c) 內容 : 정월 초이레부터 금색하고 14일 준비에 들어감. 이때 뽑힌 제주들은 찬물에 목욕하고 두문불출해야 함. 불종지(祭祀때 밝힌 불)를 집에 가지고 와 소원을 빌기도 함. 제주뽑기가 힘들어 폐지의견도 나온적이 있음.

㉑ 外來宗教 : 남자는 유교, 여자는 불교임.

㉒ 餘暇文化(傳承놀이) : 예전에는 건립이 있었음. 정월보름쯤 팽가리 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원 장만함

㉓ 慣習調査總目(妥當性源泉) : 목은 이색 선생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門規가 잘 지켜짐

③ 慣習調査各目

㉔ 洞規·司法

a) 民事制裁 : 泫作業時 參與하지 않거나 논밭의 양에 따른 비율에 맞는 資金을 내려하지 않을 때 이목(현재의 조합장) 인솔하에 모든 보꾼들이 그의 집에 가서 술등을 들어낸 경우도 있었음.

b) 刑罰 :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동장등이 동리매를 의결하면 모인 사람 모두 일정하게 약한 매질을 했었음.

c) 行政制裁 : 공개사과는 지금은 없었으나 예전에 많았음. 근린생활상의 제재는 예전에는 가혹한 적도 있었음. 동학란 당시 개인적 원한을 푸는 등의 의도가 가미되어 그당시 동네인을 생매장한 경우도 있었다고 함. 얼마전에 불순며느리 수화불통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음.

㉕ 渉外

a) 經濟交流 : 해방전 귀미2동(가니미)과 교류. 행상을 가니미 동네인들이 메어줌. 그대신 이쪽의 산판 허용.

b) 中媒·通婚 : 소호리 주민(한산 李씨)들과 주로 결혼했음. 20여년전부터 구혼이 없어짐. 식만 올리면 婚姻申告와는 상관없이 夫婦로 인정함. 면며느리(민며느리)는 딸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집이 딸을 일찍 보내 그 집에서 키워 婚姻함.

c) 外部人統制(금색) : 정월 14일, 祭祀 3·4일 전부터 동네 입구에 금색을 함으로써 他外部人의 出入禁止.

㉖ 社會·經濟

㉗ 民事

a) 物權

○ 마을財産 : 전에는 동네산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이 동네산이 팔렸을때 개인에게 돌아온 혜택은 없었음.

○ 물利用 : 泫는 이용자들이 공사하고 그들이 차례대로 물을 씬. 泫은 管理者(水利組合長) 選定해서 그 사람에게 일임.

○ 擔保物權 : 文書를 作成하여 物權設定. 값지 아니할 때에는 所有權이 이전됨. 그러나 期間이 지난뒤에도 값으면 다시 物건을 찾을 수 있음.

○ 名義信託 : 門中에서는 가공의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음.

b) 債 權

○ 損害賠償 : 完全賠償은 없고 보통은 더 낮은 것으로 現物賠償 해줌. 現金은 주지도 받지도 않음.

○ 危險負擔 : 物건주인이 損害를 봐야 함. 契約 후 一定金額까지 支拂 했으면 債權者가 負擔해야 함.

○ 都給 : 암소는 24개월(임신기간)이 넘은 것은 새끼를 반반씩 가르고 황소는 거름·밭갈이와 상계. 소가 죽으면 그만임.

○ 賭地 : 賃貸借 方式으로 하며, 보통은 논 1마지기에 나락 4가마니 정도임

○ 小作 : 수확량을 반반씩 나누며 비료등을 땅주인이 냄.

○ 不法給與 : 노름빚도 값아야 함.

㉠ 家 事

a) 親 族

○ 親族範圍 : 유복지친. 부계 8촌이내, 모계 외삼촌·외숙모·외조부 모

○ 約婚 : 便紙交換하고 破婚時 폐물만 辨償함.

○ 妻權利義務 : 인정되지 않고 戶主가 管理함.

○ 事實婚 : 1년정도 이상은 지나야 함. 相續도 가능함.

○ 胎兒 : 태어나면 받을 수 있음.

○ 婚姻外의 子 : 사람대우 받을 수 없었고 相續도 안되며 戶籍은 父系로 올리지만 生活은 母系에서 함.

○ 繼母 : 큰 차이가 없음. 婚姻式을 안하면 繼母가 될수 없고, 庶母가 될 뿐임.

○ 入養 : 친양부모 모두 모여 잔치함. 차후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戶籍을 옮길 수 있음.

b) 相 續

- 承認・拋棄 :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함.
- 相續分 : 만이를 많이 주고 나머지는 주고싶은 대로 함.

㉠ 勞 動

a) 머슴 : 반머슴은 하루하루 번갈아 자기일과 남의 일을 하는 머슴이고, 온머슴은 1년내내 남의 일을 하는 머슴임.

b) 두레 : 길쌈할 때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 商 事 : 牛市場

a) 委託 仲買方式 : 운산 우시장이 있을 때는 중개인인 '뽀돈'(구 매희망자가 중개인에게 일정금을 주면서 희망소를 사달라고 주는 돈)을 받으면 그 소를 매매해 줌. 일종의 공시효과가 있어 다른 사람은 손을 못댐. 지금은 安東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마구에서 직접 이루어 짐.

b) 瑕疵擔保 責任의 限界 : 전혀 책임지지 않음.

c) 代金決裁方式 : 현찰

㉢ 習俗規範 : 堂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洞祭지내는 산에도 올라가지 못함. 그 산 참나무(금줄친 것)에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안감. 洞祭祀시 집집마다 금색을 하기도 함. 200~300년된 느티나무에 있는 벌꿀을 먹고 병어리가 된 남매가 있음.

④ 參考資料 : '돈계집'에 門規를 수록

⑤ 調查員 意見 : 평범한 民村으로서 巫俗信仰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남아 있었음. 洞法·村規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門規에 대한 언급은 門中의 자랑만할 뿐이었음. 그리고 부끄러운 일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약간 아쉬웠으므로 本調査時에는 충분한 시간을 投入要望.

14) 北後面 甕川洞

提報者 : 姜大恪 (남, 72세, 593번지)

姜聲八 (남, 73세, 545번지)

姜儀銓 (남, 76세, 591번지)

調査者 : 全在慶·鄭肯植

① 事前調査事項

㉞ 設村年代：490여년, 연산군 11년 입향

㉟ 生業手段：農業

㊱ 現在家口數：500여호

㊲ 姓氏：진주 姜氏 가 반정도이고 그밖에 밀양 朴氏, 안동 金氏, 함안 조씨로 構成. 市場에는 他姓받이 거주.

㊳ 傳承놀이：동차싸움, 줄다리기.

② 慣習調査各目

㉞ 組 織

㉟ 矯風會

a) 目的：풍속교정, 扶助, 仲裁 및 紛爭解決, 賞罰, 품앗決定. 일제시대에는 국산품이용 장려.

b) 沿革：조선말 설립, 일제때 해체, 8·15때 부활됨.

c) 位階秩序：會長 (初代會長 安東 府使), 幹事 3인, 洞長 아래 所任을 됨.

d) 任期：不特定

e) 加入強制 및 世襲如何：加入強制

f) 集會：년1회 음력 1월 16일 總會

g) 財政：洞有山 1200평(會長名義로 登記)과 贊助金

㊱ 各契：班, 學契, 儒契, 가숙계, 爲親契, 상포계, 厚喪契, 내자회 (부녀회)

㊲ 大小門會

㉞ 集團間位階：門中團體 (大·中·小) 相互間 財政支援.

㊳ 社會·經濟

㉟ 民 事

a) 物 權

○ 마을財産：웅천공원

○ 분묘：강씨라도 門中산에 묘 쓰지 못함(숫자 많은 탓).

b) 債 權

○ 집 賣買方式：가옥과 대지는 별도 취급하였으나, 가옥규모나 수목 등은 記錄하지 아니하였음.

○ 都給 : 배믹이 원가(소사는 값) 제외후 이익반분. 먹이는 사람이 부리는 경우만도 있음.

○ 小作 : 단절되었으나 가끔 나타남. 토종장닭 없애줘야 계속됨. 반갈림.

㉠ 家事

a) 親族

○ 禁婚範圍 : 外 8村에 대해서는 의견 갈림.

○ 離婚 : 七去之惡으로 쫓겨난 事例 모름.

○ 再嫁 : 媿家와 相議하는 경우가 있음. 3년喪후 가능.

b) 相續

○ 承認·拋棄 : 빛 남기고 죽어도 값는 이는 드물었음.

○ 相續分 : 財産이 많아야 딸에게도 분배

㉡ 教育團體 또는 組織 : 書堂, 四益齋

㉢ 勞動

a) 품 : 서숙 1말에 열흘도 일해 주었음.

b) 머슴 : 큰일꾼은 벼 5~6섬(5섬에 契約한 후 들어올 때 1섬, 나갈 때 4섬), 작은일꾼은 벼 1~2섬(봄에 좁쌀 5되 추가). 조력꾼. 결혼을 시켜주는 예는 드물었고 가정이 없는 사람은 빨래해 주기로 특약.

15) 北後面 道村里(도기촌)

提報者 : 권기섭 (남, 78세)

권용섭 (남, 70세)

調査者 : 이우석

① 事前調査事項

㉠ 設村年代 : 500여년전

㉡ 人文地理

㉢ 現在家口數 : 60~70호

㉣ 장터 : 옹천

㉤ 姓氏 : 權氏가 반정도이고 姜氏, 金氏등의 諸姓이 있음.

㉥ 儀禮文化 : 城隍祭

㉠ 擔當機構：宗中有司와 별도의 有司(40~60세정도)가 있어서 洞祭에 관한 일을 맡음. 有司는 매년 選出함.

㉡ 財政：洞祭를 지내기 위한 門中所有의 별도의 논 보유.

㉢ 內容：정월 보름 0시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祭祀를 재냄. 安東權氏만 참여하고 타성은 참여하지 않음. 洞祭를 지내지 않으면 동네에 재화가 생긴다고 믿음.

② 慣習調査總目

㉣ 依存度：國家法이 당연히 優先하고 洞法이 補充的 效力을 가지고 있음.

㉤ 改廢：門規는 門會를 통해 改廢하고 이것을 完議라 함. 다툼이 있으면 門長이 調整

③ 慣習調査各目

㉦ 組織：門會

㉧ 組織 및 構成：각과간의 門中이 있고, 각과의 財産은 엄격히 분리되었음.

㉨ 門長：年長者 順으로 위에서 4명. 결원이 생기면 차순위 年長者가 문장이 됨.

㉩ 有司：수리에 밝은 사람(50~60세)으로 임명. 經理 및 渉外가 서로 견제토록함.

㉪ 運營：案件提出은 門中員 누구나 할 수 있음. 門長은 有司의 일을 計劃, 監督하고 손님대접. 有司 2명은 손수 일을 처리하고 문장에게 報告함. 年間決算은 定期總會 1년 1회임. 有司에게는 명목상이나마 報酬가 주어짐.

㉫ 任期：門長은 終身이고 有司는 2년, 3년이나 留任이 가능함.

㉬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安東 權氏이지만 사빈계가 아닌 경우 宗中員이 아님. 당연히 出生서부터 門中員이 되지만 외지에 나가 살면 權利行使를 하지 못함.

㉭ 意思決定方式：提出된 案件은 門會에서 決定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문장이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

㉮ 社會·經濟

㉯ 民事(小作)：共同財産(門中財産)은 주로 타성에게 小作시키고

있으며, 個人財産을 小作하는 것보다 宗中財産을 小作하는 것이 小作人에게 유리했음. 小作料는 5할이었으나 현재는 3할 정도. 비료, 種子料는 小作人이 負擔함.

㉠ 家事

a) 親族

○ 親族範圍 : 권기섭씨는 20촌 정도라고 하고 권용섭씨는 8촌이라고 함. 有服之親이라는 문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림.

○ 約婚 : 과거 서사 왕래를 통해서 約婚함. 정혼(맹약, 통약)과 約婚의 구별이 없음. 約婚은 當事者들 사이의 것이 아니고 부모들 사이의 婚姻豫約을 의미함. 과거에는 신부 부모가 신랑집에 가면 신랑집에서 개를 잡아서 대접하고 하룻밤을 지새며 노닐었음.

○ 婚姻無效 : 婚姻은 서로 속이는 경우(신체적 결합 등)에는 언제든지 이를 해약할 수 있음. 현재는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婚姻의 절차는 중단됨.

○ 妻權利義務 : 집사정에 따라서는 가족 특유 財産을 자신이 處分할 수도 있음. 지체 높은 사람과의 婚姻을 上婚이라 하고 이런 경우 妻家の 財産을 많이 가지고 옴.

○ 離婚 : 七去之惡으로 離婚한 경우를 본 적이 없음.

○ 分家 : 반드시 長男이 分家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長男을 分家시키고 차남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도 있었음. 分家是 婚姻을 하고 經濟的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再嫁 : 改嫁라고 함. 권기섭씨는 재가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고 권용섭씨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

○ 事實婚 : 婚禮를 치르면 夫婦가 되는 것이고 法律上 申告는 필요 없었음. 夫婦가 생활하다가 出生申告와 婚姻申告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음. 婚姻의 확인은 族譜에 기재되는 것으로 증명.

○ 婚姻外의 子 :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으며, 祭祀를 지낼 때 밖에서 지내고 財産相續에도 差別이 있었음. 그러나 養子로 가는 경우 嫡子와 同一한 대접을 받았음.

○ 入養 : 대를 잇기 위한 入養만 가능하고 특별한 事由(財産당진, 奉養을 하지 않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破養할 수 있음.

- 扶養義務：義務違反의 경우 배자시킬 수 있음.
 - b) 相續(相續分)
- 長子는 奉祭祀때문에 적어도 반이상 받았고, 딸은 財産이 풍족한 경우에만 조금씩 주었음.

16) 陶山面 분내 (汾川)

提報者：李龍九 (남, 84세)

李裕鳳 (남, 78세)

調査者：이우석

① 事前調査事項

㉞ 略史

- ㉟ 設村年代：고려말(약500여년전)
- ㊱ 入郷始祖：소윤공(少尹公)
- ㊲ 行政區域變遷：일정시대에 예산현에서 安東郡으로 변천됨.
- ㊳ 生産關係：農業위주였으며 논이 조금. 밭이 약간 많은 편이었고, 천수답이었음. 經濟사정은 그리 풍부하지 아니함.

㉟ 人文地理

- ㊴ 現在家口數：대략 60호
- ㊵ 交通：宗孫의 말에 의하면 고래로부터 예안큰길로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奉化로 가는 길을 가끔 이용하였고,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함.
- ㊶ 域内部落：근처에 광산 金氏, 진성 李氏 마을이 있었으며 통교가 잦았다고함. 宗孫이 진성 李氏 마을에서 2~3년간 생활한 적도 있었음.

㊷ 關門：예안(주), 봉안(중)

㊸ 장터：예안시장

㊹ 人物：농암 이현보. 현재 분천동에는 이현보가 세운 愛日堂이라는 정자가 수몰지역을 피해 移轉되어 있음.

㊺ 姓氏：영천 李氏 60호. 진성 李氏는 2집 정도이고, 각기 다른 성이 6~7집정도임. 이들은 하인으로 불렸고, 종과는 다른 신분이었음.

② 慣習調査總目

㉞ 의존도 : 洞規가 있었기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國家法에 의존하고 있음. 단순히 설득하는 이상의 방법은 없고 과거에도 實力行使가 있었던 적은 없었음.

㉟ 變遷史 : 거의 모든 洞規, 村規는 日帝時代를 거치면서 점차 소실되었음.

③ 慣習調査各目

㉠ 組 織 : 契

㉡ 大洞契

a) 設置根據 : 會則이나 계첩은 발견할 수 없음.

b) 法的性格 : 가입하지 않으면 연료채취를 막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이었음. 1원정도(일일품이 10전일 때 1원정도 출연)가 가입금임. 한번 내면 가입됨. 더 이상 출연할 필요 없음.

c) 沿革 : 기원은 알 수 없으며 해방전에 거의 사라졌음. 小洞契가 있어는 3마지기가 딸려 있었으나 역시 해방전에 사라짐. 이후 대체 기구로서 洞會運營. 강제력은 없음.

㉢ 상여契 : 1만원을 한번에 出捐함으로써 가입. 상여契에 가입하지 않으면 稅(이유봉씨의 표현)로 쌀 1말을 내고 상여사용 가능하였음.

㉣ 社會·經濟

㉤ 民 事

a) 物 權

○ 마을財産 : 위토는 원래 大洞契의 所有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宗孫과 일부 인사의 名義(이유봉씨등)로 登記되어 있음. 나무등을 하는 것은 자유로나 회칙에 크게 위반되면 使用할 수 없게 한 적도 있었음. 현재 宗孫名義 산에는 송이가 나서 송이를 타인에게 채취하게 하여 宗孫이 대금을 받아서 宗中을 위한 기금으로 管理.

○ 擔保物權 : 還退契約은 더러 있었음.

○ 名義信託 : 위토가 宗孫과 일부 人士의 名義로 登記되어 있는바, 宗孫은 자신의 土地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門中일각에서는 이를 宗中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 收益金도 宗中에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b) 債 權

○ 委託飼育：송아지는 사육이고 큰소는 賃賃임. 송아지를 사육시키는 경우는 주인이 사육자에게 사육비 정도를 주고, 농사를 위해 큰 소를 빌리는 경우는 무상이었음. 각각 새끼가 난 경우에는 원주인들이 임자였음.

○ 賭地：개간한 경우에는 3년까지는 賃賃料가 없었으나 3년후부터 賃賃料 支給. 제지기들이 있어서 임차하고 있었으며, 賃賃料는 과거에는 5할 정도 였으나 최근에는 3할 정도.

○ 不法給與：不法原因給與이더라도 값아야 함.

㉞ 家 事

a) 親 族

○ 親族範圍：주로 6촌 정도까지임.

○ 離婚：七去之惡을 이유로 離婚하는 경우는 본적이 거의 없음.

○ 分家：婚禮를 치르거나 20살 넘어서는 가능하지만, 독립해서 살수 있는 經濟的 事情이 중요시됨.

○ 宗親會：항렬에 관계 없이 나이 많은 사람(行高年長)이 門長.

b) 相 續

○ 承認·拋棄：부모의 빚은 당연히 자식이 相續함.

○ 相續分：原則적으로 長男單獨相續

④ 參考資料：상당히 많은 書籍을 가지고 있으나 學術的인 가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細密한 調査를 요함. 書籍은 宗孫의 집과 汾江書院에 분산되어 있음.

⑤ 調査員 意見：수몰지구로 동네가 해체되어서 洞法·村規·門規가 살아 있는 것 같지는 않음.

17) 陶山面 溫惠洞

提報者：李弼教 (남, 74세, 2동 900번지)

李東恩 (남, 83세, 토계동 468번지)

調査者：김장현

① 事前調査事項

㉞ 略 史

㉞ 設村年代：세종조 중엽

㉞ 入鄉始祖：퇴계선생의 조부

- ㉔ 行政區域變遷：예안현→온혜동
- ㉕ 生産關係：農業으로 논농사가 잘되며, 담배, 고추, 깨 등을 경작.
- ㉖ 人文地理
 - ㉗ 現在家口數：150호정도
 - ㉘ 域内部落：온혜 1, 2, 3동
 - ㉙ 장터：일제 이전에는 예안장(1, 6)에 다녔으며, 온혜장(5, 10)도 지금 서고 있음. 큰 일이 있는 경우는 安東場(2, 7)을 이용.
 - ㉚ 姓氏：진성 李氏가 많았으나 지금은 기타 성씨들도 많음.

② 慣習調査總目

- ㉛ 認知度：어른들의 의식속에는 약간 남아 있으나, 젊은 층에는 별로 희박함.
- ㉜ 依存度：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한 것은 촌규를 따르고 중한 것은 국법으로 함.
- ㉝ 適用範圍：패륜아, 부도덕한 행실, 남녀의 不倫關係에 적용.

③ 慣習調査各目

- ㉞ 組織：門會運營
- ㉟ 洞規：예안 鄉約 원용. 上·中·下 罰로 規律. 모든 행사 참여나 직책 취임불가. 경한 것일 경우 훈계를 하며 중한 것일 경우 동네에서 축출함. 이것이 가장 엄하였던 이유는 다른 동네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임.

㊱ 社會·經濟

㉿ 民事

a) 物 權

○ 宗中財產：門中の 산·밭·집등은 宗孫名義로 되어 있으며 有司가 管理함. 有司는 門中の 일을 1년간 맡아 봄.

○ 物利用：高차례 적용.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됨.

b) 債 權

- 損害賠償：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면 쌀로 대신함.
- 保證：族證法. 친척들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制度임.
- 解除·解止：원상회복되며 損害賠償은 없음. 즉, 契約만 없었던 것으로 됨.

○ 委託飼育 : 가령 송아지를 24개월 키워주면 송아지 한마리를 줌. 다른 위탁사육은 없음.

○ 賭地 : 口頭契約으로 하며 수확량을 나누어 가짐.

○ 小作 : 作況을 보고 서로 상의해서 양을 정하는 답품이 있었음. 서로 相扶相助하였음.

○ 利殖契 : 동갑계, 친목계. 곡식을 한말씩 내어서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한말 다섯되를 받음. 이를 장리(이자)라 함. 못갚는 경우에는 받지 못함. 장리는 년 5할임.

㉠ 家事

a) 親族

○ 親族範圍 : 친가의 8촌, 외가의 4촌, 처가의 장인, 장모.

○ 妻權利義務 : 여자에게는 財産의 收益·處分등의 권리가 없고, 남자가 전부 所有 管理함.

○ 家事代理 : 남편이 모두 처리하며, 여자에게는 별로 권리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

○ 分家 : 經濟事情을 고려하고 첫아기를 낳을 무렵 分家

○ 再嫁 : 死亡으로 인하여 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節次가 없음. 남자는 婚禮를 갖추어야 함.

○ 事實婚 : 妾으로 보며, 婚禮(대례)를 치루어야 부인취급 받음.

○ 繼母 : 별차별 없고 단, 婚禮를 치루지 않은 경우는 서모로 차별을 받음.

b) 相續

○ 承認·拋棄 : 부모의 빚도 당연히 갚아야 함.

○ 相續分 : 長男위주로 相續되며 門中財産은 宗孫이 相續함.

④ 調查員 意見 : 門中의 威信이라든가 여타의 이유로 나쁜 일은 잘 설명하여 주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는 실정임. 이남화씨(88세, 은혜 3동)가 은혜동약에 관해 알 것 이라고 함. 規範에 의해서 보다는 사람의 도리라든가 自然法的인 것을 위주로 하여 일을 解決해 나가려는 것 같음.

(4) 調查結果分析

1) 儒教規範과 法規範의 混同

거의 대부분의 부락에서는 그리고 대다수의 제보자들의 증언 속에는 무엇이 儒敎規範이고 무엇이 法規範인지에 관한 뚜렷한 구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儒敎의 가르침을 법률행위준칙으로 표방하려는 자세가 역력하였다. 慣習法의 범주에 관한 질문을 하면 四書三經의 관계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대답에 같음하곤 하였다.

2) 民村 慣習法의 多樣性

班村보다는 民村의 관습법이 다양하였다. 친족상속 부분에 있어서 보다 사회경제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였다. 賭地와 小作을 분명히 구분하여 서로 다른 용어례로 표현하는 것도 특기할만한 점이였다. 다만 民村과 班村간의 集團의 位階秩序 내지 社會經濟的 交流方式 등에 관하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는 제보층의 數的 貧困과 證言 自制가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3) 特殊部落들의 遺習 衰殘

事前調査에 의하면 안동지역에는 驛村 등의 특수부락들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결과는 이러한 부락들에서 그들의 생업 및 신분과 관련된 특별한 관습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점은 참여관찰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떤 부락에서는 안동시내에 편입되어 옛모습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어떤 부락은 그 後裔들이 특수성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언급을 회피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4) 親族相續慣習의 典型

儒敎의 본고장답게 가족법에 관한 관습은 매우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다만, 몇가지 점에 있어서는 일반의 통념과 약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딸에 대하여도 정당한 相續分을 고려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며, 七去之惡에 근거한 逐出事例가 거의 드물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 관하여는 세간의 과장된 先入見을 버리고 실제의 법률관계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調査所感

1) 댐 築造와 傳統社會의 再編

안동댐 및 임하댐의 축조로 인하여 많은 水沒地區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이주단지 등의 조성으로 안동의 전통지역사회가 재편되고 있었다. 상

당수의 종택들이 옮겨 앓음으로써 해당 부락의 전통의 단절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관습법의 생성과 변천의 토양 그 자체가 사라지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몰지역에 횡행한다는 遺物 내지 古文書 도둑들의 존재는 본 조사팀마저 이상한 사람들로 비치게 만들었다.

2) 兩班의 風貌

법적인 분쟁은 대체로 좋지 아니한 것이고 선현들의 가르침과도 반하는 것인데 어찌 양반사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이것이 반촌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과거 民村이었던 지역에서조차 이러한 태도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얼른 보기에는 안동지역에는 民村이라는 것도, 常民이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문화계 인사가 제시한 ‘兩班拋棄論’은 안동의 문화적 실상을 깨닫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3) 文化衝擊

域內的 다수 제보자들은 다른 촌락지역에 있어서보다 강한 어조로 급격한 文化의 變動으로 인한 慣習法秩序의 退潮를 우려하였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慣習規範보다는 전통 儒敎規範의 후퇴를 극히 유감스러워하였다. 조사팀이 보기에 적어도 老年層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文化衝擊을 견디지 못하는 듯이 보였다. 지나간 시대 元老들의 權威가 곧 法的 權威로 통하던 遺風을 몹시도 아쉬워하였다.

(6) 蒐集資料目錄

- ① 永嘉의 脈 (安東郡, 1991년)
- ② 安東河回마을 (열화당, 1981년)
- ③ 安東을 알자 (安東文化院, 연대미상)
- ④ 安東圈地域資料便覽(1) (安東圈發展研究所, 1991년)
- ⑤ 臨河담水沒地域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安東郡·安東大박물관, 1986년)
- ⑥ 書院總覽 (安東郡, 1978년)
- ⑦ 素山門中 組織의 性格과 그 變化 (安東金氏 素山宗會, 1991년)
- ⑧ 安東文化의 再認識 (安東文化研究會, 1986년)
- ⑨ 三綱錄 (安東文化院, 1991년)
- ⑩ 永嘉孝行錄 (安東文化院, 1988년)

- ⑪ 安東文化 第10輯, 第11輯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1989년 · 1990년)
- ⑫ 安東文化研究 第1號~第5號 (安東文化研究會, 1986년~1991년)
- ⑬ 郷土文化의 사랑방 ‘安東’, 1991. 3·4號, 5·6號, 9·10號(文化모임사랑방)

5. 奉化郡 奉化權門

(1) 調査計劃 및 經過

- ① 安東地域 출장 중 安東大學 法學科 權英俊 教授의 천거로 本院 소속 전재경과 정공식이 奉化權門(奉化郡 奉化邑 석평리 선돌(立石里) 320번지)을 訪問, 宗孫 權憲祖씨와 面談
- ② 奉化郡廳 公報室 琴錫綠 係長은 本院 調査팀이 奉化郡에서의 調査可能性에 관하여 질문하자 역시 權門 訪問을 勸告하였음.
- ③ 調査項目과 方法은 安東地域에서의 그것을 準用하였음.
- ④ 노환중이던 윗대 어른의 징후가 宗孫과의 面談 중 급격히 악화되어 다음에 다시 訪問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작별을 고했음.
- ⑤ 奉化文化院을 訪問하였으나 調査에 參考가 될 만한 계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2) 調査內容

1) 洞規 또는 門規

- ① 安東郷校 追從 (退溪 聖學十圖 所收 백록洞規, 參照)
- ② 非行에 대하여는 이를 먼저 보는 사람이 訓戒
- ③ 書堂에 윗어른을 上座로 모시고 門中集會 開催
- ④ 善行에 대한 賞 또는 惡行에 대한 罰
- ⑤ 處罰內容 : 族譜記錄削除, 祭祀參席排除, 동네 축출
- ⑥ 民은 못쓰는 ‘刑權’을 때때로 使用
- ⑦ 조선조 말까지는 상투를 풀어 ‘마죽대’에 매달아 불기도 했음.

2) 小作制 : 半作制

- ① 管理體系(千石꾼의 경우) : 地主 - 都마름 1명 - 마름 두세명. 下人 30~40명에 作人 100여호 거느림.
- ② 小作 이외의 關係 : 특별한 사유 없이 小作人이 지주댁의 일을 봐주

지 아니하면 小作을 떼였기 때문에 小作人들은 지주댁의 길흉사를 모두 돌봐줬음. 勞動力 提供에 대해서는 돈과 곡식을 반대급부로 지급하였음.

③ 小作料(해방직후) : 3.1制(작인 2말. 지주 1말)分配 (종래에는 定率方式으로 運營하던 사례가 많았음).

④ 小作期間 : 일반적으로 계속적 小作關係를 形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小作關係를 종료시키지 아니하였음(일종의 小作權 형성). 이웃마을 ‘덕골’에서는 지주와 작인이 代를 이어가며 5代까지 부쳤던 사례도 있었음.

⑤ 註 : 提報者는 賭地制에 있어서의 賭粗와 小作制에 있어서의 小作料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음.

3) 家事

- ① 예전의 奴婢들도 ‘작수성례’는 치루었음.
- ② 内外法 : 夫婦간에도 피차 손님처럼 상대하였음.
- ③ 婚禮 : ‘問名’하여야 婚姻 成事.
- ④ 妻의 地位 : 수절해도 안 받아주는 수 있었음.

(3) 參考事項

① 洞祭 : 奉化郡에서는 새마을사업 추진 당시 서낭당 등을 대부분 철거하여 洞祭를 지내는 마을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함.

② 山村 : 奉化郡은 상당히 輿地이기 때문에 山村들이 존재함(현동 부근의 소천面 일대). 그러나 대부분이 獨家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慣習이 전승될 소지가 희박함.

③ 資料 : 奉化郡에 관한 慣習 關係 資料로서는 奉化郡誌 이외에, 契資料輯(內務部, 1988년) 및 安東文化圈調查報告書(成均館大) 등, 參照.

III. 忠清北道

1. 槐山郡 延豐面 葛琴里

提報者 : 朴商玩 (남, 71세, 갈금리 55번지)

調査者 : 박상덕 (청주대 법학과 4학년)

(1) 慣習調査各目

1) 組織：大同契

① 運營：마을의 居住者는 모두 參席하며, 代表者(里長)選出은 戶主가 하게 됨.

② 主要活動內容：마을별 金庫設立(새마을운동 이후), 마을共同作業(상수도 공사 등) 推進

③ 會費·分擔金의 負擔如何：일부 마을에서는 里長의 몫으로 곡식(쌀 1말정도)을 거출하고, 마을 전답이 있는 마을은 里長이 이를 일부 경작하여 수확물을 收取함

2) 社會·經濟

① 民事

㉞ 保證(知事人)：擔保制度가 發達하기 이전에 돈을 借用할 때에는 知事人이라 하여 保證人을 세웠는데 借用者가 갚지 못할 경우는 保證人이 갚아야 함.

㉟ 委託飼育：송아지를 원소유자에게 받아 그 소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키우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소는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송아지는 소유하게 됨. 소를 키우는 동안 소를 이용하여 경작할 수 있음. 드문 경우이나 위탁된 소가 죽게 되더라도 수탁자의 財産이 없기 때문에 변상이 되지 않았음.

② 家事

㉞ 親族

㉟ 親族範圍：8촌까지는 상복을 입었으며, 10촌 이상은 족형·족제·족손 등으로 불리움.

㊱ 婚姻無效：첫날밤을 보내기 전이면 가능. 當事者의 死亡의 경우에는取消

㊲ 相續(相續分)：대부분 長男이 全財産을 相續하게 되며 被相續者 死亡 以前에 分家하는 경우에 分家者에게 약간의 田畓이 주어짐.

(2) 延豐縣 縣內面 義人村 (現, 연풍면 주진리 마을) 里契座目

① 매해 정초에 날을 가리어 정성으로 행사한다.

② 이자돈을 제수용으로 쓴다.

③ 계원들은 남전여씨 향약을 지킬 것.

④ 무고히 불참시는 5전을 당일 낼 것.

- ⑤ 入契時는 형편에 따라 성의껏 낼 것.
- ⑥ 탈퇴시는 본전의 반만 지급한다.
- ⑦ 매년 겻날에 6호씩 유사를 맡고 윤번식으로 술과 떡을 마련한다.
- ⑧ 겻날은 12월 10일

임신년 1872년

註：위의 의인촌 리계자목은 마을 수호신에 감사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결성되었는데, 결성당시 마을 수령과 상의하고 수령으로 부터 제수 비용의 일부를 도움받고, 마을이 가난하여 약간씩 추렴한 것으로 이자를 가지고 運營되던 것으로 延豊面誌에서 발췌.

(3) 調査員 意見

충북 괴산군 연풍면은 멀리 소백산맥의 줄기 중 鳥嶺山, 白華山이 起峰이 되어 산·계곡을 따라 약간의 耕地가 있을뿐 山高谷深하고 협소한 산간지대로 三韓시대부터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오며 고구려 장수왕 때 상모현이라 칭한 이래 延豊縣, 延豊郡 등 그 명칭과 행정구역이 여러 번 변경되다가 현재 7個理 20여 마을에 1300여명이 살고 있음.

三韓시대부터 이루어진 고을이라 하나 산간 작은 고을이라 儒林人이나, 역적으로 몰린자들이 도피후 정착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풍속이 유림을 중심으로 지켜졌던 것으로 보이나 조선시대 말기의 변혁속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임. 현재는 과거의 血緣主義的·團體主義的 思考와 風俗이 사라지고 個人主義的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 보임.

(4) 參考資料：沙里面 溫井洞 洞規 節目

沙里面 溫井洞 洞規 節目

節目序

嗚呼라 惟我洞內一粵在 수십여년전엔 기강이 明正하야 父父子子老老少少 兄兄弟弟男女一各守其分하고 又守其義하야 上下相敬之道一粲然極備러

나 挽近以來一인심이 日情하고 풍속이 日頹하야 無父無子無老無少長幼男女之分이 月異而歲改하니 此豈非寒心哉아 以古視今에 實無立規之道로다 且本洞은 處在嶺湖之間하고 又在兩烽之下하야 各項應役に 與他有殊而亦以 濫井으로 朝聚暮散之類一亂法敗常을 爲一能事하니 如此之弊를 不得已一番揆正然後에야 人倫이 可明矣며 기강이 亦可以定矣로라 故로 各樣條件하야 編又左하야 以垂後世하노라 望須來裔난 依此遵行하야 實有歸古俗之效면 幸甚이로다.

節 目

1. 不孝不悌者는 以洞中 不可 擅斷이요 依律處置하고 次告官事하라.
1. 不睦親不敬長은 自洞中으로 先治其罪而如有 頑拒則告官嚴處事하라.
1. 以下凌上하고 以少凌長者는 答三十度而若有不遵令者어든 告官嚴治事하라.
1. 爲其男子者一不敬他人之妻而不知男女之別者는 答三十度而若有不改者어든 告官嚴治事하라.
1. 爲其女子者一不敬他人之夫而不知男女之別者는 以家不劑之罪로 徵其夫하야 以答三十度而若不遵令者어든 告官嚴事하라.
1. 酗酒作亂者一不分上下老少하고 街上垢辱者는 自洞中으로 答三十度後에 且依法典으로 嚴治하고 次告官事하라.
1. 隣里無故이 不和則自洞中으로 答二十度而若不遵者어든 告官處決事하라.
1. 四山局內에 亂斫松木하고 無意操心放火者는 自洞中으로 答三十度하야 以爲徵勵事하라.
1. 未盡條件은 追後磨鍊事하리라.

官

公員 李

(번역본)

節 目 序

아! 슬프다 오직 우리 洞內는 지난 수십년 전에는 기강이 밝고 바로 잡

혀 父는 父로써 子는 子로써 老는 老로써 少는 少로써 兄은 兄으로써 弟는 弟로써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각각 其分數를 지키고 또 각각 其義를 지켜서, 상하가 서로 공경하는 道가 淸연히 極備하였더니 挽近以來 인심이 날로 게을러지고 풍속이 날로 頹廢되어 父와 子와 老와 少와 長과 幼와 男과 女의 分別없음이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거듭나니 이어찌 寒心치 아니하라.

옛시대와 至今時代를 보면 실로 立規된 道理가 없을 것 같다. 또 本洞은 嶺南과 湖西之間에 처해있고 또 兩峰之下에 各項의 役に 應함이 他곳과 더불어 다름이 있고 또한 溫泉으로 해서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흩어지는 類가 법을 亂하게 하고 常을 敗하게 함을 한결같이 能事로 하니 이와 같은 弊端을 한 番 시정한 然後에야 人倫이 可히 써 밝혀질 것이고 기강 또한 可히 定해질 것이다.

그런 故로 各 본보기의 조건을 左에 列어서 後世에 dri노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後生들은 이에 依하여 遵行하여 實地로 옛풍속으로 돌아가는 효력이 있다면 甚히 多행한 일일 것이로다.

節 目

1. 不孝하고 不悌(어른을 不敬하는 者)하는 者는 洞中에서 擅斷할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다음에 官에 告할 事.
1. 친족에 不睦하고 어른에게 不敬하는 자는 洞里에서 먼저 其罪를 다스리고 萬一頑惡하여 듣지 않는 자는 官에 告하여 嚴히 처리할 事.
1.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히 여기고 젊은이가 어른을 없이 여기는 자는 매 삼십도를 치고 만약 영을 좇지 않는 자는 官에 告하여 엄히 다스릴 것.
1. 남자가 남의 처를 罔신여기며 남녀의 分別을 모르는 자는 매 삼십도를 치고 만약 고치지 않는 자는 官에 告하여 엄히 다스릴 것.
1. 여자가 남의 남편을 罔신여기며 남녀의 分別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罪로 그 남편을 징계하여 매 삼십도를 치고 만약 영을 좇지 않는 자는 官에 告하여 엄히 다스릴 것.
1. 술취하여 作亂하는 자로서 上下와 老少를 分간치 않고 모아서 거리

路上에서 욱하는 者는 洞中에서 笞杖三十度を 치고 또 依法嚴斷한 다음 관에 고할 事.

1. 이웃끼리 까닭없이 不和한 즉 洞中에서 笞杖三十度を 치고 만일 듣지 않는 자는 관에 고하여 處決할 것.
1. 四方山局內에서 마음대로 松木을 베어 長斫을 만들고 조심 없이 放火하는 者는 洞中에서 笞杖三十度を 치고 徵戒할 事.
1. 未盡한 條件은 追後에 磨鍊할 것.

公員 李

溫井洞禁松節目

嘉慶二十四年 己卯 九月 日(檀紀 四一五二年) *1819년

右節目事段禁松一節은 乃是朝家三禁中 一大條件이니 則是 一 豈以其便利於 國家哉아 盖其爲民設法之意也則其在仰體之道니 宜所無慢無忽하라 而近來之人則不效 眷眷 聖念하고 亦不有將來之慮故로 無常斫伐하여 使彼群峰으로 亦然童立하니 豈不寒心哉리오 其所養禁之意는 孰不皆然이나 而此非一二人自斷之事故로 一洞은 同心結約하여 爲禁松事하라.

1. 本洞結約中若有犯斫則徵贖用罰事하라.
1. 若或他洞樵軍이 猖禁犯斫則自官招來하여 嚴治事하라.

(번역본)

右節目事段禁松一節은 (註: 禁松 소나무 베는 것을 금하는 것) 이에 이 朝廷에서 세가지 금하는 법중 一大條件인 則 이 어째서 국가에만 편리한 것이라. 다 그 백성을 위하여 법을 설정한 것이다. 그 좋은 法度이니 마땅히 만홀함이 없이 할 것이니라. 근래 사람들은 眷眷하신 聖念(註: 임금님의 생각)을 본받지 아니하고 또한 장래의 걱정을 아니하는 故로 분별 없이 나무를 베어서 저 많은 산을 벌거숭이로 서게하니 다만 모든 쓰임에 供給을 못하게 할 뿐아니라 그 나라의 금하는 법에 범하게 되니 어찌 寒心치 아니하리오.

그 나무를 기르기 위하여 베는 것을 금하는 뜻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아니하겠는가 마는 이는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一洞은 한마을음으로 約定을 맺어서 禁松事를 할지어다.

1. 本洞結約中 만약 범법자가 有한 則 벌금을 물려서 처벌할 事.

1. 만일 他洞 나뭇꾼이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犯法을 하면 관에서 호출하여 엄히 다스릴 事.

(註: 이 洞은 예전 연풍현의 관할. 1963년 수안보지역으로 편입)

2. 陰城郡 甘谷面 梧弓里

提報者: 申榮秀 (남, 65세)

申鉉豐 (남, 66세)

調査者: 강대식 (청주대 법학과 조교)

(1) 慣習調査各目

1) 組 織

① 宗中: 평산 申氏 문희공파 宗親會(宗契)

㉞ 主要活動內容: 先祖에 대한 祭祀 및 財産管理, 宗親間의 相扶相助, 獎學事業

㉟ 財源: 宗土 및 宗山 (밭 수천평, 논 70마지기, 산 3만평)

② 기타 團體: 青年會

㉞ 沿革: 35년전(1956년)

㉟ 主要活動內容: 마을의 哀慶事時 동네일을 맡아 처리하고, 경로잔치를 주도함.

㊱ 財源: 초창기는 共同으로 농사를 지어 재원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웃놀이 등으로 충당함.

2) 洞規·門規

○ 刑罰: 과거에는 불효자에게는 동네 어른들이 벌을 주거나 쫓아내기도 함. 불효자나 나쁜 행동을 하는 노복들에게 宗罰(종중에서 내리는 벌)을 내렸음. 지금도 運營하고 있는데 현대에는 회의에 붙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임.

3) 涉 外

① 中媒·通婚: 사주를 건네고 날을 받은 후 신부집에서 婚姻하는데 결혼후 신부집에서 몇달 내지 1년정도 묵어서 가는 수도 있음. 결혼식은 전

통혼례로 전안(기러기를 안고 가는 것)하고 서로 절을 하는데 강유주도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러움)라 하여 남자가 먼저 절을 하고 여자가 나중에 함. 절을 하기 전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데, 이는 儒敎的 儀式에서 나온 것이며, 나라에서는 일평생 단 한번 결혼식 때 남자들이 官服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결혼식에서 관복과 관신을 신을 수 있었음.

② 入村儀禮

㉞ 方式 : 쌀 3되로 입촌.

㉟ 內容 : 동네에 들어올 경우에는 쌀 3되를 내야함.

㊱ 效果 : 동네에서 사용하는 상여, 가마를 사용할 수 있음.

4) 社會·經濟

① 民事

㉞ 解除·解止 : 契約書에 의하여 그 根據에 따름.

㉟ 賃貸借 : 예전의 小作이라는 用語 대신에 요즘은 賃貸借라는 用語를 使用함. 논외의 경우 도지 한가마나 半가우리(나온 農産物의 양을 반반으로 나눔). 묘지기의 경우 宗土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묘를 管理하게 함. 宗親에게 土地를 주어 農事를 짓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이는 救恤對策으로 實施하는 것이며, 1마지기당 賃貸料는 벼 서너말).

㊱ 都給 : '도지소'는 큰 소를 부리는 경우에 쌀 두가마니를 주고 소를 使用함. '위탁소'는 송아지를 길러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는 기른 사람이 갖고 어미소는 주인에게 돌려줌.

② 家事

㉞ 親族範圍 : 과거는 同姓同本이면 100대 까지도 모두 親族으로 인정하여 계촌까지를 친척으로 보았음. 현재는 남자의 경우 유복지친이라 하여 8촌까지이고 여자의 경우는 8촌까지는 가지 않고 친정부모, 동기, 시삼촌까지 인정함. 같은 파벌 20촌까지 친족이라는 견해도 있음.

㉟ 約婚 : 婚姻말로써 四柱를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四柱만 보내면 그 곳에 가서 살았고 죽거나 하여도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하며, 남자 역시 四柱를 건네고 여자가 죽으면 婚姻한 것으로 인정함.

㊱ 婚姻無效 : 婚姻의 無效事由는 七去之惡이라 하여 淫佚(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 妬忌, 竊盜, 多言(말이 많은 여자), 有惡疾(나병환자

인 경우), 不孝, 無子인 경우에는 여자를 쫓아 보낼 수 있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중한 七去之惡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쫓아 보낼수 없었음. 父母의 3年喪을 같이 한 婦人, 어려운 집에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부인, 시집은 후에 친정집 동기들이 없어 쫓아보내도 갈 곳이 없는 부인.

㉑ 家事代理 : 財産權 行使는 전적으로 남자가 行使하며, 부녀자가 行]使할 수 없었음.

㉒ 離婚 : 離婚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직까지 없었음. 단, 夫가 죽은 후에는 여자가 再嫁할 수 있었음.

㉓ 繼母 : 繼母는 어머니로서 인정. 처녀의 結婚은 繼母라 하고 族譜에서도 인정함. 시집간 여자가 다시 婚姻하면 庶母로서 인정안됨.

③ 勞 動

㉔ 품 : 품앗이, 울력(벼 등을 대상으로 서로 등짐을 저주거나 초가집 이음을 서로 엮어줌)

㉕ 머슴 : 60년전에는 1년에 쌀 6가마임.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다가 머슴에게 들어가는 유지비가 늘어나 현재 머슴을 부리는 집은 없음.

5) 習俗規範

① 우환도리 (잠을 반듯하게 자지 않고 거꾸로 자는 경우)

② 밤 휘파람 (도둑이 들어 온다고 믿음)

③ 문지방 앓기 (복이 나간다고 생각)

(2) 補完·追加調査事項

충북 청원군 미원면 일대, 남양 홍씨 집성촌

(3) 參考資料 : 平山申氏文僖公派宗中規約

宗規改正草案 (平山申氏文僖公派宗中)

平山申氏文僖公派宗中規約

平山申氏大宗中規約에 準하여 文僖公派宗中規約을 制定宣布한다.

第一章 總 則

第一條(名稱) 本宗中은 平山申氏文僖公派宗中이라 稱한다.

第二條(構成) 本宗中은 文僖公派子孫中 成年男子로서 構成한다.

第三條(目的) 本宗中宗員은 一致團結하여 先祖를 崇奉하고 宗族間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四條(事務所) 本宗中事務所는 文僖公派壇墓所 所在地에 둔다. 但 各支 派宗中에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二章 事業

第五條 第三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下記事業을 履行한다.

- ① 先祖의 享祀와 壇墓所守護에 關한 事項
- ② 德義·勤勉과 患難相救와 過失相責에 關한 事項
- ③ 宗中財産管理에 關한 事項
- ④ 後孫教育에 關한 獎學
- ⑤ 其他宗會에서 議決된 事項

第三章 任 員

第六條 本宗中에 下記任員을 둔다.

- ① 都有司 1人
- ② 副都有司 6人
- ③ 常任有司 20人
- ④ 監事 3人
- ⑤ 顧問 若干人

第七條 本宗中任員은 下記와 如히 選出한다.

- ① 都有司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 ② 副都有司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各支派別로 按配한다.
- ③ 常任有司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各支派및 地域別로 按配한다.
- ④ 總務는 常任有司中 都有司가 指命한다.
- ⑤ 顧問은 知德을 兼備한 宗員中 都有司가 推戴한다.

第八條 本宗中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缺員이 있을 때에는 總會에서 補選하되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九條 本宗中任員의 任務는 下記와 如하다.

- ① 都有司는 宗中을 代表하며 忠實히 宗事를 處理하고 總務有司로 하

여금 宗中財産을 管理케 한다.

② 副都有司는 都有司를 補佐하며 都有司가 有故時에는 常任副有司가 그 職務를 代行하고 常任副都有司가 有故時에는 副都有司中 年齡의 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總務有司는 都有司의 指示에 따라 宗中財産을 管理하고 會計를 擔當한다.

④ 常任有司는 都有司의 指示에 따라 宗中事務를 分擔處理한다.

⑤ 監事는 年 1回以上 宗事處理狀況과 財産管理狀況의 適否를 審査하여 次期總會에 報告한다. 但, 常任有司會에서 發言權은 있으나 表決權은 없다.

⑥ 顧問은 都有司의 諮問에 應하고 常任有司會議에 參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十條 本宗中の 宗規遂行에 圓活을 期하고 宗員間에 유대를 敦篤히 하기 爲하여 70人 以內의 鄉有司를 둔다.

① 鄉有司는 各支派 또는 地域別로 按配한다.

② 鄉有司選出規定은 常任有司會에서 定한다.

第十一條 本宗중에 大宗中總會의 構成員이 될 若干名의 代表有司를 둔다.

第四章 會議

第十二條 本宗中會議는 總會와 常任有司會의 二種으로 區分한다.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② 定期總會는 文僖公壇墓所享祀日로 定한다.

③ 臨時總會는 宗事に 緊急을 要할때 都有司가 召集하거나 宗員支派別로 5人以上式 30人以上의 要求와 常任有司 3分の 1以上과 監事全員の 要求가 있을 때에 都有司가 召集한다.

④ 總會는 50人以上의 出席으로서 開會하고 出席人員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서 議決한다.

⑤ 常任有司會는 都有司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召集하거나 常任有司 3分の 1以上과 監事全員の 要求가 있을 때 都有司가 소집한다.

⑥ 常任有司會는 過半數 以上の 贊成으로서 議決한다.

⑦ 文僖公壇墓所享祀日의 定期會는 30人以上の 出席으로서 開會한다.

⑧ 都有司는 各級會議에 議長이 되고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⑨ 各級會議의 召集通知는 各任員 또는 宗員에게 個別通知함을 原則으로 하되 不得已한 경우 各支派宗中代表가 該當門中에 周知시켜 多數參席케 한다.

第十三條 總會 및 常任有司會는 都有司 各儀로 召集하되 總會는 7日前 任員會는 5日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但, 定期總會時에는 個別通知를 省略한다.

第十四條 會議場所는 總會는 文僖公壇墓所 所在地로 定하고 常任有司會는 事情에 따라 變更할 수 있다.

第十五條 本宗中總會는 下記事項을 議決한다.

- ① 宗規改正
- ② 財産取得·處分
- ③ 任員 및 代表有司選出
- ④ 豫算 및 決算
- ⑤ 其他重要事項

第十六條 本宗中常任有司會는 下記事項을 議決한다.

- ① 總會에 上程할 議案의 審議
- ② 一件當 50만원 以上の 經費支拂에 關한 事項
- ③ 豫算 및 決算
- ④ 其他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第五章 財 産

第十七條 本宗中財産은 都有司 責任下에 總務有司가 管理한다.

第十八條 總務有司는 宗中財産目錄을 作成 備置하고 恒時 宗員의 閱覽에 供하게 한다.

第十九條 先祖의 享祀와 壇墓所守護人은 常任有司會의 決議에 依하여 都有司가 指示監督한다.

第二十條 宗員個人 또는 共同名義로 信託한 宗中財産은 受託者가 自意로 處分하지 못한다.

第二十一條 本宗中の會計年度는 文僖公壇墓所享祀 前月 末日로 定한다.

第六章 賞 罰

第二十二條 都有司는 宗員의 功過에 따라 總會의 議決을 거쳐 賞罰한다. 단, 賞罰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審議決定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宗員은 表彰한다.

- ① 宗員으로서 爲先事業에 功績이 顯著한 者
- ② 宗員으로서 宗中育成發展에 特殊한 功績이 있는 者
- ③ 文僖公의 子孫男女와 婦人으로서 孝烈 및 其他善行으로 因하여 先祖의 名譽를 새롭게 한 者

第二十四條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宗員은 懲罰한다.

- ① 宗員으로서 宗事를 妨害하거나 宗中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壇墓所參拜를 不許한다.
- ② 宗員으로서 先祖의 名譽를 훼손시킨 行爲를 한 者와 先世系譜 및 先祖의 文集을 變改한 자는 壇墓所參拜와 會議參席을 不許한다.
- ③ 宗員으로서 會議途中 狂言妄說과 暴言暴行을 한 者는 議長職權으로 退場시킨다.

第二十五條 第二十四條 1·2號의 行爲를 犯한 者는 總會의 決議없이 回復시킬 수 없다.

第七章 附 則

第二十條 本宗中任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必要에 따라 實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本宗中規約을 改正하고자 할 때와 財産을 取得處分하고자 할 때는 總會에서 在籍人員 3分の 2以上の 出席과 出席人員 3分の 2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二十八條 本宗中에 任員과 宗中發展에 功이 있는 宗員에게는 慶弔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本宗中規約은 西紀 1985年 11月 16日 制定宣布한다.

第三十條 本宗中規約은 宣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4) 調査員 意見

낮은 산과 평야를 접한 곳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복숭아, 고추 등임. 이곳에는 平山 申氏 文僖公派의 子孫들이 100여호에 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객지로 많이 떠나고 본동에는 30여호 인근동을 합쳐 약 60戶만이 살고 있음.

300여년의 세월동안 대대로 申氏 집안이 번성하며 살아온 곳이라서 資料 또한 비교적 많을 것이라고 豫想했으나 그곳 역시 文明의 發達과 現代로 오는 過程에서 많은 것들이 現代化되었고, 紛失 내지는 소실됨으로 인해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음. 洞規나 宗規 역시 옛것은 발견되지 않았고, 옛날것을 改正한 宗規만을 얻을 수 있었음. 文獻들은 比較的 많다고 하나 정확한 所持者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文獻들의 形態나 內容에 대한 調査要望.

IV. 忠淸南道

1. 禮山郡 古德面 上宮里 陽村

提報者：張鳳鎮 (남, 72세)

金壬得 (여, 80세, 366번지)

調査者：張能遠

(대한투자신탁(株) 법규과 대리)

(1) 事前調査事項

1) 人文地理

- ① 現在家口數：90여호
- ② 全盛期家口數：110호정도
- ③ 交通：인근 面所在地 5Km~10Km 거리에 있으며 불편한 편임. 일일 8회정도의 버스 운행.
- ④ 灌漑：水利施設을 약 30년전 설치하여 水利施設이 잘 발달된 편임. 이전에는 곳곳에 沢를 설치하여 이용하였음.
- ⑤ 域内部落：구만리, 상장리, 오추리, 신리, 대전리
- ⑥ 關門：합덕
- ⑦ 장터：합덕장(10Km), 고덕장(5Km)

⑧ 人物 : 윤봉길 ; 매년 기념행사(탄생일)에 지역주민 일부 참관함. 장 문환 ; 일제시대 부락 이장을 보면서 3.1운동과 연루되어 여러해 옥살이를 하였다 함. 인한수 ; 3.1운동당시 동네 반장이었으며 일본군 기마병에게 맨손으로 덤비다가 일본군 칼에 맞아 살해되었음. 현재 고덕면 소재지에 기념비가 있음.

⑨ 姓氏 : 李氏와 張氏가 주로 많았으나 兩姓氏의 많은 사람이 나가고현 재는 특별한 다수 성씨가 없음.

2) 宗 教

○ 天主教 : 동네에는 天主教 聖堂이 있음. 삼교천을 타고 天主教가 일찌기 전파되었으며 인근지역출신의 신부 또는 수녀가 많음.

3) 餘暇文化

○ 傳承놀이 : 쥐불놀이, 줄다리기, 씨름

(2) 慣習調査各目

1) 組 織

① 村 契

㉞ 大同會

㉞ 洞中 전체의 전래조직 (연1회 정기총회 · 임시총회)

㉞ 현재는 결속력이 많이 이완되었고 다음의 連班會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음.

㉞ 連班會

㉞ 目的 : 초상시에 물심양면으로 서로 도와 친목도모

㉞ 沿革 : 1972년부터 規則만들어 實施. 그 以前에는 동네 머슴이나 못사는 사람이 자원하여 초상을 치루었으므로 연반회와 같은 組織의 構成이 필요 없었음.

* 任員의 選出資格 : 대동회에서 選出함. 동네 일을 볼만한 사람중에서 순번제 형식으로 運營되어 왔음.

㉞ 組織員의 加入 및 脫退의 要件 · 效果 : 加入은 部落에서 居住하는 자로서 加入意思를 밝힌 자와 타지역에서 전입시 백미 1斗를 낸 자임. 탈퇴는 3회이상 規章을 違反한 자로서 任員決議에서 總會承認을 얻어야 함.

㉞ 意思執行節次 : 任員의 指示에 의해 執行

② 기타 團體 : 부인회(부락단위), 동갑계(면단위), 爲親契

2) 司 法

① 紛爭解決

㉞ 擔當機構 또는 處理主體 : 대동회

㉟ 節次 : 여론 선도자들이 여론 주도. 大同會에서 罰則 決定

㊱ 效果 : 農業을 위주로 하는 共同社會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부터 외면당하고는 생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식선에서 동민 스스로 자제함.

② 民事制裁 : 갯돈을 내지 못할 경우는 술단지를 빼가거나 절구통등 사용 가능한 가재를 가져감. 일종의 압류임. 본인은 야반도주.

③ 刑罰 : 용구쇠를 걸어 제치고, 동네 불기를 치고, 동네서 거주 못하게 함.

④ 行政制裁 : 특별한 제한은 없었으나 동네 대동회등에 스스로 참석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공동생활상의 제재는 왕래도 안하고 말도 안하여 스스로 동네를 떠나게 만듦.

3) 涉 外

① 中媒·通婚 : 중신애비가 신랑집과 신부집을 오가며, 의사 타진후 선을봄. 신랑과 신랑의 부 또는 모가 신부집 방문. 신부가 마음에 안들면 식사도 안하고 돌아감. 신부측에서는 무우씨장사등을 가장하여 신랑집 주변을 은밀히 내사. 가풍, 됃됨이, “쌈질”등 調査. 양가 합의시 결혼.

② 入·出村儀禮 (“신랑 달아먹기”) : 동네 처녀가 시집간 후 (통상 3일~1주일) 자양을 오면 동네사람이 모여 신랑을 시험하는 의식.

③ 外部人統制

㉞ 금줄 : 애기를 낳았을때 대문에 새끼줄을 외여(왼쪽)으로 꼬아 그 중간에 고추(남) 또는 숯(여)과 술가지를 끼워둠.

㉟ 사토(沙土) : 명절에는 이웃에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집안에 아픈사람이 있거나 할 경우 이용. 대문 양편에 황토를 세삼씩 떠다 놓아 잘 보이게 하였음.

4) 社會·經濟

① 民 事

㉞ 總 則

㉟ 信義誠實 : 일반적으로 道德(동네여론)의 適用을 받았음.

㉠ 事情變更 및 錯誤 : 事情의 邊境이나 錯誤部分이 重大한 경우에는 取消가 가끔 있었으나 土地 등 賣買의 경우 ‘한번 팔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다’하는 생각이 支配的이었고 따라서 取消는 不可能하였음.

㉡ 物 權

㉢ 마을財産(沓) : 數人의 名義로 登記가 되어 있으나 동네 사람들은 共同所有로 생각하였음. 그러나 水利施設의 擴充으로 沓가 農耕地로 變하게 되었는데 現行法에 의해 登記人 所有로 되었음.

㉣ 宗中財産 : 宗中山도 沓와 같은 양상을 띠.

㉤ 물利用 : 연 1회정도 전 洞民이 참석하여 沓보수공사 실시 “보메기”. 보장관(보의 관리책임자)이 使用優先權 決定. 沓에서 가까운 從에서부터 用水權 優先.

㉥ 相隣關係 : 옆집 담옆 도랑을 낸다던가 변소를 짓는 일은 紛爭의 대상이었음.

㉦ 債 權

㉧ 不完全履行 : 債務者 집에 가서 밥도 굶은 채 며칠씩 기거하여 빚을 갚게 함.

㉨ 損害賠償 : 품앗이를 하여 일을 오기로 하였으나 그 사람 의 사정 으로 일을 오지 않아 損害가 發生하였다 하여도 損害를 賠償시킬 수는 없었음. 한편에서 損害가 없다고 주장하면 이를 특별히 立證한다 하여도 소용이 없음.

㉩ 保證 : 利殖契의 경우에 保證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음(人保證). 계를 먼저 受領하는 자는 人保證을 세웠고 契米를 치르지 못한 경우 保證을 선 자가 負擔하였음.

㉪ 債權讓渡 및 債務引受 : 契運營時 債權讓渡와 債務引受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契約의 方式과 解除·解止 : 契約은 주로 土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土地賣買時 땅문서만 買受人에게 건네주고 登記 등 移轉節次는 없었음. 契約解除에 따른 違約金 등은 없었음.

㉬ 賃貸借 : 小作의 경우와 同一概念으로 이해되고 있음.

㉭ 都給(委託飼育) : 송아지를 대여해 주고, 대여 받은 자는 소를 키워 농사에 이용하고 그 소가 다시 송아지를 낳으면 원래 소(큰 소)는

대여해 준 자에게 반환함. 주로 지주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대여함.

㉠ 小作 : 地主가 논을 빌려주고 農事에 필요한 모든 條件, 人夫, 經費 등은 耕作者가 提供한 후 가을에 추수하여 地主와 耕作者가 반씩 분배. 추수시에는 地主가 과전하는 “타작관”이 現場調査하여 耕作者의 誠實度나 打作現況을 點檢하였음. 타작관은 통상 서울등 外地에서 왔으며 “마름집”에 머물렀음.

㉡ 利殖契 : 쌀계 (몇집이 모여 매년 가을에 일정량의 쌀을 제공하고 정해진 순번에 의하여 계쌀을 수령)

㉢ 不法原因給與 : 노름을 하여 돈을 잃고 그 댓가로 땅문서를 잡혔다 해도 이를 도로 찾아올 수는 없었음.

② 家事

㉠ 親族

㉠ 親族範圍 : 母系는 親族의 範圍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父系는 10촌 이내를 親族이라 하였고, 10촌 초과시에는 “대부”, “대모”란 표현을 사용하였음.

㉡ 婚姻無效 : 原則的으로는 불가. 여자가 정신질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근친”(신부가 결혼후 1년후에 친정을 방문하는 것)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는 방식을 취함. 여자측에서도 異意를 提起하는 일이 없음.

㉢ 分家(제금) : 次男은 얼마동안(3~5년) 같이 살다가 분가. ‘제금’ 내줄시에는 집과 약간의 농토를 같이줌. 父의 死亡時에는 큰아들에게 모두 相續하고 큰아들이 동생을 ‘제금’내줬음.

㉣ 再嫁 : 살기가 어려워 남편이 죽으면 대부분 再嫁 하였음. 자식은 데리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중매에 의한 再嫁가 일반적이었으나 돈냥이나 있는 사람이 ‘보쌈’해가는 일도 자주 있었음.

㉤ 胎兒 : 큰아들에게만 相續했기 때문에 胎兒는 문제시 되지 않았음. 태어나도 죽는일이 많아서 胎兒問題는 거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婚姻外의 子 : 父가 死亡했을 때에도 마루가 아닌 뜰 아래서 곱할 정도로 도외시 되었음. 相續對象 등에서도 論外였음.

㉦ 繼母 : 전실자식한테 별대우를 받지 못했음. 戶籍에도 올리지 않고사는 경우도 많았음.

㉟ 入養 : 차남 이하만 養子로 보낼 수 있었음. 次男이 아들이 여럿 있고 맏형이 아들이 없을 때는 차남의 큰 아들을 맏형한테 입양시켰음. 집안내에서는 入養하였으나 다른 집안에서는 入養시키지 않았음. 입양 후에는 입양된 집안의 아들로써 權利行使하였음(相續·祭祀 등)

㊱ 相續(相續分) : 父母生存에는 長子가 부모를 모시고 차남은 결혼하여 分家時 집과 農土 약간을 주어 분가하고 별도의 相續은 없었음. 부모 사망시에는 부모재산은 모두 長子에게 相續하고 未婚의 자가 있는 경우 長子가 分家시켰음. 妻와 女息에게는 相續分 없음.

③ 勞 動

㉞ 품 : 농사일을 위해 품앗이가 일반적인 노동력 동원 형태였음.

㉟ 머슴 : 상머슴과 엇머슴제도가 있었음. 상머슴은 1년 노임이 벼두섬이었으며, 옷도 제공받았음(여름-배등거리잠뱅이, 8月(추석)-중이적삼, 가을-하바지저고리). 엇머슴은 숙식만 제공 받았음.

④ 商 事

㉞ 場 : 5일장

㉞ 장터使用關係 : 장돌배기두목(任期는 2~3년)이 있어 장돌배기들한테 일정한 使用料를 徵收하였음.

㉞ 活動區域 : 고덕(3·8일), 합덕(1·6일), 예산(5·10일), 덕산(4·9일), 삼교(2·7일)

㉞ 返品 : 한번사면 그만

㉞ 代金支給·決濟方式 : 과거에는 쌀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농기구와 바꾸어 오기도 하였음.

㉞ 牛市場

㉞ 去來方式 : 仲介人이 장터에서 買入者와 賣渡者를 중개하여 賣買成立

㉞ 瑕疵擔保責任의 限界 : 한번 사고 팔면 그만

㉞ 代金決濟方式 : 현금 일시불결제

㉞ 市場의 所在地 : 합덕, 고덕, 삼교, 예산

㉞ 去來規模 : 봄, 가을 농사철에 주로 賣買. 일제시대에는 1일 50마리 정도가 거래를 위해 장에 나왔음

㉞ 特殊市場 : 지름장 (명절전일에 5일장과 관계없이 형성)

5) 習俗規範

下馬地域 (공자를 모셨던 장소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지나가야 함)

(3) 調査員 意見

전형적 농촌상. 과거에는 여론에 의해 自治的으로 해결하였으나 현재는 동네 여론에 의해 처리할 경우, 특히 刑事問題는 國法の 制裁를 받게되어 잘못된 일이 있어도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정도. 喪家 發生時에는 현재에도 洞規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提報者 이외에는 과거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음.

2. 參考資料 : 陽村 連班會則

會 則

1972. 5. 20

본 會는 양촌부락에서 동일하게 우정과 정의를 갖고 살아가다가 이별을 告하고 初喪時에 서로가 위로와 애로의 뜻에서 活動적으로나 物心面으로 도와나가는 親睦을 洞民 스스로 團結하여 영원히 運營되어 나가는 構成體를 連班會라 칭한다.

第 1 條 (會員 資格)

- ① 양촌부락에서 居住하는 世帶主로서 본 會長에게 規則대로 遵守한]다는 意思와 加入者 명단에 署名하면 加入된다.
- ② 他地域에서 轉入하여 加入할 시는 加入金으로 白米 1두를 받는다.
- ③ 加入金은 自治資金으로 運營한다.

第 2 條 本會員 初喪時에는 同一한 協助로 施行한다.

- ① 連班會米와 葬禮式을 거행하여 줄 수 있는 年齡限界는 만 20세 부터로 한다.
- ① 만일 본 會員 家정에 無依託者가 居住 중에 死亡할 시는 道義的인 면에서 連班會米와 장례式을 거행하여 줄 수 있다.

第 3 條 本 부락에서 여러 형제들이 본 회를 加入하였어도 부모가 사망한 喪家에게만 連班會米를 준다.

- ① 본 會員의 부모가 타지역에서 居住하다 死亡할 시는 본회에 挽章旗를 任員이 가서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편의상 會長 재량에

의하여 백미 2두를 줄 수 있다.

② 위 항의 경비는 自治資金에서 사용한다.

③ 상궁리 지역에 한 喪家에 상주가 본 會員으로서 會長에게 상두군을 요청할 시는 증원시킬 수 있다.

第4條 본 會員들은 초상시에 서로가 이웃에 신속히 전하고 상가에 가서 협조적인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 會員 가정은 連班會米를 의무금으로 정하고 백미 2升을 任員들에게 지불한다.

② 加入회 가정중에 전답과 노동력이 없는 극빈가는 실정에 의해 任員들의 認定下에 雜穀으로 대불함을 허용한다.

第5條 본 會員들은 연령의 한계대로 任務를 구분하여 상가일을 추진한다.

① 장례식 참석의무 연한은 아래와 같다.

a반 : 상두군 : 기혼자로서 만 45세 까지

b반 : 산지역 : 만 46세부터 만 55세까지

c반 : 부고조반 : 만 17세부터 미혼 청소년

d반 : 방문원 : 남녀 연소자

② 상두군의 任務는 조장의 지시에 따라 상여를 운반하여 상여장모와 함께 설치하기 시작해서 장지에 산지역군과 평토까지 하고 상여도 구 일체를 상여집에다 보관한다.

③ 산지역의 任務는 조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주의 요구에 의하여 사성까지 완성시키는 작업을 한다.

④ 부고조원의 任務는 任員들의 지시와 조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전보와 부고전달하는 역할 또는 장지까지 주·부식 운반과 급식을 하여준다.

⑤ 방문원은 상가의 초조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문한다.

第6條 본회를 運營하여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任員을 둔다.

① 會長 1명, 副會長 1명, 書記 1명, 상여장모 1명, 간사 4명을 둔다.

②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연말 경과보고후 選出한다.

第7條 會長의 任務는 본 회 運營面에 있어 任員들을 지도하며 자치자

금을 육성시켜 나가는 재정위원장 역할을 한다.

- ① 자치자금의 증가에 따라 재정위원을 둔다.
- ② 會長은 連班會米를 상가집에 백미 80Kg을 주고 在庫米는 자치자금으로 육성하며 상여재정비에 관한 경비로 사용한다.
- ③ 會長은 일반적인 금리율에 따라 자금을 육성시킨다.
- ④ 會長은 任員이 초상시에 불참시에는 신속히 任員을 선정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유도시켜야 한다.
- ⑤ 會長은 연말회의를 소집하여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第8條 副會長의 任務는 會長의 불참시에 대리하여 喪家의 상포매입과 경비에 관한 장례식 절차를 상주와 협의하여 예산대로 추진한다.

- ① 副會長은 각조의 조장을 임시로 선정하여 任務를 부여시킨다.
- ② 副會長은 상두군과 산지역 명단작성을 확인하고 각 조장에게 하달하여 이를 준행하여야 한다.

第9條 書記의 任務는 連班會米를 결산하여 會長에게 인계하며 초상의 전화 및 전보 訃告傳人에게 발송자를 임명하여 발송시키는 일을 한다.

- ① 본 회 運營部를 작성하여 재정 수입지출현황을 기재하여 비치한다.
- ② 書記는 상두군과 산지역을 공평하게 준수키 위해 순번을 정하여 작성하고 비치한다.

第10條 상여장모는 상여를 관리하며 장례식에는 상여결합과 분해를 하여 확인한다.

- ① 상여장모는 평소에도 채알과 혼례식 물품 등을 보관하는 중책상 상가에서 연비 금 6,000원을 지급한다(시대에 따라 일당금 지불).

第11條 補助任員인 간사는 會長의 지시에 따라 연반회미를 가정방문하여 수입 완료후 書記에게 인계하며 물품구입원 역할을 할 수 있다.

- ① 고문은 별정직으로서 運營상 필요시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운영상 모순점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한다.

第12條 加入員 중에서 행동이나 물질적으로 세번 이상 규칙을 위반하여 秩序를 혼란하게 한 자는 任員들의 결의하에 총회시에 會長이 공개하여 會員資格을 무효화 시킨다.

- ① 자기 몸에 이상이 있거나 출타시에는 사전에 護喪所에 와서 本人이나 타인의 사유를 알리면 任務를 교차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公務員도 體系의 運營上 遵守해야 한다.
- ③ 본회 加入한 가정으로서 활동력이 없는 자는 고용인이 대리로 산시역을 할 수 있다.
- ④ 非加入者가 상가일에 무관심하여 나갈시는 그들의 초상시에 본會員들이 일체 協助를 하지 않는다.
- ⑤ 부모의 喪服을 입은 자는 탈상시까지 活動任務를 면제하고 정식任員도 편의상 상두군을 제외한다.

第13條 運營面에 있어 필요할 시는 연말 總會에서 規則을 是正할 수 있다.

- ① 設立總會에서 決議한 연반회는 公布日인 西紀 1972년 5월 20일자로 부터 施行한다.

1972. 5. 20

설립총회 참석인원 87명

第2節 都市地域

1. 調査計劃

- ① 調査特性：都市地域 部分 豫備調査
 - ② 調査地域：서울 강남일대(지하철 강남역 주변) 商街地域
 - ③ 調査期間：1991년 12월 12일 ~12월 13일
 - ④ 調査目標：都市商街地域의 商去來慣行의 頻度 및 範疇 把握
 - ⑤ 假說：商去來秩序는 經濟的 合理性에 의하여 規律된다.
 - ⑥ 調査項目：商事分野 중 市内商街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항목들을 選定하였다
- ㉠ 프랜차이즈(이른바 “체인점”)
 - ㉡ 權利金
 - ㉢ 營業讓渡 또는 名義貸與

- ㉔ 匿名組合
- ㉕ 同業組合加盟 如何
- ㉖ 集合建物の 賣買, 賃貸, 管理
- ㉗ 私金融(어음割引, 私債)
- ⑦ 調査方法
 - ㉘ 店鋪別 訪問
 - ㉙ 店鋪主 또는 支配人 面談
 - ㉚ 메모한 調査項目에 의한 開放式 質問
- ⑧ 調査者: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2. 調査經過

- ① 事前接觸: 해당 商街地域에서 營業을 하고 있는 몇몇 점포주들과 면담일자 및 시간을 약속한 후 當該 店鋪를 訪問하였다.
- ② 調査協力: 해당 商街地域內 실버오피스텔에서 店鋪를 經營하는 서상호 사장이 인근 점포주 내지 지배인들과의 면담을 주선하여 주었다.

3. 調査內容

(1) 프랜차이즈

1) 국수전문체인 “다림방” 서초 실버店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08-4 실버오피스텔 205호
 경영주 및 제보자: 윤춘석(34세, 영업장연혁 13개월)

- ① 로얄티: 支給(330만원. 영업장이 7평 미만인 경우는 230만원)
- ② 保證金: 支給(100만원)
- ③ 設備: 母會社에서 인테리어 및 집기류 시설(실면적 15평에 2천만원)
- ④ 雇傭關係
 - ㉛ 店長이라 불리는 주방장만 母會社에서 支援
 - ㉜ 이 급여는 子會社 經營主가 負擔
 - ㉝ 店長이 辭職하면 母會社에서 다시 보내 줌
- ⑤ 物品代金關係 信用去來
 - ㉞ 當日 決濟가 原則

- ㉔ 실제 信用去來를 많이 함. 다만 이 경우, 매월 말일에는 외상금액을 전액 청산하여야 함.
- ⑥ 營業讓渡 制限
 - ㉔ 營業讓渡 可能
 - ㉔ 다만 營業開始後 1년이 經過하여야 讓渡 可能
 - ㉔ 그 이전에 사실상 營業을 讓渡하더라도 從前의 名義者가 繼續 責任
- ⑦ 權利金에 대한 認識: “손님권리금”(營業價值評價額)에 施設費를 덧붙여 받을 생각

2) “치갯집” 양념통닭 서초 실버店

所在地: 서초구 서초동 1308-4 실버오피스텔 202호

支配人 및 提報者: 박정호(33세, 영업장연혁 17개월)

- ① 로얄티: 支給
- ② 保證金: 支給
- ③ 設備: 本社에서 決定
- ④ 加盟條件 및 節次: 距離制限 있음. 營業店鋪 얻어 놓은 후 加盟申請
- ⑤ 營業品目制限
 - ㉔ 附帶的 品目 許容
 - ㉔ 全體 物量의 20% 範圍內에서 他社 物品 販賣 可能
- ⑥ 雇傭關係: 子會社 自律的
- ⑦ 物品代金關係 信用去來: 保證金 範圍內
- ⑧ 瑕疵擔保責任
 - ㉔ 매일 배달제 채택, 물건 일찍 떨어져 물건반품 사례 희귀
 - ㉔ 瑕疵 있는 物件 있을 경우는 즉시 返品 可能
 - ㉔ 利用顧客側이 損害를 입었을 경우 本社의 責任如何: 特約 없음
- ⑨ 權利金에 대한 認識: 주변의 사례에 따름

(2) 集合建物の 管理

건물소재지 및 명칭: 서초구 서초동 1308-4, 실버 오피스텔

제보자: 서상호(47세, 同209호, 미용업, 영업장연혁 24개월)

김신영(62세, 동 건물 관리회사 [株]정호개발 직원)

1) 一般事例(傳聞)

- ① 原建築주가 特定の 建物管理用役會社를 選定하여 建物管理 委任
- ② 建築主는 管理費 비싸도 建物減價償却을 고려하여 用役會社에 넘김.
- ③ 入住 당시 分讓契約書에는 建物管理問題規定 없음.
- ④ 建物分讓이 거의 終了될 때까지 약 1년 정도 이러한 暫定的 管理關係가 持續되다가 入住者 代表들에게 管理裁量を 넘김.
- ⑤ 入住者 代表들이 “臨時運營會”를 組織하여 管理問題에 대해 用役會社와 協議
- ⑥ 이 協議를 바탕으로 1년 또는 2년 마다 管理契約을 更新
- ⑦ 管理實務에 관해서는 入住者들이 個別的으로 管理會社와 接觸

2) 建築主와 入住者와의 關係

- ① 入住繼續期間 및 建物瑕疵補修期間 동안 入住者들은 원래 建築主에게 의지하여 建物管理에 대하여 거의 묵인하고 建築主가 요구하는 대로 管理費 納付
- ② 建築主는 外部的으로 자기가 管理權을 갖고 있는지 인척 用役會社가 管理權을 갖고 있는지 구별이 잘 되지 아니하도록 행동함(2중, 3중의 管理主體 표방).
- ③ 建築主 자신이 현재에도 상당분의 店鋪들을 所有하고 있어 建築主로서의 地位와 入住者로서의 地位가 혼동되어 있음.
- ④ 入住者들의 주장에 의하면 구청과 한전측에 대한 電氣料, 水道料등의 滯納管理費의 대부분이 建築主가 納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함.

3) 建築主와 用役會社와의 關係

- ① 建築主가 자기 姻戚이 經營하는 建物管理用役會社에 管理權을 넘김.
- ② 讓渡條件이 建築主의 管理費 滯納分을 引受하는 것이었는지는 不明.
- ③ 이 姻戚 用役會社는 다시 현재의 管理會社 (株)정호개발에 管理權을 넘김. 현재 會社는 管理權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고 滯納管理費 債務를 引受하는 條件으로 이 管理權을 넘겨 받음.
- ④ 入住者들의 판단으로는 舊용역회사와 新용역회사 간에 管理期間에 관한 特約(2년)이 맺어져 있음(再下請契約與否 미지수).

4) 用役會社와 入住者와의 關係

- ① (株)정우개발은 종전 用役會社의 管理費 負債를 引受하고 들어옴.
- ② 이 會社는 入住者들이 管理權을 넘겨 가려면 會社側이 管理權 讓受 당시 낸 管理權 프리미엄과 한전 및 구청 등에 밀린 管理費를 代納해줄 것을 要求(入住者들은 入住當時부터 管理費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負債의 內容과 妥當性을 이해하지 못함. 따라서 이 建物은 竣工 후 2년이 經過하였지만 管理權의 主體가 아직도 不分明함).
- ③ 管理會社는 기준미달의 냉난방문제, 청소불결문제, 기타 관리 미진 등의 問題를 해당 建物 現場管理所長에게 責任을 전가시킴.
- ④ 入住者들은 用役會社가 바뀐 후 50%의 管理費 引上을 一方的으로 通告 받음(引上을 抗議하면 있기 싫은 측이 나가라고 한다고 함).
- ⑤ 入住者들은 管理費 외에 店鋪 또는 事務室마다 매달 1만원씩 더건어 現場職員들에게 줌. 休暇 때나 名節 때에는 追加로 떡값(入住者當 1만 5천원)을 贈與.
- ⑥ 入住者들이 管理費를 滯納할 경우, 구두독촉을 하고 履行되자 아닐 때에는 個別的 斷電·斷水趣旨를 通報함(실례는 없었음. 斷電·斷水 자체가 違法).
- ⑦ 평일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은 냉난방 중단. 入住者들 自家機具 가동.

4. 調査結果分析

(1) 營業環境에 관하여

- ① 당해 조사지역을 포함한 강남상가지역이 設市 후 4번째 물갈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 시사해 주는 바와 같이, 제보자들은 市場開放 추세와 정부의 經濟政策運用 등 급변하는 제반 營業環境에 대해 불안감과 경계심을 안고 있음.
- ② 부단히 변화하는 營業環境 속에서 각 상인들은 본인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상의 미비를 商慣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며 지역내에서의 단결력이 결여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2) 法律關係에 관하여

① 예컨대, 프랜차이즈에 관하여는 현재 成文法規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商街地域에서는 이를 이른바 “체인점”으로 이해하여 나름대로 일반적인 商去來를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상인들은 그들의 契約關係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 없이 영업활동에 종사함.

② 權利金에 관하여는 영업수익에 대한 價値評價分이외에 인플레이率을 감안하고 인테리어등의 시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③ 集合建物の 管理에 있어서는 새로운 利權으로서 “管理權”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管理權의 法的 性格이 규명되지 아니하여 關係자들이 그 權利義務의 內容과 限界를 잘 모르고 있다. 한편 소규모의 管理用役會社들이 난립하여 관리비를 증대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입주자라 하더라도 직접 영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소유주들은 건물관리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다. 관리권이 독자적인 영업권으로서 정립되고 집합건물의 관리체계가 정상화되기 위하여는 우선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이론정립이 요망된다:

- ㉠ 管理權의 法的 性格
- ㉡ 管理權의 範圍와 限界
- ㉢ 入住者代表會議의 地位
- ㉣ 管理用役會社의 權利와 義務
- ㉤ 管理用役會社와 入住者代表會議와의 關係
- ㉥ 賃借人 入住者 또는 轉借人 入住者의 保護
- ㉦ 建築主가 건물 자체를 처분할 경우 管理權의 變動 如何
- ㉧ 당해 건물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의 지위
- ㉨ 管理權의 轉賣差益 및 下請

④ 처음에 계획하였던 조사항목 중 익명조합은 이번 조사과정 중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전언에 의하면 당해 지역내 상가에는 이러한 형태를 거의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동업조합의 경우, 미용업과 같은 특수한 영업분야의 기업자들이 이에 가맹하고 있지만, 동종 영업에 대한 자율적 규제기능 또는 이익단체로서의 기능은 미지수이다.

私金融에 관하여 질문하였지만 당해 지역에 특수한 조직이 형성되거나 특별한 거래방식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5. 調査所感

(1) 營業秘密의 隱蔽

이 건 조사지역은 점포관계자들이 매우 폐쇄적이었다. 면담을 하자는데의 자체를 번번히 거절하였다. 사전연락 없이 불쑥 방문하여도 결과는 비슷했다. 상거래는 분명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별 것 다 묻는다는 식이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꼭 물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행정관청의 조사에 대해서는 불신할 뿐만 아니라 비행정관청의 경우에도, 예컨대, 어느 증권회사에서 주식투자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답변이 기만적이라고 한다. 주식투자를 5년 한 사람이 1년 했다고 답하고 1만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천주를 가졌다고 답변하였다고 전한다. 약간 아는 처지여도 속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네 점포 또는 본사의 내막이 자료로 공개되면 영업신장에 방해가 되고 권리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다.

(2) 面談機會의 貧困

또 하나의 조사장애 요인은 해당 지역의 점포들이 대체적으로 분주하여 경영주나 지배인들이 한가하게 답변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3분 묻고 10분 기다려 고객접대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하는 식이었다. 개방형 질문 자체를 아주 성가셔 하기도 했다. 준비한 조사기념품이나 조사사례비를 가볍게 취급하기도 하였다.

第2章 市場別 調査

여기서 말하는 市場이란 無形의 市場을 말한다. 이 豫備調査를 遂行하기 위해 設定한 市場은 證券, 金融, 保險, 輸出 및 運送의 分野이다. 이하 순서대로 살펴본다.

第 1 節 證券市場

1. 調查計劃

① 證券去來慣行을 파악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를 중심으로 現業部署와 指導監督部署를 訪問하여 關係者 面談을 行함.

② 訪問豫定機關 내역(본문중에 열거된 곳은 생략) : 東洋證券(株) 法人營業部, 韓國綜合金融(株), 韓國投資信託(株) 신촌지점, 新韓投資金融(株), 釜山리스(株), 大韓保證保險(株) 안양지점.

③ 調查項目 : 證券街의 慣行을 調查하기 위해 質問事項을 一般의인 것과 個別的인것으로 나누었다. 訪問時 준비한 메모는 다음과 같다 :

㉠ 慣習調查總目

㉠ 認知度 :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實定法이 아닌 自治規則이나 慣例에 따라 處理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 依存度 : 業務와 관련된 다툼이 잘 풀리지 않으면 慣行과 實定法 중 어느 것을 먼저 찾습니까?

㉢ 典據 및 解釋 : 慣行이나 慣例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잘 생각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效力 : 현재의 慣行이나 慣例는 잘 지켜집니까?

㉤ 實效性의 源泉 : 慣行이나 慣例가 遵守되는 根據 또는 理由 如何

㉥ 改廢 : 慣行이나 慣例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바뀐니까?

㉦ 變遷史 : 慣行이나 慣例의 體系가 크게 바뀐 것은 언제쯤입니까?

㉧ 提言 : 慣行이나 慣例의 必要性, 實定法과의 關係, 向後的 展望 등에 관한 意見 如何

㉨ 慣習調查各目

株式 및 債券에 관한 事項 중 關係法令規定에 없는 慣行 또는 같은 規定과 달리 行해지고 있는 慣行目錄에 대해 概括的 陳述 要望

2. 調查經過

① 調查對象機關

○ 大信證券株式會社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韓一證券株式會社：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 大韓投資信託株式會社：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5
- 證券去來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 證券監督院：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 기 타：關係機關과의 關係를 고려하여 記名猶豫를 요청한 諸機關

② 調査期間 1991년 9월 17일 · 18일 · 25일 · 30일

③ 調査方法

㉠ 該當機關의 證券關係責任者를 訪問하여 面談

㉡ 質問方式은 먼저 證券關係實務 중 法에 없다고 생각되거나 法과 달리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事項들을 主題中心으로 概括적으로 열거해 주도록 요청하고 다음에 調査者가 認知하고 있는 個別的 事項에 대해서 問答하였음.

④ 調査協力

- 李 相 見：韓一證券(株) 部長
- 金 承 鎬：大信證券(株) 理事
- 趙 鉉 泰：大阜投資信託(株) 經濟研究所 前任研究員
- 沈 亨 求：證券監督院 指導評價局 課長
- 徐 鍾 南：證券去來所 企劃部 法規擔當
- 鄭 明 石：同 業務部 代理
- 기 타：關係機關과의 關係를 고려하여 記名猶豫를 요청한 諸人士

⑤ 調査者：本院 責任研究院 全在慶

3. 調査內容

(1) 市場與件

- ① 우리 證券市場은 獨寡占 構造임
- ② 去來對象인 “有價證券”의 概念이 不同(美國의 경우, 投資有價證券 包含으로 範圍 넓으나 우리는 株式, 國債, 會社債 등 7~8가지 限定)
- ③ 美國은 證券業者가 會社일 필요 없으나 우리는 株式會社로 限定
- ④ 美國의 경우와 같은 specialist制度 없어 去來樣相이 不同.
- ⑤ 債券市場의 特色：非效率的 經濟現狀 膨배
價格機能 마비
市場機能 무시(發行收益率 등 發行條件의 非公式

規制) 및 이로 인한 變則慣行 派生

- ⑥ 行政指導：株價變動 如何에 따라 財務部나 監督院에서 매매권유
(예：1989년 12·12때, 현재에도 그 評價損 影響 存續)

顧客窗口指導

負債比率 減少 誘道

資産健全運用指導

信用限度 調節

- ⑦ 場外去來(證券業協會에서 管掌)：市場形成 未備. 端株處理 등에 이
용되나 慣行餘地 狹小

- ⑧ 資金超過需要現狀 一般化：債券供給物量 > 債券需要

- ⑨ 會社債 發行：大規模 資金調達을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

- ⑩ 債券市場 開放問題：慎重

- ⑪ 規制法制的 特性：外樣은 미국과 같이 公示主義를 採擇하나, 實際內
容은 規制主義. 따라서 가끔은 무용의 또는 불필요한 規制도 있음.

[例 1] 企業公開時, 미국의 경우는 해당 會社實質價值判斷 하지 아니
하고 投資者가 알 수 있도록 公示만 행함(純粹公示主義). 우리나라의 경
우는 一定要件을 정하여 법에 없는 “要件未滿會社” 選定

[例 2] 投資諮問會社의 設立-登錄制를 許可制로 運用

[例 3] 證券去來法 第57條(營業의 停止 등) 중 “委員會가 該當社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는 特別規定은 商法上 “株主總會의 議決을
要한다”는 規定을 無用化시킴. 이 경우, ‘停職’시키는 事例있음.

(2) 慣習調査總目

1) 認知度

- ① 名目價(規制價)와 實質價(去來價)의 差異에서 起因하는 證券去來
慣行이 약간 있음.

- ② 去來上 脫法慣行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면 해당 規定을 곧 고침.

- ③ 그러나 市場構造에서 오는 長期的인 불건전 慣行이 상당수 있음.

2) 依存度

- ① 實定法規 優先

- ② 특히 證券監督院의 關係規定에 크게 의존함(외국보다 규율이 엄격)

하므로 計定科目 하나라도 新設 不可).

3) 典據 및 解釋

① 事例 거의 없음

② 證券去來所 自治法規인 受託契約準則이 非會員(예컨대, 外國證券會社)에게도 適用되는지 與否가 문제되었을 때, 流通市場에 參與하는 모든 會社에 適用되는 것(日本事例 參照)으로 運用하였음.

4) 提言

① fund manager들과 접촉할 것

② 個人投資者들에 대한 追加調査 바람직

③ 規制가 緩和되고 市場機能이 正常化되면 去來樣相 및 慣行 變化

④ 韓國銀行에서 1986년에 펴낸 “우리나라의 金融制度” 參照 要望

(3) 慣習調査各目

1) 發行市場

① 基準收益率: 制度的으로는 自律化되어 있음. 실제로는 財務部의 行政指導와 有價證券引受業務規程에 根據하여 證券會社, 投資信託會社 및 綜合金融會社로 구성된 “社債發行引受實務會”를 構成하여 會社債 發行條件 등을 정함. 그러나 이때 流通市場收益率을 基準으로 하지 아니하고 基準收益率을 適用함. 즉 基準收益率 이상으로 發行計劃을 세우면 證券監督院에서 接수를 하지 아니함.

② 引受誘導: 會社債가 市場價格보다 낮은 條件으로 發行되는 경우, 關係證券機關들이 引受團에 들어가기를 꺼리게 됨. 이를 解消하는 方案으로서 指導監督機關은 流通市場에서의 社債調達物量과 發行市場에서의 그것의 比率를 調整하여 引受團에 참여하여야 할 규모를 정함. 主幹事會社들은 대개 保有資金 부족으로 發行當日 會社債를 市場에 팔아 正常的인 幹事機能을 遂行하기 어렵지만 主幹事 周旋實積을 토대로 새로운 商品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社債發行에 參與함.

③ 發行制限: 自律的으로 構成된 “起債調整協議會”에서 會社債 發行社의 接수를 매겨 社債發行을 制限함. 發行하지 못하는 會社는 다소 불리하더라도 銀行 등 社債市場으로 進出.

④ 꺼기: 制度金利와 實勢金利와의 차이로 인하여 引受團이 입는 相對

的 損失을 填補해 주기 위해 發行會社는 引受團 會社의 條件이 열등한 商品을 引受함.

⑤ 떠넘기기(return) : 현재와 같은 會社債發行 構造下에서는 會社債를 流通市場에 올릴 경우, 手數料를 감안하여도, 主幹事會社에 약 3~4%의 相對的 損失이 發生함. 이를 填補하기 위해 主幹事會社와 發行社間에 “當該 會社債를 發行社가 되산다”는 約定이 맺어짐(통상 30~50% 線).

⑥ 引受團 構成 : 會社債 發行時 引受團에 所屬된 機關에 대해 支給하는 引受手數料를 機關投資家 등에게 支給(引受手數料에 相當하는 金額을 賣買價格에 없이 支給).

⑦ 代納手數料·利子徵收 : 有償增資時 證券會社가 代納手數料 및 利子를 받음. 信用供與의 한 형태. 株式請約資金貸出規程에 세부적으로 規定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代納하였음. 1988년 法改正前까지 상당히 행해졌음. 종래 證券社에만 通知하였기 때문에 發生. 현재는 株主들에게 直接通知하므로 줄어들었음.

⑧ 通貨調節用債券配定 : 通貨安定證券, 財政證券, 外換平衡債 등이 늘어나면 資金이 달려 會社債 價格이 上昇됨. 이러한 債券의 配定은 韓國銀行에서 競爭入札로 행해지는 것이 原則임. 그러나 正常的인 販賣가 어려워 關係機關에서 이를 傘下機關에 配定하는 것이 보통임. 외국은행에는 이것이 돌아가지 않음. 配定金利와 市場金利 間에는 현재 약 6% 정도의 損差가 發生함. 외국은행은 이를 사서 收益을 올림.

2) 流通市場

① 契約締結方式 : 制限規定 없음. 機關投資家 등은 電話賣買, 단말기 입력방식 이용. 締結이 빨라 取消되는 事例는 희귀. 錯誤發生時 機關投資家の 경우는 證券社가 이에 관한 立證責任을 져야 함. 個人顧客이 비밀번호 이용한 전화주문시 고객이 부인할 때 立證困難, 분쟁소지 많음

② 契約締結場所 : 擴大解釋하는 경향

③ 派出收納 : 去來法上 營業所 이외의 장소 受納을 制限. 그러나 大規模 投資者나 機關投資者의 경우는 이 방식 이용

④ 請約領受證賣買 : 有償增資나 企業公開時 請約領收證을 賣買. 證券發行前에는 당해 會社에 對抗不可. 이 領收證의 有價證券性도 문제

⑤ 公開買受制 死文化 : 經營權을 장악하는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이

를 부도덕한 행위로 파악하는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해당 制度 불이용

⑥ 一任賣買：證券去來法에서는 制限的으로 許容. 실재는 상당히 많아. 損害發生時 責任問題 發生. 會社負擔은 거의 없음. 顧客側이 使用者責任을 물어 訴訟하는 事例는 있음. 허용장치 욕구 큼.

⑦ 信用制度：信用供與規程上 1인당 5천만원 限度. 실재 2억~5억을 他人名義로 貸與. 名義貸與者는 去來關係에서 완전히 排除됨. 借名口座가 깡통계좌일 경우 문제 됨. 訴訟件은 거의 없었음. 訴訟物은 있으나 實行을 하지 아니함.

⑧ 通情賣買：금지되어 있으나 機關投資家와는 市場機能에 맡기지 아니하고 約定價格으로 賣買. 證券社는 處罰 받음. 去來가 많지 아니한 株式은 대개 이 방식을 採用함. 機關投資家의 去來便宜를 위하여 또는 系列社 大株主間의 利益確保를 目的으로 한 特別仲介를 위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음.

⑨ 相對賣買：株式의 通情賣買에 해당. 事前에 場外에서 收益率 내지 價格을 決定해서 形式的으로 去來所에서 賣買에 붙임.

⑩ 內部者去來：無償增資時 등의 경우에 관련 任職員들의 去來. 발각시 利益을 會社에 還收시킴. 內部情報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立證責任을 當해 內部者에게 지워야 한다는 立論 대두.

⑪ 投資勸誘：證券去來法上으로는 “投資相談士”만이 投資勸誘 可能. 실재 販促目的上 證券社 職員들이 권유함. 이는 일본규정 답습 결과(일본은 신입사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투자상담사 자격을 따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⑫ 包括責任：약 3년전까지 부도난 會社債 또는 분실신고된 會社債와 國公債는 證券會社가 이를 되셨다. 현재에는 賣買 당시 申告 내지 부도가 없으면 證券會社의 責任이 없다. 그러나 少額投資者 商品에 이런 종류들이 섞였을 때에는 信義則上 責任을 진다.

⑬ 信用去來：短期信用 및 長期信用 去來

⑭ 收益率 公示：投資相談時 또는 商品廣告時 表示된 收益을 밑돌아 顧客이 損害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責任文句 없어도 이를 설득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

⑮ 收益率 計算：債權 收益 계산방식이 2원화 되어 있음. 규정과는 다

른 慣行의 方法을 援用함. 현재는 양자가 상당히 근접하고 있음.

4. 調査結果分析

(1) 慣行의 存續期間

이 調査에 나타난 證券市場關係 慣行은 비교적 존속기간이 짧았다. 慣行의 반복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반복은 찾기 힘들었다. 市場與件 자체가 일천한 탓도 있고, 關係行政廳 등에서 즉각적인 立法作業을 推進한 탓이기도 하였다.

(2) 自治規程과 慣行의 混同

關係實務者들은 自治規程과 實定法規를 거의 동일시 하고 있다. 市場關係者들에게는 이 自治規程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法典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自治規程에 의하여 規律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國家의 成文法秩序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實定法規의 限界

經濟的 合理性 또는 經濟的 交渉力에 의하여 좌우되는 證券市場秩序를 일정한 政策的 目標에 맞춰 制度的 틀안에 기속시키려는 시도가 종종 빚나가고 있다. 關係指導監督機關의 責任者나 實務者들이 이 限界를 깨닫기에는 그 在任期間이 너무 짧거나 裁量의 여지가 협소하다고 여겨진다. 經濟論理와 동떨어진 關係實定法規의 制定이나 改正으로 고쳐질 수 없는 慣行들이 요소마다 散在한다. 국내 證券市場의 덩치가 中央集權式 統制로 效率을 거두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한 疑問이 든다.

(4) 慣行의 育成과 尊重에 관하여

經濟秩序의 과행성이 끝을 보이고 經濟政策의 긴박성이 完化되는 시점이 가까운 시일내에 다가온다면, 그리고 證券市場의 論理와 國家濟의 論理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犯罪的 市場교란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행위를 구별하여, 市場論理에 적합한 慣行들을 育成하고 尊重하는것이 證券

市場의 去來秩序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調査所感

(1) 業務 雰囲気 에 관하여

거대한 市場과 방대한 자금을 다루면서도 關係業務 責任者들은 분초를 다투는 業務의 신속성 때문에 구두지시와 구두결재가 왕성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證券關係 주요 去來들이 대부분 전산화처리되기 때문에 컴퓨터 기록의 문서성, 去來資金의 移替 및 決裁方式 등에 관하여 法的性格 및 效果 등을 檢討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2) 法的 認識의 未分化에 관하여

面談에 응한 關係者들의 상당수는 그들의 行爲의 準則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본인들이 사용하는 規程集 또는 業務便覽 등에 規定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實定法規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울러 慣行이란 말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어리즘직하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취하였다.

(3) 反射的 不利益의 憂慮에 관하여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調査의 趣旨나 結果에 대하여 다소 경계적이었다. 證券關係者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脫法慣行이 노정되어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去來慣行에 대하여 소신있는 經濟論理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진지한 협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機關과 인사들에 대하여는 본인들의 요청도 있고 하여 무기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고 各調査項目에 대하여 개인별 주석을 달지도 못하였다.

6. 蒐集資料目錄

- 資本市場關係 主要施策 總覽(證券監督院, 1991. 8, 468쪽)
- 日本證券去來審議會研究報告書:
 - ① 金融의 證券化에 대응한 法制정비

② 國際的 資本市場 構築目標(證券監督院, 1990. 7, 번역본 123쪽)

- 日本의 株式場外市場制度 (證券監督院, 1986. 9, 번역본 249쪽)
- 證券去來法2(연수교재) (韓國證券研修院, 1989., 115쪽)
- 證券去來所規程 중 受託契約準則 (1963년 制定, 1985년 改正),
業務規程 (1963년 制定, 1990년 改正),
業務規程細則 (1977년 制定, 1991년 改正)
- 債權投資의 實務와 理論 (릭키證券 社內用, 刊行年度 미상, 234쪽)
- '89最新 發行市場實務(東南證券, 1989., 474쪽)
- '90改訂版 發行市場實務(大信證券, 1990., 566쪽)
- 私債發行制度(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0., 210쪽)
- 業務便覽(大信證券, 1990., 288쪽)
- 新入社員研修教材(大信證券, 1991., 319쪽)
- 投資信託20年史(大韓投資信託, 1990., 748쪽)
- 營業業務實務指針書(大韓投資信託 社內限, 刊行年度 미상, 466쪽)

第2節 金融市場

1. 調査計劃

- ① 市中銀行의 金融慣行을 調査하기 위해 명동 등 金融團地 訪問調査
- ② 調査項目: 受信, 與信, 外換, 信託, 信用卡드

2. 調査經過

- ① 調査期間: 1991년 9월 19일 ~ 9월 20일
- ② 調査方法
 - ㉞ 該當機關의 實務者 또는 責任者를 訪問하여 面談
 - ㉟ 質問方式은 證券會社의 경우와 동일
- ③ 調査協力
 - 高 海 鎮: 朝興銀行 綜合企劃部 課長
 - 朱 榮 優: 同 代理

- 李 在 善：서울信託銀行 信託部 課長
- 崔 赫 智： 同 綜合企劃部 代理
- ④ 調査者：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3. 調査内容

(1) 受 信

- ① 無通帳 入金 및 送金
 - ㉞ 法的 性格 問題：第3者를 위한 契約인지 如何
 - ㉟ 取消時 預金主 同議要
- ② 預金 消滅時效：期間 경과하였어도 權利 認定
- ③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 ㉞ 請約과 承諾이 成立하는지 如何
 - ㉟ 암호(비밀번호)의 法的 性格 如何
- ④ 入金出金 代理行爲
 - ㉞ 會社 또는 自營業者들의 入出金 代理人의 行爲의 效果 認定
 - ㉟ 紛爭의 소지 있음
- ⑤ 期間算入
 - ㉞ 종래, 預金은 한쪽 일자만 算入, 貸出은 양쪽 일자 算入
 - ㉟ 91년부터 公同으로 한쪽 일자만 算入

(2) 與 信

- ① 設定費用(登録稅)：登記法과 달리 債務者 負擔으로 함.
- ② 法人貸出：企業雇傭任員
 - ㉞ 理事들을 保證人으로 세워 根保證 責任 지웠음.
 - ㉟ 1986년 大法院 判決로 理事들의 계속적 根保證의 경우 法定解止 權 認定. 1987년 이른바 “企業雇傭任員” 개념 안출하여 임원을 ‘委任’關係로 아니 보고 雇傭關係로 봐, 즉 理事라고 무조건 責任 지우지 않음. 따라서 특정 사유 발생시 約定解止權 인정.
- ③ 抵當 및 保證 方式
 - ㉞ 80년대초까지 種類 區分 없었음.
 - ㉟ 1983년에 包括 根抵當, 限定 根抵當, 特定 根抵當의 구분 설정.

- ㉔ 1987년 改正.
- ㉕ 包括 根抵當의 경우 분쟁소지 있음.
- ㉖ 保證의 경우도 상기와 같음.
- ④ 꺾기
- ⑤ 豫貸相計

(3) 어음 및 手票

- ① 어음 및 手票 要件
 - ㉗ 필수적 기재요건 등 어음요건 및 수표요건이 잘 지켜지지 아니함
 - ㉘ 法感情과 遊離되어 있음
- ② 滿期前 遡求 문제
- ③ 自己앞手票 : 분실시 지급거절 가능
- ④ 어음상 特定橫線 및 橫線 抹消 문제
- ⑤ 事故申告擔保金制
 - ㉙ 당좌수표, 어음 이용자에게 1987년부터 실시, 당시 “事故申告豫受金”
 - ㉚ 停止條件附債權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無名契約
 - ㉛ 支給請求權의 발생시점, 請求權者 등의 문제 발생

(4) 營業 및 債權管理

- ① 銀行營業時間 : 9시 30분 ~ 4시 30분 (평일)
- ② 營業時間 以後의 辨濟
 - ㉜ 有價證券은 교환시간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 ㉝ 現金의 경우는 더 융통성 있음.
- ③ 支給保證書制 : 融資擔保를 위한 支給保證書 : 자동적 保證契約 締結로 看做함.
- ④ 流入制
 - ㉞ 擔保된 不動產이 競賣에서 팔리지 않을 경우, 鑑定價 수준으로 다시 삼. 배당받는 대신에 債權과 相計함.
 - ㉟ 銀行債權 確保, 後順位者 介入防止.
 - ㊱ 債權額보다 많으면 사지 않거나 損害 알면서 사는 경우도 있음.

- ⑤ 理事會起債決議書
- ⑥ 代表理事의 缺員時 處理 如何
- ⑦ 倒産한 會社의 債權·債務 處理 如何

(5) 信託

有價證券 및 金錢 信託이 주종을 이룸. 證券 및 不動産은 별도 관념. 信託業務 관계규정은 거의 일본의 것을 모방. 信託業務에 관한 규율은 재무 부장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4. 調査結果分析

(1) 새로운 業務開發과 慣行의 形成

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金融技法이 무단히 변함으로써 종래의 法理論 또는 判例로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業務가 개발되고 이에 관한 法的 問題點들이 제기, 검토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방식은 정착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金融去來慣行 형성되고 있음.

② 주요 金融業務의 電算化 즉 on-line망의 확립에 따르는 無通帳去來, 電子式 資金移替, 電子磁氣式 카드의 사용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함.

(2) 靜的인 慣行의 累積

- 證券과 같이 流動性 商品을 취급하면서도 金融은 그 慣行이 비교적 靜的으로 보임. 金融業務 자체가 다소 비모험적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金融의 역사가 장구하여 合理的인 慣行들이 누적되어서 그런지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3) 慣行의 變遷過程 瞭然

① 金融慣行은 安定的이고, 묵은 것의 累積과 혁신적이고 새로운 것의 形成이라는 2重性을 노정시키면서 慣行의 生成, 變化, 소멸 과정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음

② 金融慣行에 있어서도 관습법으로까지 고양될 수 있을 정도의 오랜기간 동안의 反復을 찾기 어려움

(4) 慣行의 統一性

○ 情報의 共有, 利益團體의 活性化, 金融機關 특히 은행의 公共機關性 등으로 인하여 金融業務와 관련된 慣行은 지역에 따라 또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거나 時差를 두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같은 모습으로 변함.

5. 調査所感

(1) 金融慣行의 廣範性과 調査方法

金融業務 자체가 商去來 慣行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擔保, 債權管理 등의 분야에서 慣行의 정립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金融의 沿革과 이용빈도 및 業務領域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業務關係慣行도 광범위함.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銀行實務에 10여년 이상 종사하여도 業務經驗이 없는 金融分野의 慣行에 대하여 밝지 못하며,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도 慣行에 관심이 없으면 實定法上의 문제와 慣行上의 문제를 分別하기 어려움. 本調査를 위하여는 金融業務를 되도록 세분하고 되도록 이면 法律을 전공한 여러 파트의 實務者들에게 調査範圍, 調査方法 및 調査項目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調査를 委託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움.

(2) 金融關係 判例의 調査研究

銀行實務者나 責任者들은 金融業務에 관한 法院의 判決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이러한 태도는 金融關係 實務指針書 또는 研修 教材에도 분명히 드러남). 合理的인 慣行일 경우, 法院도 이를 외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金融慣行과 判例는 相補的 關係에 있음. 따라서 金融에 관한 法院 判決 및 行政審判例를 정리·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6. 蒐集資料目錄

- 朝興銀行 實務教本 : 銀行實務法規(1991년판, 인사부 연수원, 436쪽)
- 서울신탁은행 實務法規31(사례연구)(1987. 12, 종합기획부, 138쪽)
- 同 實務法規32(與信關聯實務사례집)(1988. 12, 종합기획부, 274쪽)

- 同 實務法規33(與信關聯實務사례집2)(1990. 12, 종합기획부 275쪽)

第3節 保險市場

1. 調査計劃

① 保險關係實務者들이 保險業務에 종사하면서 慣行으로 처리하는 業務分野의 대강을 調査함.

② 保證保險의 경우는 部分的 參與觀察 (大韓保證保險 안양지점) 實施

2. 調査分野

- 生命保險, 海上保險, 保證保險

3. 調査經過

① 調査對象機關

-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빌딩
- 三星生命保險株式會社 청주영업국 : 충북 청주시 서문동 14-1
- 韓理海上損害査定(株) : 서울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 大韓保證保險株式會社 안양지점 :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627-3
- 韓國保證保險株式會社 세종로지점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5

② 調査期間 : 1991년 9월 25일, 10월 28일, 11월 30일, 12월 23일

③ 調査方法

- ㉞ 該當機關의 實務者 또는 責任者를 訪問하여 面談
- ㉟ 營業所에 나가 契約締結事例 觀察

④ 調査協力

- 魯 宰 旭 : 대한생명(株) 채권과장
- 김 재 수 : 삼성생명(株) 새청주지구 리젤팀장
- 趙 成 根 : 한리해상손해사정(株) 부장

4. 調査內容

(1) 生命保險

- ① 告知義務
 - ㉞ 契約者が 行하는 경우 드물다.
 - ㉟ 保險募集人이 代行
 - ㊱ 保險募集人은 모집실적 위해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消極的 點檢
 - ㊲ 사소한 違反의 경우, 消費者保護 차원에서 어지간하면 보험금 지급
- ② 保險契約成立時機：保險募集人이 收金한 時點을 成立時期로 看做
- ③ 冷却期間：15일
- ④ 保險特約
 - ㉞ 一括去來(package deal)로 消費者가 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함.
 - ㉟ 分離特約도 行해짐.
- ⑤ 保險契約者 失蹤의 경우：契約維持義務와 納入不可現實 상충
- ⑥ 保險金 代納：保險契約의 維持 위해 保險募集人이 保險契約者의 保險金 代納
- ⑦ 保險契約 效力喪失 및 復活
 - ㉞ 일정기간 約定保險料를 納入하지 아니하면 保險契約 效力喪失
 - ㉟ 일정기간 이내에 保險料를 納入하고 復活請約書를 내면 다시 復活
- ⑧ 約款貸出 및 꺼기

(2) 海上保險

- ① 準據法約款
 - ㉞ 保險事故, 保險料, 保險金額, 保險契約 등에 관하여 保險約款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1906년 英國海上保險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을 準據法으로 삼아 實務上 優先的으로 適用.
 - ㉟ MIA에 없는 것은 英國 海損精算人協會(AAA)의 實務規則(Rules of Practice : 1869)을 適用함. 이는 코드화된 慣行임.
- ② 損害査定人의 意見：상기 準則들에도 適用基準이 없는 경우 損害査定人의 意見에 따름.

③ 約款의 特性

- ㉞ 契約當事者의 意思에 따라 變更, 縮小, 擴張 등을 행함.
- ㉟ 통일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㊱ 標準定型契約으로 이해함.
- ㊲ 慣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요망.
- ④ 機關機械保險: 獨逸의 指針들을 주로 따름.

(3) 保證保險

① 保險契約 締結

- ㉞ 保證契約의 內容에 대한 說明 없음.
- ㉟ 保證契約 內容의 確認을 위한 證憑資料(保證保險請約書 寫本 등)를 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지 아니함.
- ㊱ 契約當事者가 證憑資料를 要請할 경우(특히 少額貸出保證保險의 경우)다른 保證保險의 約款을 參照하도록 권유함.

② 再保證(새끼保證)

- ㉞ 保證保險契約者를 다시 保證해 줄 제3의 再保證人을 요구
- ㉟ 再保證人을 요구하는 경우는 保險契約者의 신분이나 신용 및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다르나, 公務員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再保證人을 요구함.
- ㊱ 各종의 保證保險契約書 뒷면에는 제3의 連帶保證人의 保證約款을 규정하고 있음.
- ㊲ 처음의 保證保險契約이 再保證人 없이 締結된 경우, 이를 다시 更新하는 때에도 역시 없이 締結함.

5. 調査結果分析

(1) 保險慣行의 形成에 있어서의 保險募集人의 役割

○ 保險會社營業所등에서 保險募集人에 대하여 敎育을 실시하지만 실제 보험모집에 있어서는 실적과 배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保險募集人들의 行態가 保險實務運營과 慣行形成에 중대한 變數임

(2) 海上保險의 國際性과 調査方法論

- ① 주지하는 바와 같이 海上保險分野는 實定法規 또는 國內去來實務보다는 國際去來慣行이 대부분을 차지함
- ② 이 分野의 調査는 별도의 體系와 方法을 援用하여야 할 것임

(3) 再保證의 一般化와 問題點

- ① 保證保險에서 被保證人에게 제3의 保證人(새끼보증인)을 세울 것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하는 慣行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
- ② 이는 保證保險이 窮極的인 保證責任을 지지 아니하면서 保證債權債務關係에 개입하여 債權者의 便宜와 保證保險社의 營利를 추구하는 결과를 빚음.
- ③ 保險料, 保險期間, 再保證人(연대보증인)의 責任限界, 契約內容에 관한 說明義務 등에 관한 紛爭의 소지를 막기 위한 체계적 분석 요망

(4) 自動車保險 등에 있어서의 새로운 慣行形成

-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운용과 관련하여, 自動車保險 또는 控除組合의 業務處理慣行은 기존의 保險慣行과 또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음.

6. 調査所感

- ① 保險市場의 特性 比較 : 損害保險市場은 비교적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生命保險市場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음.
- ② 理論의 一般化를 위한 參與觀察의 擴大 要望 : 극히 제한된 범위의 예비조사만으로 保險慣行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기 곤란함. 保險募集人들을 중심으로 한 面談과 事例研究가 광범위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蒐集資料目錄

- 生命保險契約을 둘러싼 問題點(대한생명보험, 1989., 번역본 214쪽)
- 約款과 保險商品(생명보험협회, 1986., 322쪽)

- 大韓生命保險(株) 諸約款：노후설계연금보험, 새가정복지보험, 평생건강보험, 대한무지개보험, 건강생활보험
- 同社規集 中 保險事故審査委員會規程, 契約者貸出規程(約款), 募集人規程, 個人保險契約查定 및 選擇規程, 團體保險契約查定 및 選擇規程
- 海上保險約款目錄(국제화재해상보험, 1973., 번역본6쪽)
- NOTE ON GENERAL AVERAGE(RICHARDS HOGG INTERNATIONAL ADJUSTERS, 1981, p.40)
- RULES OF PRACTICE(AAA. 1981, p.32)
- 大韓保證保險(株) 諸請約書：이행(하자)보증보험청약서, 이행(차액)보증보험청약서, 이행(입찰)보증보험청약서, 공탁보증보험청약서
- 韓國保證保險(株) 諸請約書：주택마련보증보험청약서, 인허가보증보험청약서

第4節 輸出 및 運送

1. 調査計劃

- ① 綜合商社, 中小貿易會社, 運送會社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관계서류 조사
- ② 國際去來慣行의 目錄 作成
- ③ 訪問豫定機關：주식회사 鮮京 기획관리실 법무팀, 주식회사 輝羅貿易 營業部, EAC graphics 營業본부, 天敬海運株式會社 기획실 해사과

2. 調査經過

- ① 예정된 시간내에 조사대상기관들을 방문하지 못함
- ② (株)輝羅 營業部の 金 燮 次長을 面談(1991년 12월 28일)하여 中小貿易會社의 輸出關係 慣行을 파악하였고 運送關係자료는 보험관행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던 趙成根 損害查定人과의 면담資料에서 가려 뽑았음.

3. 調査内容

(1) 商品輸出 및 通關

1) 클레임 處理

- ① 物品瑕疵 클레임보다 物品引導遲延 클레임(delivery claim)이 많음.
- ② 클레임 件數 增加 추세
- ③ 클레임 때 원칙적으로 L.C. amend 내지 E.L. amend를 해서 價格을 引下시킴(종합상사 또는 대규모 거래시에는 이 방식으로 처리).
- ④ 시간적 여유 없거나 小規模 繼續的 去來關係에서는 30% 정도를 현금으로 結재하고 70% 정도는 다음 order에 連結시킴.
- ⑤ 이는 결국 輸出單價의 低下 사태를 초래하지만 정부통계에는 1% 정도만 집계됨.

2) 輸出免狀 發給回避

- ① 免狀을 떼면 輸入先에서 물건을 받았음을 우리 稅關에 보고해야 하는 등 사후처리가 번거로워 면장발급을 회피하는 경향 있음.
- ② 한국 稅關에서는 “보따리”장사들의 물동량까지 체크하기 위해 일일이 免狀을 요구함(輸入先 국가에서 샘플 물량을 키퀃에 계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 ③ 상품 샘플 발송시 면장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1989년부터 항공운송 회사에서 약간의 操作을 행함. 면장 면제 기준인 10장 미만으로 샘플을 分割하거나, 스타일別 여러 피스(piece)를 세트(set)로 처리하고 이것을 피스로 포장 발송함. 때로는 수량표시를 줄이기도 함.
- ④ 發送物의 자세한 內譯은 상대방에게 국제 팩시밀리로 알려 줌.

(2) 海上運送

- ① 運送人의 對貨主責任 :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수반하는 契約上의 責任問題에 관하여는 헤이그 Bisby Rule을 계약상의 準據法으로 삼아 船荷證券의 文言을 따짐
- ② 共同海損 條項 (商法 제832조, 제833조 등) 死文化 : 1950년 및 1974년의 York-Antwerp Rules을 적용
- ③ 船舶衝突 : 불법행위상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準據法 합의 및 管轄

法院 합의등은 계약적 성격의 문제이지만,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987년의 Lisbon Rules을 채택하는 수 있음.

4. 調査結果

- ① 延拂賠償 : 소규모 또는 계속적 국제거래관계에서 볼 수 있는 이 형태는 중소기업회사의 수출관계 클레임에서 보편화된 관행임
- ② 追加調査分野 : 수출상담 및 계약체결, 수출금융, 수입품유통, 클레임
- ③ 運送關係調査源 : 한국해운편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연간)

第3章 團體・機關別 調査

第1節 企 業

1. 勞動慣行 事例調査 : 한국수출산업공단 (株)프라코

調査協力 및 提報 : 吳世俊 (남, 37세), 종사업종(제조업)
종사기간(7년), 사업장연혁(47년)
주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직위(총무과장), 전화(856-8141~5)

調査日 : 1991. 12. 13

調査者 :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1) 事前調査項目

1) 調査對象概觀

① 略 史

- ㉠ 1945 회사설립(대한잉크제조공사)
- ㉡ 1954 상호변경(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 ㉢ 1971 계열사 대한조화(株)와 합병 (프라스틱사업부 발족)
- ㉣ 1989 프라스틱사업부가 (株)프라코로 독립

② 主要從事分野

- ㉗ 플라스틱 제품 : 자동차범퍼, In-Pannel, O.A부품, 의자등
- ㉘ 플라스틱 금형 : 자동차금형, 전자금형등
- ③ 人員・資産規模 : 550명, 180억원
- ④ 同種 業種中 차지하는 比重・順位의 大綱 : 매출고 3위
- ⑤ 上位 監督機關 또는 協助機關 : 노동부

2) 周邊與件/環境

- ① 關聯協會 또는 組合活動 有無
 - ㉗ 會社 : 經總,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금형협동조합, 가구협동조합
 - ㉘ 勞組 : 한국노총·화학노련
- ② 關係 行政廳에서 행하는 主要 行政指導 事項 : 일반지도

(2) 慣習調査總目

- ① 認知度 : 대부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② 依存度 : 실정법·관행을 따름은 '노조' 때문임
- ③ 實效性의 源泉 : 주로 노조의 힘. 부득이한 경우 회사의 특수여건을 감안하기도 함. 특수여건은 日日交代가 아닌 週2交代 체제이므로 부득이 실정법상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임금관계등 때문에 實定法을 어기기도 함.

④ 變遷史 : 6·29선언(1987. 6) 이후 노조설립

⑤ 提 言

㉗ 현재 노사관행이 定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盲目的으로 따르는 경우도 있음. 他會社의 관행, 특히 強性勞組 회사의 파급효과 큼.

㉘ 勞動部 근로시간 집계에 의문 있음. 예컨대 대부분의 기업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休憩時間도 임금지불대상이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음. 실제로는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음.

(3) 慣習調査各目

1) 勞動組合結成

○ 대부분 노동조합 설립은 회사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창립총회는 設立申告 以後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

2) 勤勞契約

① 현재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행하는 근로계약은 要式化된 書面에 근로자의 기명과 날인으로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임

② 일용직, 臨時職의 경우에는 일당 얼마라는 口頭契約으로 처리하고 있음. 설령 서면화하는 경우에는 完全要式化.

③ 근로계약상의 임금, 보직등은 入社時의 것만 근로계약서에 기장하고 그 이후의 變動事項은 別途의 인사기록에 기재·보존하고 있음.

3) 就業規則

① 대부분의 회사들이 ‘就業規則’이라는 제목의 규정외에 人事規程, 賃金規程, 手當規程 등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規程들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 ‘就業規則’이란 타이틀의 규정만 勤基法上的 就業規則으로 인정하여 法上的 要式節次를 따르고 있음

② 就業規則의 變更: 노조가 없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종업원의 의견수렴 없이 内部決裁로 개정하는데 근로조건을 低下하는 개정도 행해짐

③ 就業規則의 實效性·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의 잦은 개정으로 취업규칙은 사실상 死文化되었음.

4) 休業支拂 (勤基法 제38조)

○ 法은 휴업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但書의 경우외에는 사실상 휴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왜냐하면 휴업시 평균임금 70%지급은 정상출근시켜 놀리는 경우보다 놀면서 급여를 더 많이 받아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임. 平均賃金에는 상여금·연월차수당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큰 경우 平均賃金의 70%는 통상받는 月給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됨. 현재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그러함.

5) 無勞動 無賃金(No Work, No Pay)

○ 罷業이 종료된 경우 과업시의 임금지불문제로 또다시 분규에 돌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無勞動 無賃金은 사실상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임. 극히 일부의 회사에서만 이를 관철시키고 있음. 노동분규로 인한 無勞動의 경우에는 ‘無勞動有賃金’이 일반적임.

6) 勤勞時間(製造業의 경우)

① 基準外 勤勞時間(O/T) 즉 勤基法 제42조(당사자 합의의 경우에는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인정)에 비하여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

② 2交代 勤務하는 경우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에 달하여 토요일을 無殘業(일반적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음.

㉔ 주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작업분량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㉕ 女子의 경우(勤基法 제57조, 주6시간, 연150시간 초과근로금지)에 超過勤勞위반은 더욱 심함. 특히 年間超過時間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아니함.

㉖ 休憩時間: 대부분 기업체가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상이함.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하고 있음. 특히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

7) 休 日

㉗ 일반기업체의 대부분이 '官公署 休日規程'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심지어는 관공서 휴일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업체도 있음.

㉘ 休日과 休暇의 구분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음(勞組의 주장임). 휴가시의 근무는 통상임금 50% 割増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임.

8) 職業訓練分擔金

㉙ 職業訓練分擔金은 그 제정취지와는 달리 사업계획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사실상 準租稅化하고 있음.

9) 産災休業給與

㉚ 産業災害로 인한 휴업시의 휴업급여(産災法 제9조의 4: 평균임금의 70%)는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그 이상의 替當支拂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㉛ 休業給與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예컨대, 賞與金支給期間사이의 휴업은 통상의 월급보다 더 많이 수령하게 되는 矛盾이 발생되고 있음. 대부분의 대기업체가 이에 해당됨.

10) 整理解雇(勤基法 제27조의 2)

㉜ 이는 경영상 부득이한 때에만 행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기업체의 幹部級이상(일반적으로 과장급이상)에 대하여는 경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도 경영층의 專斷에 의해 감원되는 것이 일반적임.

② 과거 整理解雇(減員)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으나, 최근 大法院 判例가 經營合理化를 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1) 斡旋·調停등의 利用

① 현 노동조합의 勞動委員會에 대한 不信으로 斡旋·調停 등의 제도의 이용을 忌避하고 있음.

② 회사측의 입장에서는 勞動委員會에서 요구하는 자료량에 비해 알선·조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爭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12) 不當勞動行爲(勞組專任者에 대한 회사에서의 임금지급)

○ 勞組專任者에 대한 임금지불을 회사측에 요구함은 법률상 명백히 不當勞動行爲(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임에도 대법원 판례등은 이를 적법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6·29이후 설립한 노동조합의 專任者 給與는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태임.

13) 勞使協議會의 運營(勞組設立企業의 경우)

○ 노사협의회의 운영은 대부분 團體交渉의 연장책으로 이용되고 있음. 特別賞與金, 떡값, 선물등의 요구를 위한 기구로 이용됨. 불응시 불법쟁의 행위인 殘業拒否등을 야기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2. 漁撈慣行 事例調査 : (株) 東 南

所在地—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89-5

(1) 調査經過

① 事前調査 : 부산 소재 원양어업회사 (株)東南에 근무하는 고학근(38세 :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440번지)과 전화로 접촉하여 어로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慣行이 있음을 확인(1991년 12월 6일)

② 面談 : 2년간의 出漁(어장 : 포클랜드)에서 돌아 온 당해 회사 선박(제510동영호 : 350톤 : 선장 우종균)의 선원들과 회사측간에 生産賞與金を 둘러싼 紛糾가 있어 정부고위층에 이를 진정하여 해결할 목적으로 상경한 같은 선박의 禹奉燮 감독원(노사협상대표의 일원, 40세 : 경기도 안산시 사동 1152-2)을 12월 9일 및 12월 26일에 만나 漁撈契約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서류의 사본들을 입수하였음.

③ 調査者：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2) 調査内容

1) 法 源

○ 水産業法 및 同法 施行令과 漁撈契約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水産業 慣例에 따름.

2) 操業慣行：二重漁場 형성

① 허가사항：트 롤

② 실제추가：채낚기(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밤에 작업)

3) 漁撈契約 締結

① 회사측은 월급의 70%를 待機費로 지급하여 인력을 확보한 후 출국 직전에 2개월분 급료를 주면서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함.

② 선원들은 이미 出漁를 상당기간 동안 기다리던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계약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임.

4) 利益配當과 契約解釋

① 2년간의 總매출고(세관보고 어획고 3,025톤)에서 조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生産賞與金으로 분배(일시급). 여기에서 月생계비, 상륙시 용돈, 명절 떡값, 식대 등의 中間給與(총6백-7백만원선)를 공제한 것이 실제 수령액임(선원들은 이를 利益配當으로 이해함).

② 회사측이 통상 利益配當金으로 제시하는 액수는 약8백만원선이며 선원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약25%선인 약1천6백만원선

③ 회사측은 契約書上의 규정대로 할 것을 주장하고 선원측은 매출고 10억 단위 상승시 마다 2%씩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

④ 회사측은 매출액(수양고) 50억 이상 生産賞與金 12%라는 어로계약상의 규정을 上限으로 봐서 70억 이상에도 역시 12%를 적용하고자 하고 선원측은 이를 例示規定으로 보고 10억 단위로 2%씩 증액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

5) 精算過程에서의 調整과 配當事例

① 양측의 상이한 주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보통 제2차 精算實施 즉 회사측이 제1차 精算에서 제시한 조업비용을 협상대표들이 정밀검토하여 과대계상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시켜 비용절하를 시킨후 다시

배당액을 정함

② 대개는 이것으로도 절충선에 도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私財 9천여만원을 출연하고, 또 총매출액의 1%를 보수로 받는 선장의 몫(보합율 2.5%~3.0% 추가, 약 3억정도) 중 가불금을 빼는 방식을 취해서 稅額을 감액시킨 다음, 이를 다시 선원들에 대한 배당금액으로 할당함

[決算例 1] 1990년 같은 회사 소속 선박 동은520호의 경우 총매출고 71억원에 주감판원 이익배당액 1550만원(고학근의 진술로는 1,650만원, 회사측 자료에는 1,230만원으로 기재).

[決算例 2] 1990년 동원산업(株) 동원520호(450톤)의 경우 총매출고 73억원에 주감판원 이익배당액 1,950만원(총매출고로 환산하면 약 26%에 해당됨)

③ 선원들의 主張에 의하면, 회사측은 16.5킬로그램들이 팬에 1킬로그램 이상을 더 담아 팔고 서류상으로는 15킬로그램으로 표시하여 약 740톤의 어획고를 증발시켜 이득을 올리기도 함. 회사측은 이러한 차액을 채납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相計하는 것으로 생각함

6) 配當協商

① 조업중 어획고가 약 35억(세관에 보고된 어획고 2,835톤)에 다다른 시점에서 향후 50억이 훨씬 초과될 것이 예상된다며 선원들이 재계약 체결을 요구(60억에 3% 추가, 70억에 5% 추가 요구)하며 농성조짐을 보이자(계약상으로는 集團行動 금지), 선장은 다른 선박들의 결산례를 들며 선원들의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을 約束(귀국후 불이행)

② 배당을 위한 정산을 목적으로 협상대표단이 구성되지만 勞組 次長에게 협상을 일임함. 협상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차차 說得되는 경향이 있고 또 시간경과와 더불어 선원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③ 이러한 배당협상은 원양어업계에서는 年例行事로 간주됨. 해마다 순조로운 협상은 찾기 어려우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으레 농성과 실력대결로 치달음.

(3) 參考資料

遠洋트롤漁撈契約書 (船名 제510동영호:(株) 東南)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89-5번지 소재 주식회사 동남 대표이사 윤명

길(이하 “甲”이라 칭함)과 제510동영호(이하 “本船”이라 칭함)의 전체 선원으로부터 본 契約締結의 委任을 받은 우종균(이하 “乙”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이 遠洋 트롤 漁撈契約을 체결한다 :

제 1 조 : 基本條件

“갑”은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갑”의 소유어선 제510동영호 어구 및 조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을”은 조업중 선박의 보존, 어구관리, 경비절약, 어획물의 가공 및 제품관리, 운반등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상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 조 : 契約期間

선원의 취로기간은 初出漁日로부터 24개월로 하며 어황 및 기타여건에 따라 “갑”, “을”이 합의하여 2개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3 조 : 契約期間중의 船員 諸支給金

1) 基本給 : “갑”은 “을”에게 “을” 및 선원가족 생활비조로 별표(1)의 직급별 기본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지불하며 선원법 및 노사협약서에 명기된 기본급임을 상호 확인한다. 단, 본 계약기간중 추가로 기본급의 인상이 있을 때에는 인상분을 가불로 처리하고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다.

2) “갑”은 “을” 및 선원의 기본급에서 제세공과금,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선원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3) 借用金 : “갑”은 “을”에게 初출어시 월차생계비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과 별도로 전도금 형식으로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上陸費 : “갑”은 “을”에게 每航次 종업종료 입항시 하기 기준에 의하여 상륙비를 가지급 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선장 \$100, 사관 \$60, 준사관 \$40을 지급하고 일반선원은 \$30을 지급한다. 단, 航次라 함은 300M/T 어획시점을 항차로 계산한다.

5) 退職金 : 1년이상 계속 승선한 자에 한해서 선원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조 : 生産賞與金

1) “갑”은 “을” 및 선원이 어로경비를 절감하고 그 계약기간을 원만히 종료하였을 경우 별표(2)의 항목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아래와 같이 생산상여금을 지급기로 한다.

수양고	생산상여금	비 고
20억 이상	8%	본상여금에 불구하고 '89년
40억 이상	10%	노사협약에 따른다.
50억 이상	12%	

상기 상여금은 “갑”의 추인을 받은 “을”이 정한 각 선원의 능률에 따른 배정비율에 의하여 지급된 차용금, 상륙비, 기타 가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선원상여 배정율은 노사협약서에 규정된 별표(3)에 의하여 선장이 결정한다.

2) 선원상여 배정율은 47인몫을 초과할 수 없다.

3) 中途귀국 또는 中途하선자에 대하여는 본 생산상여금은 배분치 않으며, 中途귀국자에 대한 既가불로 지급된 금액은 개인상여 배분율 지급액이 既가불로 지급된 금액을 초과 못할시, 정산시 상여금의 총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또한, 中途귀국자의 귀국여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귀국자에 한함).

4) 轉載督勵費 : 어획물 해상전재시 전재독려비조로 M/T 당 \$ 6.50을 전선원 몫으로 지급한다. 단, M/T은 판매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5 조 : 1) 總精算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후 귀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에 따라 총정산을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미착분에 대하여는 가정산후 증빙서 도착 4주일내에 완전정산한다. 단, 소득세법 제57조 10항의 조정에 의한 금료확정은 매년도 말마다 확정 계산한다.

2) 中間假精算

“갑”은 “을”이 初출어한 날로부터 정상조업을 기준하여 1년에 1회를 하되 그 시점이 항차중인 경우는 항차종료후에 하며 중간정산금은 별표(1)의 기본금의 3개월분을 중간수리 종료후 지급키로 한다. 이때 가지급된 차용금의 50%를 공제한다.

제 6 조 : 引受引繼 및 船舶修理, 漁具整備

1) 引受引繼(생산상여금 계산시 적용)

가) “을”은 선박교체시 “갑”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본선”의

정확한 인수인계를 하고 “을”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종료후 최종정산시 인수인계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본선 발주금 재고에 대해서는 발주당시 최종 인보이스 가격의 70%만을 인정하고 그 중고품에 대해서는 40%을 인정, 정산에 반영한다.

다) 교체시는 인수자, 인계자 양자간에 정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물품과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여 구분작성 인수인계키로 하며 이 때 쌍방협의된 물량에 대해서만 상기(나)항의 규정에 의거 최종 정산에 반영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과 물량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전량 인계자(발주자)의 발생 경비로 처리 정산함.

제 7 조 : 漁獲物 販賣 및 船用品 사입

“本船”에서 어획한 어획물의 판매는 “갑”이 하고 “본선”에서 필요한 물품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입한다.

제 8 조 : 契約期間중의 遵守事項

- 1) 계약기간중 “을”은 여하한 명목의 파업이나 쟁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2) “을”의 과실로 인하여 隣接國 영해, 기타 국제법상 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 3) “을”은 계약기간중 범법자 이외에는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로 下船, 轉船, 歸國시킬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시는 “을”이 변상하여야 한다.
- 4) “을”은 “갑”의 승인 없이 他社 소속 승무원을 일방적으로 취무케 할 수 없다.
- 5) “을”은 본선이 어획한 어획물을 “갑”의 승인 없이 불법판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변상한다.
- 6) 선박의 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船需品 구입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를 통하여 구입해야 한다.

제 9 조 : 漁場開發 및 漁場移動

“갑”과 “을”은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漁期에 따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타어장으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갑”의 지

시에 따라 “을”은 즉시 어장이동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갑”과 “을”은 수익성이 있는 신어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 조 : 漁獲增進을 위한 其他事項

“갑”과 “을”은 어획을 증진하고 그 상호간에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主 어업이외의 他漁法을 병행 조업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 公課金 徵收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중에서 “갑”이 징수의무자로 되어 있는 모든 공과금은 “을”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

제 12 조 : 損害賠償

“갑”과 “을”은 상호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시는 피해자에게 상호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 기타

本계약 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水産業慣例에 따른다.

1989.

“갑”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89-5번지
주식회사 동남 대표이사 윤명길

“을” : 제510동영호 선장 우종균

第2節 同業組合 事例調査 : 金泉煉炭合同契

1. 調査經過

① 경북 북부지역 도시 중 김천, 구미, 영동 소재 연탄회사들은 地域獨占상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회사에서도 流通構造面에 있어서 寡占現狀을 보임.

② 中間都賣 및 配達을 擔當하고 있는 事業者들이 團體를 組織하여 排他的으로 流通構造를 장악하고 있음.

③ 이러한 團體들은 親睦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商人相互間의 販賣組合으로서 慣行上의 既得權을 배경으로 競爭者의 參入을 制限하며 實際運營은 일종의 契처럼 행해짐.

④ 이러한 事例를 調査하기 위하여 김천합동연탄차량친목회 鄭萬碩 組
合員(32세:경북 김천시 남산동 173-6)과 面談하였음.

⑤ 調査日: 1991년 11월 10일

⑥ 調査者: 本院 責任研究員 全在慶

2. 調査內容

(1) 契約 形成과 獨占의 營業權 保有

① 1984년 종전에 김천합동연탄공장에서 直接 經營하던 운반용차량
26대를 個人들에게 讓渡하면서부터 販賣網 獨占이 시작됨.

② 사고로 다친 운전기사에게 車輛 運營受益權을 양도하고 연탄을 工場
渡價格으로 넘겨 준 것이 최초의 사례임.

③ 그 후 煉炭直賣者 또는 工場車輛 運轉士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營業
權 넘김.

④ 현재 契員數: 26명

(2) 營業形態

① 연탄공장은 工場渡 價格으로 契員들에게만 연탄을 공급함.

② 운반용 차량은 공장에 세워 놓아야 하며, 영업용 기름도 共同利用,
整備는 개인이 함.

③ 各契員은 차량 1대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차량대수를 늘려주지
아니함.

④ 契員(車主)은 모두 직매점 허가증(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⑤ 契員들은 直賣店 또는 散賣 방식으로 판매.

⑥ 自己直賣는 아침에 契員別 필요량 주문.

⑦ 他人直賣는 배달형식 취함(직매점에서 契에 전화하면 契사무실에서
배차를 함).

⑧ 散賣方式(주문 없음에도 불구하고 팔려 나가는 경우)은 혼자 하기
벅차거나 주문 없을 때(물량 점차 줄고 겨울철에는 이 방식이 10% 미만
임) 행해짐.

(3) 計算方式

① 他人直賣는 공장도가격에 도매마진을 더한 가격으로 넘기도록 하고
도매마진은 이를 공장내 合同契에 넘김.

② 장거리와 근거리의 수익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他人直賣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pool制로 운영됨. 출근자에 한하여 계산하고 월1회 受益均分(예컨대, 1991년 10월 한달 동안 출근자 1인당 130만원 배당)

③ 散賣와 自己直賣는 契員이 수익 독점. 다른 契員을 대동한 散賣는 利益半分

(4) 營業讓渡

① 타인에게 權利를 讓渡할 경우 그 타인이 회원자격을 보유함.

② 본래는 契에서 이 權利를 사야 하지만 운전기사가 없어 부득이 외부 車主를 영입하고 있는 실정임.

③ 契員은 권리양도시 다른 會員의 同意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讓渡事實을 契에 通知하여야 함.

④ 營業讓渡價額：車값 + 權利金 + 契金

(權利金은 약3백만원 정도)

(契金은 월회비 적립금 지분. 91년 11월말 현재 5천5백만원 정도, 따라서 지분가격은 260만원)

(5) 營業上的 葛藤

① 지역별 독점 영업권은 外地 事業者들에 의하여 이따금 침해됨.

② 工場主는 外地車에게도 연탄을 넘겨주어 수익을 더 올리고자 함으로써 때때로 契와 대립, 서로 反對行爲로 나아가기도 함.

3. 參考資料

金泉合同煉炭車輛親睦會 會則

第1條 本會는 김천 合同煉炭 車輛 親睦會라 칭한다.

第2條 本會는 會員 상호간의 親睦을 도모하고 外地煉炭 搬入을 防止하며 政府告示價格을 遵守함은 물론 相扶相助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김천합동연탄에 출입하는 2.5t 이상 차량 소유자를 會員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會長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 配車 1명, 이사 8명의 任員을 둔다(總務·配車는 상주근무로 월급을 지급한다).

第5條 本會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6條 會長은 會運營을 관장하고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 會長職을 代行

하며 總務는 庶務 및 經理를 擔當, 配車는 주문에 있어 배차를 하고 監事는 監査結果를 總會時에 報告한다. 理事는 會運營의 모든 案件을 理事會議를 거쳐 처리한다.

第7條 定期總會는 년1회로 하고 매년 6월로 하되 장소와 시간은 理事會議에서 결정하여 總務가 通報한다.

第8條 定期總會의 經費는 本會에서 支出한다.

第9條 本會의 月會費는 2만원으로 한다.

第10條 會員 直系 慶弔事 吉·凶事間 金값을 기준하여 2돈으로 계산 現金으로 지급한다('87. 6. 28에 수정)

直系가 혜택을 받지 못할 會員은 本人의 要請에 따라 支拂할 수도 있다. 가까운 친척은 執行部에서 판단하여 祝·弔意金을 1만원으로 정한다('85. 12. 15, 理事會에서)

기사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喪을 당했을 경우에는 3일간 휴가를 준다. 단, 尊卑屬의 혼사나 회갑일은 1일로 정한다.('86. 3. 5, 理事會에서)

第11條 本會 運營資金 및 收入金은 總務名義로 金融機關에 예치한다.

第12條 本會 理事會는 과반수 이상의 出席으로서 會議를 開催할 수 있고 모든 會議決議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第13條 本會는 26명중 월수입금의 配當金을 차등없이 지급한다(86. 6. 29, 총회시 修正).

第14條 전 회원은 親切과 奉仕精神을 갖고 직매나 소매업에 종사하여 야 하며 시내직매는 시외판매를 일체 統制한다.

第15條 本會의 운영상 시내의 직매점에 판매 및 산매에서 얻어진 이익 金을 일일 決算 기록하고 그 이익金은 매월 3일에 決算配當한다(단, 決算日은 다소 변경할 수도 있다).

第16條 本會를 離脫한 자에게는 徵收한 會費를 일체 返還치 않는다.

第17條 本會 離脫者라 함은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월회비 3회이상 未納者
2. 外地炭 搬入者
3. 政府告示價格 違反者(2층이상이나 高地帶는 제외)
4. 無斷 離脫者

5. 本會의 名譽를 損傷시켰거나 正當한 理由없이 反抗한 자
- 第18條 本會員이 金龍軍을 移住하여 연탄업을 계속 못할 경우 移住者의 車輛을 時勢에 맞는 正當한 價格을 주고 회에서 引受한다.
- 第19條 出勤하여 連탄수송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 차주, 조수 등 모든 分들은 事務室指示에 絶대 服從하며 이에 不應할 시는 어떤 措置를 하여도 反抗할 수 없다.
- 第20條 連탄판매중 業務上 過失로 자동차 停止기간은 운전기사가 出勤하면 配當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 第21條 運轉免許 停止時는 停止期間동안 타운전기사를 代치하여야만 配當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 第22條 車輛故障과 廢車로 인하여 지나는 日수는 配當金을 支給받을 수 없다(단, 事故車輛은 사고처리기간동안 기사가 出勤하면 3일간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 第23條 連탄산매시 外上을 주되 약속날짜까지 責任지고 外上준 者가 수금케 한다. 만약 수금치 못하면 그 회원의 配當金에서 控除한다.
- 第24條 직매점에 外上은 일체 금한다.
- 第25條 운전기사 採用은 전회원의 2/3 이상 찬성하에 採用한다.
- 第26條 車輛檢査는 갑종, 을종 점검일 各 1일로 정하여 配當金을 支給하되 事務室에 檢査證을 提示하고 檢査에 임하여야 한다.
- 第27條 차량 보링時는 3일간으로 한다.
- 第28條 매월 運營費는 金6만원~金9만원으로 하되 事務室에서 支給키로 한다.
- 第29條 운전자 出勤時間은 오전 7시 30분으로 하며 退勤時間은 事務室 指示에 絶대 따른다.
- 第30條 會員 中에서 車輛을 賣渡할 경우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 第31條 本會則은 定期總會때 修正 補強할 수 있다.
- 第32條 本會則은 서기 1984년 6월 1일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1985년 6월 23일 총회시 일부 수정

1986년 6월 29일 총회시 일부 수정

1987년 6월 28일 총회시 일부 수정

第5編

結論(中間評價 및 展望)

第1章 慣行 및 慣習法 調査의

意義 및 期待效果

第2章 現狀과 特性

第3章 假說과 推論

第4章 接近方法上의 諸問題

第5章 代案 및 展望

第5編
結 論

— 中間平價 및 展望 —

第1章 慣行 및 慣習法 調査의 意義 및 期待效果

1. 法秩序의 提高 : 現行法制改善

短期的인 觀點에서 볼 때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調査研究는 ‘묵은 것’의 調査研究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行의 法秩序와 制度의 改善에 기여한다.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調査研究는 過去의 法的 行態에 관한 調査研究에서 출발하여 現在의 法的 行態에 주목하며 未來의 行態變化를 豫測하는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예컨대, 勞動分野 내지 個別市場에 있어서의 慣行調査結果는 現행 實定法規의 상당부분이 立法機關이나 法執行機關들의 의도대로 運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經濟政策의 방향이 經濟與件의 변화와 상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法規가 추구하는 理念과 規律對象間的 葛藤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慣行과 慣習法에 관한 調査研究는 한편으로 法과 經濟와의 關係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實定法規의 實效性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2. 歷史의 脈 : 過去의 再構成과 次世代에의 傳授

“過去의 歷史는 現在의 歷史”이며, “時代가 바뀌면 歷史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歷史的 觀點에 입각한다면, 우리의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調査研究는 過去의 法律生活에 관한 研究를 통하여 現在의 그것을 분석하며 現在의 法律行爲모델을 提示하기 위하여 過去의 그것을 再構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再構成이 過去의 記錄과 口傳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法律生活에 관한 元老들의 記憶을 採錄하고 現在의 行爲모델을 整理하여 두어야 한다.

村落地域의 傳來 法意識과 傳統的 法律行爲모델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일면 現在를 支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航海中인 船舶 後尾의 方向舵가 그 船舶의 進行方向을 알려주듯이, 村落地域의 전래의 단순한 法律行爲모델은 未來 韓國人의 法感情과 行爲모델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의 法律行爲모델 그것은 法律生活의 脈을 이어가는 '고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調查研究은 現在를 위한 그리고 未來를 준비하는 通時的 設計이다.

3. 法學研究의 基礎 確立 : 法律生活實態 把握

社會科學으로서의 法學은 經濟學 못지않게 實用性을 생명으로 한다. 또한 法律의 世界는 紛爭의 예방과 다툼의 연속이다. 한편 實際의 다툼이 언제나 成文法規의 規定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不文律에 의하여 支配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法學 내지 法制 研究은 理論窺明과 典籍研究에 못지 아니하게 實際의 다툼에 관한 調查와 觀察을 주요한 요소로 한다. 慣行 및 慣習法 調查研究은 不文律을 근거로 한 法律生活과 脫法行爲의 實態에 관한 調查研究을 중심으로 진행함으로써 法學 내지 法制 研究의 基礎確立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이번 豫備調查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우선 現實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村落地域의 提報者나 調查協力者들은 成文法規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法律生活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음에 都市地域의 調查協力者나 提報者들은 해당분야의 成文法規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규정을 일탈하거나 우회하지 아니할 수 없는 法現實에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法學 내지 法制 研究가 國民의 法律生活에 관한 實態調查에 보다 커다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第2章 現狀과 特性

1. 調査對象의 廣範性

慣行 및 慣習法은 地域的으로는 全國을 調査對象으로 設定하여야 하고 有形無形의 市場들을 調査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各 機關과 團體까지 포섭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對象性이 대단히 廣範圍하다. 또한 市場이나 團體에 대한 調査의 경우에는 特定한 主題들에 관한 部分調査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만, 地域調査의 경우에는 域內 주민들의 生活領域 全般에 걸치는 慣行과 慣習을 調査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全數 調査方式으로 접근하게 된다.

이 豫備調査를 통하여 확인된 바도, 調査地域마다 그리고 市場이나 團體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나뉠대로의 특성있는 慣習을 行爲準則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村落自治分野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慣習들(예컨대, 水火不通, 部落總會)이 존재하지만, 親族相續이나 物權 등의 分野에 있어서는 生活圈(예컨대, 郡단위, 濟州道の 경우에는 自然部落單位)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모습의 慣習들이 존재한다. 市場의 경우에는 재래식 지역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分野別(예컨대, 증권, 금융, 부동산, 무역 등)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主題單位의 독자적인 慣行慣習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團體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회합 내지 설립 목적에 상응하는 行爲準則들이 成文法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다.

2. 分權化의 影響

이 豫備調査를 통하여 관찰된 바, 慣行 및 慣習法의 生成과 消滅 그리고 執行 및 變容은 어느 分野에 있어서나 일관되고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門中の 경우를 제외하고는 市場이나 團體 가릴것 없이 各 圈域別로 완전히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門中の 경우에 있어서도 段階的인 審級制와 같은 位階構造는 이번 調査에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村落地域의 경우, 州縣鄉約 내지 鄉規의 施行 그리고 洞契와 村契 概念

의 分化 등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執權化의 시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까 하는 推定이 가능하지만 이는 추후의 調査課題로 남긴다.

市場이나 團體의 경우에는 聯合會 또는 協議會 같은 全國單位의 利益團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통일된 慣行이 존재할 것이라는 假說을 설정하였지만, 公的인 性格이 강하여 行政府의 直接的인 規律을 받는 사례(예컨대, 利子 또는 證券投資收益)가 아닌 한, 개별적인 베이스로 처리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慣行이 脫法 또는 不當에 가까운 것일수록 두드러졌다.

3. 多樣化

이 豫備調査에서 초기의 예상과 달리 調査팀을 난처하게 하였던 점은 調査項目의 多樣性이었다. 교과서의 개념들과 法典上의 項目과는 달리 또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法律關係들(예컨대, 村落地域에서 紛爭豫防機能을 갖는 禁忌 또는 呪術, 都市商街地域에서의 權利金의 構成要素 또는 同業組合에서 나타나는 地域獨占體制 등)은 처음부터 調査設問紙에 나타낼 수도 없었고 面談 중에 當事者가 그것을 法律問題로 認識하여 자발적으로 지적해 줄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종래 迷信으로 차치하였던 要素들이 法的인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는 觀點의 변화와 더불어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넓게는 우리 社會經濟의 규모 팽창과 더불어 각 영역이 細分化되고 人情主義보다는 合理主義 내지 商人精神에 바탕을 둔 營利追求가 철저히 됨으로써 빚어지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舊韓末 우리 정부와 일제가 慣習調査事業을 전개하였던 20세기 初와 비교할 때 우리 慣行 및 慣習法의 土壤 자체가 상당히 변모되었음을 의미한다.

4. 短期化

慣習法이 成立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行爲樣式이 反復될 것을 요한다. 靜的인 農耕社會에서는 이러한 慣行의 반복이 대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 第1次年度에 방문한 調査對象村落들에서도 이러한 오랜 기간동안의 ‘反復’이 여실히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調査事項들에 있어 시대적인 획을 긋기 어려운 정도(예컨대, ‘윗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또는 ‘옛날

부터' 등)의 認識들이 表出된다.

그러나 都市地域, 市場 또는 團體 등에 있어서는 貿易과 관련하여 國際的으로 형성된 慣習을 제외하고는 慣行(예컨대, 無勞動 無賃金)의 沿革 자체가 일천하고 그나마 단기간 내에 변동되는 양상(예컨대, 與信關係에 있어서의 抵當 및 保證方式 또는 어음手票關係에 있어서의 事故申告豫受金 등)을 띠었다. 요컨대, '오랜 기간 동안의 反復'이라는 要件은 成立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行爲準則들을 慣行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 짓기도 곤란하다. 일정 기간이나마 特定地域 또는 團體內部에서 분명히 行爲規範으로 當事者들 사이에서 遵守되었기 때문이다.

이 豫備調査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動的인 産業社會 내지 商去來關係에서는 慣行이 형성되는가 싶으면 곧 사라지고, "安定性を 확보하여야 되겠다"는 觀念이 보편화되는가 싶으면 關係機關에서 立法化를 추진하여 이를 成文法의 世界에 편입시킨다. 따라서, 적어도 거래의 신속을 요구하는 法律關係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의 反復'이라는 要件을 慣習法의 成立要件으로 내세울 경우, 엄연히 市場 또는 團體 內部의 行爲準則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慣習法 또는 成文法 어느 한쪽에 의하여서도 規律되지 아니하는 法律關係가 존재한다는 논리에 직면하게 된다. 法的 安定性이라는 측면에서 단연 앞서가는 成文法조차 빈번하게 改正되는 상황 속에서 慣習法만의 不變性을 강조함은 모순이다.

5. 轉移性

私的自治가 인정되는 영역이라든지 또는 慣習法에 일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關係法律이 의도적으로 慣習法의 존재를 승인하고 相互共存의 테두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強行法的인 성격을 띠는 法律關係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국가는 脫法的이거나 부당한 慣行을 되도록 제어하고자 한다. 適法하거나 正當한 慣行이라도 公益의 確保를 위하여 成文化化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慣行 또는 慣習法은 獨自的이라기보다는 다분히 從屬的이고 恒久的이라기보다는 轉移的이다.

이러한 현상은 市場別 調査에서 잘 관찰되었다. 예컨대, 證券市場의 경우, 監督機關에 근무하는 實務者 또는 責任者들이, 실제 去來關係에 있어

서 상당한 慣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慣行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고 認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당 慣行을 撤廢하거나 法規化시키겠다는 觀念이 의식에 저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慣行은 때로 實定法의 세계에 編入된다. 有償增資時 手數料 및 利子 代納制에 관한 規律 또는 부도난 會社債 등에 대한 包括責任의 變更 등이 그 실례이다.

6. 自生力

慣行 및 慣習法은 成文法規에서 구체적으로 授權하지 아니하여도 獨自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法院과 같은 國家機關에서 그 存在 및 效力을 承認하지 아니할 경우 慣習法の 존재여하가 문제된다.

第1차년도 調査에서 관찰된 바는, 域內 또는 團體의 構成員들은 慣習法の 要件을 거의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家機關에서 承認하기 때문에 慣習法이 效力을 갖는다고 보기보다는 조상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效力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提報者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적어도 村落地域에 있어서의 慣習에 대하여는 國家機關의 承認은 필요 없었다. 즉 國家機關의 承認 없이도 慣習法은 존재하고 效力을 발하였다. 慣習法에 의하여 規律되는 事案이 國家機關에 제출되는 사례가 오히려 희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다면, 慣行이나 慣習法을 成文法の 從屬物로 보고 國家機關이 이를 장악하여야 한다는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中央集權 國家의 成文法이 溫室 속의 花草와 같다면 慣行이나 慣習法은 ‘들풀’과 같다.

7. 歷史性

村落地域의 提報者들은 慣習法을 두고 ‘할아버지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慣習法の 전통은 洞民들에 대한 賞罰을 논하였던 洞祭의 歷史만큼이나 깊다. 숭배 대상인 枯死木 ‘숫대’가 언제까지 生木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口傳되지 아니한다는 상주 원흥리의 사례는 이러한 추정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慣習法の 전통이 항상 불변은 아니다. 歷史性이라는 개

념 자체가 時代性을 반영하는 包括概念이라고 본다면 이는 외려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村落地域의 提報者들이 한결 같이 전통 慣習法秩序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함은 우리 慣習法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변화에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야말로 도태되지 아니하는 방법이 기도 하다.

문제는 村落地域의 慣習 자체가 消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村落의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제시대 이후 自治의 斷絶이 미친 영향도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여하튼, 慣習法의 완전한 단절은 歷史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斷絶問題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第3章 假說과 推論

1. 慣習法의 退步와 法秩序의 動搖

村落地域에 대한 현지 豫備調査結果는 각지의 慣習法이 대체적으로 消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해당 지역들은 도로 및 교통수단의 발달, 전과 매체의 확산, 생업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開放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提報者들은 한결 같이 共同體觀念의 퇴조를 아쉬워하고 利己主義의 만연을 유감스러워하였다.

왜 共同體 觀念이 퇴보하고 있고 慣習法이 消滅되어 가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리고 이 양자의 相關關係에 관하여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慣習法이 퇴조된 村落地域에 있어서 法秩序上的의 空白狀態를 中央集權的 成文의 法秩序가 충분히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央集權的 規制가 傳來의 自治的 規制보다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洞民들의 의식 속에 비친 成文法 執行機構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村落地域에 있어서의 法執行 상황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統計資料가 불충분하여 이러한 動搖를 비교하기 곤란하나, 현지 提報者들의 증언을 종합한다면, 당해 지역들에 있어서의 秩序를 規律할 수 있는 제어장치(예컨대, 洞會, 門會 또는 元老)들이 規範 統制力을 상실함으로써 域內的 法秩

序가 동요되고 있다.

2. 土着慣習法：洞法 또는 洞規

村落地域에서 발견되는 洞法 내지 洞規는 한국 고유의 村落自治規範 이었다. 시시해 보이기조차하는 村落의 法文書들 속에 地方自治의 原形이 발견된다.

洞法 내지 洞規는 촌락조직 및 풍기규율과 같은 영역에만 국한되지 아니한다. 洞中 財産의 利用關係나 水利關係 등과 같은 物權關係도, 이것이 전체 주민의 공동체 질서의 핵을 이루는 한, 포섭한다. 公的扶助 및 勞動 그리고 紛爭解決 등과 같은 영역도 洞法 내지 洞規의 주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이러한 洞法 내지 洞規의 沿革 및 法律關係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이것들이 英美法에서 말하는 이른바 ‘國法’(the law of the land)의 원형과 비교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州縣鄉約, 鄉規, 洞契, 村契 相互間의 位階秩序 여하 등에 관한 深層的 研究가 병행되어야 한다.

3. 慣行과 慣習法の 境界 模糊

第1次年度 調査 初期에는 慣行과 慣習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調査를 進行하였다. 양자의 구별이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곤란성은 현시점에서조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慣習法の 행위적 측면을 부각시켜 ‘慣行’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本院調査팀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成文法에도 重層構造가 存在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교적 沿革이 짧고 法的 確信 내지 規範力이 떨어지는 것을 ‘慣行’으로 이해하고 慣行이 무르익은 것을 ‘慣習法’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調査 내지 觀察 資料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분별은 훗날의 理論研究者들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現地調査에서 체험한 바는 이러한 구분조차도 어렵다는 점이었다. 調査協力者나 면담자들은 이러한 경계구분을 아예 생소하게 여겼다. 村落地域에서의 慣習法은 오래된 것들이었으나 상당 부분 規範力이 떨어져 있었다. 都市地域 또는 市場 및 團體들의 慣行은 內的 規範力은 상당하였으나 沿革이 일천하였다. 요컨대, 本 調査팀의 分別基準에 따른다면, 慣行은 너

무 미숙하였고 慣習法은 너무 쇠약하였다.

4. 脫法 내지 不當 慣行의 規範性

成文法規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慣行 및 慣習法은 우선 不法的인 것으로 看做되기 쉽다. 法執行當局의 制裁를 받아야 할, 그리고 곧 사라져야 할 존재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證券 또는 金融 市場에서 그리고 勞動分野에서 나타난 脫法的 慣行 내지 부당한 慣行들은 必要惡과 같은 존재로서 나름대로의 規範力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집단의 構成員들이 해당 慣行의 脫法性 또는 不當性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당해 慣行을 行爲準則 내지 去來關係規範으로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는 脫法 내지 不當 慣行을 非法的 存在로만 차치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들에 대하여는 그 法源性을 논하기보다는 逸脫의 限界를 논하여야 한다.

5. 下部構造와의 關係

村落地域에 있어서의 現地調査結果는 生産力과 生産關係가 慣習法의 規範力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진 거일리의 사례는 上部構造와 下部構造간의 이러한 關係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生業手段이 단순하고 經濟規模가 영세하던 시절에는 村落의 共同財産인 ‘짬’에서 나오는 收益分配를 좌지우지하는 洞中の 여론 내지 元老들의 권위가 곧 規範力의 源泉이었다. 共同財産에서 얻는 收益이 家計所得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剝奪당한다는 것은 곧 生計手段의 喪失을 意味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같은 共同財産을 이용하는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財産에서 얻는 所得의 비중이 미미하고 生計手段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收益權을 剝奪당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成文法의 경우에는 國家權力에 의한 強制가 法執行을 뒷받침한다. 慣習法은 이러한 장치가 없다. 洞中에서 當事者를 불러 笞刑을 가하는 것은 實定法上 금지되어 있고 水火不通은 이미 위협적인 수단이 아니다. 또한 共同財産의 收益權은 영세하여졌다. 이제 下部構造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慣習法은 傳統과 元老들의 訓戒만으로 스스로의 規範力을 확보

하여야 할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이다.

第4章 認識 및 接近方法上的 諸問題

1. 成文法과의 關係

成文法國家에 있어서 慣行 및 慣習法은 확실히 成文法을 補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보충적 존재라고 하여 없어도 좋은 존재는 아니다. 成文法만으로 모든 法律關係를 規律하려 함은 明示的 約束만으로 모든 인간의 삶을 規律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日常生活은 오히려 습관과 默示的 約束들에 의하여 規律되는바가 더욱 많다. 法律生活의 영역에 있어서도 成文法이 가능한 모든 境遇의 數를 상징할 수는 없기 때문에 慣行과 慣習法에 의하여 規律될 수 있는 門을 열어 놓아야 한다. 요컨대, 慣行 및 慣習法은 成文法과 相互補充的인 關係에 놓여 있으며 實效性을 달리하는 諸法律關係에 있어서 각자의 役割을 分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2. 西歐的 思考들의 限界

慣行 및 慣習法은 기존의 우리 法典體系와 法律教科書의 概念들로는 접근할 수 없다. 고유의 민속음식을 장만하면서 서구식 요리기구와 조미료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不問可知이다. 그러나 현행 法制의 태반이 서구식 관념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서구식 개념들로 접근하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어디까지나 현행 法制의 改善을 위한 部分的 調査일 따름이고 慣行 및 慣習法 그 자체의 調査는 아닌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그러나 약간은 비효율적인 방법은 固定觀念을 버리고 개방형 질문지조차 없이 현지에 뛰어들어 參與觀察을 실시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參與觀察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關心度이다. 서구화된 法制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法制와 법감정의 뿌리를 찾아 韓國法制를 補充하고 均衡을 취하느냐는 역시 選擇의 問題이다.

3. 概念의 動搖

종래 우리는 慣習法, 事實인 慣習, 慣行, 慣例 등의 概念의 혼동 속에서 좀 더 확실한 개념정의를 정립하고자 情緻하고 術學的인 理論 가공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이론 수립에는 성공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概念道具들은 실제 調査와 그 資料의 가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실제 調査에 있어서는 이러한 概念의 遊戲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에 열거한 여러 概念들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研究室에서 또는 講學上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慣習法概念들이 가공되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제 法律生活 당사자들이 당해 慣習法概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더 주목하여야 한다. 慣習法의 영역에 있어서 國家의 承認은 없어도 괜찮은 것이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關係 없이 慣習法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慣習法은, 이를 극히 단순화시킨다면, 國家法 이외의 習慣的 法規範이기 때문이다.

4. 自治規程과의 關係

각종의 法人이나 團體들은 대부분 문서화된 自治規程 내지 自治法規들을 보유하고 있다. 洞法이나 洞規 또는 門規들도 成文化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각종 法人들은 특히 公益的 性格이 부각되는 경우, 上位 實定法規의 委任에 의하여 또는 行政指導 등에 의하여 각종 自治規程들을 만들어 施行한다. 政黨의 黨憲도 自治規程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이러한 自治規程들과 慣習法과의 關係가 문제된다. 이러한 自治規程들은 文書化되어 있고 매우 微視的인 分野를 深層的으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成文法의 一部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文書로 明文化되어 있다고 하여 곧 國家法의 一部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上位 母法의 委任에 의하여 그 施行細則을 規定하는 경우는 慣習法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집단 구성원들이 당해 규정을 찾아 보지 아니하고는 그 規律內容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慣習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것들을 習慣的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自治規程들은 慣習法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慣習的인 것을 自治規程으로

立案한 것이라든지 團體 構成員들의 觀念 속에 살아 있는 自治規程들은 일종의 慣習法이라고 보아야 한다.

5. 法感情 내지 法意識과의 關係

慣行 및 慣習法을 調査하다가 빈번히 遭遇하는 것 중의 하나는 면담자들의 法意識이다. 그들은 慣習法을 말하다가도 때로 法感情 내지 法意識을 표명한다. 이러한 法感情 등은 習俗과 常識이 결합된 소산이기도 하다. 이것이 구체적인 行爲樣式으로 표출되어 最大公約數를 확보할 경우 慣習法이 탄생한다. 요컨대, 法感情 내지 法意識은 慣習法의 토양이다. 따라서 現地調査에 임할 경우 때로는 쓸 데 없다고 생각되는 면담자들의 法感情 등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法과 宗教의 混同 : 洞祭 및 習俗規範

村落地域에서의 現地調査는 法の 초기 모습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洞祭를 통하여 이러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洞祭마당은 天神, 地神, 터줏대감 등에게 제사지내는 종교마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해 처음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잔치마당이며 마을의 重大事를 결정하고 賞罰을 논하는 議事堂이자 곧 法廷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鄉校 또는 書院의 운영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儒敎規範을 行爲準則으로 삼았던 儒林은 鄉校나 書院을 議事堂 내지 法廷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民間의 각종 禁忌, 呪術, ‘양밥’(예컨대, ‘뱅이’) 등은 그 전부가 단순히 迷信으로 간주될 수 없는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紛爭의 豫防 또는 平和的 解決 手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법의 초기 모습은 宗教觀念과 부분적으로 혼동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현재에도 村落地域에 전승되고 있다.

7. 豫備調査의 限界

이 豫備調査는 본래 慣行 및 慣習法의 概括的인 모습을 선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구명함을 또 하나의 目

的으로 삼았었다. 20세기 初 일제가 다년간 汎國家的 事業으로 推進하였던 慣習調査事業과 그 결정판인 ‘慣習調査報告書’의 포섭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야와 사례들을 포섭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豫備調査는 어디까지나 ‘豫備’調査이다. 보다 본격적인 檢證과 推論 그리고 深層分析은 추후 本調査의 수행과 더불어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中間評價와 展望에서는 너무 적은 사례로 너무 많은 推論을 하지 아니하고자 노력하였다. 너무 많은 推論과 斷定은 외려 추후의 本調査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豫備調査에 있어서는, 특히 村落地域의 경우, 成文法上の 規律 내용과 慣習法上の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였다. 전래의 法律 生活實態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전래의 慣習上 規律과 현행 成文法上 規律이 때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이 양자의 相關關係를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였다. 都市地域과 市場別 및 團體別 調査에 있어서도 당초에는 現行 實定法上の 規律內容과 慣行上の 그것을 對照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실현하지 못하였다.

第5章 代案 및 展望

1. 長期 調查研究의 推進方向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調查研究는 우선 綜合的이고 深層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綜合的이라는 개념은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 예컨대 風俗과 같이 法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관련 調查研究 사항까지도 — 포섭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深層的이라는 개념은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고찰을 전제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추후의 調查研究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各論的인 調查研究를 심도 있게 진행하여 現行法制의 改善과 綜合理論 研究에 基礎資料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慣行 및 慣習法의 調查研究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法律家나 法學者 계층만의 참여만으로 수행될 수도 없는 과제이다. 또한 現地調査라고 하여 出張調査만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法制의 뿌리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調査研究 協力體系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慣行 및 慣習法의 調査研究는 단순히 現行法制의 改善이라는 측면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아니되며 文化研究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慣習研究는 文化研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Howard의 말처럼, 文化란 곧 習慣的 態度이며, Zimolzak와 Stansfield의 견해처럼, 文化란 곧 標準화된 行動類型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慣行 및 慣習法의 調査研究는 文化의 諸要素 속에서 規範的 側面을 부각시키고 이에 관한 綜合的 解釋이 요구된다.

2. 慣行 및 慣習法의 恒久성과 獨自性

참새를 키우기 위해 새장 안에 가두어 놓으면 곧 죽어 버리듯이, 모든 法律行爲를 전부 國家의 成文法 테두리 속에서 規律하고자 한다면, 부당한 慣行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白眼視한다면, 脫法이 더욱 기승을 부리거나 法律生活 그 자체가 질식하고 만다.

현실 세계에서는 花草만 있는 것이 아니라 雜草도 존재한다. 어차피 慣行 및 慣習法이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고 때로는 脫法的이거나 不當한 慣行이 規範力을 발휘하고 있다면 이러한 존재들의 效用에 관하여 주목하고 이것들이 獨自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도록 認識을 轉換하고 기틀을 갖추어야 한다. 기틀을 갖춘다는 것은 일정한 限界 내에서 慣行 및 慣習法에 의한 自治領域을 인정하고 成文法과의 調和를 꾀하면서 慣行 및 慣習法의 規範性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을 의미한다.

3. 自治化 내지 分權化 社會에서의 慣習規範

앞으로의 시대에는 自治化 내지 分權化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머지 않아 中央集權的 法執行의 영역이 축소되고 地方法의 時代가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法秩序를 제고하고 法의 實效性을 確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은 모든 法律關係者들의 관심사일 것이다.

地方法의 시대에 있어서조차 모든 法秩序를 地方政府의 손에 일임한다는 것은 進取的인 態度가 되지 못한다. 多樣化되고 分權化된 社會에 있어서 法의 把守는, 그 法의 保護法益이 경미하거나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

하는 한, 특정한 人情關係 또는 利害關係를 중심으로 결집된 집단 구성원들의 전통과 자치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한다”는 속담처럼 法の 把守도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잘 볼 것이다.

附 錄

大單位 同族部落 一覽
關係文獻目錄

[附 錄]

大單位 有名同族部落 一覽

* 1930년 현재 同族 50戶이상 部落

[京畿道]

- 廣州郡 中部面 上山谷里·東部面 下山谷里：杞溪 俞氏
西部面 甘一里·考竹里：綾城 具氏
- 陽州郡 和道面 車山里 元車山：杞溪 俞氏
- 抱川郡 蒼水面 雲山里 雪雲洞：豐川 任氏
永中面 金珠里 水日洞：清州 楊氏
二東面 燕谷里 燕谷：安山 金氏
- 龍仁郡 南四面 通三里：結城 具氏
- 安城郡 大德面 辰峴里 龍峴：晉州 柳氏
陽城面 德峰里：海州 吳氏
元谷面 七谷里·元堂里：慶州 李氏
- 振威郡 松炭面 道日里：原州 元氏
- 水原郡 東灘面 長芝里 長芝川：昆陽 朴氏
陰德面 遠泉里 遠幕洞：密陽 裴氏
日荊面 芭長里 芭長洞：廣州 李氏
八灘面 舊場里 東村：密陽 朴氏
西新面 弘法里：南陽 洪氏
鄉南面 求文川里：慶州 金氏
- 金浦郡 黔丹面 元堂里 高山下里：豐山 金氏
陽西面 外鉢山里·光明里：慶州 崔氏
- 江華郡 兩寺面 北省里 遙谷洞：清州 韓氏
華蓋面 仁土里 仁土洞：昌原 黃氏
- 開城郡 上道面 上道里 鳳谷洞：密陽 朴氏

[忠清北道]

- 清州郡 琅城面 葛山里：寶城 吳氏

- 琅城面 三山里：寶城 吳氏
南二面 陽村里·蘆川里：驪興 閔氏
玉山面 德村里 德村：河東 鄭氏
玉山面 金溪里 金溪：清州 郭氏
北一面 飛上里 飛上：草溪 卞氏
南一面 方西里：清州 韓氏
北二面 龍溪里 茅涯：全州 李氏
賢都面 鑿洞：寶城 吳氏
賢都面 老山里：晉州 柳氏
賢都面 梅峰里：寶城 吳氏
報恩郡 報恩面 鐘谷里：慶州 金氏
三升面 仙谷里：和順 崔氏
山外面 鳳谿里：綾城 具氏
懷北面 高石里：文化 柳氏
懷北面 訥谷里：寧海 朴氏
沃川郡 東二面 細山里 石花洞：豐川 任氏
東二面 坪山里 坪山：星州 李氏
郡北面 大亭里 大村：文化 柳氏
伊院面 龍坊里 龍坊：善山 郭氏
永同郡 黃澗面 栢子田里 栢子田：永山 金氏
楊江面 九江里 九萬洞：星山 裴氏
陽山面 柯谷里：仁川 李氏
深川面 耆湖里·芝庄里：城山 裴氏
深川面 錦汀里 黔村：驪興 閔氏
鎮川郡 文白面 九谷里·外九里：常山 林氏
槐山郡 甘勿面 伯陽里 伯陽洞：延安 李氏
道安面 花城里 雷岩：谷山 延氏
沙梨面 沙潭里 沙潭：丹陽 禹氏
陰城郡 陰城面 沙丁里：安東 金氏
陰城面 三生里 琴三生：丹陽 張氏
蘇伊面 甲山里 亭子村·塔村·東村：安東 權氏

遠南面 馬松里 別岩·梧山·芋垵·杏亭：清州 高氏
 遠南面 甫川里 隔村·廻村·加美山·築洞：光州 潘氏
 遠南面 文里 松谷·書堂·谷上里：大邱 徐氏
 遠南面 下唐里上里·陰圓里·藥房里·東陽里：昌寧 成氏
 遠南面 上老里·講堂里·中羽里·隱龜里：宜寧 南氏
 三城面 龍城里 城山：安東 權氏
 金旺面 道晴里 道庄里：草溪 鄭氏
 忠州郡 忠州面 金陵里：安東 權氏
 芝味面 新堂里：江陵 崔氏
 周德面 堤內里：全州 李氏
 堤川郡 堤川面 頭鶴里：晉州 姜氏
 清風面 丹里：仁同 張氏
 錦城面 月窟里：文化 柳氏
 錦城面 九龍里：義興 朴氏

〔忠清南道〕

燕岐郡 東面 松龍里 소리울：結城 張氏
 南面 陽化里·世居里：扶安 林氏
 錦南面 達田里：昌寧 成氏
 錦南面 鉢山里：信川 康氏
 錦南面 盤谷里：驪陽 陳氏
 全義面 老谷里：密陽 朴氏
 西面 青蘿里：江陵 金氏
 西面 鳳岩里：坡平 尹氏
 大田郡 杞城面 坪村里 增村：茂松 庾氏
 論山郡 恩津面 防築里 閑谷：金寧 金氏
 恩津面 柰洞里 墨洞：潭陽 田氏
 上月面 鶴塘里 間村：務安 朴氏
 連山面 林里：光山 金氏
 可也谷面 鍾淵里 鍾盤：全州 李氏
 公州郡 長岐面 羅城里 羅城：扶安 林氏
 州外面 花隱里·元花隱里：天安 全氏

- 儀堂面 台山 龍峴·龍岩·松鶴里
(台城·上龍·下龍·隱谷·蒼村)：全州 李氏
- 扶餘郡 扶餘面 楮石里 柳村里：安東 金氏
場岩面 長蝦里：晉州 姜氏
世道面 東寺里 東谷：豐壤 趙氏
石城面 鳳亭里·沙浦里：南陽 田氏
草村面 楸陽里 楸洞：全州 李氏
草村面 草坪里·草里：忠州 池氏
- 舒川郡 舒川面 鳥石里：龍宮 全氏
麟山面 斗南里：交河 盧氏
麟山面 斗北里：交河 盧氏
麟山面 辛山里：錦城 羅氏
韓山面 丹上里：文化 柳氏
韓山面 冬至里：韓山 李氏
韓山面 馬楊里：韓山 李氏
韓山面 蓮峰里：韓山 李氏
- 保寧郡 藍浦面 月田里·龍頭里：慶州 李氏
殊山面 篁栗里：豐山 任氏
嶺山面 豐溪里 豐年洞：慶州 李氏
- 青陽郡 飛鳳面 養土里：全州 李氏
- 唐津郡 松嶽面 佳橋里 申菴：綾城 具氏
- 天安郡 葛田面 佳田里：安東 金氏

[全羅北道]

- 全州郡 鳳東面 新城里·九萬里：全州 李氏
助村面 上可里：全州 李氏
- 錦山郡 富利面 不二里：海平 吉氏
- 茂朱郡 雪川面 基谷里：密城 朴氏
- 長水郡 山西面 五山里：安東 權氏
蟠谷面 魯壇里：興德 張氏
- 任實郡 屯南面 新基里：全州 李氏
- 南原郡 水旨面 好谷里 好谷：竹山 朴氏

- 淳昌郡 東溪面 龜尾里：南原 楊氏
金果面 芽亭里 芽亭：南陽 洪氏
金果面 銅田里：玉川 薛氏
福興面 下里 社倉：蔚山 金氏
- 井邑郡 古阜面 古阜·長文里：幸州 殷氏
淨土面 水金里：金海 金氏
甕東面 山城里·七田里：安東 權氏
七寶面 詩山里：唐津 金氏
- 金堤郡 月村面 長華里：東萊 鄭氏
龍池面 龜岩里 新阜里：紆州 黃氏
金溝面 上新里：仁同 張氏
- 沃溝郡 米面 米龍里：善山 金氏
米面 開寺洞：南平 文氏
米面 新觀里 新村：豐壤 趙氏
舊邑面 五谷里：潭陽 田氏
玉山面 南內里：南平 文氏
瑞穗面 鷺東里：金海 金氏
聖山面 高峯里·桃岩里：平康 蔡氏
聖山面 山谷里·倉梧里：全州 李氏

[全羅南道]

- 光州郡 光州面 北町 樓門里：青松 沈氏
光州面 忠孝里：光山 金氏
牛峙面 生龍里：羅州 範氏
本村面 日谷里：光山 盧氏
林谷面 博湖里：濟州 梁氏
極樂面 松亭里·花亭里：河東 鄭氏
- 潭陽郡 南面 芝谷里：延日 鄭氏
昌平面 柳川里：長興 高氏
- 谷城郡 梧谷面 梧枝里：順興 安氏
古達面 白谷里：羅州 林氏
古達面 牧洞里：羅州 陳氏

- 玉果面 水里：慶州 金氏
- 求禮郡 內山面 桂川里 玄川：和順 崔氏
- 高興郡 高興面 虎東里：高興 柳氏
- 道陽面 道德里：安東 金氏
- 道陽面 鳳岩里：慶州 金氏
- 古邑面 寒東里：高興 柳氏
- 古邑面 普天里：興陽 李氏
- 東江面 大江里：礪山 宋氏
- 寶城郡 得糧面 松谷里：濟州 梁氏
- 和順郡 道巖面 淨川里：密陽 朴氏
- 道巖面 道莊里：晉州 金氏
- 長興郡 南上面 上金里 金谷：水原 白氏
- 安良面 鶴松里：長興 馬氏
- 夫山面 虎溪里：清州 金氏
- 夫山面 基洞里：長興 魏氏
- 府東面 牛目里：竹山 安氏
- 康津郡 城田面 秀陽里：光山 李氏
- 城田面 金塘里·蓮塘里：原州 李氏
- 城田面 松月里 松月：豐壤 趙氏
- 大口面 水洞里 水洞：海南 尹氏
- 郡東面 三新里 下新垓：長興 馬氏
- 鵲川面 峴山里·博山里：光山 金氏
- 道岩面 筏亭里：全州 李氏
- 海南郡 海南面 南蓮里·蓮洞里：海南 尹氏
- 花山面 白浦里：海南 尹氏
- 馬山面 禾內里：驪興 閔氏
- 馬山面 山幕里：原州 李氏
- 靈巖郡 靈巖面 望湖里 望湖亭：慶州 李氏
- 北一始面 永保里 內洞：全州 崔氏
- 新北面 葛谷里 葛谷：驪興 閔氏
- 新北面 茅山里：文化 柳氏

- 郡西面 東·西鳩林里：朗州 崔氏·海州 崔氏
 昆二終面 奄吉里：天安 全氏
- 務安郡 朴谷面 鳳鳴里 老松亭：利川 徐氏
 玄慶面 五柳里 五柳洞：金海 金氏
 玄慶面 養鶴里 牟村：務安 朴氏
 清溪面 清川里：大邱 裴氏
 安佐面 邑洞里：金海 金氏
 石津面 社倉里：羅州 金氏
 石津面 星巖里：漢陽 趙氏
 石津面 茶山里：羅州 金氏
-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松竹：錦城 羅氏
 細枝面 大山里 竹山：全義 李氏
 細枝面 橋山里 鉢山：全義 李氏
 細枝面 碧山里 碧亭：光州 金氏
 洞江面 月松里 月海：羅州 林氏
 多侍面 新楓里 會津：羅州 林氏
 老安面 金安里·半松里：豐山 洪氏
 金川面 院谷里·院村里：全州 李氏
 南平面 藍石里 上·下藍里：隋城 尹氏
 南平面 雨山里·雨津里·檜山里：新平 宋氏
 茶道面 楓山里：豐山 洪氏
 茶道面 鐵川里 等乃柳村：利川 徐氏
 茶道面 閣洞里：晉州 鄭氏
- 咸平郡 咸平面 津良里·良林里：仁同 張氏
 大洞面 德山里：光山 金氏
 月也面 月也里：晉州 鄭氏
 新光面 三德里 德川洞：咸平 牟氏
 平陵面 草浦里：咸平 李氏
 海保面 上谷里·牟平里：坡平 尹氏
 海保面 海保里·祭美里：晉州 鄭氏
 食知面 羅山里：竹山 安氏

嚴多面 嚴多里：坡平 尹氏
鶴橋面 上玉里 玉洞：坡平 尹氏
靈光郡 郡西面 德山里：晉州 鄭氏
長城郡 森溪面 舟山里·淨閣里：新平 宋氏
森溪面 綾城里 綾城峙：長興 高氏
珍島郡 義新面 七田里：密陽 朴氏
古郡面 五山里：昌寧 曹氏
珍島面 浦山里：密陽 朴氏
郡內面 細嶝里：玄風 郭氏
古郡面 石峴里：金海 金氏
濟州道 西中面 新禮里：濟州 梁氏

[慶尙北道]

達城郡 城北面 山格洞 一區：達城 徐氏
城北面 西邊洞 一區：仁川 李氏
城北面 東邊洞：綾城 具氏
公山面 美垵洞 美垵：仁川 蔡氏
壽城面 池山洞 池山：中和 楊氏
月背面 上仁洞 月村：丹陽 禹氏
玄風面 池洞：瑞興 金氏
玄風面 大洞 率禮：苞山 郭氏
軍威郡 軍威面 大北洞：浙江 張氏
軍威面 政洞 第一區：海平 金氏
岳溪面 大栗洞：岳林 洪氏
友保面 羅湖洞 第一區：月城 朴氏
義興面 水北洞：龜山 朴氏
山城面 錦陽洞：密陽 孫氏
孝令面 中九洞：延安 李氏
義城郡 山雲面 山雲洞 山雲：永川 李氏
點谷面 沙村洞 沙村：安東 金氏
青松郡 巴川面 德川洞：青松 沈氏
眞寶面 廣德洞 光德：安東 權氏

- 英陽郡 英陽面 甘川洞：樂安 吳氏
青杞面 青杞洞：咸陽 吳氏
日月面 注谷洞：漢陽 趙氏
- 盈德郡 盈德面 上直洞 一區：盈德 金氏
盈德面 下直洞：遂安 金氏
盈德面 錦湖洞 一區：寧海 申氏
南亭面 道川洞：慶州 李氏
丑山面 陶谷樊浦：務安 朴氏
寧海面 槐市 一區：英陽 南氏
寧海面 槐市 二區 觀漁台：安東 權氏
柄谷面 松川洞：安東 權氏
- 迎日郡 達田面 草谷洞 土逸：仁同 張氏
神光面 牛角洞：驪江 李氏
竹南面 立巖里：安東 權氏
杞溪面 縣內洞：月城 李氏
杞溪面 鳳溪洞：月城 金氏
杞溪面 駕安洞：達城 徐氏
杞溪面 吾德洞：麗州 李氏
- 慶州郡 江東面 良洞里：驪州 李氏·月城 孫氏
內南面 伊助里：月城 崔氏
- 永川郡 華東面 仙川洞 鶴旨：安東 權氏
紫陽面 魯巷洞 魯巷：慶州 金氏
紫陽面 龍山洞 月淵：迎日 鄭氏
清鏡面 上梨洞 梨谷：密陽 孫氏
清鏡面 大儀洞 巨谷：星山 李氏
北安面 自浦洞 自浦：月城 金氏
琴湖面 五溪洞·宗洞：昌寧 曹氏
琴湖面 道南洞 道東：慶州 安氏
- 慶山郡 安心面 東內洞：長水 黃氏
河陽面 釜湖洞：河陽 許氏
河陽面 隱湖洞：永川 李氏

- 河陽面 汗沙洞·杏洞：慶州 崔氏
龍城面 德川洞 望德里：慶州 金氏
南川面 俠石洞：草溪 鄭氏
- 星州郡 月恒面 大山洞·大浦洞：星山 李氏
碧珍面 海平洞 下樹村：城山 呂氏
志士面 甫月洞·法山洞：永川 崔氏
志士面 修倫洞·倫洞：義城 金氏
草田面 高山洞：洽城 宋氏
- 漆谷郡 倭館面 石田洞：廣州 李氏
倭館面 梅院洞：廣州 李氏
枝川面 新洞：廣州 李氏
仁同面 新洞：仁同 張氏
- 金泉郡 開寧面 黃溪洞：金海 金氏
知禮面 上部里 舊邑內：南平 文氏
牙川面 南山洞 一區：星山 全氏
金陵面 三樂洞 西部：水原 白氏
石峴面 下院里 佐院：延安 李氏
石峴面 上院里 院基：延安 李氏
- 善山郡 高牙面 元湖洞：善山 金氏
- 尙州郡 尙州面 梁村里 一區：金寧 金氏
砂伐面 梅湖里：昌寧 曹氏
- 聞慶郡 永順面 栗谷里：缶林 洪氏
山陽面 縣里：仁川 蔡氏
山陽面 薪田里：開城 高氏
山北面 書中里：安東 權氏·安東 金氏·全州 李氏
山北面 大上·大下里：長水 黃氏
山北面 內化里：潘南 朴氏·宜城 金氏
東魯面 磨光里：慶州 孫氏
- 醴泉郡 龍門面 渚谷洞：安東 權氏
龍宮面 武夷里：驪州 李氏
龍宮面 佳野里：竺山 金氏

- 知保面 新豐里：坡平 尹氏
豐壤面 憂忘里：東萊 鄭氏
豐壤面 三江里：清州 鄭氏
榮州郡 文殊面 權先里 蘭谷：潘南 朴氏
平恩面 金光里 錦江：仁同 張氏
奉化郡 乃城面 海底里 海底：義城 金氏
乃城面 酉谷里 酉谷：安東 權氏
法田面 法田里 法田：晉州 姜氏
祥雲面 文村里 文村：奉化 琴氏
物野面 梧麓里 梧麓：豐山 金氏
安東郡 西後面 金溪洞 金溪：義城 金氏
豐山面 上里洞 上里：宜城 李氏
豐西面 街谷洞 街日：安東 權氏
豐西面 素山洞：安東 金氏
豐西面 九潭洞 九潭：順天 金氏·光山 金氏
豐南面 河回洞 河回：豐山 柳氏
一直面 龜尾洞 龜尾：義城 金氏
臨河面 川前洞 川前：義城 金氏
吉安面 知禮洞 知禮：義城 金氏
吉安面 默溪洞 默溪：安東 金氏
臨東面 水谷洞 水谷：全州 李氏
禮安面 浮浦洞：眞寶 李氏
陶山面 土溪洞 土溪：眞寶 李氏
陶山面 溫惠洞 溫惠：眞寶 李氏
陶山面 宜村洞 宜村：眞寶 李氏
高靈郡 高靈面 本館洞：星山 李氏
茶山面 上谷洞：全義 李氏
牛谷面 桃津洞：高靈 朴氏
雙洞面 合伽洞 街谷：一善 金氏
清道郡 錦川面 薪旨洞：密陽 朴氏
錦川面 芳旨洞 下芳旨里：固城 李氏

豐角面 金谷洞：平澤 林氏
梅田面 溫幕洞：固城 李氏
伊西面 水也洞 水也：密陽 朴氏
伊西面 大田洞：義興 芮氏

〔慶尙南道〕

晉州郡 智水面 勝內里：金海 許氏
二班城面 坪村里：清州 韓氏
金谷面 檢岩里 雲門洞：晉陽 河氏
寺奉面 鳳谷里 鳳垵：載寧 李氏
水谷面 土谷里 土谷洞：晉陽 河氏
平居面 貴谷里：海州 鄭氏
晉城面 上村里 東山洞：載寧 李氏
大坪面 下村里：順興 安氏
大坪面 新豐里：檜山 黃氏
大谷面 丹牧里(丹牧)：晉陽 河氏
大谷面 雪梅里：晉陽 姜氏
大谷面 麻津里：載寧 李氏
宜寧郡 嘉禮面 甲乙里 牛項：昌原 丁氏
上井面 下村里 下村：昌寧 曹氏
富林面 新反里：安東 權氏
富林面 立山里：康津 安氏
鳳樹面 竹田里：金海 許氏
咸安郡 咸安面 大山里 大寺洞：仁川 李氏
伽倻面 廣井里 廣井：載寧 李氏
伽倻面 儉岩里 儉岩：星山 李氏
伽倻面 苗沙里·長命里：慶州 金氏
郡北面 明館里 明洞：慶州 朴氏
郡北面 明館里 坪館：仁川 李氏
竹南面 下林里 下林：咸安 趙氏
竹南面 藪谷里 藪谷：青松 沈氏
漆原面 柳原里 柳原：昌原 黃氏

- 漆原面 藏岩里 藏岩：金海 金氏
餘航面 外岩里 外洞・內洞：驪州 李氏
- 昌寧郡 大池面 牟山里：昌寧 成氏
- 密陽郡 密陽面 校洞里：密城 孫氏
山外面 茶竹里・竹東里：密城 孫氏
山外面 茶竹里・竹西里：安東 孫氏
丹場面 菊田里 菊田：月城 李氏
丹場面 古禮里 古禮：仁同 張氏
上南面 淵今里：昌寧 曹氏
下南面 南田里：慶山 全氏
下南面 大司里：廣州 金氏
二同面 中山里：平山 申氏
下西面 來進里：碧珍 李氏
- 蔚山郡 大峴面 呂川里 呂川：密陽 朴氏
- 昌原郡 內西面 龜岩里：晉陽 鄭氏
昌原面 沙火里：密陽 朴氏
東面 花陽里：金海 金氏
東面 石山里・琴山里：商山 金氏
北面 下川里：金寧 金氏
上南面 退村里：順興 安氏
鎮北面 梨木里：全州 李氏
鎮田面 五西里 東大洞：安東 權氏
- 統營郡 沙等面 沙等里：昌寧 曹氏
沙等面 沙谷里：慶州 李氏
沙等面 支石里：金海 金氏
光道面 黃里：金海 金氏
- 固城郡 下一面 鶴林里 鶴洞：全州 崔氏
永吾面 吾東里：達城 徐氏
- 山淸郡 車黃面 傳里：慶州 李氏
車黃面 長位里・長溪里：龍宮 金氏
梧釜面 陽村里：驪州 閔氏

生草面 上村里 古邑內：盆城 裴氏
新等面 坪地里：商山 金氏
新等面 丹溪里：安東 權氏·順天 朴氏
矢川面 絲里 兩塘洞：昌寧 曹氏
咸陽郡 池谷面 介坪里：河東 鄭氏
居昌郡 居昌面 上洞 川內里：居昌 章氏
加祚面 土屏里 屏山：密陽 卞氏
渭川面 薑川里：八溪 鄭氏
渭川面 大亭里：居昌 慎氏
北上面 葛溪里：恩津 林氏
陝川郡 草溪面 上臺里 武陵：陝川 李氏

[黃海道]

延安郡 延安面 丹山里 孝子洞：長水 黃氏
延安面 梧珠里：安城 李氏
湖南面 雌鳳里 紫達洞：海州 崔氏
湖南面 素井里 寒井洞：蔚珍 張氏
湖南面 蓋峴里 蓋峴洞：密陽 朴氏
松逢面 青松里 松青洞：白川 劉氏
松逢面 雲溪里 清華洞：居昌 劉氏
松逢面 松峴里 斗洞：高敞 吳氏
松逢面 老亭里 魯柳洞：長水 黃氏
松逢面 大龍里 大陽洞：海州 崔氏
鳳西面 小雅里 犢兒洞：延安 宋氏
鳳西面 鼎村里：丹城 文氏
龍道面 松鶴里 長財洞：豐川 任氏
龍道面 深桂里 深草洞：全州 李氏
掛弓面 桃城里 大村：竹山 朴氏
掛弓面 鳩岩里 大村：漢陽 趙氏
金山面 大雅里 大雅村：晉州 柳氏
金山面 禮義里 禮義洞：白川 趙氏
花城面 松川里 松城洞：順興 安氏

- 花城面 山田里 山田洞：商山 金氏
雲山面 都台里 都台洞：青松 沈氏
溫井面 慕禮里 慕禮洞：原州 邊氏
道村面 馬泉里 馬泉洞：白川 趙氏
金川郡 外柳面 文修里 文修洞：全州 柳氏·全州 金氏
舒泉面 栗洞里 栗洞：全州 李氏
平山郡 平山面 稷下里 稷下洞：慶州 金氏
西峯面 龍頭里：驪興 閔氏
西峯面 晚灘里：延白 鄭氏
古之面 浣亭里：遂安 李氏
細谷面 眞寶里 眞寶洞：咸悅 南宮氏
新溪郡 麻西面 草灘里 草灘洞：潘南 朴氏
甕津郡 馬山面 丹川里 丹川洞：寶城 吳氏
鳳鳴面 長壽里 鳳峴洞：清州 鄭氏
交井面 判井里 柯村：居昌 愼氏
交井面 判井里 判洞：全州 李氏
龍泉面 馬項里：漢陽 趙氏
長淵郡 牧甘面 茂山里 茂山洞：玄風 郭氏
松禾郡 蓮芳面 明禮里·馬山里：全州 李氏
雲遊面 烏項里：坡平 尹氏
殷栗郡 長連面 栗里 栗洞：興海 裴氏
長連面 明岩里 大村：潘南 朴氏
南部面 清溪里 上院堂洞：海州 鄭氏
一道面 樓里 樓村：羅州 林氏
北部面 家樂里 家樂洞：南陽 洪氏
北部面 良潭里 良潭洞：南陽 洪氏
安岳郡 西河面 德日里 內洞：文化 柳氏
銀紅面 廣石里 豐洞：全州 李氏
黃州郡 黃州面 禮洞里 禮洞：永川 李氏
鳳山郡 西鍾面 大閑里：光山 金氏
瑞興郡 龍坪面 月隱里 月隱洞：坡州 李氏

禾回面 石洛里 洛村：延安 李氏

[平安南道]

大同郡 秋乙美面 美林里 一區：坡州 尹氏·遂安 李氏

斧山面 壽山里 鮮于村：太原 鮮于氏

順川郡 仙沼面 藍浦里·鳳下里：順天 金氏

厚灘面 立石里·一里：坡平 尹氏

慈山面 岐灘里：羅州 林氏

北倉面 舊上里 吳村：海州 吳氏

成川郡 三興面 卵山里 卵山：慶州 金氏

三德面 三德里·草里：魯城 朴氏

通仙面 德岩里 杏洞：羅州 金氏

四街面 銀水里 水曲：公州 金氏

江東郡 元灘面 上里：交河 李氏

高泉面 廣德里 上黃村：昌原 黃氏

高泉面 東西里 東洞：和順 金氏

鳳津面 漢王里 漢垓：遂安 李氏

鳳津面 鳳湖里 虎岩洞：南陽 洪氏

鳳津面 鳳塘里 洪村：南陽 洪氏

中和郡 楓洞面 智洞里：清州 韓氏

楓洞面 德岩里：驪州 李氏

天谷面 錢山里：三陟 金氏

天谷面 繁洞里：三陟 金氏

新興面 秤隅里 秤井洞：密陽 朴氏

海鴨面 竹山里：坡坪 尹氏

楊井面 新大里 大洞：坡坪 尹氏

楊井面 龍海里 龍湖洞：坡坪 尹氏

楊井面 立石里·東井三里：安岳 金氏

唐井面 唐村里 唐村：丹陽 李氏

龍岡郡 龍岡面 卵山里 金村：義城 金氏

吾新面 九龍里 龍洞：義城 金氏

三和面 栗上里·西里：順興 安氏

江西郡 江西面 巖底里：海州 吳氏
平原郡 順安面 九瑞里：清州 韓氏
順安面 南山里：密陽 朴氏
肅川面 通德里：平山 申氏
東松面 君子里·月峰里 東山臺車村：延安 車氏
安州郡 東面 孟州里 孟州·金村：水原 金氏
新安州面 東七里·雲松里 松城安村：順興 安氏
价川郡 价川面 見龍里 芝村：延州 玄氏
中南面 沓島里 沙村：廣州 李氏
中南面 仁谷里 唐峴：延州 玄氏
朝陽面 桐林里 獨洞：兎山 弓氏
朝陽面 雙龍里 龍岩：密陽 朴氏
北面 龍淵里 甕作洞·間谷·大洞：密陽 朴氏
寧遠郡 溫和面 溫陽里 中山站：全州 金氏

[平安北道]

龜城郡 方峴面 辨上洞 張村：仁同 張氏
方峴面 滄洞 許哥：陽川 許氏
西山面 立石洞 廉岑金村：光山 金氏
泰川郡 西面 林泉洞 林泉：咸平 李氏
南面 松隅洞 松隅：水原 白氏
寧邊郡 寧邊面 龍浦洞 金村：慶州 金氏
寧邊面 龍楸洞 康村：信川 康氏
寧邊面 西外城洞 車村：延安 車氏
古城面 南山洞 金村：慶州 金氏
鳳山面 龜山洞 金村：慶州 金氏
鳳山面 古城洞 金村：慶州 金氏
鳳山面 朝陽洞 李村：星州 李氏
鳳山面 陽地洞 梁村：南原 梁氏
八院面 龍山洞 蔡村：平康 蔡氏
獨山面 龍興洞 車村：延安 車氏
博川郡 嘉山面 龍灘洞 龍灘：順天 金氏

- 定州郡 葛山面 瑞南洞 金村：延安 金氏
德達面 德達 趙村：白川 趙氏
古邑面 新里 李村：全州 李氏
宣川郡 南面 三峯洞·建山洞 一部(鳳洞)：竹山 朴氏
南面 三省洞 群賢：遂安 桂氏
深川面 古軍營洞 杜茂谷：遂安 桂氏
郡山面 大陸洞 大陸：遂安 桂氏
東面 路下洞 惠睦：潭陽 田氏
- 鐵山郡 扶西面 梨福洞 泰福·仁平洞 仁平：河東 鄭氏
站面 新谷洞 新谷：江陵 金氏
丁惠面 江河洞 宣州院：河東 鄭氏
- 通川郡 龍川面 昭義洞：安東 金氏
府羅面 松峴洞 背陽串：安東 金氏
外下面 栗谷洞 堂山：水原 白氏
外下面 做義洞 做義：仁同 張氏
外下面 下虎洞 下虎：慶州 李氏
北中面 長山：仁同 張氏
- 朔州郡 外南面 南長洞：青松 崔氏
- 昌城郡 祐面 玉溪洞 中端浦村：牛峰 金氏
青山面 龍頭洞 龍岩：晉州 姜氏
昌城面 間坪洞 間坪：金海 許氏
- 楚山郡 楚山面 央中洞：江陵 咸氏
楚山面 慕段洞：開寧 朴氏
東面 化豐洞：開城 金氏
江面 龍星洞 江谷：平昌 李氏
- 江界郡 城干面 外仲洞 仲城干站：金海 金氏
城干面 別河洞 別河：江陵 劉氏

〔江原道〕

- 春川郡 南面 柯亭里 柯亭子：高興 柳氏
史北面 芝村里 鋤吾芝：鎭川 宋氏·平海 黃氏
新北面 天田里 梧井村·元津里：慶州 李氏

淮陽郡 淮陽面 上萬里：礪山 宋氏
 下北面 金谷里：寧海 朴氏
 通川郡 通川面 芳洞里：江陵 劉氏
 高城郡 梧垵面 草溪里：昌原 黃氏
 襄陽郡 土城面 栢村里：慶州 金氏
 巽陽面 水余里：全州 李氏
 江陵郡 城山面 金山里：江陵 金氏
 三陟郡 蘆谷面 古自里：延白 鄭氏
 下長面 葛田里：英陽 南氏
 旌善郡 旌善面 愛山里 瓶項洞：江陵 劉氏
 東面 石谷里 石項洞：旌善 全氏
 旌善面 鳳陽里 內申洞：長興 高氏
 華川郡 上西面 九雲里：奉化 鄭氏
 金化郡 近南面 上沙谷里：寧海 朴氏
 遠北面 高垵里：竹山 朴氏
 平康郡 西面 文峰里：平壤 金氏
 伊川郡 方丈面 龜塘里：蔚山 金氏
 鶴鳳面 公須灘里：龍仁 李氏
 鶴鳳面 魯洞里：平山 申氏
 西面 友味里 四見洞：全州 李氏
 方丈面 佳麗洲里：平山 申氏

〔咸鏡南道〕

定平郡 歸林面 內洞里：清州 韓氏
 春柳面 禾洞里：陽城 李氏
 永興郡 順寧面 葛田里：延白 鄭氏
 順寧面 鯨岩里：慶州 金氏
 順寧面 聖南里·新亭里 一部：陽川 許氏
 順寧面 所羅里：江陵 陳氏
 憶岐面 兩灘里：星州 裴氏
 鎮坪面 乾川里 乾上·乾中·乾下：漢陽 趙氏
 鎮坪面 鎮岬里 上鎮村：全州 金氏

- 鎮坪面 翰洞里 翰黑村：慶州 鄭氏
古寧面 蓮洞里 一圓：慶州 金氏
德興面 內洞里 沓磯：慶州 金氏
宣興面 平川里 一區 金愚洞：慶州 金氏
高原郡 下鉢面 今水里：永春 趙氏
郡內面 上泗昌里 徐村：利川 徐氏
文川郡 龜山面 上坪里 上坪：寧海 朴氏
德源郡 縣面 現洞里：全州 李氏
安邊郡 新茅面 中漁池里：旌善 李氏
衛益面 內坪里：清州 金氏
北青郡 楊川面 上里 昌洞：旌善 全氏
北青面 棠浦里 金村：慶州 金氏
利原郡 東面 昌坪里 谷口坪村：金海 金氏
南面 壽巷里：晉州 姜氏·坡州 廉氏
南面 浦項里：寧越 辛氏·晉州 姜氏
南面 栗枝里：新安 朱氏
端川郡 廣泉面 龍田里 李村：全州 李氏
新興郡 元平面 中相里：長興 魏氏
三水郡 邑館面 塔洞里：全州 李氏
〔咸鏡北道〕
鏡城郡 朱北面 會文洞：蔚珍 張氏
龍城面 松鄉洞 松坪：咸陽 朴氏
明川郡 上雩南面 內浦洞 內浦：全州 金氏
吉州郡 東海面 石城洞 石城村：全州 李氏
城津郡 鶴城面 錦川洞 申村：平山 申氏
鶴中面 松下洞 泰仁許村：陽川 許氏
鶴東面 荷川洞 馬村：長興 馬氏
富寧郡 富居面 富居洞·捷鳳洞：密陽 朴氏
鍾城郡 龍溪面 書院洞 書院：新安 朱氏
龍溪面 鍾山洞 長豐：鎮川 金氏

關係文獻目錄

經濟法

企業關係法

中小企業法

產業·金融法

經濟組織法

金融關係法

農業關係法

森林·漁業·鑛業

證券去來法

國際經濟·去來法

國際去來法

貿易去來

貿易金融

國際法

國際交涉 國家機關

國際法一般

國際紛爭의 平和的解決

勞動法

勞動基準法

勞動契約

勞動法一般

勞動爭議調整法

勞使關係 및 勞使協議

不當勞動行爲

解雇·退職金

民法

家族法一般

契約各論

契約總論

擔保物權

物權의 變動

物權法一般

民法總則一般

法律行爲

法人

不動產私法·登記法

父母 子

不法行爲

相續法一般·戶主相續

所有權

用益物權

財產相續

債權의 效力

債權法一般

婚姻

民事訴訟法

當事者

訴

仲裁法·制度

法律學一般

法社會學

法學教育·法學研究

法史學

韓國法制史

司法制度

法官

辯護士

司法制度一般

社會保障法

公的扶助法

社會保障法一般

社會保險法

商法

保險

商法一般

商法總則

商行爲

어음·手票法

株式會社

海商法

會社法

行政法

公用負擔法

教育·文化·保健

生活空間規制

自治行政組織法

地方自治

行政法一般

行政上の 義務履行確保

憲法

國民의 基本的 權利義務

國會

政黨·利益團體

[일러두기]

① 鄉規, 鄉案, 鄉約, 洞契 등에 관한 第1次資料 目錄은 박경하, “朝鮮時代 鄉村社會史 資料目錄”, 歷史民俗學 創刊號(이론과 실천사, 1991년), 341~364쪽 參照. 鄉約에 관한 國內의 調查研究文獻 目錄에 관하여는, 池敎憲 의 朝鮮朝鄉約研究(民俗院, 1991년), 278~290쪽, 부록4 “鄉約研究參考資料目錄” 參照.

② 依用民法 施行 당시의 親族相續에 관한 慣習 등에 관한 編譯資料로서는 裁判資料 第29輯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法院行政處, 1985년, 609쪽)參照. 朝鮮後期 慣習關係 第1次資料 및 參考文獻目錄은 沈羲基,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1년), 259~278쪽 參照.

③ 慣行 및 慣習法에 관한 法制史的 측면에서의 資料 및 論著 目錄에 관하여는 鄭肯植 編, 韓國法史學論著目錄(韓國法制研究院, 1992년) 參照.

④ 이하에 소개하는 文獻目錄은 서울대학교 法律文獻索引 (1) 및 (2), 그리고 國會定期刊行物記事索引 등에서 1990년 12월까지의 目錄들중 관계문헌정보를 가려 뽑은 것이다. 法律學 이외의 分野에서의 關係文獻目錄은 추후의 本調査 내지 深層調査段階로 미룬다.

⑤ 이하의 關係文獻目錄은 향후의 綜合調査를 위하여 文獻目錄 데이터 베이스를 제작하여 입력한 資料 중에서 가려 뽑아 大主題, 中主題 및 小主題 별로 가나다 順으로 배열였다.

經 濟 法

[企業關係法]

소비자금융에 관한 연구

..... 김용철, 서울대, 경영학석사, 1984/2/25

신탁업의 최근동향

..... 한국은행 편, 주간내외경제, 1196, 1985/1, 8-12

은행거래약정서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사항과 보완점

..... 한국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280, 1979/3

해운금융의 역사적 고찰

..... 丁建明, 목포해양전문대 논문집, 19, 1985/12, 117-128

[中小企業法]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실증적 연구

..... 朴大鉉, 건국대, 경영학석사, 1985/2/16

중소기업금융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송병호,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1984/8/31

產 業 · 金 融 法

[經濟組織法]

한국금융조합의 조직

..... 金峻憲, 청구대학논문집, 7, 1964/12

협동조합과 계

..... 金炳夏, 경상학보(중대), 1, 1955/7

[金融關係法]

고리사금융대책에 관하여

- 금융, 5.3, 1958/3
 고리채문제에 관한 소고
 崔慶天, 금융, 3.4, 1956/4
 금융계의 현황과 구성원의 법률상 책임
 梁鉉局, 검찰, 2, 1968/6
 농촌고리채 소고
 下鶴圭, 금융, 4.3, 1957/3
 농촌고리채정리에 대한 소고
 李漢昌, 채무, 17, 1958/5
 사금융의 해부와 그 대책 - 잠정적인 법리보장을 제의하면서 -
 崔明在, 금융, 2.3, 1955/3
 사설무진회사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국민은행조사월보, 3.6-7, 1970/6-7
 서민금융과 계
 任承億, 세대, 5.2, 1967/2
 우리나라 유사서민금융의 특수성
 趙南吉, 입법조사월보, 3, 1965/8
 은행거래와 상관습
 상업은행조사부, 금융, 5.6, 1958/6
- [農業關係法]**
- 계가 里洞農業協同組合에 미치는 영향
 강창규, 청주, 상영인쇄사, 1969, 149p
 농업금융의 이론과 실제
 박복래·김홍수, 서울, 민조사, 1967, 505p
 농정에 있어서의 후진성 대결의 일방향 - 고리채 문제를 중심으로 -
 金相謙, 재정, 8.1, 1959/1
 농촌고리채정리에 대한 고찰
 朱碩均, 사상계, 10.6, 1962/6
 우리나라 소작관계에 관한 재평가
 安仁燦, 충남대논문집, 15, 1977/12

- 우리나라의 농지이용상황
 농협조사월보, 73, 1967/10
- 우리나라 농지소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소작문제를 중심으로—
 金明國, 서울대, 행정학석사, 1977/2
- 우리나라 현행농지제도의 확립과 임대차관행에 관하여
 姜明求, 충북대, 농학석사, 1984/8/31
- 은폐소작제도에 관한 연구
 張東燮, 전남대 논문집, 25, 1979/12, 187—240
- 지주제 해체과정으로서의 농지개혁에 관한 연구
 姜聲得,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1964/2
- 춘궁농촌의 생태
 金俊輔, 신경제, 10.5, 1961/5
- 한국 농지소유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
 홍종설, 건국대, 석사, 1969/2
- 한국농민의 행위변화 측정을 위한 이론적 모형연구
 金一鐵,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9, 1971
- 현행소작관계의 실태와 지주의 성격
 金炳台, 경제학연구, 25, 1977/12, 45—60
- 현행소작제도의 성격에 관한 고찰
 黃漢植, 서울대, 경영학석사, 1977/8/30
- [森林·漁業·鑛業]**
- 부산시부두지구의 성격과 법적 규칙
 제길우·김용욱, 법학연구(부산대), 8, 1966/4
- 산림계 실태조사보고서(실태조사)
 농촌법학회, Fides, 10.1, 1963/5
- 산야지의 특수용역—호남지방에 있어서의 묘지를중심으로—
 崔龍煥,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3, 1971
- 수산단체 위탁판매사업의 법적 고찰
 崔秉吉, 해무, 1.4, 1956/8
- 어업권의 법적성격

..... 朴壽伊, 법제월보, 5.12, 1963/2
 어업권의 법적성격 및 타어업과의 관계
 하상조, 검찰, 51, 1973/9
 어업권의 변천과정과 그 성격
 이춘우, 수협조사, 3.3, 1971/6
 어촌계의 경영공동체제적 연구
 姜元植, 부산수산대학, 수산학석사, 1964/9
 한국수산업법의 형성과정
 국회보, 54, 1966/4
 한국어업공동체의 성립과 존립양태에 관한 조사연구—어촌계를 중심으로
 朴光淳, 경제학연구(한국경제학회), 19, 1971/12
 한국어업금융의 현황과 그 문제
 徐英洙, 금융, 8.3, 1961/3
 한국의 입어권에 관한 연구
 高翔龍, 성균관대학교, 석사, 1967/9

[證券去來法]

한국증권시장 형성 및 발전의 사적 고찰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梁哲煥, 명지대 대학원 석사, 1975/2
 한국증권시장발달사
 金周龍, 서울, 대한증권협회, 1967, 290p

國際經濟 · 去來法

[國濟去來法]

국제거래관습론
 姜二秀, 삼영사, 1980, 390p, 1983, 394p, 1984, 464p
 국제거래관습의 최근동향(상.하)
 姜二秀, 중재, 142.143, 1983/11, 12
 국제무역관습에 관한 연구(FOB계약을 중심으로)

- 강이수, 대한상사증재원, 1979
- 국제무역상의 변형 FOB계약에 관한 연구
- 宋萬俊, 경남대, 경제학석사, 1984/8/25
- 국제무역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연구
- 李鎔根, 중앙대, 경영학석사, 1984/8/31
- 국제상관습에 관한 연구 - C.I.F.매매계약을 중심으로 -
- 李勳, 건국대, 상학석사, 1985/2/16
- 무역관습과 거래조건에 관한 연구
- 崔錫憲, 국민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5/2/27
- 무역관습론
- 玉濬鎭, 법문사, 1984, 410p
- 무역관습에 관한 고찰
- 宋正鉉, 법정대학보(조대), 4, 1978/12
- 무역상관습에 관한 소고
- 金榮來, 논문집(충북대), 21, 1981/6
- 정형무역거래관습에 관한 연구
- 이응무, 연세대 경영대학원, 경제학석사, 1980/8/29
- C.I.F.조건의 무역관습에 대한 연구
- 채한목, 서울, 1968, 35p

[貿易去來]

-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과 Documentless Trade에 관한 연구
- 金安植, 무역학회지, 12, 1985/2, 7-33
- 수출보험의 실태와 개편방향
- 대한상공회의소 편, 상의, 187.194, 1976/4, 11

[貿易金融]

- 대의 상거래에 있어서 보증신용장과 이와 유사한 담보형태
- Wolfgang Freiherr von Mar.상사법현대적과제(손주찬 박사화갑기념), 1984, 586-595

國 際 法

[國際交渉과 國家機關]

주둔군과 국제관습법

..... 李允榮, 대한국제법학회론총, 15.1, 1970/5

[國際法一般]

국제관습법

..... 韓亨建, 고시계, 24, 1977/7

국제관습법

..... 白盛澤, 고시계, 290, 1981/4

국제관습법(I. II)

..... 柳炳華, 월간고시, 90.91, 1981/7.8

국제관습법에 관한 연구

..... 朴魯, 건국대, 법학박사, 1984/2/18

국제관습법에 대한 고찰

..... 金燦奎, 고시연구, 17, 1975/8

국제관습법에서의 관행

..... 金燦奎, 대한국제법학회론총, 21. (1.2), 1976/12

[國濟紛爭의 平和的解決]

금강산댐 국제관례 ; 국제관례적 측면

..... 정용태, 충청문예, 104, 1987/1

勞 動 法

[勤勞基準法]

근로조건의 관리실태와 그 개선책에 관한 연구—제조업을 중심으로—

..... 朴雨植, 동아대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77/2/26

기업의 임금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보고

- 대한상공회의소 편, 상의, 204, 1977/9, 45-59
- 노동시간의 실태조사연구,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문교부 지원논문>
..... 閔邦基, 전남대 사회과학논총, 1, 1976/1, 85-95
- 노동자급에 관한 연구-그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 李燦教, 학술논총(단국대 대학원), 7, 1983, 163-184
- 능력급·년공급 임금제도 및 사례
..... 金鍾沂, 노동경제리뷰, 68, 1982/12, 17-19
- 대구지역섬유업체 여성근로자 임금실태에 관한 연구
..... 李在浩, 한국사회사업대, 문학석사, 1979/2/24
- 부녀노동자의 임금관리에 관한 실증적 고찰
..... 朴來歡, 충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1975/2
- 사원채용실태에 관한 법적 문제점
..... 金亨培, 고대신문, 746, 1976/4
- 생산직근로여성의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984, 184p
- 시용공·수습공·임시공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문제점
..... 宋在禎, 고시계, 275, 1980/1
- 여성공무원 직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김양현·정양숙, 한국여성개발원, 1983, 144p
- 여성근로자의 취업실태 및 고용관리개선방안
..... 金圭昌, 여성문제연구, 14, 1985/12, 359-375
-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 정년제도의 실태 및 그 개선방향
..... 魯柱赫,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5/2/25
- 우리나라 제조업근로자들의 임금실태
..... 金鳳壽,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석사, 1977/2/23
- 우리나라 주요공업단지의 임금구조의 실태적 분석과 그 비교연구
..... 姜正大, 전남대 논문집, 18, 1976/8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李東奎,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3/8/30
- 전남지방 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회정책적 연구

- 金顯奎, 전남대 논문집, 22, 1976/8, 71-106
- 충남지역의 근로자 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 .. 金永澈, 논문집(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1, 1974/12, 35-60
- 충남지역의 노동자 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 ... 김영철,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4, 1974
- 퇴직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崔京錫, 중앙대 사회개발논총, 4, 1983, 19-24
- 한국여성근로자의 실태와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 鄭義淳,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80/10/6
- 한국의 기업계 노동복지실태조사
 - .. 조영건·안승옥, 연구논총(경남대 노동복지문제연구소), 2, 1983/10, 1-26

[勞動契約]

- 연소노동의 현황과 문제점
 - 盧善翼, 노동공론, 2.3, 1972/3

[勞動法一般]

-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
 - 金致善, 고시연구, 76, 1980/6, 133-140
- 두레공동노동조사보고서
 - 주강현, 노동과 굿, 서울, 학예사, 1989
- 머슴에 대한 연구
 - 金炳台, 경제학연구, 4, 5, 1956/11, 1957/12
- 부산 부두노동의 실태(조사보고)
 - 沈泰植, 경희법학, 3.1, 1961/3
- 여차장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춘추, 35, 1966/12/15
- 향약의 노동법적 연구
 - ... 朴德培,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3, 1968

향약의 노동법적 연구

..... 朴德培, 새마을금고, 7, 1979/4, 101-139

향약의 노동법적 연구(I-V)

..... 朴德培, 한국법학원월보, 37-42, 1975/7-12

[勞動爭議調整法]

노사분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일고찰

..... 李勳載, 경영경제논총(동국대), 10, 1985/12

[勞使關係 및 勞使協議]

노사관계에 관한 고찰-어업을 중심으로-

..... 金宇盛, 부산수대, 경제학석사, 1981/2/26

노사협의회 어디까지왔나,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 한국생산성본부 편, 기업경영, 220, 1976/8, 26-34

노사협의회제의 연혁과 이에 대한 우리의 현황분석연구

..... 車奉順,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2/2/22

노사협의회제의 현실과 전망

..... 李炳泰, 사회과학논총(한양대), 2, 1983/12, 397-428

노사협의회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기업의 실태를 중심으로-

..... 朴鏡文, 부산대, 경영학박사, 1984/8/25

노사협의회제의 현황과 개선방향(I,II)

..... 장정태, 부산상공, 8·9.10, 1981/9.10

노사협의회제의 현황과 과제

..... 尹能善, 방적, 269, 1976/3/4, 3-7

노사협조실태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편, 상의, 185, 1976/2, 57-66

생산현장과 노동문제, 이론의 사각지대

..... 고려대학교 편, 고대문화, 21, 1982/2, 172-180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金奉洙,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4/2/25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宋允教, 영남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1/2/21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실증적연구
 申斗休, 중앙대, 경영학박사, 1980/9/6
 한국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金淵洙, 건국대, 경영학석사, 1981/2/21
 한국노사협의제도의 실태조사
 趙昌華, 동국대 논문집, 19, 1980/12, 153-176
 한국노사협의제의 운영이론과 그 실태에 관한 연구
 呂院東, 인하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4/2/24
 한국노사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그 개선방향
 表明洙,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5/2/15
 한국의 노사협의제에 관한 연구-선진국과의 비교와 실태를 중심으로-
 崔禮根,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석사, 1985/2/22

[不當勞動行爲]

- 부당노동행위의 실태와 문제점
 金亨培, 노동문제연구, 5, 1974/12
 부당노동행위의 태양
 沈泰植, 법제월보, 3.12, 1960/1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金致善, 법학(서울대), 25, 1972/5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金重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7/8/30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宋明憲,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 1975/2
 한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와 그 문제점
 金忠久,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1975/2

[解雇·退職金]

-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에 관한 연구-대기업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朴明魯,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73/2

民 法

[家族法一般]

가족법의 토착화

... 李根植, 한국의 정치·법률·행정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1972, 115-128

농촌가족제도 실태조사

..... 金疇洙, 법정, 14.10, 1959/11

농촌의 가족제도조사보고

..... 金疇洙, 경희법학, 4.1, 1961/12

제주도주민관습-혼인·이혼·상속을 중심으로-

..... 제주도주민관습조사대, 법정론총(중대), 15, 1962/12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의 비례

..... 金炳魯, 법정, 21.2.4, 1947/4

한국의 가족형태에 있어서의 전근대법적 영향

..... 金秉圭, 동아론총(동아대), 8, 1972/4

한국신분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 權大勳,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1977/2

한국의 고부(姑婦)관계

..... 김용욱·이기숙 서울, 청림각, 1977, 269p

[契約各論]

계계약

..... 李光信 법학론총(단대), 5, 1965/1

계소멸론

..... 金三守, 논문집(숙대), 12, 1972/12

계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趙弼煥, 행정학보(원주대), 1-2, 1968/11-1969/12

계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趙弼煥, 건국대, 석사, 1967/9
 계에 관한 사적 고찰
- 徐承琦, 경희대 대학원, 법학석사, 1975/2
 계에 대한 약간의 고찰
- 金容晉, 법학논총(단대), 6, 1965/11
 계와 법률관계
- 崔範植, 천일, 14, 1957/8
 계의 경제사적 고찰
- 金順烈, 고려대, 경제학석사, 1958/3
 계의 기원
- 崔範植, 천일, 13, 1956/12
 계의 단체개념에 관한 사적 고찰
- 金三守, 경제학연구, 10, 1962/9
 계의 법률적 성질<대법원판례평석>
- 金容晉, 대한변호사협회보, 1, 1970/3
 계의 법률적 성질<판례연구>
- 金容晉, 법조, 12.2, 1963/2
 계의 사적 고찰
- 金柄夏, 중앙대학교, 경제학석사, 1958/3
 계의 사회적 기능
- 趙弼煥, 행정학보(원주대), 1, 1970/12
 계의 연구—계의 사회경제사적 고찰
- 愼奎晟, 동아대, 경제학석사, 1963
 계의 운영실태와 그 관행—금융계를 중심으로—
- 金然泰, 재판자료, 12, 1982/4, 569—610
 계의 원리와 계금리에 관한 연구
- 李奎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73/2
 계의 종말
- 金三守, 재정, 5, 1972/2
 계주와 계원들 사이의 관계
- 최식, 사법행정, 14.10, 1973/10

관행농지임대차에 관한 소고

..... 안수홍, 부산대, 법학석사, 1979/2/24

근대법의 수용과정에 있어서 전세관습의 변용

..... 尹大成, 재산법연구, 1.1, 1984/6, 85-100

낙찰계의 법률상 문제 - 민·형사 사례해설 -

..... 李亥雨, 경찰고시, 98, 1972/12

농지임차관계 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카톨릭농민회, 서울, 한국카톨릭농민회, 1974, 153p

농촌에서의 정조보관증에 관한 관습

..... 유정주·김상철, 재판자료, 7, 1980/8, 77-90

도시 부녀자계의 연구

..... 朴敏子, 이화여자대학교, 문학석사, 1968

도시부녀자계의 구조와 기능

..... 朴敏子, 정경연구, 4.4, 1968/4

서민금융의 수단으로서의 계 - 대법원판례와 광주지방의 실태 -

..... 孟千鎬, 재판자료, 12, 1982/4, 489-514

소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한 관습

..... 金榮一, 재판자료, 11, 1981/10, 127-150

순번계에 관한 법률적 성질

..... 朴幸燁, 사법행정, 9.9, 1968/9

어촌계에 관한 연구 - 사적배경과 경영형태를 중심으로 -

..... 장수호, 동아대, 경제학박사, 1980/2/23

어촌계의 법적 성질

..... 李德勝, 상지실전논문집, 18, 1988/12

일반가옥에 관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의 제문제점 -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김태훈·이재곤, 재판자료, 11, 1981/10, 37-72

임차권의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 상가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河良明, 재판자료, 7, 1980/8, 7-34

주부의 계에 대한 행태

..... 金映伸, 충남과학연구지, 9.1, 1982/6, 163-177

주택임대차의 실태와 법적 문제

- 金相容, 주택금융, 68, 1982/4, 4-26, 충북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 23, 1982
- 한국계금리의 고찰
 - 金龍洛, 금융, 15.8, 1968/8
- 한국계의 성격
 - 趙弼煥, 행정학보(원주대), 4, 1972/12
- 한국계의 이론과 실제
 - 金龍洛, 서울, 청자서원, 1969, 317p
- 한국사회경제사 연구-계의 연구
 - 金三守, 서울, 박영사, 1964, 379p
- 한국사회경제사 연구-계의 연구
 - 金三守, 경희대, 경제학박사, 1967/10
-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계의 생성과정 소고
 - 洪權植, 금융, 3.11, 1956/11
- 한국전통 계조직의 실태(상·하)
 - 任仕彬, 지방행정, 381.383, 1985/7.9
- 할부판매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金圭昌,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75/2

[契約總論]

- 가축시장의 거래방법과 경매제도
 - 권원달, 양돈, 72, 1985/8, 110-115
- 보통거래약관과 예문해석 ; 민법의 기본문제연구
 - 金相容, 고시계, 201, 1990/12
- 은행거래와 우선특권
 - 鄭用昊, 경제브리프스, 436, 1990/5

[擔保物權]

- 관습법상의 양도담보
 - 朴文昇, 재판자료, 11, 1981/10
- 관습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연구

..... 金在德, 논문집(건국대학교), 1, 1974/10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 鄭喆燮, 부산지방변호사회지, 8, 1989/12
사고신고 담보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 金承日, 외환은행월보, 279, 1990/10
실제거래에 있어서의 포괄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 金在甲,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84/2/27
양도담보와 은행실무

..... 한국은행 편, 조선일보, 920, 1985/10, 40-48

[物權의變動]

토지이전의 실태조사

..... 이태재·한종열·곽동현, 경북대 법대론총, 16, 1978/8

[物權法一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

..... 金曾漢, 사법행정, 5.11, 1964/11

[民法總則一般]

거래의 실정과 관행

..... 金容晋, 판례연구, 3, 1978, 287-294

관습민법

..... 金容漢, 법정, 18.12, 1963/1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丁炳旭, 고시연구, 6.8, 1979/8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高翔龍, 양촌 申東旭박사 정년기념논문집, 1983/8, 397-41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상.하)

..... 高翔龍, 고시연구, 87.88, 1981/6-7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판례와 학설)

..... 金容漢, 법정, 25.1, 1970/1

- 관습법의 법원성
 崔鍾吉, 법정, 24.1, 1969/2
- 관습법의 법원성
 權五乘, 고시계, 299, 1982/1, 86-98
- 관습법의 법원성
 嚴英鎭, 고시계, 274, 1979/12, 59-68
- 관습법의 법원성 - 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黃迪仁, 월간고시, 115, 1983/8, 62-66
- 관습법의 효력
 權五乘, 월간고시, 1983/2, 212
-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고찰
 崔錦虎, 국민대, 법학석사, 1981/2/26
-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소고
 金旭坤, 법조, 25, 1976/5
- 농촌민사관습 실태조사<좌담회>
 嚴敏永의, 경희법학, 2.1, 1960/3
- 민법상의 관습의 규범력
 李太載, 고시계, 221, 1975/7, 25-32
- 민법에 있어서의 관습법의 지위
 張庚鶴, 법제월보, 7.12, 1965/12
- 불문민법의 법원성
 金基善, 고시계, 250, 1977/12, 12-16
-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尹明重, 금융, 14.12, 1967/12
- 한국민법에 있어서의 관습법에 관한 연구
 金容燦,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1977/2/25
- [法律行爲]
- 광산에서의 덕대계약에 관한 관습
 宋東源, 재판자료, 11, 1981/10, 7-36
- 표현대리의 실제

- … 李光信,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안이준박사 화갑기념), 1986, 94-104

[法 人]

마을공동체의 관습법상의 법인성에 관한 연구

- …………… 鄭煥淡, 전남대 사회과학론총, 9, 1981/12, 291-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 …………… 許奎, 민사법학(한국민사법학론), 1, 1978, 87-100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 연혁적 실무적 견지에서

- …………… 許奎, 법률공론, 2, 1976/11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의 부분요약-연혁적 실무적 견지에서-

- …………… 許奎, 한국법학원월보, 51, 1976/9

종중·종중재산의 법적 성격(일)

- …………… 曹秉甲, 전남대 사회과학론총, 4, 1979/2, 167-

종중법에 관하여

- … 鄭貴鎬, 민법논총(후암 박윤직교수화갑기념), 1985, 78-96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 安政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4/2

종중의 법적 성질과 종중재산등기에 관한 고찰

- …………… 姜信雄, 사회과학연구(조선대), 1980/2, 213-229

종중의 사단성과 종중재산의 등기에 관한 고찰

- …………… 姜信雄, 사회과학연구(조선대), 3, 1980, 213-231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종중회의에 관한 관습-안동지방종중을 중심

- …………… 金仁銖, 재판자료, 11, 1981/10

[不動產私法·登記法]

가등기의 사회적 작용 및 법률관계-가등기담보권-

- …………… 金時昇, 재판자료, 12, 1982/4

구분건물등기실태조사

- …………… 李勇雨, 재판자료, 12, 1982/4

부동산과 법의 현장

..... 李炳勇, 월간조선, 2.3, 1981/3, 77-84

[父母와 子]

문회의 사후양자선정권<판례평석-1978/6/27,78다 277>

..... 徐廷友, 사법행정, 1979/4, 58-

양자의 성·본

..... 李光信,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3, 1976/10, 405-431

양자제도의 변천과 현행양자법의 문제점

..... 정조근, 부산여대 논문집, 13, 1982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변천에 관한 소고

..... 허경만, 검찰, 30, 1970/10

이성계후(異性繼後)의 실증적 연구

..... 朴秉濠,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학계), 2, 1972

한국양자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 孫昌熹, 서울대학교, 석사, 1960/9

한국의 혼외자 차별에 대한 법사적 고찰;

..... 金容旭, 사법행정, 326, 1988/2

현행 사후양자제도와 구관습법과의 관계-가족법연구-

..... 許振明, 사법행정, 158-160, 1974/2-4

[不法行爲]

분묘기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李根植, 법률신문, 1321, 1979/10/29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산정기준의 조사자료분석 및 그 연구

..... 金先錫, 재판자료, 5, 1980/5, 69-130

불법행위에 있어 과실상계산정기준 및 위자료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李範柱, 재판자료, 5, 1980/5, 191-276

[相續法一般·戶主相續]

구관습상 자부의 호주상속권-정광현박사의 이의에 대하여-

..... 李漢奎, 법률신문, 738, 1967/9/4

상속에 관한 조서관습법

..... 鄭文謨, 법정, 2.5, 1947/5

현행 관습상속법

..... 劉在昌, 전북대학교, 석사, 1957/3

[所有權]

공유하천 용수권에 대한 소고

..... 李相球, 서울대, 석사, 1966/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이론을 통해 본 교회재산 고찰

..... 李完植, 전남대, 법학석사, 1984/2/24

권리능력없는 사단재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李德勝, 대구대, 법학석사, 1985/2/16

농어촌 공동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 高昌鉉, 민법논총(후암관윤직교수화갑기념), 1985, 203-225

마을공동재산의 법적 고찰-농촌을 중심으로-

..... 高昌鉉, 조선대 사회과학연구, 6, 1983, 129-158

물레방아를 위한 관행수리권

..... 崔錦淑, 이화여대, 법학석사, 1983/2/28

분묘수호의 위토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

..... 李玄雨, 법률신문, 667, 1966/3/14

분묘에 관한 입법논적 고찰-묘지개혁을 중심으로-

... 高昌鉉·金柄大,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1, 1973

상린성 입법에 관한 연구-현행 관습조사를 중심으로-

... 金龍熙,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4, 1969

상린성입법에 관한 연구-현행 관습조사를 중심으로-

..... 金龍熙, 법조, 19.12-20.2, 1971/1-2

아파트 소유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 金永煥, 건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76/2/21

은천의 법률관계

..... 金容旭, 법조, 27.12, 1978/12, 79-104

- 원천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고찰
 李好珽, 서울대, 석사, 1961/9
- 유수이용권에 관한 관습, 판례와 법리
 ... 李太載, 현대민법학의 제문제(김증한박사 화갑기념), 1981/5,
 271-290
- 유수이용권에 관한 영남지방의 관습조사
 李太載, 경북대 법대론총, 17, 1979, 1-20
- 종중·종중재산에 관한 제고찰-연혁적·실무적-
 許奎외, 사법논집, 4, 1973/12
- 종중의 재산에 관한 법적 연구
 허상수, 부산대, 법학석사, 1980/3/23
-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 김기상·고창현·강신웅, 사회과학연구(조선대), 5, 1982,
 157-191
-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
 高昌鉉, 조희채변호사 화갑기념논문집, 1981, 49-91
 법대논총, 20집, 1982/11, 83-98
-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 고찰<문교부지원논문>
 金基相외2인,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 1982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李德勝, 상지실전논문집, 14, 1984/12, 373-390
- 집합주택(아파트)의 구분소유에 관한 비교법적·실태적 고찰
 ... 최종길,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3, 1969
- 집합주택(아파트)의 소유, 관리에 관한 고찰
 金鼎鉉외, 사법연구자료, 1, 1974/6
- 총유에 관한 문제
 최식, 법조, 14.2, 1965/2
- 한국의 관행수리권에 관한 연구
 崔柄煜, 서울대, 석사, 1962/2

[用益物權]

-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요건
 鄭範錫, 법률신문, 1166, 1976/8/2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崔成俊, 고시계, 298, 1981/12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문제점
 朴禹東, 정범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77/11, 211-220
 사법행정, 202, 1977/10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례의 고찰
 李東老, 한양대, 법학석사, 1982/2/27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崔長洛, 재판자료, 7, 1980/8, 35-50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관한 연구
 趙宗植, 법조, 34.5, 1985/5, 45-69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徐鉉石, 단국대, 법학석사, 1981/2/27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례연구
 韓基春,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1979/2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한국민사법학회, 법정, 23.1, 1968/1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張庚鶴, 고시계, 17.5, 1972/5
-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1-5)
 李海鎭, 법률신문, 925-29, 1971/7/26-8/23
- 분묘기지권의 검토
 崔龍煥, 사법논문집, 1985/7, 217-222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관례평석-대판 1982/1/26, 81다 1220>
 李太載, 법률신문, 1982/4/5
- 분묘이장
 鄭範錫, 법조, 34.1, 1985/1, 82-94

- 분묘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입야개설관계
 崔龍煥, 사법논문집, 1985/7, 205-216
- 산야지의 특수용역
 崔龍煥, 사법논문집, 1985/7, 161-204
- 신민법상의 입회권에 관하여
 金基善, 법정, 18.1, 1963/1
- 온천의 법률관계, 특히 동래·해운대 온천을 중심으로
 ... 金容旭, 부산대 법학연구, 27, 1978/2, 51-96
 법조, 27.9, 1978/9, 56-76
-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양도에 관한 고찰
 李湊成, 사법논문집(법원행정처), 7, 1976/12, 93-116
- 입회권
 金基善, 고시계, 5.12, 1960/12
- 한국 구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
 朴秉濠, Fides, 10.2, 1963/6
- 한국의 묘지
 趙宗植, 대전, 대원출판사, 1987
- 한국입회권에 관한 소고
 安東燮,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61/3

[財産相續]

- 농촌의 가족과 상속—공주군 우성면의 실태(조사보고)—
 金疇洙, 경희법학, 3.1, 1961/3
- 농촌의 분가와 상속—서설적 고찰(농촌실태조사)—
 金疇洙, 경희법학, 2.1, 1960/3
- 상속관습법상의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許奎, 사법논문집, 3, 1972/12
- 재산상속의 이론과 실제
 李俸,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2, 1971
- 재산상속의 이론과 실제—특히 농지상속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李俸, 논문집(중앙대), 17, 1972/10

재산상속실태와 상속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개정민법의 검토를 위하여
 李東薰,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1980/2/25

한국에 있어서의 재산상속에 관한 구관습
 李相範, 재판자료, 7, 1980/8, 132—174

한국 상속관습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鄭光鉉, 서울대논문집, 5, 1957/4

[債權의 效力]

손해배상의 법리와 실제
 張庚鶴, 중재, 71, 1977/11

[債權法一般]

선이자공제
 魚寅義, 재산법연구, 7, 1990/11

[婚 姻]

가정파탄의 법정원인과 그 실태—구관습제도와 관련하여—
 金鍾權, 재판자료, 12, 1982/4

관습법상 금혼범위에 대하여
 趙宗植, 치악문화(상지대), 1982/2

부부재산제에 관한 연구(설문조사보고)
 金柄大, 사법행정, 232, 1980/4

우리나라 부부재산제에 있어서의 그 실태와 처의 지위〈문교부지원논문〉
 高昌鉉의, 사회과학연구(조선대), 4, 1981/2, 293—332

우리나라 이혼법제의 실태
 金永在, 단국대, 법학석사, 1979/9/14

우리나라 이혼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李長鮮,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76/9/20

우리나라에 있어서 동성동본혼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
 金哲子, 인천교대 논문집, 16, 1982/5, 65—77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와 실태

- 金永在, 대전실전, 중경공전 논문집, 8, 1979/12, 37-65
재판상 이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韓三寅, 동국대, 법학박사, 1990, 258P
한국혼인고, 부논문-법제와 혼속
- 金完燮, 고려대 대학원, 문학박사, 1975/2

民事訴訟法

[當事者]

- 수리계의 당사자적격
..... 李英燮, 고시계, 11.3, 1966/3
- 중중·중재 소송고
..... 許奎, 변호사, 10, 1979/4, 161-190
- 중중대표와 당사자적격<판례연구>
..... 李潤根, 법조, 16.6, 1971/6
- 중중의 대표자 선임방법에 관한 일반관습
..... 鄭洸熙, 재판연구관련수자료 대법원판례해설, 2.2, 125-

[訴]

- 기업쟁송의 실태와 예방에 관한 소고
..... 金鎭佑, 변호사, 9, 1980/7
-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법조협회 편, 법조, 28.4-5, 1979/4-5

仲裁法·制度

- 상사중재의 실제와 기법, 중재판정과 효력
..... 정기인, 무역, 153, 1979/5, 33-37
- 상업중재의 실제와 기법, 중재심문의 절차
..... 정기인, 무역, 152, 1979/4, 42-47

法律學一般

[法社會學]

- 관습법의 법원성
..... 李德勝, 상지실전논문집, 17, 1987/12
- 관습법의 법원성
..... 李三願,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1958/3
- 관습실태조사
..... 법원행정처, 제2집, 340p
- 관습조사의 방법론적 연구
..... 田源培, 법조, 9.4, 1960/4
- 관습조사의 방법론적 연구(농촌실태조사)
..... 田源培, 경희대, 2.1, 1960/3
- 농지매매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權五乘, 논문집(육군제3사관학교), 4, 1976/12, 73-85
- 농촌관행조사방법
..... 李廷植, 법학논집(대구대), 1, 1959/12
- 농촌사회와 법
..... 崔炳煜, 대학신문, 1024, 1978/5/1
- 농촌의 사회구조와 법
..... 崔大權, 법학, 18.1, 1977/6
- 도시의 사회구조와 법
..... 崔大權, 법학, 18.2, 1978/2
- 법률학적 사회조사
..... 최식, 논문집(성대), 6, 1960/12
-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의 가치
..... 朴鍾元, 법학논고(청주대), 2, 1958/2
- 사회변동과 한국의 법 ; 소유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沈義基, 사상과 정책, 24, 1989/9

생활 속의 분쟁

..... 金鍾壽의, 서울, 법전출판사, 1980, 234p

제주관행조사기

..... 朴光緒, 법정논총, 15, 1962/12

제주도 서민공동체의 사회구조와 법규범

..... 徐庚林, 제주대 논문집(사회개발연구), 1, 1985, 35-52

제주도민 이혼에 관한 연구(II)

..... 韓三寅, 제주대 논문집(사회개발연구), 1, 1985, 53-83

제주도의 첩제도

..... 아세아여성연구(숙명여대), 17, 1978/12, 125-144

충북 화전지역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 金允求, 청주대 논문집, 9, 1976, 367-384

한국여성의 지위 : 과거. 현재. 미래(특집)

..... 김갑순, 국회보, 211, 1984/5, 80-85

한국여성의 지위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高貞子, 동아대 대학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 8, 1984/1, 461
-476

한국의 고유법

..... 朴秉濠, 대학신문, 643, 1966/5/2

한국전통사회의 정체요인에 관한 연구

..... 金容次, 정경논집(중앙대), 1, 1969/8

향약의 법사상 - 상주남촌향약을 중심으로 -

..... 崔鍾庫, 문인구박사 회갑논집, 서울, 삼영사, 1986

[法學教育 · 法學研究]

법학과 실태조사

..... 洪淳燁, 법정, 1, 1956/4

法 史 學

[韓國法制史]

객주

..... 朴元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357p

계약의 법사적 소고

..... 朴康秀, 동아대, 석사, 1960

고유제도의 법사학적 고찰

..... 韓昌烈, 경북대, 1968/8/31

근대적 토지사용제 확립과정

..... 鄭洪鎭, 서울대, 문학석사, 1962/2

보부상 소고

..... 金元中, 민주경찰, 11.1, 1958/1

보부상에 관한 고찰

..... 金炳夏, 경제학논집(중대), 3.1, 1960/6

소작제도의 전개와 지향

..... 尹源鎬, 전북사학, 3, 1979/2, 43-64

역사적 카테고리로서의 집단적 사유

..... 金三守, 논문집(숙대), 4, 1964/7

우리나라의 異姓不養考

..... 李丙洙, 법사학연구, 6, 1981

율(律)의 기원에 관한 연구

..... 金龍興, 영남대, 문학박사, 1985/2/22

율법(律法)의 연원

..... 李榮根, 법제월보, 1.10-2.9, 1958/10-1959/9

조선왕조의 노동법제

..... 李鍾河, 경북대, 박사, 1969/2

족정제의 성립과 성격

..... 윤한택, 서울대, 문학석사, 1983/8/30

- 중증·중증재산에 관한 제고찰(일.이)
 許奎, 법사학연구, 2, 1975/5 : 법사학연구, 3, 1976/10
-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金相容, 이광신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82/10, 254-289
- 한국 개항기의 화폐제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吳斗煥, 서울대, 경제학박사, 1985/2/26
- 한국 근대토지제도사 연구
 李英俠, 건국대, 경영학박사, 1967
- 한국 민사증개업의 “사적 배경과 그 개념정립”
 金基洙, 한양대 행정문제논집, 1, 1979/12, 23-52
- 한국고부관계의 구의식과 그 규범성
 ... 김용욱·이기숙, 법사학연구(한국법사학회), 2, 1975/5, 325-361
- 한국고유상사제도
 劉元東, 한국방송사업단, 1984, 239p
- 한국근대 토지소유권제도에 관한 연구(1)
 趙宗植, 상지실전 논문집, 1, 1982, 303-326
- 한국근대토지소유권제도에 관한 연구(2) : 토지조사사업의 결과와 영향
 趙宗植, 상지대 논문집, 3, 1982, 17-
-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
 朴秉濠, 한국법학원월보, 50, 1976/8
-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
 朴秉濠, 법률공론, 12, 1977/5, 35-37
- 한국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朴秉濠, 법정, 59, 1976/1
- 한국상속법사에 관한 연구
 李相旭, 경북대, 법학석사, 1980/2/25
- 한국의 복수와 형벌
 沈羲基, 법과종교(한국종교법학회), 1, 1983, 157-188
- 한국의 수산물객주에 관한 소고
 黃範哲, 농광, 7.2, 1985/6, 40-42

- 한국의 토지소유권개념의 변천에 관한 연구
 趙相根, 법학논총(단국대), 13, 1985/5, 249-268
- 한국의 토지소유권변천에 관한 연구
 金志坤,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3/8/27
- 한국의 토지소유권변천에 관한 연구-근대적 소유권 성립을 중심으로-
 崔均求,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1977/2
- 한국전당금융사연구
 李英徠, 서울, 건국대출판부, 1977, 219p
-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동족결합의 유형
 朴秉濠, 법사학연구, 제6호, 1981
- 한국토지소유권사론
 趙宗植, 서울, 대원출판사, 1986/8/25, 253p
- 한국토지제도사연구
 金玉根, 서울, 대왕사, 1980, 407p
- 한국혼속의 변천에 관한 연구
 裴慶淑, 법사학연구, 제6호, 1981
- 한국혼인법의 약사
 曹圭甲, 건국대 학술지, 22, 1978, 179-198
- 한말 근대금융제도에 관한 연구
 李炳文, 동아대, 경제학석사, 1983/2/26

司法制度

[法 官]

- 한국법관의 실태조사
 李石善, 사법연구자료, 3, 1976/2
- 한국판사에 관한 행태학적 연구
 柳尙昊,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71/2

[辯護士]

- 변호사실태에 관한 통계분석
 崔光律, 변호사, 9, 1978/4

변호사직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언

..... 孫健雄, 변호사, 9, 1978/4, 13-39

[司法制度一般]

한국사법사(근세편)

..... 金炳華, 서울, 일조각, 1982, 628p

한국사법사(현대편)

..... 金炳華, 서울, 일조각, 1982, 462p

社會保障法

[公的扶助法]

한국의 공적 부조제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

..... 申政湜, 대구대, 행정학석사, 1984/8/25

[社會保障法一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 일고찰, 진흥문제를 중심으로

..... 이민수, 사회복지연구(한국사회사업대), 7, 1979/2, 75-85

우리나라 의료보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김한중 외, 대한의학협회지, 199, 1976/8, 685-694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내용 및 실태의 비교연구

..... 曹南德, 대구대, 행정학석사, 1983/2/26

한국사회보험제도의 실태연구

..... 李元淑, 이화여대, 문학석사, 1981/2/23

商 法

[保 險]

보험정책적 측면에서 본 보험유사사업 - 조합보험을 중심으로 -

..... 宋基澈, 보험연구, 4.1, 1964/1
 약관과 다른 보험모집인의 설명과 보험자의 책임
 鄭浩烈, 판례월보, 236, 1990/5
 유사보험의 현황과 그 문제점
 金周淵, 생명보험월보, 19, 1964/12
 자가보험과 유사보험에 관한 고찰
 편집실, 보험연구, 5.1, 1965/3
 해상보험 AND 해상운송 : 법, 판례, 신·구약관, 판례, 실무규정
 申允富, 서울, 세광출판문화사, 1985, 631

[商法一般]

객주에 관한 연구
 朴元善, 법정, 24.2, 1969/4
 거간
 朴元善, 연세논총, 10, 1973/7
 기업편의·관행 최대한 존중토록(좌담)
 林錫春외, 상의주보, 562, 1981/8, 4-6
 부보상
 朴元善, 법정, 24.3, 1969/3
 부보상-한국 상업사상의 행상제도 연구-
 朴元善, 연세대학교, 박사, 1966
 부보상-한국 상법사상의 행상제도연구-
 朴元善, 서울, 한국연구원, 1965, 201p
 상관습법
 徐燾珏, 기업경영, 4.4, 1961/4
 상관습법의 효력
 徐燾珏, 법정, 24.12, 1969/12
 상관습의 법원성
 孫珠瓚, 법정, 20.9, 1965/9
 상관습의 효력
 裴基玟, 법정, 21.10, 1966/10

- 상법개정안에 있어서의 상관행과 상사특별법의 상법전화
..... 李允榮, 월간고시, 111, 1983/4, 18-31
- 신·구객주의 여러모습
..... 朴元善, 사법행정, 10.7, 1969/7
- 한국 중간상인에 관한 연구
..... 朴元善, 성곡론총, 4, 1973/8
- 한국고유의 상사제도, 한국상법사적 고찰
..... 朴元善, 동방학지, 27, 1981/8, 85-123
- 한국고유의 상인제도
..... 朴元善, 한국법학원월보, 49.50, 1976/7.8
- 한국재래의 상업제도
..... 金容泰, 법률행정논총(고려대), 10, 1972/6

[商法總則]

-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구조 I
..... 孫晋華, 사법행정, 360, 1990/12

[商行爲]

- 기업과 계약사례
..... 印亨武, 삼성상임법률고문실, 1983, 547p
- 보증도의 관행과 운송인등의 책임
..... 金教昌, 판례월보, 226, 1989/7

[어음·手票法]

- 미회수수표용지 악용과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유무
..... 李俊想, 금융경제, 156, 1990/1
- 배서의 태양
..... 金永官, 조흥경제, 214, 1983/3, 18-22
-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 金洋坤, 외환은행월보, 281, 1990/12
-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와 소비자보호

- 郭義權, 조흥경제, 295, 1990/1
- 어음·수표법의 이용실태, 은행거래를 중심으로
 成達鏞, 대한변호사협회지, 75, 1982/3, 8-16
- 어음과 수표의 유통에 관한 거래관습
 朴鍾彧, 재판자료, 7, 1980/8, 51-76
- 쿠폰권의 유가증권성〈판례평석-대판 1984/11/27, 84도 1862〉
 金文煥, 법률신문, 1985/5/6
- 크레디트카드의 실태와 문제점
 金文煥, 상법학의 현대적 과제(서정갑박사고회기념논문집),
 1986, 51-74
-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판결과 입법; 카드보증시의 민사책임
 金文煥, 한일월보, 977, 1990/7
- 크레디트카드에 관한 판결과 입법; 카드도난시의 민사책임
 金文煥, 한일월보, 976, 1990/6
- 한국 어음관습
 崔泰永, 중앙대, 석사, 1955/9

[株式會社]

- 대표이사, 은행거래실무를 중심으로
 한국상업은행 편, 상은조사, 97, 1981/9, 14-23
- 대표이사도 임기가 있다
 金正鎬, 사법행정, 7.1, 1966/1
- 소위 1% 무의결권 우선주의 법적 평가
 李哲松, 증권, 65, 1990/9
- 주식분산에 관한 실태적 및 이론적 연구
 鄭熙喆, 법조, 20, 4-6, 1971/4-6
- 주식양도의 실태,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金教昌, 대한변호사협회지, 61, 1980/10, 34-39
- 회사정리의 실태조사
 .. 金仁梧, 문교부지원에 의한 연구보고서(사회과학계), 9, 1971

[海商法]

복합운송의 실태와 법적 형태에 관한 연구

..... 梁大元, 전북대 경영대학원, 상학석사, 1984/2/22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의 실정

..... 지.피.비스베이스, 해양한국, 21, 1975/6, 34-35

편의치적제도(便宜置籍制度)가 한국해운에 미치는 영향(특집)

..... 姜淙熙, 해운항만, 76, 1985/12, 34-44

[會社法]

기업합병의 이론과 실제

..... 金文洙, 회계와 세무, 104-126, 1978/2-1979/12

학설 및 실제상으로 거론되는 회사기업의 유형

..... 孫國鎬, 경남대 논문집, 6, 1979, 201-228

行 政 法

[公用負擔法]

환지업무의 실제와 문제점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편, 농촌개량회보, 3, 1979/12, 51-54

[教育·文化·保健]

체벌에 따른 교권관례

..... 朴道姬, 새교육, 346, 1983/8, 83-90

한국 사회교육제도의 실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高鍾聲,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77/2/21

[生活空間規制]

자연촌락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高昌實, 제주전문대논문집, 10, 1989/3

토지신탁제도의 운용실태와 전개방향

..... 朱基錫, 주택정보, 71, 1985/4, 22-27

한국묘장제도의 실태와 개선정책에 관하여

..... 朴洪潤, 강릉대 새마을연구논문집, 3, 1985/2, 109-146

[自治行政組織法]

조선시대의 지방자치제도로서의 향약에 관한 연구

..... 최성안,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84/2/25

[地方自治]

경상남도에서 본 지방제도—그 역사적 특색을 중심으로—

..... 金容旭, 법학연구(부산대), 4.2, 1960/3

우리 역사에 비친 지방자치적 요소

..... 崔昌浩, 법정, 22.11, 1967/11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연혁적 고찰

..... 朴準集,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75/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사적 고찰

..... 李弘植, 지방행정, 9.3, 1960/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 朴東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1964

지방자치의 실태조사—경기도평택군에 대한 표본조사—

..... 朴文玉, 법정논총(중앙대), 18, 1964/8

[行政法一般]

관습법과 행정법의 법원성

..... 李尙圭, 고시연구, 1982/2, 157-

행정관습법

..... 홍기갑, 원광대, 법학석사, 1983/8/26

행정법에 있어서의 관습법의 성립

..... 朴源永, 법경논집(동아대), 10, 1970/11

행정법의 법원—불문법원을 중심으로

- 金南辰, 고시계, 267, 1979/5, 67-74
- 행정법의 법원—불문법원을 중심으로—
- 朴鈞炘, 법제월보, 9.11, 1967/12
- 행정법의 불문법원
- 金鐵容, 고시계, 224, 1975/10, 월간고시, 1978/4
- 행정법의 불문법원
- 金南辰, 고시연구, 76, 1980/7
- 행정법의 불문법원
- 邊宇昌, 법정, 15.12, 1960/12
- 행정상의 관습법
- 梁用植, 사법행정, 8.1, 1967/1

[行政上の 義務履行確保]

- 관습실태조사(2), 과태료분석(재판자료 제11집)
- 서울, 법원행정처, 1981, 340p

憲 法

[國民의 基本的 權利義務]

- 교육체벌의 관례연구
- 金範柱, 관례월보, 214, 1988/7

[國 會]

- 임원회, 행정기관 및 이익집단간의 영향력 행사 유형
- ... Keith E. Hamm 의정자료(한국의회발전연구회), 2, 1983/11, 21-30

[政黨·利益團體]

- 정당공천이 헌정질서에 미치는 영향
- 全在慶, 법조, 404, 1990/5

